2025회계연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 기획재정부 소관 ····· 1

1. 결산 개요 ····· 3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 7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95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97

1) 공공자금관리기금 ····· 197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07

3) 대외경제협력기금 ····· 218

4) 복권기금 ····· 226

5) 외국환평형기금 ····· 239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244

○ 국가데이터처 소관 ····· 255

○ 국세청 소관 ····· 297

○ 관세청 소관 ····· 395

○ 조달청 소관 ····· 447

2026. 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 문 위 원 유인규

목 차

기획재정부 소관

1. 결산 개요 ····· 3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 3
(1) 세입 ····· 3
(2) 세출 ····· 4
나. 기금 결산 ····· 5
다. 예비비 ····· 6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 7
가. 개요 ····· 7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 7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 8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9

나. 세입 결산 검토의견 ····· 21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 21
(2)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미흡한 작성 시정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27
(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36
(4)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 부적절 (국세수입, 세제실) ····· 43
(5)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통합 관리 강화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48
(6) 할당관세 반복 운용에 따른 정부 재량행사의 적정성 및 정책효과 검증 필요 (국세수입, 세제실) ····· 57

(7) 국유재산 소송 승소금에 대한 보전절차 실시 등 수납률 제고 필요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국) ····· 65
(8) 물납주식 매각 실패 장기화 개선 필요 등(국세물납주식매각대, 국고국) ···· 68

다. 세출 결산 검토의견 ····· 72

(1) 과다한 행사 비용 집행 부적절(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미래전략기획실) ····· 72
(2)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경제정책국) ····· 76
(3) 국제평가지수 관리체계 정비 필요(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경제정책국) ··· 82
(4) 임시조직 운영 정상화 및 실소요 중심의 예산 편성 필요(신성장전략기획
추진단 운영,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87
(5)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의 내실화 및 사업비 집행 실적 저조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 96
(6) 예비비 과다 추계 및 중복 조직 신설 방지 등 예산 편성·집행 관리 철저
필요(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 99
(7)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관리 개선
(국제조세협력, 국내조세협력, 세제실) ····· 106
(8)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세제실) ····· 109
(9)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114
(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방안 검토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119
(1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연 및 과다한 불용 부적절
(재정사업평가, 재정성과국) ····· 127
(12)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계획의 실질적인 평가·분석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미래전략기획실) ····· 133
(13) 과다한 수의계약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불이행 및 확정 예산의
임의 미집행 부적절(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미래전략기획실) ····· 139
(14)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미래전략기획실) ··· 145
(15) 목적예비비 증액시 실소요에 부합하는 사유 제출 필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실) ····· 149

(16) 한시조직 운영기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국제금융국) ····· 154
(17)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 적정 규모 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규모
검토 필요 (국제금융센터보조, 국제금융국) ····· 159
(18) 유사 한시조직의 연속 운영 및 업무추진비 편성·집행 개선 필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국제금융국) ····· 162
(19) 예산 편성 시 기준환율 적용 오류에 따른 전용 발생 (경제협력기구활동/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대외경제국) ····· 166
(20) 추가경정예산 집행 지연 및 출자 규모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대외경제국) ····· 169
(21) 범부처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미흡 등(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경제공급망기획관) ····· 174
(22)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부적절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대변인실) ····· 180
(23) 면밀하지 못한 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용 부적절 및 온북
관련 예산 불용 필요 등(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기획조정실) ····· 185
(24) 과도한 교육목표인원 설정을 근거로 한 예산안 편성 부적절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조정실) ····· 192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95
가. 개요 ····· 195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 197
1) 공공자금관리기금 ····· 197
가. 개요 ····· 197
나. 검토의견 ····· 199
(1) 재정수요에 대한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한 과다한
불용 발생 최소화 필요(지방채인수(융자)사업, 국고국) ····· 199
(2)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의 추계 정확성 제고 및 계획변경의
적정성 검토 필요(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국고국) ····· 203

2) 국유재산관리기금 ····· 207
가. 개요 ····· 207
나. 검토의견 ····· 209

(1)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 반복 부적절 (총괄, 국고국) ····· 209
(2) 면밀한 계획 수립 없는 정책연수원 사업 추진 부적절 (정책연수원 신축·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국고국) ····· 214

3) 대외경제협력기금 ····· 218
가. 개요 ····· 218
나. 검토의견 ····· 220
(1) 현실적인 수입 목표 설정 필요(면허료 및 수수료, 개발금융국) ····· 220
(2) 사업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필요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개발금융국) ····· 223

4) 복권기금 ····· 226
가. 개요 ····· 226
나. 검토의견 ····· 228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논의 필요(복권위원회) ····· 228
(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복권위원회) ····· 235

5) 외국환평형기금 ····· 239
가. 개요 ····· 239
나. 검토의견 ····· 241
(1) 원화재원 운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총괄, 국제금융국) ··· 241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244
가. 개요 ····· 244
나. 검토의견 ····· 246
(1) 별도의 모펀드 조성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 발생 및 출자전용 특별인프라 펀드 출자 실적 부진(특별인프라펀드, 재정성과국) ····· 246
(2) 이월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 개선 필요 (기본경비, 재정성과국) ····· 252

국가데이터처 소관

가. 결산 개요 ····· 257
(1) 세입 결산 ····· 257
(2) 세출 결산 ····· 258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259
나. 검토의견 ····· 265
(1) 핵심진단 개선안 이행 여부의 지속적 점검·관리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265
(2) 예산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세부사업 간 조정을 지양할 필요(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2031-306), 통계서비스국) ····· 269
(3)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 272
(4)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범예행조사 운영 및 현장·비대면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경제총조사, 경제통계국) ····· 277
(5) 인구주택총조사의 내실화 필요(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국) ····· 285
(6) 농림어업총조사 예산 집행의 내실화 및 등록센서스 전환 추진 필요 (농림어업총조사, 사회통계국) ····· 289
(7)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 필요(통계연구개발지원, 국가데이터연구원) ····· 294

국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299
(1) 세입 결산 ····· 299
(2) 세출 결산 ····· 300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301
나. 검토의견 ····· 311
(1)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필요(국세외수입, 징세법무국) ····· 311
(2)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세국) ····· 317
(3)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과세국) ····· 321
(4) 면밀한 보호장비 구매계획 수립 필요(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325
(5)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정 필요 등
(납부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 331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개인납세국) ····· 341
(7)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346
(8)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 부적절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복지세정관리단실) ····· 350
(9)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시정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실) ····· 354
(10) 직제 및 근속승진자 현황 등을 고려한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인건비, 운영지원과) ····· 358
(11)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행태 지양 필요(법인납세국 기본경비, 법인납세국) ··· 365
(12)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 내역사업 추진 부적절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 369
(13)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금 전액 선금 지급 부적절 등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 374

(14)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비목의 전용 집행 지양 필요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기획조정관실) ····· 381
(15) 관서운영경비 집행한도 초과 및 분할집행 부적정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총괄) ····· 384
(16)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 및 소멸 방지 대책 마련 필요(총괄) ····· 390

관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397

(1) 세입 결산 ····· 397

(2) 세출 결산 ····· 398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399

나. 검토의견 ····· 404

(1) 거액 체납의 구조적 발생에 따른 과태료 제도 개선 필요
(과태료, 심사국) ····· 404

(2) 통관 물량 증가에 대응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 역량 확충 필요
(특송화물 통관지원, 통관국) ····· 408

(3) 지원기준의 반복적인 변경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 413

(4)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공항만감시지원, 통관국) ····· 417

(5)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의 활용도 제고 필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관세평가분류원) ····· 420

(6)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이동 및 자금세탁 범죄 등 차단 필요
(밀수단속, 조사국) ····· 426

(7) AI 위험관리 모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 고도화 필요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432

(8) 사전 성능검증의 한계로 인한 열화상카메라 도입예산 전액 불용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정보데이터정책관) ····· 438

(9)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이 미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청사시설관리, 기획조정관) ····· 441

조달청 소관

가. 결산 개요 ····· 449

(1) 세입 결산 ····· 449

(2) 세출 결산 ····· 450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 451

나. 검토의견 ····· 456

(1) 예산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장기 미수납액 해소 필요
(시설계약사업수입, 시설사업국) ····· 456

(2) 면밀한 예산수요 파악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조정 필요
(조달정보화(정보화), 디지털공정조달국) ····· 462

(3)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효과성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기획조정관) ····· 468

(4) 일괄 용역계약을 통한 비전문 분야 ODA 추진 지양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획조정관·혁신조달기획관) ···· 484

(5) 조달 자율화 시 부작용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구매사업국) ····· 490

(6) 편성사업 성격에 맞는 포상금 집행 필요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 ····· 496

(7)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관리 필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구매사업국·혁신조달기획관) ····· 503

(8)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공사 추진시 법령상 절차 및 집행지침 미준수 등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공공물자국) ····· 508

(9)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 유의 및 적정 비축량 조정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515

기획재정부 소관

1. 결산 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502조 5,020억원, 징수결정액은 583조 9,36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499조 7,209억원(85.6%)이 수납되고, 2조 6,956억원은 불납결손처리, 81조 5,200억원은 미수납됨.

불납결손 사유는 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 2조 6,591억원(98.6%), 압류액이 집행비용보다 적어 불납결손 처리한 경우 317억원(1.2%), 채무면제로 인한 경우 등 기타 48억원(0.2%)임.

미수납액은 국세수입이 9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의 미수납 사유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인한 경우 69조 821억원(84.8%), 납기미도래인 경우 6조 1,838억원(7.6%), 정리유예인 경우 2조 7,122억원(3.3%), 징수유예인 경우 1조 8,814억원(2.3%), 통관진행중 등 기타의 경우 1조 6,515억원(2.0%)임.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D)	미수납액 (E)	수납률 (C/B)	미수납률 (E/B)
일반회계	487,121,193	568,574,729	484,359,150	2,695,591	81,519,987	85.2	14.3
특별회계	15,380,803	15,361,760	15,361,760	-	-	100.0	-
계	502,501,996	583,936,489	499,720,910	2,695,591	81,519,987	85.6	14.0

자료: 재정경제부

(2) 세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4조 780억원, 예산현액은 41조 5,230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39조 9,931억원(96.3%)이 집행되고, 4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조 5,258억원은 불용되었음.

이월액은 계약기간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 16억원, 운영비 등 기타 24억원임.

불용액은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비비 불용 5,425억원,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회계간 및 회계기금간 거래 불용 6,571억원, 자체 집행예산 불용 205억원임.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일반회계	44,078,021	41,523,006	39,993,125	4,081	1,525,800	96.3
특별회계	-	-	-	-	-	-
계	44,078,021	41,523,006	39,993,125	4,081	1,525,800	96.3

자료: 재정경제부

나. 기금 결산

기획재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후대응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금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계획액 339조 7,263억원, 결산액 333조 8,122억원으로 계획 대비 98.3% 수준,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계획액 3조 4,824억원, 결산액 3조 4,083억원으로 계획 대비 97.9% 수준,

기후대응기금은 계획액 2조 5,997억원, 결산액 2조 6,743억원으로 계획 대비 102.9% 수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계획액 2조 2,727억원, 결산액 2조 2,771억원으로 계획 대비 100.2% 수준,

복권기금은 계획액 8조 9,786억원, 결산액 9조 1,027억원으로 계획 대비 101.4% 수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계획액 8,019억원, 결산액 6,904억원으로 계획 대비 86.1% 수준,

외국환평형기금은 계획액 137조 2,894억원, 결산액 112조 1,346억원으로 계획 대비 81.7% 수준임.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결산액(B)	집행률(B/A)
○ 공공자금관리기금	339,726,285	333,812,184	98.3
○ 국유재산관리기금	3,482,355	3,408,321	97.9
○ 기후대응기금	2,599,717	2,674,298	102.9
○ 대외경제협력기금	2,272,735	2,277,146	100.2
○ 복권기금	8,978,647	9,102,721	101.4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04	690,366	86.1
○ 외국환평형기금	137,289,389	112,134,565	81.7

* 기금 결산액은 자금 조달과 운용 측면에서 규모가 같음.

자료: 재정경제부

다. 예비비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는 3조 8천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지출 소요에 필요한 관련 부처에 예비비를 배정하였고, 기획재정부는 6,978억원(18.4%)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집행률(B/A)
	본예산(A) [배정액]	결산(B)	
○ 예비비	3,800,000	697,767	18.4
- 국가안전보장활동 지원	380,000	380,000	100.0
- 우주항공 분야 첨단기술 확보	152,000	152,000	100.0
- AI 전력 인프라 구축 경비	114,000	114,000	100.0
- 글로벌 안보침해 행위 긴급 대응	114,000	42,900	37.6
-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445	379	85.2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운영	2,061	1,508	73.2
- 기획예산정보화 예비비(정보화)	8,938	6,981	78.1

자료: 재정경제부

2.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 개요

(1) 일반회계 세입 결산

2025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7조 1,212억원이며, 568조 5,747억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484조 3,592 억원으로 예산 대비 99.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로는 85.2% 수준임. 징수결정액 중 2조 6,956억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고, 81조 5,200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수납률(B/A)
	예산현액(A)	결산(B)	
○ 국세수입	361,460,373	361,494,148	100.0
- 내국세계	329,151,889	330,240,418	100.3
· 소 득 세	126,819,207	130,452,571	102.9
· 법 인 세	83,567,118	84,609,009	101.2
· 상속증여세	15,443,717	16,479,904	106.7
· 부가가치세	83,329,244	79,178,964	95.0
· 개별소비세	8,747,915	8,514,413	97.3
· 증권거래세	3,845,400	3,443,008	89.5
· 인 지 세	883,646	763,689	86.4
· 기타내국세	6,515,642	6,798,860	104.3
- 관세	8,409,300	7,640,884	90.9
- 방위세	-	87	순증
- 교통·에너지·환경세	14,001,191	13,235,124	94.5
- 교육세	5,776,493	5,723,450	99.1
-종합부동산세	4,121,500	4,654,185	112.9
○ 세외수입	125,660,820	122,865,001	97.8
- 재산수입	6,496,441	7,173,149	110.4
· 정부출자기관 배당수입	1,045,447	1,712,632	163.8
· 기타 재산수입*	5,450,994	5,460,517	100.2
- 경상이전수입	12,700	18,225	143.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	7	350.0
- 관유물매각대**	3,744,140	130,743	3.5
- 전년도이월금	-	1,441,556	순증
- 세계잉여금	218,439	218,439	100.0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15,189,098	113,882,882	98.9
총 계	487,121,193	484,359,150	99.4

* 국고금 관리 이자수입, 국세물납주식 매각 이자수입,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등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자료: 재정경제부

(2) 일반회계 세출 결산

2025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집행액은 39조 9,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42.1%(11조 8,426억원) 증가하였음.

자체 지출예산 집행액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조 2,355억원이며, 예비비는 6,889억원이 집행됨. 회계기금간 거래액 31조 1,832억원과 회계간거래액 6조 8,855억원을 포함한 내부거래는 38조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44.1% 증가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집행률(B/A)
	예산현액(A)	결산(B)	
○ 자체 지출예산	1,260,103	1,235,521	98.0
○ 예비비	1,231,410	688,900	55.9
○ 회계기금간 거래	31,840,289	31,183,237	97.9
○ 회계간 거래	7,191,204	6,885,466	95.7
총 계	41,523,006	39,993,125	96.3

자료: 재정경제부

(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 국세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33,939,610	326,179,303	371,805,000	361,460,373	361,494,148	100.0	378,589,524
11 소득세	115,833,024	117,417,964	126,819,207	126,819,207	130,452,571	102.9	132,020,846
신고분(11-111)	41,295,946	38,800,022	41,469,831	41,469,831	43,722,471	105.4	43,054,839
원천분(11-112)	74,537,078	78,617,942	85,349,376	85,349,376	86,730,099	101.6	88,966,007
12 법인세	80,419,515	62,511,273	88,254,358	83,567,118	84,609,009	101.2	86,547,444
법인세(12-121)	80,419,515	62,511,273	88,254,358	83,567,118	84,609,009	101.2	86,547,444
15 상속세	14,634,054	15,298,137	14,505,872	1,5443,717	16,479,904	106.7	17,016,300
상속세(15-151)	8,544,422	9,643,987	8,463,696	9,401,541	10,039,303	106.8	10,946,781
증여세(15-152)	6,089,632	5,654,150	6,042,176	6,042,176	6,440,600	106.6	6,069,519
21 부가가치세	73,774,862	82,235,811	87,638,775	83,329,244	79,178,964	95.0	86,603,871
부가가치세(21-211)	73,774,862	82,235,811	87,638,775	83,329,244	79,178,964	95.0	86,603,871
22 개별소비세	8,820,924	8,656,553	9,666,300	8,747,915	8,514,413	97.3	9,434,414
개별소비세(22-221~222)	8,820,924	8,656,553	9,666,300	8,747,915	8,514,413	97.3	9,434,414
23 주세	-	-	-	-	-	-	-
주세(23-231~232)	-	-	-	-	-	-	-
25 증권거래세	6,080,262	4,760,168	3,845,400	3,845,400	3,443,008	89.5	5,375,303
증권거래세(25-251)	6,080,262	4,760,168	3,845,400	3,845,400	3,443,008	89.5	5,375,303
26 인지세	796,932	846,020	883,646	883,646	763,689	86.4	773,380
인지세(26-261)	796,932	846,020	883,646	883,646	763,689	86.4	773,380
27 기타내국세	5,699,899	6,533,443	6,515,642	6,515,642	6,798,860	104.3	6,117,788
과년도수입(27-271)	5,699,899	6,533,443	6,515,642	6,515,642	6,798,860	104.3	6,117,788
31 관세	7,288,282	6,972,267	8,409,300	8,409,300	7,640,884	90.9	7,221,426
관세(31-311~312)	7,288,282	6,972,267	8,409,300	8,409,300	7,640,884	90.9	7,221,426
32 방위세	137	80	0	0	87	-	0
방위세(32-321~322)	137	80	0	0	87	-	0
33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590	11,389,082	15,104,800	14,001,191	13,235,124	94.5	16,412,159
교통에너지환경세 (33-331~333)	10,843,590	11,389,082	15,104,800	14,001,191	13,235,124	94.5	16,412,159
34 교육세	5,151,619	5,373,797	6,040,200	5,776,493	5,723,450	99.1	6,443,294
교육세(34-341,345)	5,151,619	5,373,797	6,040,200	5,776,493	5,723,450	99.1	6,443,294
37 농어촌특별세	-	-	-	-	-	-	-
농어촌특별세 (37-371~372)	-	-	-	-	-	-	-
39 종합부동산세	4,596,509	4,184,709	4,121,500	4,121,500	4,654,185	112.9	4,623,299
종합부동산세 (39-391~392)	4,596,509	4,184,709	4,121,500	4,121,500	4,654,185	112.9	4,623,299

자료: 재정경제부

○ 세외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64,012,643	101,540,442	92,009,777	125,660,820	122,865,001	97.7	8,472,759
52 정부출자수입	941,196	1,603,347	1,045,447	1,045,447	1,712,631	163.8	1,450,094
정부출자수입 (52-521)	941,196	1,603,347	1,045,447	1,045,447	1,712,631	163.8	1,450,094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759,535	932,288	4,201,896	5,450,994	5,460,517	100.1	7,275,024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4,910	10,226	1,893,000	1,893,000	11,415,734	603	5,932
한국은행잉여금 (54-548)	1,754,625	922,062	4,200,003	5,449,101	5,449,101	100	7,269,092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19	92	171	171	53	31.4	171
벌금및과료(56-561)	-	-	1	1	-	-	1
과태료(56-563)	118	92	170	170	53	31	170
징계부과금(56-564)	-	0.1	-	-	-	-	-
57 변상금및위약금	2	-	3	3	-	-	3
위약금(57-572)	2	-	3	3	0	0	3
58 가산금	-	-	1	1	0	0	1
가산금(58-581)	-	-	1	1	0	0	1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3,302	15,758	12,525	12,525	18,171	0	19,501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33,302	15,758	12,525	12,525	18,171	0	19,501
69 기타잡수입	8	12	2	2	7	350	2
기타잡수입 (69-691)	8	12	2	2	7	350	2
73 재고재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104,940	53,539	3,744,140	3,744,140	130,742	3.4	1,063,783
국세물납주식매각대 (73-733)	104,940	53,539	3,744,140	3,744,140	130,742	3.4	1,063,783
88 전년도이월금	2,793,277	2,005,589	-	-	1,441,556	순증	-
전년도이월금 (88-881)	2,793,277	2,005,589	-	-	1,441,556	순증	-
89 세계잉여금이입액	2,751,088	-	-	218,439	218,438	99.9	-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2,751,088	-	-	218,439	218,438	99.9	-
91 전입금	187,853	291,466	240,295	240,295	225,882	94	114,274
특별회계전입금 (91-912)	187,853	291,466	240,295	240,295	225,882	94	114,274
94 예수금	55,441,323	96,638,350	82,765,297	114,948,803	113,657,000	98.8	108,304,108
기금예수금 (94-943)	55,441,323	96,638,350	82,765,297	114,948,803	113,657,000	98.8	108,304,108

자료: 재정경제부

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3,736,197	28,150,519	40,931,020	44,078,021	39,993,124	90.7	28,616,172 (재경부) 18,110,310 (기획처)
총지출	1,152,660	1,733,929	3,336,693	4,936,693	1,924,421	39.0	1,723,385 (재경부) 4,247,883 (기획처)
1100 경제정책	2,851	2,795	2,959	2,959	2,712	91.6	5,348
1131 소비자물가관리	971	759	812	812	804	99.0	795
소비자물가관리 (1131-302)	971	759	812	812	804	99.0	795
1132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1,032	869	920	920	791	86.0	3,382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1,032	869	920	920	791	86.0	3,382
1133 국가경쟁력 강화지원	269	633	625	625	586	93.8	355
국가경쟁력 강화지원 (1133-301)	269	633	625	625	586	93.8	355
1141 경제구조개혁 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398	534	602	602	532	88.4	521
경제구조개혁 전략 기획 및 이행기반 구축 (1141-301)	398	534	602	602	532	88.4	521
1300 정책조정	9,513	4,184	4,136	4,136	3,769	91.1	2,396
1331 경제정책조정지원	9,513	4,184	4,136	4,136	3,769	91.1	2,396
경제정책조정지원 활성화사업 (1331-301)	1,340	1,220	1,322	1,322	1,202	90.9	1,773
협동조합활성화사업 (1331-302)	7,201	1,584	1,580	1,580	1,489	94.2	2,93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1331-305)	715	950	733	733	661	90.2	200
신성장전략기획 추진단 운영 (1331-306)	257	430	501	501	417	83.2	423
1400 자문회의 지원	3,159	2,856	4,115	4.115	3,726	90.5	5,325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431-301)	3,159	2,856	4,115	4,115	2,218	53.9	3,196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 운영(1432-301)	-	-	-	-	1,508	-	2,129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100 조세정책	4,748	5,360	6,143	6,143	5,609	91.3	4,394
2131 조세정책지원	4,748	5,360	6,143	6,143	5,609	91.3	4,394
국제조세협력 (2131-301)	1,120	1,181	1,1610	1,1610	1,147	71.2	1,334
국제조세기구 등 분담금 (2131-303)	554	601	604	604	646	107.0	714
관세협력기구 출연(ODA) (2131-304)	995	1,082	1,023	1,023	1,162	113.6	1,023
조세지출성과관리및평가 (2131-306)	1,473	1,422	1,698	1,698	1,632	96.1	366
국내조세협력 (2131-308)	487	815	935	935	854	91.3	883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2131-310)	119	259	273	273	167	61.3	74
2200 국고관리	1,916	215,010	101,683	101,683	208,141	204.7	112,546
2233 국고업무관리지원	1,534	4,128	1,853	1,853	1,617	87.3	1,978
국고업무관리 (2233-302)	418	397	297	297	274	92.3	418
국채시장 관리 및 국제화 (2233-304)	480	508	480	480	415	86.5	333
혁신조달지원 (2233-305)	292	267	371	371	254	68.5	284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233-307)	1,344	673	390	390	389	99.7	628
공공기관 결산시스템 고도화(정보화) (2233-308)	-	2,283	315	315	285	90.5	315
2234 국유재산관리	382	173	621	621	217	34.9	568
국유재산관리 (2234-302)	382	173	621	621	217	34.9	568
2272 일시차입금이자상환	-	210,709	99,209	99,209	206,307	208.0	110,000
일시차입금이자상환 (2272-561)	-	210,709	99,209	99,209	206,307	208.0	110,000
2400 재정운용	5,241	4,013	5,738	5,738	5,301	92.3	5,367
2441 국고보조금 관리및제도개선	60	60	64	64	51	79.7	4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2441-300)	60	60	64	64	51	79.7	46
2444 국제재정협력강화	689	262	329	329	214	65.0	329
국제 재정협력강화 (2444-301)	689	262	329	329	214	65.0	329
2445 재정운용협의기반 구축·운영	3,061	2,211	3,732	3,732	3,423	91.7	3,412
재정운용협의기반 구축·운영 (2445-401)	3,061	2,211	3,732	3,732	3,423	91.7	3,412
2446 연구개발예산편성	618	618	750	750	750	100	620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전략성 강화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 (2446-401)	618	618	750	750	750	100	620
2447 정보화투자관리 효율화	813	863	863	863	863	100	960
정보화투자관리효율화 (2447-241)	813	863	863	863	863	100	960
2500 공공정책	6,633	6,661	7.187	7,187	6,761	94.1	6.982
2531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6.633	6.661	7.187	7,187	6,761	94.1	6.982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2531-300)	6.633	6.661	7.187	7,187	6,761	94.1	6.982
2600 재정관리	22,817	23,711	28,898	28,898	28,399	98.3	57,694
2631 국가회계운영	1,122	1,107	1,162	1,162	1,107	95.3	-
국가회계제도운영 (2631-301)	1,122	1,107	1,162	1,162	1,107	95.3	-
2643 재정집행관리	162	200	240	240	218	90.8	335
재정집행관리 (2643-300)	162	200	240	240	218	90.8	335
2644 재정사업평가	2,368	2,943	3,311	3,311	2,928	88.4	5,229
재정사업평가 (2644-300)	2,368	2,943	3,311	3,311	2,928	88.4	5,229
2645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지원	174	333	330	330	339	102.7	230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지원 (2645-300)	174	333	330	330	339	102.7	230
2646 재정사업타당성조사	8,309	8,565	13,157	13,157	13,171	100.1	1,900
재정사업타당성조사 (2646-301)	8,254	8,444	12,937	12,937	12,932	100.0	1,702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2646-402)	55	121	220	220	239	108.6	198
2700 재정기획	80,944	83,574	7,187	7,187	6,760	94	92,156
271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038	930	997	997	759	76.1	-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2711-300)	1,038	930	997	997	759	76.1	-
2712 중장기재정전략수립	3,743	2,083	2,331	2,331	2,007	86.1	5,726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1,202	734	856	856	599	70	3,561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2712-302)	162	110	153	153	108	70.5	-
재정교육 (2712-303)	724	676	655	655	646	98.6	1,035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712-304)	1,539	490	592	592	577	97.5	1,130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2712-305)	116	73	75	75	77	102.5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7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75,033	80,561	77,688	77,688	77,530	99.8	86,43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2713-500)	17,136	21,763	20,770	20,770	20,685	99.6	22,3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정보화) (2713-501)	20,739	17,877	19,303	19,303	19,230	99.6	20,068
한국재정정보원 운영 (2713-504)	36,593	40,356	37,050	37,050	37,050	100	40,530
재정정보분석 (2713-506)	565	565	565	565	565	100	3,515
2714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92	91	121	121	114	94.2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2714-300)	92	91	121	121	114	94.2	-
3000 예비비	607,200	638,300	2,400,000	3,800,000	688,900	18.1	4,000,000
예비비 (3069-300)	607,200	638,300	2,400,000	3,800,000	688,900	18.1	4,000,000
3100 국제금융	21,278	23,145	24,229	24,229	24,019	99.1	23,991
3131 국제금융강화지원	6,378	7,882	8,193	8,193	8,010	97.8	8,041
역내 금융협력사업 (3131-304)	4,859	5,970	5,891	5,891	5,761	97.8	5,708
국제금융외교 및 G20협력 (3131-311)	1,519	1,912	2,302	2,302	1,870	81.2	2,333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3131-314)	-	-	455(예비비)	455(예비비)	379	85.2	-
3132 국제금융센터보조	2,000	2,000	2,150	2,150	2,150	100.0	2,150
국제금융센터보조 (3132-301)	2,000	2,000	2,150	2,150	2,150	100.0	2,150
3134 국제금융기구 출연	12,900	13,000	13,800	13,800	13,800	100.0	13,800
팬데믹 대응 기금 지원(ODA) (3134-302)	12,900	13,000	13,800	13,800	13,800	100.0	13,800
3135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	263	86	86	59	68.6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3135-309)	-	263	86	86	59	68.6	-
3200 경제협력	39,523	147,221	152,427	352,427	349,030	99	1,160,632
3231 경제협력강화지원	4,828	4,853	9,699	9,699	8,958	92.4	1,105,901
대외경제협력강화 (3231-301)	690	963	5,040	5,040	4,206	83.5	1,080
경제협력기구활동 (3231-303)	264	400	379	379	360	95.0	407
통일기반조성 (3231-304)	852	790	727	727	728	100.1	727
한-UNDP 신탁기금 (GTI)출연(ODA)	889	780	808	808	827	102.4	828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3231-306) 통상연계형 경협사업 (3231-308)	446	499	699	699	699	100.0	664
금융투자지원단 운영 (3231-309)	440	66	-	-	-	-	-
OECD 동남아시아 데스크2 운영을 위한 자발적 기여금(ODA) (3231-400)	-	-	799	799	891	111.5	877
대외경제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정보화) (3231-500)	1,687	1421	1,247	1,247	1,247	100.0	1,318
323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25,880	32,721	31,271	31,271	29,058	92.9	34,22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ODA) (3234-301)	17,018	23,501	21,318	21,318	19,691	92.4	34,222
경제혁신파트너십구축 (ODA) (3234-303)	8,862	9,220	9,953	9,953	9,367	94.1	
3236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	-	100,000	300,000	300,000	100.0	-
한국수출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3236-302)	-	-	100,000	300,000	300,000	100.0	-
3239 지식협력단지 운영	8,472	9,078	9,583	9,583	9,580	99.9	9,913
지식협력단지 운영 (3239-301)	8,472	9,078	9,583	9,583	9,580	99.9	9,913
3240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	-	1,874	1,874	1,435	76.6	492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운영 (3240-301)	343	490	-	-	-	-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정보화) (3240-302)	-	-	1,874	1,874	1,435	76.6	492
3300 개발금융	190,245	434,797	358,112	3.58,112	357,311	99.8	281,904
3331 국제금융 강화지원	1,000	1,096	1,093	1,093	1,085	99.3	1,167
국제금융협력강화 (3331-301)	1,000	1,096	1,093	1,093	1,085	99.3	1,167
3333 녹색기후 협력지원	51,845	89,592	95,563	95,563	95,248	99.7	72,786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ODA) (국고채무부담행위) (3333-330)	-	35,293	35,293	35,293	35,293	100	35,293
녹색기후기금 운영지원	42,846	45,496	48,300	48,300	48,300	99.9	15,443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ODA)(3333-331) 기후행동강화지원 (ODA) (3333-332)	8,200	8,200	11,340	11,340	11,114	98	21,417
녹색기후기획사업 (3333-333)	799	603	630	630	541	85.9	633
3334 국제금융기구 출연	137,400	344,109	261,456	261,456	260,978	99.8	207,951
국제금융기구출연 (ODA) (3334-301)	137,400	344,109	261,456	261,456	260,978	99.8	207,951
4100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50,000
4110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출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50,0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출연 (4110-88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50,000
7100 기획재정 행정지원	149,758	142,708	160,627	160,627	160,992	100.2	208,391
7101 본부 인건비	95,373	101,296	107,790	107,790	106,526	98.8	121,130
인건비 (7101-101)	95,373	101,296	107,790	107,790	106,526	98.8	121,130
7111 본부 기본경비	37,590	22,302	26,153	26,153	23,417	89.5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01)	10,595	6,721	7,112	7,112	7,306	102.7	4,782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기획조정실) (7111-202)	394	422	492	492	384	78.0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대변인) (7111-205)	26	33	38	38	19	50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세제실) (7111-208)	512	556	657	657	556	84.7	637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경제정책국) (7111-209)	113	115	131	131	119	90.8	13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국고국) (7111-210)	66	46	85	85	52	61.2	66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국제금융국) (7111-212)	43	38	45	45	42	93.3	4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110	124	149	149	136	91.3	155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대외경제국) (7111-21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정책조정국) (7111-214)	42	36	55	55	33	59.6	47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예산실) (7111-216)	1,185	916	1,085	1,085	929	85.6	1,056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공공정책국) (7111-218)	55	87	116	116	92	79.3	111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 (7111-219)	98	69	102	102	84	82.4	-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미래전략국) (7111-220)	29	78	89	89	77	86.5	9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개발금융국) (7111-221)	71	73	97	97	62	63.9	92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재정정책국) (7111-222)	134	128	156	156	126	80.7	153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경제구조개혁국) (7111-224)	29	35	52	52	31	59.0	48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7111-227)	-	37	47	47	43	91.5	49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 (경제공급망기획관) (7111-228)	-	-	21	21	15	70.2	21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기관운영) (7111-251)	14,140	2,525	2,903	2,903	2,243	76.6	3,640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기획조정실) (7111-252)	2,082	1,804	2,259	2,259	1,822	80.6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	701	791	885	885	907	102.5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111-255)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세제실) (7111-258)	983	958	1,380	1,380	980	71.0	1,307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경제정책국) (7111-259)	890	1,001	1,019	1,019	953	93.5	1,038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국고국) (7111-260)	274	338	384	384	364	94.8	356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국제금융국) (7111-262)	362	386	411	411	388	94.4	432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대외경제국) (7111-263)	795	740	785	785	702	89.4	761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정책조정국) (7111-264)	392	362	466	466	351	75.4	472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예산실) (7111-266)	2,465	2,152	2,530	2,530	2,261	89.4	2,685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공공정책국) (7111-268)	375	428	555	555	476	85.8	56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재정관리국) (7111-269)	584	494	596	596	553	92.8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미래전략국) (7111-270)	197	222	307	307	270	87.9	287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개발금융국) (7111-271)	116	149	169	169	160	94.7	205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재정정책국) (7111-272)	251	292	318	318	307	96.5	325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98	142	184	184	135	73.3	178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111-274)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7111-277)	-	56	97	97	73	75.3	94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경제공급망기획관) (7111-278)	-	-	375	375	350	93.3	680
7131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898	1,873	2,723	2,723	1,654	60.7	-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131-301)	898	1,873	2,723	2,723	1,654	60.7	-
7132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657	773	874	874	610	69.8	-
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 (7132-301)	657	773	874	874	610	69.8	-
7134 기획재정정보화	5,689	5,927	8,500	8,500	15,459	55.0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7134-500)	2,771	3,010	5,589	5,589	5,567	99.6	-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운영(정보화) (7134-501)	2,918	2,917	2,911	2,911	2,911	100.0	-
기획예산정보화예비비 (7134-502)	-	-	-	-	6,981	순증	-
7135 기획재정 정책지원							
정책품질관리 (7135-301)	192	231	256	256	215	84.0	191
정책연구개발 (7135-302)	1,434	1,370	1,525	1,525	1,563	102.5	-
경제교육지원 (7135-304)	5,546	6,504	8,240	8,240	8,266	100.3	7,650
정책홍보사업 (7135-306)	2,380	2,431	2,638	2,638	2,480	94	2,176
미래융복합경제교육 (7135-310)	-	-	1,928	1,928	811	42.0	-
8000 회계간거래 (전출금)	5,069,994	5,947,012	5,953,324	7,191,204	6,885,465	95.7	12,713,576
8010 회계간거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649,119	5,947,012	5,953,324	7,191,204	6,885,465	95.7	12,713,57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전출 (8010-801)	-	-	-	-	-	-	4,878,03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전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8010-802)	185,786	306,516	634,194	634,194	634,194	100.0	328,243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전출 (8010-803)	4,177,247	5,340,044	4,986,707	6,224,587	5,920,911	95.1	7,038,9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전출 (8010-804)	233,754	255,596	282,902	282,902	280,839	99.3	403,9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계정)전출 (8010-805)	52,332	44,856	49,521	49,521	49,521	100.0	64,403
8400 회계기금간거래 (전출금)	2,028,799	2,320,967	2,648,566	2,546,566	2,546,566	100	2,483,190
8411 회계금간거래 (전출금)	2,028,799	2,320,967	2,648,566	2,546,566	2,546,566	100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전출 (대러차관보증채무이행) (8411-881)	9,985	-	-	-	-	-	-
일반회계에서 대외기금으로 전출금(8411-883)	787,299	1,218,749	1,317,379	1,237,379	1,237,379	100.0	1,334,339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 전출(이차보전) (8411-884)	9,260	5,217	-	-	-	-	-
기후대응기금 전출 (8411-889)	1,222,255	1,097,001	1,331,187	1,309,187	1,309,187	100.0	1,148,851
86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원금상환)	1,141,383	-	-	-	93,617	순증	-
8601 일반회계 예수원금상환	1,141,383	-	-	-	93,617	순증	-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8601-864)	1,141,383	-	-	-	93,617	순증	-
8700 회계기금간거래 (예수이자상환)	5,905,619	18,148,611	28,992,437	29,403,558	28,636,671	97.4	25,558,448
8711 회계기금간 예수이자상환	5,905,619	18,148,611	28,992,437	29,403,558	28,636,671	97.4	25,558,448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8711-871)	5,905,619	18,148,611	28,992,437	29,403,558	28,636,671	97.4	25,558,448

자료: 재정경제부

나. 세입 결산 검토의견

(1) 국세 세입결산 총괄(국세수입, 세제실)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은 373조 9,193억원으로서 전년도 실적 336조 5,324억원 대비 11.1%인 37조 3,869억원이 증가하였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72조 850억원 대비 0.5%인 1조 8,344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였음.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개 세목의 수납액은 361조 4,941억원으로서 추경예산 361조 4,604억원 대비 0.0%인 338억원이 과다수납되었고, 특별회계 2개 세목의 수납액은 12조 4,252억원으로서 추경예산 10조 6,246억원 대비 16.9%인 1조 8,006억원이 과다수납되었음[1].

[2025년도 결산 국세수입 세목별 실적]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5년 추경	25년 실적	24년 실적대비		25년본예산대비		25년추경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국세수입	**3,365,324**	**3,824,296**	**3,720,850**	**3,739,193**	**373,869**	**11.1**	**△85,103**	**△2.2**	**18,344**	**0.5**
일반회계	**3,261,793**	**3,718,050**	**3,614,604**	**3,614,941**	**353,148**	**10.8**	**△103,109**	**△2.8**	**338**	**0.0**
소득세	1,174,180	1,268,192	1,268,192	1,304,526	130,346	11.1	36,334	2.9	36,334	2.9
법인세	625,113	882,544	835,671	846,090	220,977	35.3	△36,453	△4.1	10,419	1.2
상증세	152,981	145,059	154,437	164,799	11,818	7.7	19,740	13.6	10,362	6.7
부가가치세	822,358	876,388	833,292	791,790	△30,568	△3.7	△84,598	△9.7	△41,503	△5.0
개별소비세	86,566	96,663	87,479	85,144	△1,422	△1.6	△11,519	△11.9	△2,335	△2.7
증권거래세	47,602	38,454	38,454	34,430	△13,172	△27.7	△4,024	△10.5	△4,024	△10.5
인지세	8,460	8,836	8,836	7,637	△823	△9.7	△1,200	△13.6	△1,200	△13.6
과년도수입	65,334	65,156	65,156	67,989	2,655	4.1	2,832	4.3	2,832	4.3
교통세	113,891	151,048	140,012	132,351	18,460	16.2	△18,697	△12.4	△7,661	△5.5
관세	69,723	84,093	84,093	76,409	6,686	9.6	△7,684	△9.1	△7,684	△9.1
교육세	53,738	60,402	57,765	57,235	3,497	6.5	△3,167	△5.2	△530	△0.9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1,215	46,542	4,695	11.2	5,327	12.9	5,327	12.9
특별회계	**103,531**	**106,246**	**106,246**	**124,252**	**20,721**	**20.0**	**18,006**	**16.9**	**18,006**	**16.9**
주세	33,282	32,093	32,093	32,120	△1,162	△3.5	27	0.1	27	0.1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74,153	92,132	21,883	31.2	17,979	24.2	17,979	24.2

자료: 재정경제부

1)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 373조 9,193억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361조 4,94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주세) 3조 2,120억원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농어촌특별세) 9조 2,132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5년도 국세 세입결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포함한 전체 국세 세입결산 규모를 기재하였음.

세목별로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7개 세목에서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수납된 반면 7개 세목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대비 과소수납되었음.

[추경예산 기준 2025년도 세목별 초과세수·세수결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추경예산	2025년 실 적	추경예산 대비 초과세수		구 분		2025년 추경예산	2025년 실 적	추경예산 대비 세수결손	
1	소득세	1,268,192	1,304,526	36,334	2.9	1	부가가치세	833,292	791,790	△41,503	△5.0
2	법인세	835,671	846,090	10,419	1.2	2	개별소비세	87,479	85,144	△2,335	△2.7
3	상증세	154,437	164,799	10,362	6.7	3	증권거래세	38,454	34,430	△4,024	△10.5
4	과년도수입	65,156	67,989	2,832	4.3	4	인지세	8,836	7,637	△1,200	△13.6
5	종합부동산세	41,215	46,542	5,327	12.9	5	교통세	140,012	132,351	△7,661	△5.5
6	주세	32,093	32,120	27	0.1	6	관세	84,093	76,409	△7,684	△9.1
7	농어촌특별세	74,153	92,132	17,979	24.2	7	교육세	57,765	57,235	△530	△0.9

자료: 재정경제부

최근 10년간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수납액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5.2%에서 2025년에 78.7%로 상승하였음.

① 소득세의 수납액 비중은 2016년 28.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5년에는 34.9%로, 최근 10년 중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3대 세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② 법인세의 수납액 비중은 2016년 21.5%에서 2022년 26.2%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 18.6%까지 감소하고, 2025년에는 다시 22.6%로 증가하였음.

③ 2016년 25.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는 최근 10년간 그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한 후, 2025년에는 21.2%로 감소하여 3대 세목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국세수입 중 3대 세목 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세	28.2	28.3	28.8	28.5	32.6	33.2	32.5	33.7	34.9	34.9
법인세	21.5	22.3	24.2	24.6	19.4	20.5	26.2	23.4	18.6	22.6
부가가치세	25.5	25.3	23.8	24.1	22.7	20.7	20.6	21.4	24.4	21.2
합계	75.2	75.9	76.8	77.2	74.8	74.3	79.3	78.5	77.9	78.7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국세수입 실적의 예산 대비 및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소득세 징수액은 2025년 추경예산(126조 8,192억원) 대비 2.9% 증가한 130조 4,526억원임. 이 중 종합소득세는 추경예산(22조 582억원) 대비 △3.5% 감소한 21조 2,830억원이 징수되었고, 양도소득세는 추경예산(19조 4,116억원) 대비 2.4% 증가한 19조 8,855억원이 징수되었으며, 근로소득세는 추경예산(64조 7,310억원) 대비 5.7% 증가한 68조 4,216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13조 346억원이 증가하여 11.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① 종합소득세는 2024년 확정신고분 및 중간예납 납부 증가 등에 따라 1조 7,565억원이 증가(9.0%)하였고, ②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2] 및 주택거래량 증가[3] 등에 따라 3조 2,003억원이 증가(19.2%)하였으며, ③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상승[4]으로 7조 3,725억원이 증가(12.1%)하였음.

[2025년 소득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예산	25년 실적	24년 실적대비		25년본예산대비		25년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268,192	1,304,526	130,346	11.1	36,334	2.9	36,334	2.9
신 고 분	362,116	414,698	414,698	411,685	49,569	13.7	△3,013	△0.7	△3,013	△0.7
종합소득	195,265	220,582	220,582	212,830	17,565	9.0	△7,752	△3.5	△7,752	△3.5
양도소득	166,852	194,116	194,116	198,855	32,003	19.2	4,739	2.4	4,739	2.4
원 천 분	812,063	853,494	853,494	892,840	80,777	9.9	39,347	4.6	39,347	4.6
이자소득	71,958	63,121	63,121	70,137	△1,821	△2.5	7,016	11.1	7,016	11.1
배당소득	42,680	46,757	46,757	45,530	2,850	6.7	△1,227	△2.6	△1,227	△2.6
사업소득	46,828	51,060	51,060	49,625	2,797	6.0	△1,435	△2.8	△1,435	△2.8
근로소득	610,491	647,310	647,310	684,216	73,725	12.1	36,906	5.7	36,906	5.7
연금소득	5,591	6,914	6,914	6,880	1,289	23.1	△34	△0.5	△34	△0.5
기타소득	23,533	26,647	26,647	24,021	488	2.1	△2,626	△9.9	△2,626	△9.9
퇴직소득	10,982	11,685	11,685	12,430	1,448	13.2	745	6.4	745	6.4

자료: 재정경제부

2) 해외주식 거래액(억달러): ('23년) 1,452 → ('24년) 2,604 <+1,152억달러, +79.3%>
3) 주택거래량(만건): ('23.11~'24.10월) 63.1 → ('24.11~'25.10월) 69.7 <+6.6만건, +10.5%>
4) 상용근로자수(천명): ('24년) 16,353 → ('25년) 16,636 <+283천명, +1.7%>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천원) : ('24.10월) 4,168 → ('25.10월) 4,478 <+310천원, +7.4%>

법인세 징수액은 2025년 추경예산(83조 5,671억원) 대비 1.2% 증가한 84조 6,090억원으로서 이 중 법인세 신고분은 추경예산(59조 6,605억원) 대비 2.1% 증가한 60조 9,029억원이 징수되었고, 법인세 원천분은 추경예산(23조 9,066억원) 대비 △0.8% 감소한 23조 7,061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2024년 및 2025년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5] 등으로 22조 977억원(35.3%)이 증가하였음.

[2025년 법인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예산	25년 실적	24년 실적대비		25년본예산대비		25년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625,113	882,544	835,671	846,090	220,977	35.3	△36,453	△4.1	10,419	1.2
신 고 분	394,161	658,570	596,605	609,029	214,868	54.5	△49,540	△7.5	12,425	2.1
원 천 분	230,951	223,974	239,066	237,061	6,110	2.6	13,087	5.8	△2,006	△0.8

자료: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 징수액은 2025년 추경예산(83조 3,292억원) 대비 △5.0% 감소한 79조 1,790억원으로서 이 중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추경예산(31조 1,043억원) 대비 △16.2% 감소한 26조 769억원이 징수되었고,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추경예산(52조 2,250억원) 대비 1.7% 증가한 53조 1,021억원이 징수되었음.

또한, 전년 대비로는 3조 568억원이 감소하여 △3.7%의 감소율을 보이는데,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수출 증가[6]에 따른 환급 증가 등에 따라 4조 248억원(△13.4%) 감소하고, 환율 상승[7] 등으로 수입분이 9,680억원(1.9%) 증가하였음.

[2025년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예산	25년 실적	24년 실적대비		25년본예산대비		25년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부가가치세	822,358	876,388	833,292	791,790	△30,568	△3.7	△84,598	△9.7	△41,503	△5.0
국 내 분	301,017	327,129	311,043	260,769	△40,248	△13.4	△66,360	△20.3	△50,274	△16.2
수 입 분	521,341	549,259	522,250	531,021	9,680	1.9	△18,238	△3.3	8,771	1.7

자료: 재정경제부

5) 코스피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 ('23년) 38.7 → ('24년) 106.2 <+67.5, +174.4%>
6) 수출(억불): ('24년) 6,836.1 → ('25년) 7,097.7 <+261.6억불, +3.8%>
7) 환율(원/달러): ('24년) 1,364.0원 → ('25년) 1,422.2원 <+58.2원, +4.3%>

다음으로 이들 3대 세목 외에 자산 관련 주요 세목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5년 추경예산(15조 4,437억원) 대비 6.7% 증가한 16조 4,799억원으로서 이 중 상속세는 10조 393억원이 징수되었고, 증여세는 6조 4,406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15조 2,981억원) 대비로는 사망자 수 증가[8], 부동산 가격상승[9] 등으로 7.7% 증가하였음.

증권거래세는 2025년 추경예산(3조 8,454억원) 대비 △10.5% 감소한 3조 4,430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4조 7,602억원) 대비로는 증권거래세 인하[10] 효과의 영향으로 △27.7% 감소하였음.

종합부동산세는 2025년 추경예산(4조 1,215억원) 대비 12.9% 증가한 4조 6,542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4조 1,847억원) 대비로는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정기고지분이 증가하여 11.2% 증가하였음.

농어촌특별세는 2025년 추경예산(7조 4,153억원) 대비 24.2% 증가한 9조 2,132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7조 249억원) 대비로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 등으로 31.2% 증가하였음.

[2025년 자산 관련 세목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예산	25년 실적	24년 실적대비		25년본예산대비		25년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상속세 및 증여세	152,981	145,059	154,437	164,799	11,818	7.7	19,740	13.6	10,362	6.7
상속세	96,440	84,637	94,015	100,393	3,953	4.1	15,756	18.6	6,378	6.8
증여세	56,542	60,422	60,422	64,406	7,864	13.9	3,984	6.6	3,984	6.6
증권거래세	47,602	38,454	38,454	34,430	△13,172	△27.7	△4,024	△10.5	△4,024	△10.5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1,215	46,542	4,695	11.2	5,327	12.9	5,327	12.9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74,153	92,132	21,883	31.2	17,979	24.2	17,979	24.2

자료: 재정경제부

8) 사망자 수(천명) : ('23년) 352.5 → ('24년) 358.6 <+6.1천명, +1.7%>
9) 수도권 아파트매매가격지수(월평균) : ('23.10~'24.9월) 94.35 → ('24.10~'25.9월) 96.58 <+2.4%>
10) 증권거래세율 인하(%) : ('24년) 코스피 0.03 / 코스닥 0.18 → ('25년) 0 / 0.15

다음으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주세 및 교육세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개별소비세는 2025년 추경예산(8조 7,479억원) 대비 △2.7% 감소한 8조 5,144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8조 6,566억원) 대비로는 △1.6% 감소하였음.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5년 추경예산(14조 12억원) 대비 △5.5% 감소한 13조 2,351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11조 3,891원) 대비로는 16.2%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탄력세율이 일부환원된 점[11] 등에 기인함.

관세는 2025년 추경예산(8조 4,093억원) 대비 △9.1% 감소한 7조 6,409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6조 9,723억원) 대비로는 9.6%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율 상승 영향 등에 기인함.

주세는 2025년 추경예산(3조 2,093억원) 대비 0.1% 증가한 3조 2,120억원이 징수되었고, 전년 실적(3조 3,282억원) 대비로는 △3.5% 감소하였음.

교육세는 2025년 추경예산(5조 7,765억원) 대비 △0.9% 감소한 5조 7,235억원이 징수되었음. 전년 실적(5조 3,738억원) 대비로는 6.5% 증가하였음.

[2025년 간접세 관련 세목 예산 및 징수액 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4년 실적	25년 본예산	25년 추경예산	25년 실적	24년 실적대비		25년본예산대비		25년추경예산대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개별소비세	86,566	96,663	87,479	85,144	△1,422	△1.6	△11,519	△11.9	△2,335	△2.7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51,048	140,012	132,351	18,460	16.2	△18,697	△12.4	△7,661	△5.5
관 세	69,723	84,093	84,093	76,409	6,686	9.6	△7,684	△9.1	△7,684	△9.1
주 세	33,282	32,093	32,093	32,120	△1,162	△3.5	27	0.1	27	0.1
교 육 세	53,738	60,402	57,765	57,235	3,497	6.5	△3,167	△5.2	△530	△0.9

자료: 재정경제부

11)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 ('23.1~'24.6) △25/△37 → ('24.7~10) △20/△30 → ('24.11~25.4) △15/△23 → ('25.5~25.10) △10/△15 → ('25.11~26.3) △7/△10

(2)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의 미흡한 작성 시정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현 황 >

「국회법」 제79조의2제4항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함.[12)]

「국회법」에 맞춰 「국가재정법」 제87조제1항에서도 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3)]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는 재정지출 순증가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순감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재정수입 순감소를 유발하는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세법개정안에 첨부해야 함.

이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비용에 관한 추계서 또는 추계요구서만 제출하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것[14)]과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서, 정

---

12)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④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3)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14)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별한

부가 의안 제출 시 비용뿐만 아니라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은 정부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5)]

그리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국회규정)은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 자료의 양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목차는 아래와 같음.[16)]

사정이 없으면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해당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의장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정부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당해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재원조달방안에는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차입,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원조달방안 양식 목차(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Ⅳ. 부대의견

Ⅴ. 협의사항

Ⅵ. 작성자

< 검토의견 >

정부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개정사항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세법개정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2025년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세입을 감소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법개정안에 대해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음.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별로 해당 조세지출의 비용(세입 감소)이 제시되어 있음.

그런데 첨부된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목차는 "해당 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이라는 이유로 작성되어 있지 않음.

[정부 제출(2025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발췌]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ㅇ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의안번호 제2212653호, 정부 제출)

그리고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에서는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세입감소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지 파악할 수 없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재원조달방안은 작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그러나 세법개정안 중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수반요인이 포함된 의안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재정지출 순증가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의안도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임. 따라서, 세법개정도 재정수입 순감소에 대해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 항목 간 조정 등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함.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의 재원조달방안 작성양식(별지 제3호 서식)은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의 작성방법에 대해 "조세감면 관련 의안의 경우 「국가재

정법」 제88조제2항[17] 및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제2항[18]에 따라 제출된 보충방안을 기재 가능"이라고 제시하고 있어, 조세감면 관련 의안이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대상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음.

[재원조달방안 작성양식에 따른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작성방법]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

○

<작성방법>

①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조세수입 등 재정수입 신규 창출 또는 확대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 기재
- 세수증대효과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치화(특정금액 또는 범위 등)하여 기재
- 재정수입 창출이 없는 경우 국채발행·차입 등 개략적인 계획·방안 기재
- 구체적인 방안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개략적인 계획·방안 기재

② 회계·기금 간 전입

- 정부 내부거래로 회계·기금의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안 기재

③ 기존 예산·기금 항목 간 조정

- 지출사업의 조정 또는 조세감면제도의 조정(축소·폐지)이 있으면 그 내용(계획 포함)과 해당 금액 기재

---

17)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과정에서 실시된 구조조정 사항 기재 가능
- 예산 이용·전용 등 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계획·확정)
- **조세감면 관련 의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88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충방안을 기재 가능**

④ 기타: 그 밖에 중앙정부 재원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

⑤ 공통사항: 위 ①~④ 항목과 별도로 예산안 편성 관련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
- 정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내용(「국가재정법」 제33조 및 제68조)
- 중앙관서별 예산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 포함 내용(「국가재정법」 제31조 및 제66조)
- 중기사업계획서 내용(「국가재정법」 제28조 및 제66조)
- 예비비 신청·확정 내용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내용
- 그 밖에 의안을 소관하는 부처의 예산요구 계획 등

자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재정법」 제87제1항도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이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하는 법률안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19]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세지출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출은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정책수단임을 방증하는 것임.[20]

세율 인하 및 조세지출 신설 등 세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국회

---

19) **「국가재정법」**

제87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2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 제출하는 경우, 세입 감소에 대해 정부가 중복 여지가 있는 기존 재정지출 또는 조세지출을 조정했는지 여부, 감소한 세입에 대응하여 신규 재정수입을 창출하였는지 국채발행 등으로 보전하였는지 여부 등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정보가 국회에 제공되어야 세입 보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측면도 고려하여 세법개정에 대한 통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세법개정안 제출 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효과를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조세지출 확대를 방지하는 재정통제 장치로서 의의가 있음.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원조달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세법개정 재원조달방안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음. 이는 국회의 내실있는 세법심사를 저해하고 법률상 재정통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부적절한 관행임.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입 변동분은 차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입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것이므로 재원조달 조치를 요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원조달방안은 1개 연도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각각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5개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세입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경우에도 내실 있는 국회심사를 위해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회계·기금 간 전입, 지출(조세감면) 구조조정 등 예산안에 반영된 구체적인 재원조달 유형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리고 정부안이 제출된 시점에 아직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감면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이 작성되지 않은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정부가 2023년 1월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576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으로 2024년부터 세입을 감소시키는 내용이었는데,[21] 2024년도 예산안이 아직 편성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재원조달방안이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수반요인

21)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4년에 수입이 32,700억원 감소하고 2025년에 9,900억원 감소함.

을 포함한 개별 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음.

(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과제 제시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 현 황 >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임.[2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23)]

---

22)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3.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4. 조세부담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 검토의견 >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한 포괄적인 중장기 정책방향과 당해연도 추진계획만이 제시되어 있어,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으로서, 조세정책에 대한 기업과 가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기능해야 함.

2025년에 제출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의의'에 대해 향후 5개 연도 이상 기간에 대한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향후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재정경제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한 포괄적인 중장기 정책방향과 당해연도 추진계획만이 제시되어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세목별로 '현황 및 평가' 외에 ① 중장기 정책방향과 ② 2025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① 중장기 정책방향은 세목별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다기 보다는 조세정책이 당연하게 추진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거나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목별 정책방향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예를 들어, 소득과세는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정책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데,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대는 조세정책이 당연하게 추구해야는 원칙이므로 이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재산과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 상황, 국민 주거안정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수립 시 당연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제시된 세목별 중장기 정책방향]

세목	중장기 정책방향
소득과세	□ 소득 종류별·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대** 등을 통해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해 **각종 공제** 및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정성 검토·정비** ○ **다양한 소득**에 대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투명성 확보 지속**
금융과세	□ **금융시장 활성화**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금융소득 과세체계 합리화**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지속 정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법인과세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 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지속 강화**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성장-세수의 선순환 구조 구축** ○ **국제 동향** 및 **과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지속 정비**
재산과세	□ **부의 이전**에 대한 **적정 세부담 수준, 과세체계** 및 **공제수준**의 **합리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속·증여세제 개선** □ **부동산 시장 상황, 국민 주거안정** 및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개선**
소비과세	□ **다양한 정책 환경** 및 **국제규범**에 대응한 **소비세 제도** 개선 ○ 디지털 경제 등으로 인한 **거래 형태**의 **다양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가가치세 체계 정비** ○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에너지세제 운용방향 마련** 및 **외부효과 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세제 개선** □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소비세제 합리화** ○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세제지원 효과성,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세제 조세 특례 정비** ○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지속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세** 관련 **규제 개선**

세목	중장기 정책방향
국제조세	□ **역외탈세 대응 능력 제고** 및 **국제조세 제도 선진화 지속 추진** ○ **조세 정보교환 확대** 등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부동산 정보 자동교환** 논의 등 대응 ○ **국내 기업 보호, 과세권 확보** 측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여건에 맞추어 **조세조약 제·개정** ○ **국제거래 과세 합리화,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확실성 제고** 등 □ **OECD·UN 등 국제조세협력 논의 참여** 및 **후속 절차 이행** ○ **디지털세 이행**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집행 간소화, 과세당국간 협조** 등 지원 방안 강구
관세·FTA	□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입 편의 제고**를 위한 **통관 효율화** 및 **유해물품 차단** 등 **국경관리 기능** 강화 □ 불공정 무역 방지를 위한 **덤핑방지관세**를 **적극 운영**하고, **농·어업 경쟁력**과 **먹거리 물가 안정**이 **조화**되도록 **할당관세** 합리적 운영 □ **새로운 통상질서**에서 **신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 및 **통관 협상**을 **추진**하고, 기 체결 **FTA**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구조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관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 권리 증진** 노력 확대
납세협력 등 기타 분야	□ **AI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으로 **납세편의 제고** ○ **AI 세무상담**, **홈택스 전면 개편**을 통한 **신고·납부·환급 자동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 □ 과세 **투명성 제고** 및 **과세 분쟁 해결 절차**의 **접근성·효율성 강화**로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취약계층 권리구제 강화** ○ **신속조정제도**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 □ **과세인프라**를 확충·정비하고, **조세회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AI를 통한 탈루 식별** 등으로 **조세탈루 예방** □ **체납자 유형화**를 통한 **맞춤형 대응** 등 **체납·징수 관리 고도화**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부담**은 **경감**

자료: 정부,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② 2025년 추진과제는 세목별로 2025년에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인데, 추진과제는 전부 2025년에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통상적으로 7월 초에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9월에 제출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제시된 2025년 추진과제는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세법 개정사항을 다시 제시하는 것에 그침.

예를 들어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제시된 법인과세 분야 2025년 추진과제에는 법인세율 인상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등 2025년 7월에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제시된 법인과세 분야 2025년 추진과제]

(3) '25년 추진과제

【 경제강국 도약 지원 】

□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에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AI), 자동차 자율주행 등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 세부기술 추가 등

□ K-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

□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 상향** 및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합리화**

□ 기업의 **고용유지 유인 강화** 및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식 전환** 및 **공제액 구조 재설계**

자료: 정부, 202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또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5년 이상의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미 발표된 당해연도 추진과제만을 제시하는 것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2016년까지 세목별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되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당해연도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가 별도로 제시되었는데, 2025년에는 '당해연도 추진과제'만이 제시되어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전에 비해 축소된 문제가 있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제공 정보]

구분	~2016년	2017년~2024년	2025년
제공정보	세부 추진과제	당해연도 추진과제	당해연도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과제	-

자료: 연도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단,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당해연도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가 별도로 제시된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당해연도 추진과제'가 중심이 되고 '중장기 추진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상 제시된 소득·금융과세 분야 추진과제]

(3) '24년 추진과제

【 경제의 역동성 지원 】

□ 기업의 **자발적 주주환원**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주주**에 대해 **현금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9%/25%)

□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자산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 투자형 신설****

*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 연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1,000만원)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 한정

【 민생경제 회복 】

□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시 인당 50만원 **세액공제** 신설 및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금액 확대**(공제금액 자녀당 10만원씩 인상)

□ **서민·중산층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25.7.1.이후 지출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 추가

(4) 중장기 추진과제

□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각종 공제제도 및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정성 검토 및 정비**

□ 근로소득·사업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및 **세원 투명성 확보**

□ **금융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소득 과세제도 합리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불확실성 해소**

자료: 정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추진과제가 제시되어야 정부가 향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매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예고한 조세정책 방향 내에서 조세정책이 운용되도록 하여,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따라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본래 역할을 하도록, 재정경제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하려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 시점과 함께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국세감면 부적절 (국세수입, 세제실)

< 현 황 >

국세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 등에 따른 조세지출[24]의 합을 의미하고, 국세감면율은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국가재정법」 제88조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부여하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에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한 비율로 정의하고 있음.[25]

[국세감면한도의 정의(「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총액 / (국세수입 총액 + 국세감면액 총액)

---

24)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25)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정부가 작성한 결산 중 국세수납액(결산을 작성하기 전 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예산안 중 국세 세입예산액)과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1항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국세감면액을 말한다.

③ 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검토의견 >

국세감면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부적절한 세제운용이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여 국세를 감면하는 것이 한도 자체를 인상시키지 않도록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정의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p를 더한 비율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세감면율 실적이 높을 수록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짐.

2023년과 2024년에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였고, 2025년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2023년에는 감면율(15.8%)이 법정한도(14.3%)를 1.5%p 초과했고, 2024년에도 감면율(16.1%)이 법정한도(14.6%)를 1.5%p 초과했으며, 2025년에는 감면율(16.0%)이 법정한도(15.5%)를 0.5%p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즉, 정부의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세감면 실적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의 취지가 과다한 조세지출로 재정건전성 및 세입기반 악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세제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2023년 이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A)	697,664	100.0	705,171	100.0	764,719	100.0	805,277	100.0
• 조특법상 조세지출	368,668	52.8	366,782	52.0	402,762	52.7	421,999	52.4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25,311	46.6	336,173	47.7	359,766	47.0	380,934	47.3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3,685	0.5	2,215	0.3	2,192	0.3	2,344	0.3
○ 국세수입총액 (B)	3,703,803		3,656,829		4,003,076		4,195,673	
○ 국세감면율 [A/(A+B)]	15.8		16.1		16.0		16.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		14.6		15.5		16.5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여부	**X**		**X**		**X**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 예산서

그런데 2026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년대비 0.1%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6.5%에 비해 낮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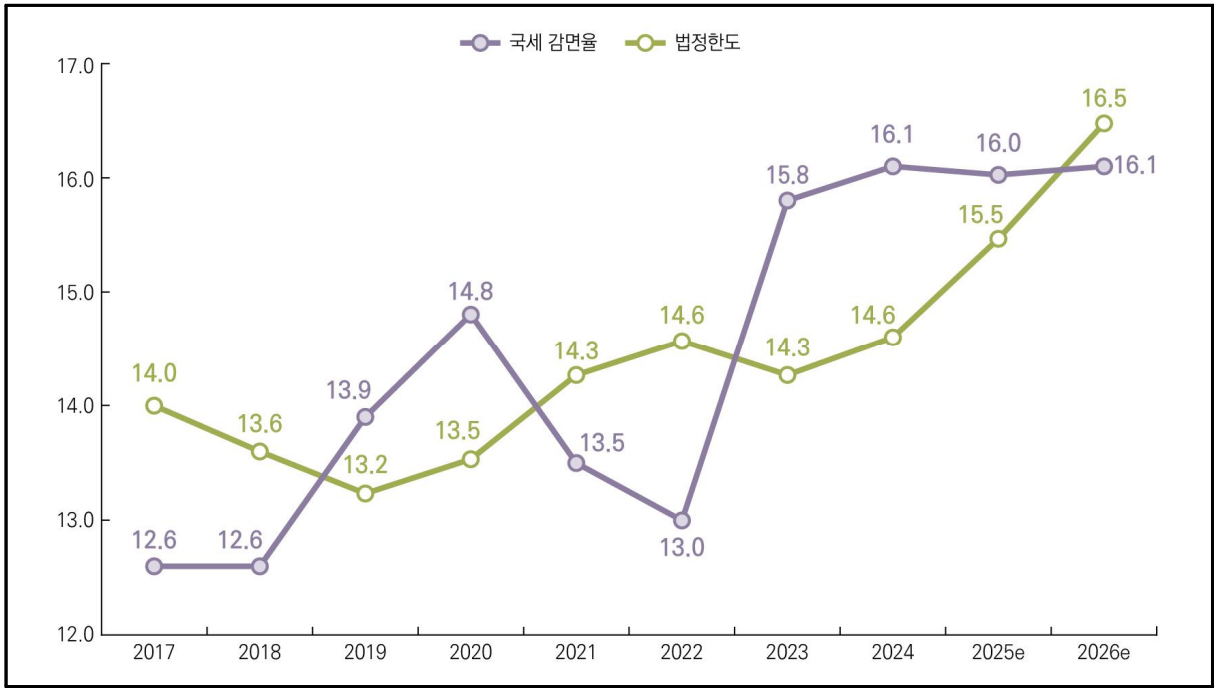
국세감면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는데 이전과 달리 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높게 유지된 결과 최근 국세감면율 실적에 연동되는 법정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임.

즉, 현재와 같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정의 방식은 정부가 법정한도를 준수하지 않고 한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국세를 감면하면 국세감면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없더라도 감면한도를 준수하게 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함. 이는 국세감면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려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함.

실제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2026년에는 2019년 대비 3.3%p 증가(13.2%→16.5%)할 것으로 예상됨.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2017년~2026년]

(단위: %)



자료: 2026 대한민국 조세, 국회예산정책처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하였음. 그리고 정부는 “예타면제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 중”이라고 조치 경과를 보고하였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관련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 요구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78)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 구체화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변경 필요	○ [지적사항] 2018~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건수보다 면제건수가 많고, 예비타당성평가 실시건수는 연간 1~2건에 그치고 있음. 또한 모든 면제사유가 추상적·포괄적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제1호(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근거하여 면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 개선	○ 예타면제요건 구체화 방안 마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 중 ○ 조치예정일 : 2027년 2월 * 수정사유: 예타면제요건 구체화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까지 필요하므로 시행령 개정시기에 맞춰 조치예정일 수정	조치중

자료: 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시정요구와 같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한도를 초과하여 국세를 감면하는 정부의 행태가 향후 한도 자체를 인상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산출하기 위해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값에 0.5%를 더하는 방식이 아닌 직전 3년간 연도별로 국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중 작은 값의 평균값에 0.5%를 더하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최근 3년 중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감면율 실적 대신 해당

연도의 법정한도를 대신 적용하여 법정한도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임.

[국세감면한도의 정의 개선안]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간 연도별 min(국세감면율,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평균 + 0.5%p

그리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정의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기능 및 실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통합 관리 강화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관리 주체가 분리됨에 따라 양 지출수단 간 유사·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부처 간 사전협의·공동점검·통합평가 체계를 실질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을 통해 특정 분야 또는 수혜자에 세제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세입 감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세출예산과 차이가 있음. 그러나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특정 수혜자와 정책목표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재원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인 재정지출과 기능적으로 유사함.

양 제도는 지원의 법적 형식과 집행절차에는 차이가 있으나,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분하고 특정 수혜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유사한 정책수단임.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목표에 대하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지원수단의 적정성, 수혜대상 및 지원내용의 중복 여부, 성과 및 재정효율성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조세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 규모는 8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세지출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성과관리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도 미흡하였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관리가 더욱 약화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규모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조세지출*(A)	재정지출*(B)	총 재정지출 (C=A+B)	조세지출 비중 (A/C)
2016	37.4	384.9	422.3	**8.9**
2017	39.7	406.6	446.3	**8.9**
2018	44.0	434.1	478.1	**9.2**
2019	49.6	485.1	534.7	**9.3**
2020	52.9	549.9	602.8	**8.8**
2021	57	601.0	658.0	**8.7**
2022	63.5	682.4	745.9	**8.5**
2023	69.8	610.7	680.5	**10.2**
2024	70.5	656.6^{e}	727.1^{e}	**9.7**
2025	76.5^{e}	677.4^{e}	753.9^{e}	**10.1**
연평균 증감률 (2016~2025^{e})	8.3	6.5	6.7	-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직접국세	550,701	78.9	557,306	79.0	607,823	79.5	643,819	80.0
소득세	408,679	58.6	442,153	62.7	470,097	61.5	495,382	61.5
법인세	124,259	17.8	98,097	13.9	118,518	15.5	127,534	15.8
상속 · 증여세	17,763	2.5	17,056	2.4	19,208	2.5	20,903	2.6
간접국세	146,474	21.0	147,171	20.9	155,863	20.4	160,412	19.9
부가가치세	120,188	17.2	123,911	17.6	131,316	17.2	135,031	16.8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4,921	0.7	5,220	0.7	4,864	0.6	4,969	0.6
개별소비세	13,633	2.0	10,782	1.5	12,399	1.6	12,835	1.6
주세	1,053	0.2	938	0.1	738	0.1	759	0.1
인지세	96	0.0	819	0.1	1,044	0.1	1,093	0.1
증권거래세	1,799	0.3	1,519	0.2	591	0.1	671	0.1
교육세	4,806	0.7	3,983	0.6	4,911	0.6	5,055	0.6
관 세	489	0.1	694	0.1	1,032	0.1	1,045	0.1
합 계	697,664	100.0	705,171	100.0	764,719	100.0	805,277	100.0

자료: 재정경제부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 관리 필요성

조세지출은 세입 감소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상 직접 지출과 구분되나, 재정수지와 국가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수단임. 이에 따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별개의 정책수단으로 관리할 경우 동일 정책목표에 대한 중복지원, 지원 사각지대, 정책수단 간 비효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재정지출은 예산 편성·집행·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반면, 조세지출은 세법 개정 및 조세특례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관리되는 구조이므로, 양 제도를 연계하지 않을 경우 정책수단 간 비교·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개별 조세특례와 관련 재정사업 간 대응 관계를 파악하고, 사업군 단위로 재정지원 규모와 정책성과를 점검하는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함.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2024년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26]을 발표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국가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보고 연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 정부는 이에 따라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동일한 12대 분야로 분류하고, 예산사업 요구 시 유사 조세지출을, 조세감면 요구 시 유사 재정사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교차점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정책수단 간 유사·중복을 식별하고 평가·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26)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2024.8.21.

[정부 발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중 통합관리 필요성 부분]

□ **(현황)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국가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수단**

*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포함
** '24년 기준, 조세지출은 총 276개, 재정지출은 9,557개 (세부사업 기준)

○ 그간 **조세·재정지출**은 **성과제고·효율화** 노력이 각각 이어져 왔고, **지출방식 · 분류체계** 차이 등으로 인해 **종합적 관리노력** 미흡

조세·재정지출의 분류체계 및 지출방식

	분류체계	지출방식
조세지출	16대 분야 / 분야 · 부문 外 세목별 · 세법 조항별 분류	법령상 특례규정
재정지출	12대 분야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단년도 예산안

○ 최근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 측면에서도 **통합관리 필요성** 증가

조세지출 추이



조세·재정지출 비교



자료: 재정경제부

특히 정부는 동 발표자료에서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①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분야별 직접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 파악이 곤란하며, ②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 효율화에 한계가 있고, ③ 심층평가 · 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 및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인식은 정부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음.

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주체 분리를 감안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강화 필요

최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을 총괄 관리하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조세정책 및 조세지출 관리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재정지출 관리 및 성과관리 기능은 기획예산처가 각각 담당하게 되었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또는 보완적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두 제도가 각 기관으로 분리된 이상 두 기관의 협의·조정 필요성은 보다 더 중요성을 갖게 됨.

정부는 2024년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에서 교차점검, 정보연계, 통합심층평가 및 정책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즉 각 부처가 예산사업을 요구할 때 유사한 조세지출을 함께 제출하고, 반대로 조세감면을 요구할 때 유사한 예산사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세제개편안과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유사·중복 여부를 교차 점검하겠다는 취지임. 이는 정부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분절적으로 운영될 경우 유사·중복 지원을 사전에 식별·정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현재 정부가 계획한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를 위한 두 부처 간 협조체계는 정상적으로 구축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현재 재정경제부는 ① 2025년 결산 기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중복 사업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② 2025년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개최된 부서간 회의, 공동점검 안건, 유사·중복 판단 결과 및 정비실적등 협력 조정실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조세특례의 신설·확대·연장 단계에서 양 부처의 공동심사와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특령 §135④)[27]를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규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27) 조특령§135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조세특례 신설·확대·연장 시 기획예산처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기획예산처의 검토의견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거나 유사 재정사업의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세특례 신설·확대·연장 요구 시 유사 재정사업 현황, 수혜대상 중복 여부, 최근 재정지출 규모, 재정사업 대체 가능성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의 검토의견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제도의 중복 여부를 교차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 아울러 세제개편안과 정부예산안 확정 전 일정 단계에서 양 부처가 공동으로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고, 검토결과와 정비조치를 국회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한편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은 통상 7월 말 발표되는 반면, 기획예산처의 정부예산안은 이후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확정·국회 제출되어 양 절차 간 약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함.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경제여건, 세수전망 또는 재정사업 편성방향이 변경되더라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조정이 곤란할 수 있음. 따라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예산안 제출 전의 기간 동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변동사항을 공동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 또는 예산사업의 지원내용·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의절차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다) 12대 분야 통합분류 후속조치 추진 필요

2024년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12대 분야 통합분류와 일부 정보연계 수준에 머물고 있으므로,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사업 간 대응관계 및 중복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4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발표함. 즉 과거 조세지출예산서(16대 분야)와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12대 분야) 간 지출 항목의 분류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세지출 분류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는 ①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를 통합하여 보건·복

지·고용분야로, ②교통 및 물류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를 SOC분야로 통합하며 ③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와 과학기술분야를 R&D분야로 통합하는 등 기존 16대 분야 → 12대 분야로 분류체계 변경하여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양 지출수단을 동일한 정책 분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조세지출 재분류('24년 실적치 기준)]

(단위: 억원)

16대 분야 분류		실적		12대 분야 분류		실적
1	일반 · 지방행정	94,042	→	1	일반·지방행정	94,042
2	공공질서 및 안전	0	→	2	공공질서·안전	0
3	통일 · 외교	10	→	3	외교·통일	10
4	국방	174	→	4	국방	174
5	교육	10,399	→	5	교육	10,399
6	문화 및 관광	2,528	→	6	문화·체육·관광	2,528
7	환경	21,381	→	7	환경	21,381
8	사회복지	250,104	↘	8	보건·복지·고용	364,556
9	보건	114,452	↗			
10	농림수산	59,895	→	9	농림·수산·식품	59,895
11	교통 및 물류	7,702	↘	10	SOC	10,928
12	국토 및 지역개발	3,225	↗			
1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184	↘↗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184
14	과학기술	75	→	12	R&D*	29,837
15	통신	0				
16	예비비	0				
합 계		705,171				

*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

그러나 분야별 분류만으로는 개별 조세특례가 어떠한 재정사업과 유사한지, 수혜대상이나 지원내용이 중복되는지, 양 수단이 보완관계인지 대체관계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유사·중복 여부는 단순한 정책 분야의 일치가 아니라 정책목표, 수혜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단계, 성과지표 및 정책수단 간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재정경제부는 2025년 결산 기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중복 사업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12대 분야 통합분류가 실제 중복사업의 식별·관리·정비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한편 기획예산처는 조세·재정 연계의 일환으로 dBrain+ 내 유관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연계하여 제시하는 기능을 2025년 4월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히 유관 사업을 연계·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동일 정책목표에 대한 수혜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지원단계 및 성과지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실제로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는 2025년 결산 기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중복 사업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12대 분야 통합분류 및 dBrain+ 연계 기능이 실제 중복사업의 식별·관리·정비 체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정부는 12대 분야 통합분류체계 통합을 단순한 분류체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라) 조세·재정 통합심층평가 도입 지속적 추진 필요

정부는 2024년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에서 유사·중복 정비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군에 대하여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정책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하였음. 이는 조세특례 자체의 타당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세제지원과 예산지원 전체를 하나의 사업군으로 보아 평가·정비하겠다는 취지임.

그런데 당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해당 제도의 추진이 최근 중단된 것으로 확인됨. 기획예산처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① 조세특례와 재정사업이 각각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상호작용 효과가 미약하며, ② 지출수단 간 우열 또는 유사·중복에 관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심층평가 도입을 중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재정지출 통합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두 지출수단 간 우열을 판단하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정책목표에 대한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수준의 중복, 정책수단 간 대체 또는 보완관계, 총 재정지원 규모, 성과관리 가능성 및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재정 통합심층평가를 시범사업 이후 중단한 것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문제를 체계적으로 평가·정비할 수단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유사·중복지출 정비 등을 위한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세·재정지출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 없이 특정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할 경우, 전환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조세·재정지출의 통합평가 실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이 병행되는 주요 사업군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지원내용·성과 및 재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는 통합평가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사·중복 지원을 정비하고 조세지출의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등 정책수단을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할당관세 반복 운용에 따른 정부 재량행사의 적정성 및 정책효과 검증 필요(국세수입, 세제실)

<현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가격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기본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할당관세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기본관세율 체계를 전제로 하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에 제한적으로 세율 조정 재량을 부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때 해당 품목의 시장 상황, 관세 인하 필요성, 예상효과 및 종료 가능성 등을 토대로 재량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최근5년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수 및 세수지원액]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관세 수입액(결산, A)		82,270	103,241	72,883	69,723	76,409
할당관세	품목 수	92	119	117	125	102
	세수지원액*(B)	6,758	19,694	10,753	14,301	8,305
	전년대비 증가율	80.6	191.4	△45.4	33.0	△41.9
관세 수입액 대비 세수지원액 비중(B/A)		8.2	19.1	14.8	20.5	10.9

* 세수지원액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추정한 수치(추정값)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도 할당관세는 총 102개 품목에 적용되었고, 지원 추정액은 8,305억원임. 이 중 원유(나프타·LPG 제조용) 2,248억원, LNG 1,889억원, LPG 278억원 등 광물성 연료류의 지원 추정액은 4,415억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함.

또한 바나나, 망고, 설탕, 감자·변성전분, 대두박, 옥수수, 조주정, 폴리에틸렌, 석영유리기판, PE분리막 등 식품·사료 원료 및 산업용 원재료도 주요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지원 추정액 100억원 이상인 16개 품목의 지원액은 전체의 83.5%를 차지함.

정부는 「관세법」[28]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2025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분석은 에너지, 식료품, 축산·사료 및 산업경쟁력 등 4개 부문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음. 다만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커피생두 등 일부 품목은 국내 가격자료 부족으로 가격전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실제 실증분석 대상 품목의 지원 추정액은 전체의 85.6% 수준임.

<검토의견>

첫째, 일부 품목에서 할당관세가 다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예외적 세율조정 제도인 할당관세가 상시적 지원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다년간 반복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반복적용 사유, 적용 성과, 대체수단 검토 결과 및 종료·축소 기준을 국회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할당관세는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나 수입가격 급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나, 실제 운용상 LNG, 원유, LPG, 옥수수, 대두박, 설탕, 감자·변성전분, 조주정, 폴리에틸렌, 석영유리기판, PE분리막 등은 최근 4년간 계속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음.

[할당관세 다년간 반복 적용 품목]

구분	주요 품목	적용 여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에너지	LNG	○	○	○	○
에너지	원유(나프타·LPG 제조용)	○	○	○	○
에너지	LPG	○	○	○	○
사료용 연료	옥수수(사료용)·대두박	○	○	○	○
식품 원료	설탕·감자·변성전분·조주정	○	○	○	○
산업용 원재료	폴리에틸렌·석영유리기판·PE분리막	○	○	○	○

주: 연도별 세부 품명 또는 용도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유사 품목군으로 정리함.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구성

28) 「관세법」제71조(할당관세)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일 또는 유사 품목이 수년간 반복 적용된다는 것은 해당 품목의 가격·수급 문제가 단기적 변동이 아니라 국제시장 가격구조, 국내 생산여건, 공급망 또는 산업구조와 관련된 상시적 문제일 수 있음. 이 경우 반복적인 관세 인하가 적정한 대응인지, 기본세율 조정,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또는 직접지원 등 다른 정책수단이 더 적절한지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정부는 품목별로 할당관세 반복적용 기준, 기존 적용성과 및 대체 정책수단 검토내역 등에 대해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반복 적용의 필요성과 재량 행사 근거를 사후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정부가 위임받은 세율 조정 권한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는 다년간 반복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최초 적용 사유와 비교한 시장여건 변화, 직전 연도 적용의 성과, 반복 적용 필요성, 대체수단 검토 결과 및 향후 종료·축소 기준을 품목별로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물가안정 목적의 할당관세가 수입단계의 비용 절감에 그치고 최종 소비자 가격 인하로 충분히 전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물가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단가·도매가격·소매가격·소비자 가격 및 유통단계별 가격변동을 연계하여 실제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과일·채소·축산물·설탕·전분 등 생활물가 관련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수입단계의 원가를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농축산물의 최종 가격은 작황, 국내 생산량, 재고, 가공비, 포장·물류비, 유통단계별 마진,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전략 및 브랜드 가격정책 등의 영향을 함께 받으므로, 관세 인하로 수입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그 효과가 소비자 가격까지 그대로 전달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함.

예를 들어, 2025년도 효과분석 결과 설탕[29], 감자·변성전분[30], 냉동돼지고기[31], 당근[32], 계란가공품[33] 등은 수입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시점별로 일

관되지않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관세 인하에 따른 비용 절감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직접 이어지기보다는 수입·가공·유통 단계의 원가 절감 또는 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결국 할당관세율 인하에 따른 관세수입이 감소에 상응하여 실제 정책목표인 소비자 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단기 가격전가 모형 결과(당월 기준)]

구분	품목명	국산 출고가	1차가공품 국산출고가	도매가	소매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식 료 품	설탕	–	0.013	–	–	0.016(설탕); -0.015(빵); 0.032*(탄산음료)	0.008
	감자·변성 전분	–	0.006(감자 전분); -0.001(라면 3종)	–	–	-0.025	-0.028
	냉동 돼지 고기	–	–	0.135*	–	0.041(햄·베이컨)	-0.050
	당근	–	–	-0.009	-0.045	-0.090	–
	계란 가공품	0.016	–	–	–	0.009	0.018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29) 설탕은 단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설탕 0.016, 빵 -0.015, 탄산음료 0.032*로 품목별 방향이 엇갈리고, 6개월 누적 기준에서는 설탕 -0.032, 빵 -0.110, 탄산음료 -0.021로 유의성이 뚜렷하지 않음.

30) 감자·변성전분은 단기 기준 감자전분 0.006, 라면 -0.001, 소비자물가지수 -0.025이고, 누적 기준에서는 감자전분 0.065*, 라면 -0.106*, 소비자물가지수 -0.139*로 지표별 방향이 달라 일관된 전가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31) 냉동돼지고기는 단기 도매가 0.135*이나 햄·베이컨 소비자물가지수는 0.041, 생산자물가지수는 -0.050이며, 6개월 누적 도매가는 -0.076, 소비자물가지수는 0.107로 일관되지 않음.

32) 당근은 단기 도매가 -0.009, 소매가 -0.045, 소비자물가지수 -0.090이고, 누적 기준에는 도매가 0.717, 소매가 0.362, 소비자물가지수 0.181로 전환되나 통계적 유의성이 표시되지 않음.

33) 계란가공품도 단기 국산출고가 0.016, 소비자물가지수 0.009, 생산자물가지수 0.018 등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누적 가격전가 모형 결과(6개월 기준)]

구분	품목명	국산 출고가	1차가공품 국산출고가	도매가	소매가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식 료 품	설탕	–	-0.056	-0.056	–	-0.032(설탕); -0.110(빵); -0.021(탄산음료)	0.081
	감자·변성 전분	–	0.065*(감자 전분); -0.106*(라면3종)	–	–	-0.139*	-0.042
	냉동 돼지고기	–	–	-0.076	–	0.107(햄·베이컨)	0.107(햄·베이컨) 0.030
	당근	–	–	0.717	0.362	0.181	–
	계란 가공품	0.117	–	–	–	-0.016	0.118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그럼에도 정부는 통관단가, 도매가격, 소매가격, 소비자 가격 및 주요 유통단계의 가격변동을 연계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어 관세 인하의 혜택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로 귀착되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 품목에 대하여 관세 인하 전후의 수입단가, 도매가격, 소매가격, 소비자 가격 및 유통단계별 가격변동을 품목별로 연계하여 제시하고, 지원 규모가 큰 품목은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 여부를 별도로 검증함으로써 관세 인하의 혜택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로 귀착되었는지 여부를 충실히 제시한 후 할당관세 정책에 환류할 필요가 있음.

셋째, 원유·LNG·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규모 세수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산업계·공기업·수입·유통업자 중 누구에게 귀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으므로, 에너지 품목별로 수입단가, 국내 공급가격, 공공요금·산업용 가격 및 주요 사업자의 원가·가격조정 내역을 연계하여 최종 수혜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은 총 8,305억원이며, 이 중 원유(나프타·LPG 제조용) 2,248억원, LNG 1,889억원 및 LPG 278억원 등 광물성 연료류 지원액은 4,415억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함. 즉, 할당관세에 따른 세수지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품목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해당 관세 인하가 실제로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낮추었는지 여부는 할당관세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핵심 사항임.

2025년도 효과분석은 에너지 품목의 수입가격 변동과 국내 가격지표 사이에 비교적 뚜렷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위 분석결과는 수입가격이 변동할 때 국내 가격지표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할당관세 인하로 발생한 비용절감액이 실제로 어느 경제주체에게 얼마나 귀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님.

즉, 현행 분석만으로는 원유·LNG·LPG에 대한 대규모 관세수입 감소가 실제로 가계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로 귀착되었는지, 산업계의 생산비 절감으로 귀착되었는지, 공기업의 원가보전 또는 수입·유통업자의 비용절감으로 귀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특히 원유와 LNG는 지원 규모가 각각 2,248억원 및 1,889억원에 이르는 만큼, 단순히 가격하방 압력이 존재한다는 분석만으로는 할당관세 적용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원유와 LNG는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지원이 이루어진 주요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관세 인하분의 귀착 구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관세수입 감소가 실제 국민부담 완화로 이어졌는지, 공기업 또는 관련 사업자의 원가절감으로 귀착되었는지 국회가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는 원유·LNG·LPG 등 대규모 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전후의 수입단가, 국내 공급가격, 공공요금 또는 산업용 가격, 주요 사업자의 원가 및 가격조정 내역 등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관세 인하에 따른 비용절감액이 소비자·산업계·공기업·수입·유통업자에게 각각 어느 정도 귀착되었는지를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가격전가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국내 가격자료가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관성적으로 적용될 경우 효과분석이 정책의 유지·축소·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므로, 평가결과를 차년도 할당관세 정책에 적극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음.

할당관세는 품목별 수급상황과 정책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며, 시장구조와 가격 결정경로에 따라 적용효과가 변동될 수 있음. 따라서 사후분석 결과는 단지 관세 인하가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감면정책의 지속여부, 적용기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할당관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FMS, 커피 생두 등 일부 품목은 국내 가격자료 부족으로 가격전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설탕, 감자·변성전분, 냉동 돼지고기, 당근, 계란가공품 및 일부 산업용 원재료는 가격전가 효과가 뚜렷하지 않거나 분석 결과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이를 국내 수급, 재고, 계약가격, 유통마진, 시장구조 등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가격효과가 불분명한 품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차년도 할당관세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가격전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할당관세의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정부가 해당 품목의 정책효과를 기존 분석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그 원인을 보완하여 효과를 재검증하거나 할당관세 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격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가격전가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품목에도 할당관세 정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효과분석은 정책선별을 위한 평가체계가 아니라 사후적인 정책설명 자료에 머물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가격자료가 부족하거나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보완 및 정책목적 재검토를 통해 적용의 계속·축소·종료 또는 대체수단 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다음 연도 품목 선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산업경쟁력 지원 품목은 단순한 가격하락 효과만으로 할당관세 적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입선 집중도, 특정국 의존도, 국내 대체 가능성 등을 포함한 별도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할당관세 적용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산업경쟁력 지원 목적의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중간재·핵심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임. 이는 수입가격 급등, 특정국 공급 차질 또는 핵심소재 부족 등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산업경쟁력 지원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단순한 가격인하 정책이 아니라, 국가기간산업 또는 핵심 제조업의 생산기반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수단의 성격을 가지며, 소비자물가 안정과 달리 핵심소재 조달, 공급망 안정, 생산차질 방지 및 수출경쟁력 유지 등을 목표로 함. 따라서 산업용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는 단순히 수입가격이 국내 가격에 전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2025년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중 FMS, 백금, 페로니오븀, 폴리에틸렌, 석영유리기판, 이온교환막, PE분리막, 영구자석 등은 대표적인 산업경쟁력 지원 품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격적 요소보다는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지, 특정국 또는 소수 수입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국내 대체재 또는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는지, 수입 차질이 발생할 경우 생산·수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관세 적용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정부의 효과분석은 주로 수입가격과 국내 출고가격 또는 생산자물가지수 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분석은 관세 인하가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을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관세 인하가 실제로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였는지, 생산차질을 예방하였는지, 특정국 의존도를 줄였는지 또는 수출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산업경쟁력 지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효과 외에도 수입선 집중도 및 특정국 의존도 변화, 국내 대체 가능성, 공급차질 예방 효과, 수혜기업 범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할당관세 적용의 필요성과 사후 성과를 국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7) 국유재산 소송 승소금에 대한 보전절차 실시 등 수납률 제고 필요(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국)

< 현 황 >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은 국고금관리카드 인센티브 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환수금, 국유재산 소송 승소금 등 연체료와 반환금 등을 징수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125억 2,500만원이었으나 254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81억 7,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3억 1,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2,525	12,525	-	12,525	25,483	18,171	7,311	-	12,525

< 검토의견 >

기타경상이전수입 중 국유재산 소송 승소금의 경우 보전절차에 따른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지속적으로 미수납되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관서운영경비 정부구매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캐시백) 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따른 반환금과 정산결과 발생한 환수금, 정부가 제기한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의 승소금[34]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유형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소송 승소금의 경우 다른 수입과 달리 미수납액이 점차 누적되고 있음.

[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유형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유형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국고금관리카드 인센티브 수입	2025	7,163	7,576	7,576	-
	2024	6,954	7,214	7,214	-
	2023	7,640	6,763	6,763	-
	2022	4,655	3,820	3,820	-
	2021	4,894	4,306	4,306	-
반환금·환수금	2025	5,362	10,729	10,596	133
	2024	5,571	8,549	8,544	4
	2023	5,097	26,534	26,539	125
	2022	3,811	5,626	5,621	4
	2021	3,533	18,623	18,619	4
국유재산 소송 승소금	2025	-	7,177	-	7,177
	2024	-	7,331	-	7,331
	2023	-	6,846	-	6,846
	2022	-	5,637	-	5,637
	2021	-	5,308	-	5,308

자료: 재정경제부

34)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송 승소금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확정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집행법」 등에서 재산명시절차, 압류 등 강제 회수를 위한 보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수납액이 점차 누적되는 상황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35], 미수납액이 누적될 경우 향후 회수업무 가중에 따른 부담이 우려됨.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이미 확정된 승소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보전절차 실시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5)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수행 중인 국유재산 관련 소송은 458건에 달함

(8) 물납주식 매각 실패 장기화 개선 필요 등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국고국)

< 현 황 >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사업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납입금임. 2025년 예산현액은 3조 7,441억 4,000만원이었으나 1,307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를 전액 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세물납주식매각대 (73-733)	3,744,140	3,744,140	-	3,744,140	130,743	130,743	-	-	1,063,783

< 검토의견 >

㈜NXC 매각 유찰 반복에 따른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미수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아 세입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크게 저조한 문제가 있고, 물납주식 매각 어려움에 따라 물납주식 보유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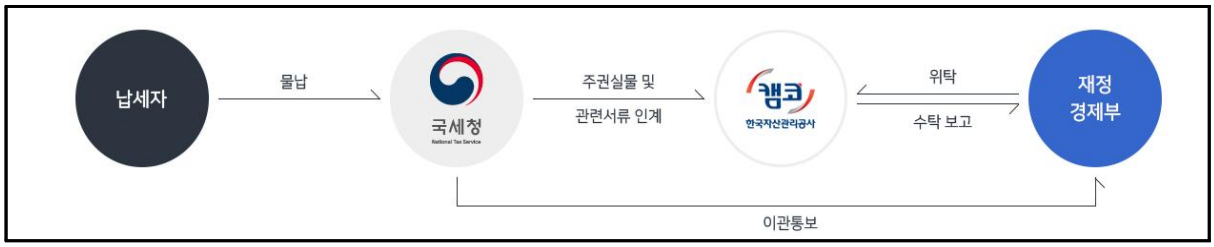
국세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국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함.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현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물납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36]은 상속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3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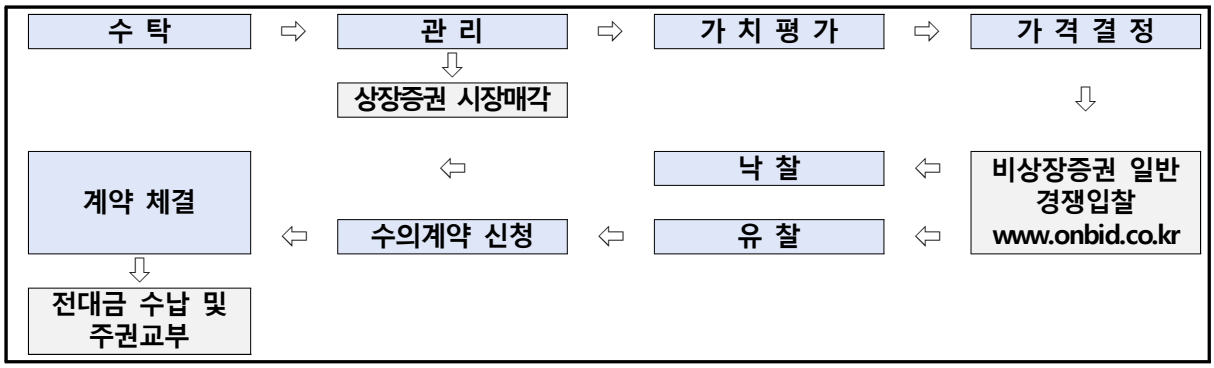
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된 증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처분하고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증권을 수탁받아 관리하며, 물납증권에 대한 가치평가 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장에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은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목으로 징수되고 있음.

[물납증권 관리체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물납증권 관리·처분 흐름도]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은 3조 7,441억 4,000만원으로 평년 대비 크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평가가치가 4조 7,149억원에 달하는 고액 물납주식인 ㈜NXC 매각을 감안한 것임.

[NXC 물납주식 현황]

물납주식 수	지분율	평가가치
85만 1,968주	30.64%	4조 7,149억원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및 경영권 프리미엄 20% 합산)[37]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NXC 지분 매각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4차례 모두 유찰되었으며, ㈜NXC 지분 매각 실패에 따라 2025회계연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예산현액의 3.49% 수준인 1,307억 4,300만원 수납에 그침.

[NXC 물납주식 매각 시도 경과]

(단위: 원)

차수	기 간	매각예정가격	비 고
1차	2023.12.18.~12.19.	4,714,897,408,000	유찰
2차	2023.12.25.~12.26.	4,714,897,408,000	유찰
매각주간사 선정	2024.12.11.	-	단독입찰에 따른 재공고 후 선정
3차	2025.6.30.~8.25.(본공고)	-	유찰
4차	2025.8.27.~9.8.(재공고)	-	유찰

자료: 재정경제부

3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 20%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처럼 ㈜NXC 지분 매각이 유찰되는 사유로는 ㈜NXC는 비상장사로 시장성이 낮고, 유족 지분이 69.36%이므로 제3자가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비상장 주식 및 경영권 부재 대비 매각가가 높게 설정된 점이 지적된 바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바, ㈜NXC의 연내 지분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을 감액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예산 대비 세외수입 미수납이 대규모로 발생한 문제가 있음.

한편, ㈜NXC 외에 2025년말 기준 국세물납주식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총 보유건수 313건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물납주식이 257건에 이르며, 이 중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주식의 평가가치 합이 3,941억원에 달하는 등 국세물납주식이 매각 및 국고로 수납되지 못하고 장기보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NX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물납주식의 낮은 시장성, 경영권 행사의 어려움, 물납에 따른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과 가치 하락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더욱이 이처럼 물납주식이 매각이 장기화되는 경우 물납주식 보유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가치 하락에 따라 매각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국세물납주식의 분할매각 등 조기 처분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 보유 물납주식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세물납주식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세출 결산 검토의견

(1) 과다한 행사 비용 집행 부적절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미래전략기획실)

< 현 황 >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은 중장기 경제전략을 기획하기 위한 연구용역, 위원회 운영, 공모전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9억 2,000만원으로, 이 중 7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중장기 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미래전략포럼·미래전략컨퍼런스 운영 등을 통해 사회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전략위원회[38] 운영을 통해 중장기전략을 마련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3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 (1132-401))	920	920	-	-	-	920	791	69	60	3,382
- 중장기 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410**	**410**	**-**	**65 △65**	**-**	**410**	**385**	**-**	**25**	**812**
-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	330	330	-	-	-	330	258	69	3	1,230
- 미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90	90	-	-	-	90	88	-	2	190
- 기타 정책연구	90	90	-	-	-	90	60	-	30	150

동 내역사업은 미래전략포럼 및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미래전략포럼은 중장기전략위원회 분과에서 발굴한 과제를

38)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설치하는 위원회로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연 약 2~3회 실시되는 행사이고, 미래전략컨퍼런스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전문가 등이 미래 이슈에 관한 인식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 1회 실시되는 행사임.

< 검토의견 >

미래전략컨퍼런스는 고가의 행사장 임차와 행사대행업체 활용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행사비가 집행되었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 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는 당초 미래전략포럼 및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5일에 세목조정을 통해 미래전략포럼 및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를 위한 일반용역비를 2억 4,000만원으로 6,500만원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중장기 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5.2.5.)	중장기경제 전략기획사업	210-01 (일반수용비)	55	중장기경제 전략기획사업	210-14 (일반용역비)	미래전략 포럼·컨퍼런스
		210-07 (임차료)	10			

자료: 기획예산처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 5월에 '2025 미래전략포럼 기획·개최 및 관리' 계약을 6,600만원에 체결하고, 2025년 9월에 '2025 미래전략 컨퍼런스 기획·개최' 계약을 1억 6,000만원에 체결하였음. 두 계약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탁기관으로 참여하였음.

[2025회계연도 중장기 전략위원회 운영 및 간담회 개최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일반용역비 예산	일반용역계약 내역					계약 유형
	계약명	발주금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240	2025 미래전략포럼 기획·개최 및 관리	40	66	한국개발연구원	25.5-25.12	제한경쟁
	2025 미래전략 컨퍼런스 기획·개최	170	160	한국개발연구원, 이스터 마케팅서비스	25.9-25.12	일반경쟁

자료: 기획예산처

그런데 미래전략포럼은 3회의 행사가 개최되고 미래전략컨퍼런스는 1회의 행사만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컨퍼런스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되어 미래전략포럼에 비해 9,400만원이 더 많이 지출되었음. 특히 2차 미래전략포럼은 미래전략컨퍼런스와 동일하게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미래전략포럼 3회 개최에 소요된 비용이 미래전략컨퍼런스에 비해 작은 수준임.

[2025년 미래전략포럼 및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차수	주제	일시	장소	지출액
미래전략포럼	1차	신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의 가능성과 도약 과제	2025.5.28. 14:00~16:00	서울 LW 컨벤션 크리스탈홀	66
	2차	Physical AI + X : 한국의 차세대 도약을 위한 초융합	2025.9.29. 13:30~16:30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	
	3차	K-Culture의 퀀텀점프를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2025.11.17. 10:00~13:00	달개비	
미래전략 컨퍼런스	1차	ABC Korea 2030: AI·Bio·Culture로 설계하는 한국의 미래	2025.12.8. 13:30~17:00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	160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미래전략컨퍼런스에 큰 금액이 지출된 이유는 용역비에 대형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대행용역비 6,000만원, 회의장 및 장비 임차료 3,325만 5,000원 등이 책정되었기 때문임. 또한, 미래전략컨퍼런스는 행사대행용역비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포럼 인건비(1,569만원)에 비해 더 많은 인원과 더 높은 참여율이 반영되어 인건비가 2,897만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었음.[39]

[2025년 미래전략 컨퍼런스 기획·개최 용역비 세부산출내역]

(단위: 원)

항목	산출내역	금액
1. 인건비		28,970,536
○책임연구원	3,705,904원 × 4개월 × 1명 × 70%	10,376,531
○연구원	2,841,638원 × 4개월 × 1명 × 70%	7,956,586
○연구보조원	1,899,539원 × 4개월 × 2명 × 70%	10,637,418
2. 경 비		120,287,000
○ 여비		1,560,000
- 국내교통비	60,000원 × 26명 × 1회	1,560,000
○ 전문가활용비		23,110,000
- 자문토론비		12,550,000
·발표자(국내, 기조연설)	1,000,000원 × 1명 × 1회	1,000,000
·발표자(국내)	500,000원 × 6명 × 1회	3,000,000
·토론자(국내)	300,000원 × 17명 × 1회	5,100,000
·토론자(해외, 화상참여)	$1,000 × 1명 × 1회	1,450,000
·세션사회자(국내)	500,000원 × 4명 × 1회	2,000,000
○ 수용비		6,783,000
- 행사제작물(배너, 현수막 등)	3,160,000원 × 1삭 × 1회	3,160,000
○ 임차료		33,255,000
- 회의장(콘래드 기준)	23,000,000원 × 1식 × 1회	23,000,000
- 장비임차료		8,715,000
·LED 임차	4,565,000원 × 1식 × 1회	4,565,000
○ 외부용역비		60,000,000
- 행사대행용역비	60,000,000원 × 1식 × 1회	60,000,000
3. 일반관리비	(1 + 2) × 5% 이내	5,288,000
4. 부가가치세	(1 + 2 + 3) × 10%	15,454,554
합 계		170,000,090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가 세목조정 등을 통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증액한 후 고가의 행사장 임차와 행사대행 용역 등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획예산처는 향후 미래전략컨퍼런스 행사개최 시 사업의 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39) 미래전략포럼 용역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인과 연구보조원 1인 등 2인에 대해 용역참여기간 7개월과 용역참여율 40%가 적용된 반면, 미래전략컨퍼런스 용역 인건비는 책임연구원 1인, 연권 1인, 연구보조원 2인 등 총 4인에 대해 용역참여기간 4개월과 용역참여율 70%가 적용되었음.

(2)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경제정책국)

< 현 황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은 국가경쟁력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와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지원,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9,800만원 중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고,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발굴·정제를 통한 유의미한 경기 속보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한 리스크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경기진단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3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7,300만원을 포함한 5억 7,3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33-301)	625	625	273	-	-	898	586	215	97	355
-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135	135	-	-	-	135	70	50	15	105
-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190	190	-	-	-	190	56	85	49	185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300**	**300**	**273**	**-**	**-**	**573**	**460**	**80**	**32**	**-**

< 검토의견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의 편성 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가 필요함.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은 경기진단 및 정책대응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소비·투자·생산 등 거시경제 동향 파악의 시차를 단축하고, 적시 정책 대응을 위해 기존 계량모형과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AI 모형을 경기진단에 접목하여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현재 주가 등 금융지표는 실시간, 부동산·물가 등 민생지표는 7~10일 후 파악이 가능한 반면, 생산·소비 등 실물지표는 2~4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여 실시간 파악 및 적시 대응이 어려움. 따라서 AI 딥러닝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 생산, 투자 부문의 경기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 경기지표와 시차: 5월 기준]

	공표지표	1월	2월	3월	4월	5월 기준	보완 데이터 (예시)	한 계
소비	소매판매액지수 (산활)						카드매출액	■ (공표) 2~4개월 시차 ■ (카드매출액) 계절요인 등 조정 필요 - 내국인 해외소비액, 외국인 국내소비액 등 추가데이터 필요
	민간 최종소비지출 (GDP)							
생산	전산업생산 (산활)						전력사용량	■ (공표) 2~4개월 시차 ■ (전력사용량) 지역·산업별 전력사용량 등 보다 다양한 세부데이터 필요
	국내총생산 (GDP)							
투자	설비투자 (산활)						설비수입액	■ (공표) 최대 2개월 시차 ■ (설비수입액) 국내 설비투자 반영 필요 ■ (SOC 집행액) 계절요인 등 조정 필요
	건설기성 (산활)						SOC 집행액	
수출	수출입물량지수 (산활)						무역수지	■ (공표) 2~4개월 시차 ■ (무역수지) 수출품 가격속보정보 필요
	순수출 (GDP)							

5.15. 기준으로 공표지표가 발표되는 기간 ☐ 5.15. 기준으로 공표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기간

※ 1분기 GDP 속보치는 4.23. 발표, 3월 산업활동동향은 4.30. 발표

자료: 재정경제부

1차년도인 2024년에는 뉴스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 모형 등에 기반하여 소비지표에 해당하는 소매판매, 민간소비 속보 예측모형을 구축하였고, 2차년도인 2025년에는 계절조정, 산업활동 디플레이터 등을 통해 기존 소비 진단 시스템을 고도화(예측력 제고)하였으며, AI 모형을 활용한 투자·생산 속보 예측모형을 구축하였음.

[빅데이터 기반 경기진단 시스템의 연도별 수행 내용 및 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KDI 자체 수행)
DB 구축	-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자동화	- 데이터 검토 및 수집	- 데이터 검토 및 수집
생산	- 서비스업생산 속보지표 개발 (서비스업소비 대리지표)	- 전력사용량 등 가용 데이터 검토 - 생산 속보지표 개발	- 생산 속보지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 GDP·GDRP 속보지표 개발
소비	- 카드매출액 활용한 소비 속보지표 마련	- 소비 속보지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 소비 속보지표 고도화 (재화별 소비 속보지표 개발)	- 모델 업데이트 및 추가 데이터 발굴
투자	- 투자 속보지표로 이용가능한 데이터 리스트 마련	- 건설투자 속보지표 개발 - 설비투자 속보지표 개발	- 건설투자 속보지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 설비투자 속보지표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이를 통해 정책 시차를 최소화하여 경기 대응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선제적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 당국의 의사결정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2024년 5월 31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20일까지 소비 및 서비스업생산 속보지표 개발을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2월 20일에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25년 3월 2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재차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4월 20일에서야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 4월에 선금을 제외

한 나머지 사업비를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2차년도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공모를 통해 8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2월 20일까지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2026년 4월 2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재차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6년 5월 20일에서야 2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음.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내역]

연도	계약기간		계약기간 연장 사유
	종전	변경	
2024년	2024.5.31.~2024.12.20.	2024.5.31.~2025.3.20.	협의 및 검토를 면밀히 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2024.5.31.~2025.3.20.	2024.5.31.~2025.4.20.	
2025년	2025.8.8.~2025.12.20.	2025.8.8.~2026.4.20.	
	2025.8.8.~2026.4.20.	2025.8.8.~2026.5.20.	

자료: 재정경제부

해당 과정에서 1차년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2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약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8월에서야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을 종료 시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차년도 사업이 연내 집행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한 것임.

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40]하고 있는데, 전

40)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년도 사업 수행에 11개월이 소요되었음을 고려할 때, 2차년도 사업 또한 4개월 내에 완료하기 어려움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업비 집행을 위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 일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선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속보지표의 개발은 연도 내에 완료되었으나 속보지표의 예측력 및 타당성 검토 등 완성도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하여 동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는 입장임.

한편, 재정경제부는 사업비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41]을 반영하여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금 지급률을 전년도 50%에서 70%로 상향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고금 관리법」 등[42]에 따른 선금 제도의 운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선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43]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원활한 이행과 노임 및 자재 확보 등 실질적인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즉, 선금

---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1)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4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43)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하며,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통해 과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완료가 불확실한 사업 구조 하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반복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만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서 선금 제도의 본래 운용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업비 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 또한 단순한 선금 지급 비율의 상향이 아니라, 사업 계획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집행 효율성 제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 수행 업체의 과업 완성도 부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반복적인 사업비 이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3) 국제평가지수 관리체계 정비 필요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경제정책국)

< 현 황 >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은 국가경쟁력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와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지원,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6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9,800만원 중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고,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수행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및 취약 과제 분석과 경제 분야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1억 3,500만원 중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1133-301)	625	625	273	-	-	898	586	215	97	355
-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135**	**135**	-	-	-	**135**	**70**	**50**	**15**	**105**
- 경제정책방향 수립 및 홍보 지원	190	190	-	-	-	190	56	85	49	185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	300	300	273	-	-	573	460	80	32	-

< 검토의견 >

재정경제부는 국제평가지수의 신뢰성·인용도·평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MD 국가경쟁력지수와 함께 국가경쟁력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국제평가지수를 검토하고,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상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를 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지원」의 내역사업인 「국가경쟁력 분석 및 강화전략 연구」 사업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을 통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 대해 평가 결과 및 취약 과제를 분석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중임.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OECD 회원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것으로, 2025년에는 6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44]에 대해 평가하였음.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기업들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촉진하는 한 나라의 역량으로 정의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함[45]. 또한, 순위 산정에 활용하는 지표의 약 36%(2025년 기준)는 해당 국가의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등 항목별로 통계자료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있음.

그런데 IMD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로 기업 환경 측면에서 평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 국가경쟁력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평가의 일정 부분이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에 기반하고 있어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46]가 있으며, 낮은 설문조사 응답률[47]로 인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44) 순위 산정에 활용하지 않는 보조지표 제외 시 257개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결과 분석」(기획재정부 연구용역), 2021.12.

46) IMD 국가경쟁력 평가 분야 중 설문조사 비중이 높은 기업 효율성 분야의 경우 2024년도에는 23위였던 순위가 2025년도에는 44위로, 2026년도에는 34위로 변동되었음.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등 해당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단기간에 변동하기 어려운 개념임에도 평가 시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47) IMD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국내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응답률: 2024년 1.77%(대상자 4,000명 중 71명

이를 고려할 때 IMD 국가경쟁력지수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거나 개선 과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 IMD 국가경쟁력평가 항목 구성 및 평가방식]

평가 항목

▸ 4대 분야, 20개 부문, 337개 세부항목*(보조지표 제외시 257개)
* 통계자료: 165개 + 설문조사: 92개 / 보조지표: 80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재정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평가 방식

▸(통계)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
* 국제기구(IMF, World Bank, OECD, ILO 등), 정부통계(통계청 등), 민간기업(Mercer HR Consulting - 생계비지수 등)
▸(설문) 전 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한국: KIEP)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또한, 재정경제부 훈령인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를 선정하고, 해당 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이 IMD 국가경쟁력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평가지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국제지수 간 통합적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과 개선 과제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응답), 2025년 5.04%(대상자 1,050명 중 53명 응답), 2026년 3.7%(대상자 1,000명 중 37명 응답)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제4조(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제평가지수의 제고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2.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경쟁력지수
3.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
4.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
5.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관광경쟁력지수
6.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적자본지수
7. 세계은행(WB)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
8. 헤리티지재단(HF)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
9. 국제연합(UN)이 발표하는 전자정부발전지수 및 온라인참여지수
10.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성불평등지수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교통안전도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더나은삶 지수
13. 국제전기통신기구(ITU)가 발표하는 정보통신발전지수
14.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15. 무디스(Moody's), 에스앤드피(S&P), 피치(Fitch)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
1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협의회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국제평가지수

그러나 최근 5년간 재정경제부가 국가경쟁력 평가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IMD 국가경쟁력평가 외의 다른 국제평가지수에 대한 결과 분석이나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은 수행하지 않았으며, 다른 국제평가지수와 연계한 통합적인 국가경쟁력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가경쟁력 평가 관련 정책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명	계약금액	기간	연구수행기관
2021년	2021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결과분석	40	2021.9.1.~ 2021.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22년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체계 및 결과분석	30	2022.12.12.~ 2023.3.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23년	2023년 IMD 국가경쟁력 결과 분석과 시사점	30	2023.9.25.~ 2024.1.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24년	2024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분석과 업무 개선 방안	40	2024.7.22.~ 2024.12.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2025년	2025년 IMD 국가경쟁력평가 결과 분석과 시사점	45	2025.7.18.~ 2025.12.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자료: 재정경제부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지수(2020년 이후 발행 중단),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지수(2021년 이후 발행 중단) 등 현재 발행이 중단된 국제평가지수가 여전히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상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로 규정되어 있는 등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국제평가지수의 신뢰성·인용도·평가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MD 국가경쟁력지수와 함께 국가경쟁력 분석에 참고할 수 있는 국제평가지수를 검토하고,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를 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임시조직 운영 정상화 및 실소요 중심의 예산 편성 필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 현 황 >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은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범부처 합동 조직으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업계·학계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15대 프로젝트별 추진상황 점검 관리 및 애로사항 등의 발굴·해소, R&D·정책금융·규제혁신 등 지원 인프라 정비, 신성장 4.0 전략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5억 100만원으로, 이 중 4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신성장전략기획 추진단 운영 (1331-306)	501	501	-	-	-	501	417	-	84	423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은 수출·수주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민관 합동 지원체계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수주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출·수주기업들과 함께 애로해소를 모색하는 원스톱 수출 119 운영, 수출기업 애로접수 및 해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고도화 등을 통해 수출·수주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이 중 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1331-305)	733	733	-	-	-	733	661	-	72	200

<검토의견>

재정경제부는 임시조직의 상설화 및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조직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정경제부는 임시조직 운영 시 장기간 운용이 불가피한 상시적 업무는 정규 직제에 반영하여 조직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행정기관의 정규 하부조직은 법령(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조직은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하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조직임. 부처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정원을 활용한 임시조직은 법령 등 설치근거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하여야 함.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일시적인 과제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임시조직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임시조직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시점이 다가오면 운영 기간을 연장하거나 명칭만 변경하여 사실상 동일한 기능의 임시조직을 재신설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상설화하고 있음. 현재 정규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파견 등 임시정원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존속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의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음.

[재정경제부 임시조직 운용 예시]

구분	경제성장 전략 및 투자지원			수출·수주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조직명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초혁신경제추진단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플러스지원단
운영기간	'19.4.~'22.5.	'23.2.~'25.2. / '25.3.~'26.2.(연장)	'26.2.~'28.2.	'22.11.~'25.3. / '25.4.~'26.3.(연장)	'26.4.~'28.3.
근거법령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초혁신경제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수출 플러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상 설립목적	혁신성장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과 조기성과 창출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	기업의 수출·수주 관련 애로사항을 하나의 창구에서 신속하게 해결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진흥에 기여
정원	24명	12명		12명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등 9개 부처에서 파견	기재부(재경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등 9개 부처에서 파견		기재부(재경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해수부, 조달청 등 8개 부처에서 파견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우선, 경제성장 전략 및 투자지원을 총괄하는 기능의 경우,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가속화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산업 혁신 및 기업 투자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2019년 4월 정원 24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신설되었음. 동 기획단은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기능 중복을 사유로 2022년 5월 폐지되었음.

이후 기획재정부는 2023년 2월, 범부처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신성장 4.0 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신설하였음. 동 추진단은

당초 2025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신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사유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2월까지 1년간 운영 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의 연장된 운영 기한('26.2월)이 도래하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괄을 위하여 2026년 2월 「초혁신경제추진단」을 또다시 신설하여 2028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음.

세 조직 모두 당대 정부의 거시적 경제성장 전략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며, 민간 투자 지원을 조율한다는 본질적인 설립 목적과 업무 기능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결과적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유사한 목적의 조직이 장기간 상설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출·수주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원 기능의 경우, 기업의 수출·수주 애로를 다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 11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임시조직으로 신설되었음. 당초 2025년 3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을 사유로 운영 기간을 2026년 3월까지 1년 연장하였음.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해당 지원단의 연장 기한 만료 직후인 2026년 4월, 2030년 1조 달러 수출 달성 등 국정과제 이행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시 「수출플러스지원단」을 신설하여 2028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26년 3월 3억 9,238만원의 예비비를 배정하였음.

두 조직 모두 수출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총괄·조정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한다는 핵심 기능이 동일하여, 사실상 존속 기한이 만료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을 그대로 연장한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기존 직제상의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하거나 이를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임시조직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 중 “임시조직 설치·운영 지침”]

□ 설치 근거
○ 임시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훈령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설치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 설치 • 운영 기준
○ (존속기간)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
-**존속기간 경과 시에는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시키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다만, 총리훈령 이상의 법령으로 설치된 임시조직은 2년 이상으로도 연장 가능하나, ‘20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시행이후에 설치되는 임시조직은 상기 기준 적용

○ (설치·운영) 각 부처는 **기존 직제·직제시행규칙상의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각 부처 내 공통업무(인사, 조직, 기획 등)의 수행을 위한 임시조직은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 임시조직 운영 • 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재정경제부는 거시 경제 총괄 지원이나 수출 기업 지원 모두 부처 본연의 상시적 업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 존속기한이 만료될 즈음 기한을 연장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일시적 과제 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임시조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회계연도 중간에 조직 운영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2025년도 예산의 경우, 당초 존속 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을 3개월분만 편성하였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간에 조직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9개월분의 추가 운영경비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타 세목에서 총 9,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이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예산액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세목		세부사업 명	세목	
세목조정 ('25.3.28)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1331-305)	일반수용비 (210-01)	30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1331-305)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지원단 추가 운영경비(9개월분)
세목조정 ('25.3.28)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1331-305)	일반수용비 (210-01)	47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1331-305)	임차료 (210-07)	지원단 추가 운영경비(9개월분)
세목조정 ('25.3.28)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1331-305)	일반수용비 (210-01)	13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운영 (1331-305)	관리용역비 (210-15)	지원단 추가 운영경비(9개월분)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단순히 임시조직과 프로젝트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해당 임시조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부처 내 정규 직제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장기간 운용이 불가피한 상시적 업무라면 파견 등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정규 직제화한 사례와 같이 직제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를 통해 부처 본연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조직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 운영의 원칙을 철저히 확립해야 할 것임.

둘째, 재정경제부는 과중한 국내 업무 등을 이유로 국외업무여비를 세목조정하여 국내여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기반한 실소요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규제 동향 등 정책 방향을 참고하기 위한 국외 출장 목적으로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세부사업에 매년 국외업무여비(220-02)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단 한 차례의 국외 출장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편성된 예산 전액을 국내여비(220-01)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조정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 세부사업 내 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목	본예산	추경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5	국내여비 (220-01)	13	13	-	20	33	32	1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	**△10**	**-**	**-**	**-**
2024	국내여비 (220-01)	13	13	-	15	28	26	2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	**△10**	**-**	**-**	**-**
2023	국내여비 (220-01)	-	-	16	10	26	26	-
	국외업무여비 (220-02)	**-**	**-**	**10**	**△10**	**-**	**-**	**-**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25년의 경우 탄핵 정국 및 새 정부 출범(6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8월), 「초혁신경제 추진계획」 안건 준비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국외 출장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또한,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국내 산업계 현장방문 등 민관협의체 운영을 역점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내여비 소요가 급증하여 불가피하게 국외업무여비를 조정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의 특수한 정치·행정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한 대내외적 변수가 없었던 2023년과 2024년에도 동일하게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미집행하고 국내여비로 전환 사용했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짐. 3년 연속 미집행은 애초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외 출장에 대한 명확한 수요 조사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결과로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외 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고, 연례적인 전액 미집행 및 타 비목으로의 세목 조정 관행이 반복되는 비목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 심사 시 삭감하여 실소요 중심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재정경제부는 전년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적극 환류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5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세부사업에 일반연구비(260-01)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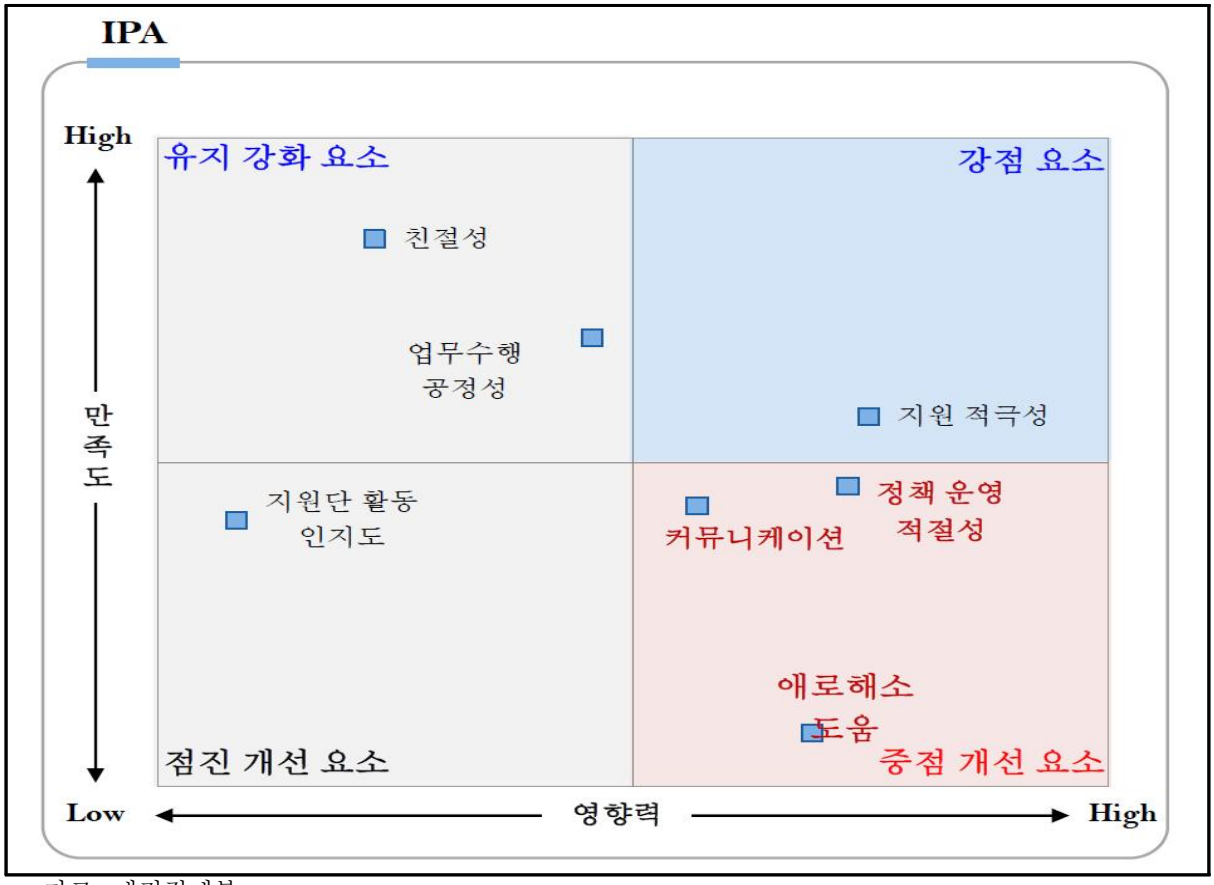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2024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단의 만족도 수준(88.3점)은 2023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종합 결과(87.2점) 및 공기업 전체(87.0점), 기타공공기관 전체(86.0점)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조직의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후속 연구용역의 사후관리가 원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25년도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설명대로라면 2024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듬해 조사가 불필요함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 일반연구비를 편성한 후 전액 불용한 것은, 실제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이는 한정된 국가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임.

또한, 전년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여 후속 연구로 연계하려는 사업 개선 의지가 부족해 보임.

2024년에 실시된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체 IPA(영향력-만족도) 분석 결과, 전반적 만족도 중 사업의 향후 필요성(91.5점), 지원 적극성(89.5점), 서비스 품질 관련 서비스 제공과정(90.2점)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지원단의 핵심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애로해소 도움'은 영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8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중점적인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임.

[<2024년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 중 "서비스 개선과제 도출" 파트]



자료: 재정경제부

전년도 조사 결과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취약점이 드러났으므로 실질적인 애로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단의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만족도 조사의 실제 수요와 주기를 엄격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과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업무 방식 개선 등 정책 환류에 집중하여 관행적인 예산 불용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5)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의 내실화 및 사업비 집행 실적 저조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 현 황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은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의 거시경제, 민생경제, 혁신경제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41억 1,500만원으로, 이 중 22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1431-301)	4,115	4,115	-	-	-	4,115	2,218	198	1,699	3,196

< 검토의견 >

재정경제부는 헌법상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의 내실화 및 사업비 집행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정경제부는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48]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헌법상 자문기구이며, 경제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임.

48) **「대한민국헌법」제9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지원단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은 2025년 총 22억 1,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헌법상 기구의 핵심 기능인 전체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현장방문 1회에 그치는 등 기구 본연의 정책 자문 활동이 사실상 중지되었음.

[최근 5년간 국민경제자문회의 회의개최 실적]

(단위: 건)

연도	전체 회의(일자)	합동 회의	분과 회의	정책 세미나	현장 방문	정책 간담회	합계
2022	1 (12.21)	2	29	3	1	8	44
2023	-	2	54	3	10	34	103
2024	2 (1.4/1.11)	1	50	4	7	32	96
2025	**-**	**-**	**-**	**-**	**1**	**-**	**1**
2026*	1 (4.9)	1	10	-	1	2	15

*2026년 실적은 4월말 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정국 상황으로 인해 후임 자문위원 위촉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5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위원 구성이 지연되어 이듬해인 2026년 3월에서야 위촉이 완료되었고, 전체회의 역시 2026년 4월에야 개최되었음.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특수성 하에 헌법 기구의 공백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구성이 지연되어 2024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년 이상 전체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한 것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비록 지원단 운영에 집행된 예산 22억 1,800만원의 대부분이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기구의 운영이 장기간 지연되어 실질적인 자문 활동이나 정책 생산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22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된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 예산 낭비로 볼 우려가 있음. 이는 비상시 지원단의 유휴 행정력 활용 및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가 원수에 대한 경제 자문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위원 임기 만료 전 사전 위촉 절차를 제도화하고 차기 위원 위촉 및 분과 구성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기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둘째, 일반용역비와 일반연구비 등 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우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사업의 최근 3년간(2023~2025년) 일반용역비(210-14) 집행 실적이 저조함.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일반용역비(210-14)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2023년	1,060	-	1,060	585	1,060	585	167	308
2024년	530	167	697	453	530	287	-	243
2025년	530	-	530	-	530	-	-	530

자료: 재정경제부

2025년에는 전술한 이유로 일반용역비 예산 5억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23년과 2024년도의 집행 실적 또한 연례적으로 저조한 편임. 재정경제부는 2023년에는 '응찰자 용역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 선정 불가 및 일정 지연', 2024년에는 '12월 계엄 선포 이후 정국 상황 고려'를 사유로 불용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연중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연초부터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점이 예산 미집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연례적으로 일반용역비 집행이 저조한 것은 애초에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거나 체계적인 집행 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에 신규로 편성된 일반연구비(260-01) 3,000만원 역시 '응찰자 용역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 선정 곤란'을 이유로 전액 불용되었음. 이는 예산 편성 시 수요 예측 및 사전 기획의 부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 요구 전 연구 수요와 수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예비비 과다 추계 및 중복 조직 신설 방지 등 예산 편성·집행 관리 철저 필요(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 현 황 >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은 대통령 소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가바이오 정책·규제·R&D 등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025년 예비비 20억 6,1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15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1432-301)	-	-	-	-	2,061	2,061	1,508	15	538	2,129

< 검토의견 >

재정경제부는 예비비 요구 및 조직 신설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정경제부는 예비비 요구 시 실소요와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과다 추계를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2조에 근거한 예비비[49]는 예측할 수

49) **「대한민국 헌법」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편성하는 예외적 제도임.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되는 만큼, 그 배정과 집행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그리고 당해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이고 엄격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회계법」 등에 따른 투명하고 객관적인 재무보고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예비비의 배정 및 집행 내역은 다른 예산보다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세부사업 비목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비비 요구액 (A)	예비비 배정액 (B)	예산 현액 (C)	예비비 집행현황				비고
				집행액 (D)	요구 대비 집행률 (D/A)	배정 대비 집행률 (D/B)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D/C)	
계	5,476	2,061	2,061	1,508	27.5%	73.2%	73.2%	
상용임금(110-03)	117	34	34	21	17.9%	61.8%	61.8%	
일반수용비(210-01)	1,364	347	237	121	8.9%	34.9%	51.1%	110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및제세(210-02)	198	178	178	175	88.4%	98.3%	98.3%	
특근매식비(210-05)	56	29	29	3	5.4%	10.3%	10.3%	
임차료(210-07)	656	591	591	356	54.3%	60.2%	60.2%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9	9	1	10.0%	11.1%	11.1%	
복리후생비(210-12)	4	3	3	1	25.0%	33.3%	33.3%	
일반용역비(210-14)	320	100	100	65	20.3%	65.0%	65.0%	
관리용역비(210-15)	73	67	67	20	27.4%	29.9%	29.9%	
기타운영비(210-16)	22	20	20	12	54.5%	60.0%	60.0%	
국내여비(220-01)	95	30	30	28	29.5%	93.3%	93.3%	
국외업무여비(220-02)	280	50	50	45	16.1%	90.0%	90.0%	
사업추진비(240-01)	53	29	29	24	45.3%	82.8%	82.8%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1	44	44	44	27.3%	100.0%	100.0%	
직책수행경비(250-02)	51	51	65	63	123.5%	123.5%	96.9%	일반수용비에서 14백만원 전용 증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1,300	50	50	35	2.7%	70.0%	70.0%	일반연구비→ 정책연구비 세목조정
고용부담금(320-09)	18	14	14	2	11.1%	14.3%	14.3%	
실시설계비(420-02)	-	20	20	18	-	90.0%	90.0%	
공사비(420-03)	200	180	180	164	82.0%	91.1%	91.1%	
자산취득비(430-01)	493	216	312	312	63.3%	144.4%	100.0%	일반수용비에서 96백만원 전용 증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지원단 운영 사업의 2025년 예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재정경제부가 최초로 요구한 예비비 규모는 54억 7,600만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현액(배정액)은 20억 6,100만원임. 더욱이 배정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15억 800만원에 불과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3.2%로 저조하였음.

특히, 연구용역비(260목)의 경우, 일반연구비(260-01)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 과정에서 정책연구비(260-02)로 세목조정하여 3,500만원만 집행하였으며, 일반수용비(210-01)의 경우, 3억 4,7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1억 1,000만원은 타 비목으로 전용하고 1억 2,100만원만 집행하는 데 그쳤음.

이처럼 요구액과 배정액 간의 차이가 크고, 최종 배정액 중에서도 26.1%(5억 3,800만원)나 불용이 발생[50]한 것은, 예산 요구 단계에서 지원단 신설에 따른 실소요와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상태로 과다하게 추계한 결과로 보임.

예산은 집행이 즉시 필요하고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적정 규모를 배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임. 특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51조제2항[51]에 따라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의 요건을 엄격히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예비비 배정 단계에서 집행 소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과다 배정을 방지하였더라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시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정 소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국가 재정의 총괄 부처로서 향후 신설조직에 대한 예비비를 요구·배정할 때에는 과다한 추계를 지양하고, 연내 추진 동향과 구체적인 지출 소요를 명확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비비 요구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50) 이월액도 1,500만원 발생함

51) **「국가재정법」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둘째, 재정경제부는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조직 신설 시 부처 간 철저한 기능 조율과 타당성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반의 국가 역량 결집과 부처 간 분절된 R&D 지원 체계 통합을 목적으로 2025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해 2025회계연도 중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무환경 공사비 1억 6,4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1,200만원 등 초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이미 2023년 10월부터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었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분야의 정책 수립,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장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는 점, 신설된 국가바이오위원회 내부에 기존 위원회와 영역이 겹치는 '바이오·헬스데이터 담당 협의체'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 기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구성 및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및 기능 중복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국회 등에서 두 기구 간의 정책 조율 혼선과 중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음.

결국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 방지 및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당초 2027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1년여 만인 2026년 3월, 두 조직을 합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로 통합·재편되었음.

[바이오 관련 조직 간 비교]

조직명	국가바이오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설립 목적	첨단바이오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응하여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고, 바이오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바이오헬스의 육성과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지원	바이오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근거 법령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총리
운영 기간	(당초)'24.11.~'27.6. (실제)'24.11.~'26.3.	(당초) 별도규정 없음 (실제)'23.10~'26.4	(당초)'26.3.~'30.6. (실제)'26.3~
구성	위원장(대통령) 및 민·관 위원 등 총 37명 -정부위원(당연직) 12명 -민간위원(위촉직) 24명	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관위원 등 총 29명 -정부위원(당연직) 12명 -민간위원(위촉직) 16명	위원장(국무총리) 및 민·관 위원 등 총 44명 -정부위원(당연직) 16명 -민간위원(위촉직) 27명

자료: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은 조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를 유지해야 하며 유사·중복된 임시조직을 난립시켜서는 아니 됨. 예비비 배정의 주무 부처였던 기획재정부가 사전 타당성 분석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비비를 활용하여 임시조직을 신설하고 1년 만에 통폐합한 것은 초기 시설 투자비와 행정력의 비효율을 야기하고 중복된 기능에 예산을 투입한 재정 운용 비효율 사례라고 볼 수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집행지침"이라 함)상 예비비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 과정에서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시급한 소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신설의 경우, 관련 규정 제정 시기 및 글로벌 바이오 패권 경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예비비 배정 사유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가 이미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년도 본예산 반영을 기다리지 못하고 대규모 예비비까지 사용해가며 신규 위원회를 신설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향후 이와 같은 재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신설에 앞서

부처 간 유사·중복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재정경제부는 예산집행지침의 비목별 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회계 통제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산집행지침상 비목별 용도에 따르면, 우편·전화료, 전기·가스·수도료 등 순수한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청사의 시설관리용역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 일체를 수개월 및 1년 이상 장기간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 민간업체 등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로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2025년도 사무실 관리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원단은 A업체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5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총 1억 842만원의 임차건물 관리비를 공공요금및제세(210-02) 비목에서 지출하였음.

이후 회계연도 말인 12월 관리비 1,546만원은 적정 비목인 관리용역비(210-15)로 지출하였음.

[사무실 관리비 집행내역]

집행내역	지출 기간	지출액	지출된 비목	적정 비목
사무실 관리비 (A업체)	25. 5월 ~ 11월 (7건)	1억 842만원	**공공요금및제세 (210-02)**	관리용역비 (210-15)
	25. 12월 (1건)	1,546만원	관리용역비 (210-15)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이 A업체 측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해당 관리비는 가스료, 수도료, 냉난방료 등 단순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기타 건물유지관리비용'을 포괄하여 전체 3.3m²당 일정한 비율로 고정 청구되는 전형적인 시설관리 대행 용역의 성격을 띠고 있음.

즉, 지원단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한 사무실 관리비는 예산집행지침상 관리용역비(210-15) 비목으로 집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은 7개월 동안 이를 공공요금

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특히, 연말인 12월에 이르러서야 오류를 인지하고 비목을 변경하여 지출한 것은 지원단의 회계 처리 및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예산 집행 전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성격을 예산집행지침과 대조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등 예산이 적정한 비목으로 지출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 정책연구비의 연내 집행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 관리 개선 (국제조세협력, 국내조세협력, 세제실)

< 현 황 >

「국제조세협력」은 WTO·DDO 협상, APTA 상임위원회, FTA 협상 등의 국제협상, OECD·UN 등 조세 관련 국제회의 및 조세조약 협상 등을 지원함으로써 증가하는 국제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6억 1,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전용(감)하고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내조세협력」은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조세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9억 3,5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전년도에서 이월받고 3,500만원을 전용(감)하여 이 중 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500만원을 이월하고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제조세협력사업, 국내조세협력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조세협력 (2131-301)	1,610	1,610	-	△150	-	1,461	1,147	117	197	1,334
- 정책연구비 (260-02)	185	185	-	-	-	185	45	117	23	100
국내조세협력 (2131-308)	935	935	40	△35	-	940	854	35	52	883
- 정책연구비 (260-02)	70	70	40	-	-	110	75	35	0	50

한편, 정책연구비 예산(260-02목)은 정책개발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집행되는 예산임.

이 예산을 통해 수행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여 조세제도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검토의견 >

「국제조세협력」과 「국내조세협력」 정책연구과제 5건 중 3건의 계약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정책연구비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된바, 정책연구비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과제의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국제조세협력」 세부사업의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은 1억 8,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300만원이 불용되었음.

「국내조세협력」 세부사업의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은 7,000만원이고 전년도로부터 4,0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이 중 7,5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각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정책연구비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국제조세협력」 세부사업의 정책연구과제 3건 중 2건이 이월되었고, 「국내조세협력」 세부사업의 정책연구과제 2건 중 1건이 이월되는 한편 전년도 1건이 2025년으로 이월됨.

[2025회계연도 국제조세협력사업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관세 징수 및 통관 질서 확보를 위한 제재 체계 연구	185	77	-	77	2025.11.1.- 2026.4.30.	법무법인 (유한) 광장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추가·변경사항 법제화 연구		40	-	40	2025.7.14.- 2026.3.31	김·장 법률연구소
조세조약 제·개정을 위한 양자간 국제조세협의체 운영		45	45	-	2025.6.26.- 2025.9.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합계	185	162	45	117		

[2025회계연도 국내조세협력사업 정책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예산현액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조법 개정안 마련	40 (전년이월)	40	40	-	2024.12.9.- 2025.4.30.	법무법인 율촌, 삼정회계법인
의무보고제도의 국제적 현황 및 제도 정합성 연구	70	35	-	35	2025.9.10.- 2026.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디지털 광고플랫폼 수수료 소득 과세에 대한 연구		35	35	-	2025.6.23.- 2025.10.2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합계	110	110	75	35		

2026년으로 이월된 정책연구과제 3건의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체결이 각각 하반기인 7월, 9월, 11월에 이루어지면서 계약 종료기한이 다음연도로 늦춰지고 정책연구비 예산도 연내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됨.

예산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52]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 발주를 지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53]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정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가 다음 연도로 지연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시 활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연구성과의 실효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연구용역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예산 이월의 반복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재정경제부에서는 하반기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 및 용역 관련 주제의 논의 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연구 일정이 늦춰질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11월 계약체결 사례처럼 연구과제의 착수 시점이 과도하게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관리가 요구됨.

따라서 용역 관련 주제와 연구자 선정, 계약행정 처리 등의 연구 일정 수립 및 진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능한 한 연초에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고 연내에 정책연구비를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5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53)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5.1, p.9.

(8)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에 대한 면밀한 계획 수립에 기반한 사업 추진 필요(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세제실)

< 현 황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또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 심층적·중장기적 조세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개혁추진단의 운영에 대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억 5,200만원이고 이 중 1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2131-310)	273	273	79	6 △6	-	352	168	-	184	74
- 일반수용비 (210-01)	50	50	-	△2	-	48	26	-	22	13
- 특근매식비 (210-05)	3	3	-	1	-	4	4	-	-	3
- 임차료 (210-07)	4	4	-	1	-	5	5	-	-	4
- 일반용역비 (210-14)	109	109	-	△4	-	105	20	-	85	15
- 기타운영비 (210-16)	2	2	-	4	-	6	6	-	-	1
- 국내여비 (220-01)	10	10	-	-	-	10	8	-	2	10
- 사업추진비 (240-01)	10	10	-	-	-	10	10	-	-	1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0	10	-	-	-	10	10	-	-	10
- 일반연구비 (260-01)	75	75	79	-	-	154	79	-	75	8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예산액 5,000만원 중 200만원을 세목조정(감)하고 2,600만원을 집행하여 2,200만원을 불용하였고, 일반용역비 예산액 1억 900만원 중 400만원을 세목조정(감)하고 2,000만원을 집행하여 8,5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일반연구비 예산액

7,5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 7,900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불용시키는 등,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예산의 불용률이 높게 나타남.

< 검토의견 >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의 불용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편성·집행이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조세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23년 2월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속세, 보유세 등 관련한 세제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계부처 합동 전담 조직으로, 당초 2025년 3월까지가 사업기한이었으나 두 차례 연장을 통해 2028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

[조세개혁추진단 근거 및 구성 등]

구 분	예산액
설치 근거	「조세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23.2.제정) (이하 “훈령”)
업 무	<훈령 제2조> - 조세제도 개편*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 조세제도 개편 관련 홍보 및 여론 수렴, 국내외 동향 점검·분석,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 조세제도 개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중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편 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 제고 4. 그 밖에 조세개혁 관련 국정 현안과 관련한 사항
조 직	재경부·행안부·국세청 등 세제·세정 관련 부처로 구성 - 1단장, 2팀(총괄기획팀, 보유세개편팀)
사업기간	2023.2. - 2028.3. * 최초 설치 시 사업기한 2025.3.에서 2차례 연장(2025.3. → 2026.3. → 2028.3.)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3년 추진단 설치 후 추진한 세제개편 과제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연계방안이며 각각 추진단 내 상속개편팀(현 총괄기획팀), 보유세개편팀에서 담당함.

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보유세 연계 등의 세제개편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여론조사 실시, 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2025년에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조세개혁추진단 사업추진실적]

연 도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
2023	- 상속세·유산취득세 전문가 간담회 추진 및 해외사례 연구 *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22.10월~'23.12월) * 국가 간 상속세제 차이에 대한 연구(5월~12월) - 보유세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 보유세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편 필요성 및 향후 개편방안 연구('23.7월~'24.12월)
2024	- 유산취득세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11월) 개최 및 추가 연구용역 * 신탁에 대한 외국 상속·증여세 제도 연구(2월~12월)
2025	- 유산취득세 전환 대국민 여론조사(2월~3월) 실시 및 공청회(4월) 개최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5월)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이처럼 추진단은 2023년 2월 예비비 편성으로 신설된 후 당초 약 2년이었던 사업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어 2028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2025년도까지 3년간 예산 집행률이 매년 50%를 넘지 못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	-	-	5.74	1,387	1,387	119	-	8.6	50	1,218
2024	736	736	50	-	-	786	259	35.2	33.0	79	448
2025	273	273	79	6 △6	-	352	168	61.5	47.7	-	184
2026	74	74	-	-	-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2025년 동 사업의 불용액은 1억 8,400만원(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2.3%)이며 주로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의 불용에서 비롯됨.

[2025회계연도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2131-310)	273	273	79	6 △6	-	352	168	-	184	74
- 일반수용비 (210-01)	50	50	-	△2	-	48	26	-	22	13
- 일반용역비 (210-14)	109	109	-	△4	-	105	20	-	85	15
- 일반연구비 (260-01)	75	75	79	-	-	154	79	-	75	8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 자료

각목명세서에 따른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예산의 편성내역은 광고홍보료, 홍보영상 제작 등인데 재정경제부에서는 기관 자체 유튜브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등에 따라 홍보비 미집행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여론조사 등을 위한 비용이 편성된 일반연구비 예산의 경우 국회의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경과 등에 따라 전년도에서 이월된 여론조사 예산액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연도의 일반연구비가 불용되었다고 설명함.

[조세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일반연구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편성 내역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불용 사유
일반수용비	50	전문가 수당	6	-	26	홍보영상 송출 방식 변경 등 홍보비 일부 미집행 * (기존) 상업 방송·유튜브 등 매체 활용 → (변경) 기관 자체 유튜브 송출
		소모품비,인쇄비,업무택시비 등	11			
		광고,홍보료	33			
일반용역비	109	개정세법 홍보영상 제작	34	-	20	
		공청회/토론회 행사 개최	75			
일반연구비	75	국민 대상,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75	79	79	국회의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경과 등 정책 상황을 고려 전년도 일반연구비 집행 시기 조정

자료: 재정경제부 각목명세서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하지만 국회 논의 경과 등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환경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지면서 상당 규모의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정책 홍보 등 추진단이 계획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추진단의 사업성과 측면에서도 조세제도 개편 과제 중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제외하면 보유세 개편 등 일부 과제들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개편안 마련 등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보임.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 당시와 다른 상황 변경을 이유로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한 일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의 상당액이 불용되는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추진단은 특정 조세제도 개편 과제의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운영기간 연장에 상응하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재정경제부는 추진단의 사업 추진 일정과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연례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간 괴리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 및 당초 계획에 맞는 충실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필요 (국유재산관리, 국고국)

< 현 황 >

「국유재산관리」 사업은 국유재산관리 업무 관련 운영경비, 국유재산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 국유재산 관련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은 6억 2,100만원으로, 이 중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00만원을 이월하였고, 3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유재산특례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 2025년 예산현액 6,500만원 중 6,480만원을 집행하였고, 2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유재산관리 (2234-302)	621	621	-	-	-	621	217	9	395	568
- 국유재산관리 지원	226	226	-	-	-	226	111.7	9	105.3	226
- 국유재산관리	292	292	-	-	-	292	9.1	-	282.9	239
- 국유재산협력	38	38	-	-	-	38	31.3	-	6.7	38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65**	**65**	**-**	**-**	**-**	**65**	**64.8**	**-**	**0.2**	**65**

< 검토의견 >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보고서에 구체적인 평가 점수나 존치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존치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유재산특례의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타당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4].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제도는 국유재산특례 및 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특례는 정리하되 필요한 특례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2022년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국유재산특례에 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존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5년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특례에 대하여 존치평가를 실시하여 이 중 10개 특례는 존치를, 5개 특례는 조건부 존치를 결정하였고, 폐지 결정된 특례는 없음.

조건부 존치 결정된 특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

54)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특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및 제48조에 따른 실증기업 등에 대한 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특례로, 특례 활용실적이 전무하나 관련 사업 또는 정부정책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존치로 판정하였음.

[2025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실시 결과]

연번	소관 부처	근거 법률	최종 결과	비고
1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7조	존치	
2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조건부 존치	미운용 특례
3	환경부	「국립공원공단법」 제16조	존치	
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6	존치	
5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조건부 존치	미운용 특례
6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존치	
7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존치	
8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존치	
9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존치	
10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조건부 존치	미운용 특례
11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8조	조건부 존치	미운용 특례
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존치	
13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	존치	
1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1조	존치	
15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조건부 존치	미운용 특례

주: 부처명은 존치평가 실시 당시의 명칭임
자료: 재정경제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재정경제부훈령) [별표]는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의 평가지표를 효과성(50점)과 타당성(50점)으로 구분하고, 각 지표별로 세 가지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지표 및 평가내용]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내용
효과성 (50)	목적달성도 (10)	- 특례가 당초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활용계획(20) 및 실적(10)	- 최근 3년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운영 하였는지 여부 및 활용실적 - 향후 3년간 특례 활용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특례의 활용 가능성 평가
	특례운용 관리의 적절성(10)	- 특례 운영실태점검 결과 등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특례 소관 부처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타당성 (50)	정부정책·법령상 필요성 (30)	- 정부정책, 특별법 등 예외적으로 특례지출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시 현재 상황에서도 특례지출 법적 목적이 타당한지 여부
	특례지출 규모의 적정성(10)	- 재정지출, 세제지원 등 다른 지원수단과 비교 시 지원방법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관련 지원시책 간 비교(10)	- 국유재산특례 지원 대상 및 목적 고려 시 국유재산특례를 통한 지원의 적절성 - 특례를 폐지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 검토

자료: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운용지침」 [별표]

그런데 2025년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각 특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내용과 존치여부에 대한 결론은 서술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기준별 점수와 존치여부의 결정 기준이 되는 점수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특례 간 평가결과의 비교나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투명성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사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 종합 평가결과

□ 본 특례는 조건부 존치를 권고함

○(조건부 존치 주요 근거)

- 특례지원의 목적이 되는 지원사업의 성과는 인정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유재산특례지원은 대상사업의 성과와 관계없이 활용실적이 없으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이 매우 부족함
- 국유재산특례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치를 하기 위한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해당 국유재산특례가 활용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일자리지원사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활용성은 활용실적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향후 정책의 추진과 제도의 운영이 갖는 중요성 및 향후 사업추진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존치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개선사항)

○ 국유재산특례 활용실적이 전무한 이유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들의 특례지원신청이 없었다는 점이 소명되지만, 사업현장에서 지원신청이 없다는 것은 지원시책으로서 효과성이 부족하여 활용성이 없다는 근거가 되며,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처에서는 적극적인 특례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정비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국유재산특례의 존치를 위해서는 향후에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지원시책들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지원시책의 하나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결과」, p.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55] 및 동법 시행령[56]에서 존치평가의 결과를 재정경제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정성적 평가에 그치는 경우 존치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5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5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점검·평가 결과의 공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방안 검토 필요 등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공공정책국)

< 현 황 >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71억 8,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억 6,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4억 5,100만원임. 이 중 6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별로 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38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3,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 5,800만원임. 이 중 37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8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공운위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내역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4억 8,900만원으로, 이 중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2531-300)	7,187	264	-	-	7,451	6,761	296	394	6,982
-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3,827**	**131**	**-**	**-**	**3,958**	**3,724**	**128**	**106**	**3,767**
- 알리오 등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759	-	-	-	1,759	1,733	-	26	1,700
-공운위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489**	**-**	**-**	**-**	**489**	**342**	**-**	**147**	**513**
-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운영 및 공공기관 국제컨퍼런스	973	133	-	-	1,106	831	168	107	863
- 기타운영비	139	-	-	-	139	131	-	8	139

자료 :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재정경제부는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사업에 반복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 정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은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57]에 따르면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58]은 공공기관의 장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②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객헌장 등) ③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운영」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을 편성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고객만족도 조사 개요]

ㅇ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경부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 **조사 시행**

* 공기업 '99년, 준정부기관 '04년, 기타공공기관은 '05년부터 각각 실시

※【공운법 §13②】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국민인식도 조사)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 법·윤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의 인식 수준**에 대해 조사

* 공공기관 소재지(기초시/군/구) 기준

ㅇ **(대상 기관)** 대국민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주관 기관에 따라 **재경부 주관조사와 부처 주관조사로 구분*** 실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은 재경부 주관 조사로 실시하고, 기관의 특수성이 높거나 신규 지정기관 등은 부처주관 조사로 실시

- **(국민인식도 조사) 재경부주관 조사 대상 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ㅇ **(조사 방식)** 해당 **공공기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ㅇ **(조사기간) '26. 1. 12. ~ '26. 3. 11**

자료 : 재정경제부

그러나 최근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동 사업은 매년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3년도 이후에도 이월 규모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예산의 20~30% 수준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특히 이월 사유가 모두 '계약기간 미도래'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집행 지연이라기보다 사업 추진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1-2025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2021	263	-	235	100%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2	263	-	235	100%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3	263	164	71	30%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4	263	188	47	20%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2025	263	188	47	20%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자료 : 재정경제부

실제로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경영평가 반영 등의 절차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기본설계는 당해연도 하반기에 수행되나 실제 설문조사는 다음 연도 초에 실시되고, 조사 결과는 다시 당해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만족도조사의 연간 추진 절차 및 세부일정]

시기	업무	내용	비고
5~7월	기본계획 준비	▪ 제도 개편사항, 조사 대상 기관 등	
7~8월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하여 공운위 상정·의결 ▪ 확정된 기본계획을 각 부처·기관에 배포	
9~ 12월	기본설계자 선정 및 기본설계 실시 (조세연)	▪ 기본설계자 선정 ▪ 186개 기관별 조사사업 선정 ▪ 조사 대상사업별 가중치 부여 ▪ 모집단에 대한 표본 크기 설정	
1~ 3월	설문조사 실시	▪ 확정된 기본설계(안)에 따라 기관별 조사 실시	186개 기관, 표본 138,553 기간 : '26.1월 ~'26.3월
3~ 6월	조사결과 발표	▪ 조사 완료 이후 조사결과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경영공시 경평반영	▪ 조사결과 알리오 공시 ▪ 조사결과 경영평가 반영(계량, 0.5점)	

자료 : 재정경제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계약 또한 매년 10~11월경 체결되어 다음 연도 6월까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계약 체결일과 사업 완료일을 보면 모든 사업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근 수년간 발생한 이월이 단순한 집행상 문제가 아니라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회계연도를 초과하도록 구조화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 추진 일정 및 계약 이행 구조]

	체결일	착수일	완료일	수행 기간	주요단계별 일정
2021	'21.10. 6	'21.10. 6	'22.2.20	'21.10.6 ~'22.2.20	7 ~ 8월 - 고객만족도 기본계획 수립 9 ~ 12월 - 기본설계자 선정 및 기본설계 실시(기본설계자) 1 ~ 3월 - 설문조사 실시 3 ~ 6월 - 조사결과 발표 및 경평반영
2022	'22.11.14	'22.11.14	'23.6.30	'22.11.14 ~'23.6.30	
2023	'23.11. 8	'23.11. 8	'24.6.30	'23.11.8 ~'24.6.30	
2024	'24.10. 4	'24.10. 4	'25.6.30	'24.10.4 ~'25.6.30	
2025	'25.11.14	'25.11.14	'26.6.30	'25.11.14 ~'26.6.30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당해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기본설계와 설문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일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실제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최신 고객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최근 5년간 계약 현황을 보면 사업 수행기관은 모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동일하며 계약방식 또한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과업내용 역시 공공기관별 조사대상 사업 선정, 표본설계,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등 매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만족도조사 용역 계약 현황]

(단위: 원)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계약방식	과업내용
'21. 10.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4,906,810	수의계약	- 공공기관별 조사대상 사업영역 및 고객에 대한 정의 - 국민인식도 조사 대상 규모 및 방법 등 설계 - 고객만족도 조사 계약의 통합수행 - 사업별, 기관별 목표치 설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등
'22. 11.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5,026,360	수의계약	
'23. 11.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4,787,270	수의계약	
'24. 10.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5,026,360	수의계약	
'25. 11.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35,026,360	수의계약	

자료 : 재정경제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매년 단년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또는 다년도 계약이나 계속 계약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현재와 같은 사업 구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예산 집행과 실제 사업 수행기간 간 괴리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며, 동일한 사유에 따른 반복 이월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의 시의성 확보와 경영평가 활용 필요성을 고려하되, 조사 일정 조정뿐만 아니라 계약 방식 개선, 다년도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복적인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사업에 반복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 정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음.

공공정책국은 공공기관의 정책 방향 공유 및 경영혁신 사례 확산 등을 목적으로 「공운위 운영 및 공공기관 정책 워크숍」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개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4년도에도 집행률이 9.7%에 그치는 등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황임. 2025년도에는 일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불용률이 61.4%에 달하는 등 예산 집행 실적은 미흡한 수

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0-25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21년도	71,000	-	71,000	100
22년도	78,000	-	78,000	100
23년도	78,000	-	78,000	100
24년도	145,000	14,000	131,000	90.3
25년도	145,000	56,000	89,000	61.4

자료 : 재정경제부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동 사업에 대해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미개최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행사에 대해 필요성을 재고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2025년도부터 기존의 단일 기관장 중심 워크숍을 '정책 워크숍' 형태로 확대·개편하여 기관장뿐 아니라 이사, 실무자 등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공공기관 인공지능(AI) 혁신 및 활용 사례 공유 등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2025년도에는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장 워크숍, 공공기관 인공지능 대전환 워크숍 등 다수의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사업 실적 현황]

워크숍 명	일자	장소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	'25.8.28.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경인사연 연구기관장 워크숍	'25.10.20.	세종 국책연구단지
2025 공공기관 인공지능 대전환 워크숍	'25.10.28.	서울 누리꿈스퀘어

자료 : 재정경제부

다만, 이러한 사업 운영 방식의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용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이 실제 정책 수요 및 집행 가능성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 한편,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동 사업 예산(1억 4,500만원)이 전액 미반영되었다고 하는바,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을 종료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실제 정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지연 및 과다한 불용 부적절 (재정사업평가, 재정성과국)

< 현 황 >

「재정사업평가」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34억 6,200만원으로, 이 중 29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주요재정 사업의 성과를 심층분석·평가하여 제도 개선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8억 3,600만원으로, 이 중 4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재정사업평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정사업평가 (2644-300)	3,311	3311	116	35	-	3,462	2,928	90	444	5,229
- 재정사업 심층평가	**720**	**720**	**116**	**-**	**-**	**836**	**420**	**76**	**340**	**-**
- 재정사업성과관리	734	734	-	6	-	740	740	-	-	3,943
- 핵심재정사업성과관리	514	514	-	-	-	514	451	-	63	468
- 보조사업연장평가	533	533	-	-	-	533	533	-	-	-
- 기금 및 부담금 평가	453	453	-	-	-	453	453	-	-	-
- 재정사업성과관리 연구용역	100	100	-	105	-	205	168	14	23	100
-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비	257	257	-	△76	-	181	163	-	18	718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평가임.[59)]

59)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2025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예산은 6개 사업군에 대한 위탁용역비 6억원, 일반관리비 3,4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이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되었음. 예산을 출연받아 평가를 하는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임.

[2025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예산 편성 내역]

⑤ 재정사업 심층평가
: ('24) 688백만원 → ('25) 720백만원
- 주요재정 사업 운영 성과 심층분석·평가 실시

- 연구원 인건비 : 6,600천원 * 5명 = 33백만원
- 회의비 : 30천원 * 6개 사업군 * 5명 * 20회 = 18백만원
- 여비 및 인쇄비, 자문비 등 운영비 : 35백만원
- 위탁용역비 : 6개 사업군 * 100백만원 = 600백만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경비) * 5% = 34백만원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첫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가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 시 반영되어야 하나, 2025년에 완료된 심층평가는 예산안 요구 기한(5월 말) 이후인 6월에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각 부처에서 평가결과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예산안 요구 시 반영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향후 심층평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취지는 각 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환류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60] 기획재정부의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2024년 12월)도 이를 고려하여 심층평가를 2025년 1분기에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에 완료된 5건의 심층평가는 2024년 7월에 시작되어 예산요구서가 2025년 5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이미 제출된 후인 2025년 6월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발생했음.

[2025년에 완료된 재정사업심층평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평가 대상	평가 기간	평가기관	예산 집행액
1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2024.7. ~ 2025.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80 (2024년도 예산)
2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3	산학연-지역연계 사업군			
4	지방소멸대응기금			
5	산업단지 지원 사업군			

자료: 기획예산처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요구서가 이미 제출 완료된 2025년 7월 21일에 각 부처에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면서 8월 1일까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심층평가 이후 각 부처로부터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받는 것은 각 부처로 하여금 후속조치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여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지출성과 제고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예산안 요구서가 이미 제출된 시점에서 각 부처가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심층평가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

60)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19조(지출성과 제고방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다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국가재정법」 제9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재정관리점검단 등 대상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층평가 대상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에서는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후 속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층평가 관계부처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실적 및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시된 지출성과 제고방안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예를 들어,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심층평가에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득·취업자 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가 신규 사업이나 유사 사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이 있었으나, 정책제언과 달리 강원 외 폐광지역(보령, 화순, 문경)을 위한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었음.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심층평가에서는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인 체계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등급 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편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음. 그러나 정책제언과 달리 2026년에 등급이 세분화되면서 등급 간 최대 배분액 편차가 인구감소지역은 88억원에서 48억원으로 축소되고, 관심지역은 22억원에서 12억원으로 축소되었음.

산업단지 지원 사업군은 심층평가에서 구조고도화 사업(산업통상부 소관)과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교통부 소관)은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으나, 2026년 예산안에 사업 간 중복예산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은 확인되지 않음.

[2025년 완료 심층평가의 정책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	심층평가 정책제언	정책 반영 결과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득·취업자 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가 신규 사업이나 유사 사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	정책제언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 강원 외 폐광지역(보령, 화순, 문경) 예산 신규 반영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통합	정책제언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통합되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유인 체계를 제공하고, 미흡한 지방자치단체는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등급 간 배분액의 편차를 확대	정책제언과 달리 등급을 세분화하면서 등급 간 배분액 편차가 축소됨 ※ 등급 간 최대 편차 - 인구감소지역: (25년) 88억원 → (26년) 48억원 - 관심지역: (25년) 22억원 → (26년) 12억원

심층평가 대상 사업군	심층평가 정책제언	정책 반영 결과
산업단지 지원 사업군	구조고도화 사업(산업부)과 노후산단 재생사업(국토부)은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지출구조조정 필요	정책제언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 부처 간 중복예산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된 예산이 없음

이와 같이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예산요구 이후에 완료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가 예산안 편성 시 반영되기 어렵고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를 고려할 때, 기획예산처는 향후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조기에 완료하여 각 부처가 예산요구 시 심층평가 결과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에 개시된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제도개선 검토를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간에 보류되어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이 52.8%로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예산은 6개 사업군에 대한 평가를 위해 7억 2,000만원이 편성됐으나, 3개 사업군에 대한 평가만이 실시되어 3억 400만원이 집행되고 7,600만원이 이월되어,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률이 52.8%(집행액 및 이월액 3억 8,000만원/예산액 7억 2,000만원)로 저조하였음. 불용액은 총 3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7.2%임.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재정사업심층평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평가 대상	평가 기간	평가기관	예산액	예산 집행액
1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	2025.7 ~ 2026.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720	380 ('25년 집행 304, '26년 이월 76)
2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군				
3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상반기에 3개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에 신규과제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6월 경 '재정사업

통합평가’ 신설 등 성과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심층평가 과제 신규 선정도 보류되었기 때문임. 성과평가 개편방안은 2026년 초에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2025년 하반기에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3개 과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음.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한대로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는데, 제도개선 검토를 이유로 사업 추진을 보류하여 예산을 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임. 차년도에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당해연도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획예산처는 이와 같은 예산의 임의 불용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2)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계획의 실질적인 평가·분석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미래전략기획실)

< 현 황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경비를 지출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9억 9,700만원으로, 이 중 7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2711-300)	997	997	-	-	-	997	759	-	238	

* 2026년 예산은 과목구조 개편으로 다른 사업등과 통합되었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시계에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중기재정계획임. 2005년에 최초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전년도에 수립한 재량지출 및 통합재정수지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관리계획의 세부내용이 미흡하여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도 형식적으로 이루어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분석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7조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량지출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1]

61)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러한 관리계획 제출 의무는 2010년 5월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개정 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음. 개정 후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리계획'이 추가되었고, 재량지출의 '전망과 관리계획'이 신규로 추가되었음.

[국가재정법 개정 전 후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주요 사항 비교]

개정 전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재정규모증가율 <신 설> <신 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10. 5. 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전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일부개정)	개정 후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일부개정)
	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신 설>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6.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을 위와 같이 개정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62]을 살펴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전망치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재정운용의 관리계획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등 그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이 대안의 제안이유로 제시되어 있음.

그런데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분야별 재량지출 전망 및 관리계획(43페이지)에서는 분야별로 2029년 지출 전망과 주요 투자 영역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 관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분야별 재량지출 전망 및 관리계획 발췌]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을 제외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2025~2029년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약 3.4% 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65.2조원 → 2029년 74.7조원).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 및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어르신·아이 돌봄, 노인·장애인 일자리, 공공주택 공급 등 사업이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먼저 노동자 권익보장 및 산업전환 대응, 고용안전망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110만호

62)「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808268호)

	수준의 공적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그 외에도 노인, 장애인, 청년·청소년, 한부모,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AI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도 추진한다.
교육 분야	교육 분야의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2025~2029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2.8% 수준(2025년 19.8 → 2029년 22.2조원)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강화하고, 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및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을 전폭 지원한다. 또한 3~5세 단계적 무상보육·교육 실현 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원)생이 누구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자료: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췌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해야 함.[63]

그런데 당초에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량지출 등의 관리계획이 충분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실제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제출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년도 계획 대비 평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동 보고서에서 "2026년 예산안은 재량지출 효율화 및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약 27조원 수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인지 평가하기 어려움.

또한, 구조조정의 세부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당초 2026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예산을 감액하여 실질적인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의 종료로 자연 감

6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소된 예산액 등이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포함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움.[64]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상 관리계획 평가·분석 발췌]

Ⅳ. 관리계획 평가 · 분석

1. 지출 재구조화

□ **(지출 구조조정)** '26년 예산안은 **재량지출 효율화** 및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약 27조원 수준** 구조조정 추진

ㅇ **(재량지출) 사업비 중심** 지출 구조조정에 더해 연례적 행사·홍보비, 행정경비 등 **경상비**에 대해서도 **과감한 절감** 추진

- **(사업비)** 규모화·체계화를 통해 **성과 중심**으로 사업 재편, **민간·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정책여건 감안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 **(경상비)** 공공부문 **운영 효율화** 및 **지원 관행 재검토**를 통해 소규모·관행적 **경상비 지원 구조조정**

ㅇ **(의무지출) 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 현실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통한 지출 누수 최소화 등 **제도개선**

자료: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3페이지

그 외에도 보고서는 조세·재정지출 연계,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지출효율화와 재정제도 혁신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노력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분야별 주요 투자 영역을 제시한 전년도의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이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분석으로 토대로 개선방안을 향후 예산안 편성 등에 환류하기 어려움. 또한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연계

64) 실제로 2026년도 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에는 지출구조조정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과다산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내역 산출 시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실적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심사할 근거도 부족해짐. 결국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예측가능성이 약화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실질적인 재정관리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량지출 및 통합재정수지 관리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관리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3) 과다한 수의계약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 불이행 및 확정 예산의 임의 미집행 부적절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미래전략기획실)

< 현 황 >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는 국가 재정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재정전략 시책 수립 및 제도 연구와 분야별 지출요인·재정수요 도출 및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부문·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8억 9,700만원으로, 이 중 5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의 2025년 정책연구비 예산현액은 6억 7,500만원으로, 이 중 4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2712-301)	856	856	41	-	-	897	599	71	227	-
- 정책연구비	634	634	41	-	-	675	421	71	182	-

* 2026년 예산은 과목구조 개편으로 다른 사업등과 통합되었음

< 검토의견 >

첫째, 기획재정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정책연구용역 수행시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고, 이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2023년 4월 30일)하였으나,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의 정책연구비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어 국회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총 125건 중 1건만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124건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국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라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받았음. 그리고 해당 시정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 4월 30일에 “조치완료”라고 국회에 보고하였음.

[정책연구비 수의계약 체결 관련 2021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3.4.30)
(7) 정책연구 용역 경쟁입찰 및 결과공개 확대 필요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계약을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총 125건 중 1건만 경쟁입찰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124건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함 ○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완료한 정책연구용역 120건 중 80%가 넘는 101건을 비공개중임 [시정요구사항] ○ **기획재정부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제도개선	○ 정책연구용역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경쟁계약 및 연구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추진 - 예산집행심의회의 관리기능을 강화 - 경쟁입찰 용역에 대해 예산 우선배정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개율 확대 ○ 조치예정일 : 23년 1월 31일	**조치완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런데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의 정책연구비 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2025년에 추진된 정책연구 9건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음. 이 중 1건은 “2천만원 이하”인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외 8건은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음.

[2025년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정책연구비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 금액	낙찰액	수탁기관	계약 기간		
1	경기대응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연구	20	20	한국 재정학회	25.4 ~25.7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2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연구	40	40	한국 재정학회	25.4 ~25.7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3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운용 해외사례 조사	40	40	한국 개발연구원	25.7 ~26.3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4	재정정보 이용 행태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90	90	한국 재정정보원	25.9 ~25.12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5	재정수입 변동 요인 분석 연구	50	50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5.11. ~26.5.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6	재정위험 측정 및 관리방안 사례 연구	30	30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5.12 ~26.4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7	실버시대와 재정	44	44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25.3 ~25.10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8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48	48	한국 정책학회	25.11 ~26.4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9	재정지출효율화 과제 발굴 및 이행 기본방향 수립	100	100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25.11. ~26.2.	수의계약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자료: 기획예산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65]에 따르면 계약의 방법은

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함.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66]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에 관한 주요 연구용역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연구비를 집행했음.

또한, 기획재정부는 수의계약 과다 문제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과거에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비를 전부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향후 국회에서 심사 확정한 예산안대로 사업을 정상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은 그간 각각 평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종합비교 및 우선순위 검토 등에 따른 평가 결과 환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4년 8월 21일에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 제도인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2025년 3월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예산안에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사업 정책연구비(1억 8,000만원)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국회는 정부안대로 예산을 확정하였음.

[2025년도 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재정전략기획 시책수립 및 제도연구: (‘24) 197 → (’25) 380백만원, 183백만원 증액 - (요구)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운영을 위한 용역비 증액 요구 - (산출)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운영(180백만원)**, 재정분석 연구원 인건비(56백만원), 재정전략기획 제도연구(100백만원), 회의참석수당, 업무협의, 출장경비 등(44백만원)

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66) 기획재정부「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7 연구용역비(260목) 공통지침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② 국내외 재정협력: (‘24) 411→ (’25) 115백만원, △296백만원 감액

- (요구) 건전재정 기조 등을 감안, ’24년 대비 72.0% 감액 요구

  * 일반용역비 전액 감액: (’24년) 296백만원 → (’25요구) 0백만원

- (산출) 국내외 포럼 개최 회의 참석수당, 업무협의, 출장경비 등(115백만원)

③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24) 361→ (’25) 361백만원, 전년 동

- (요구) 지출한도 등을 고려해 전년수준 요구

- (산출) 정책연구비 354백만원(50백만원×6식+30백만원×1식+24백만원×1식+12개월×0.58백만원), 업무협의 7백만원

자료: 기획예산처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시범평가 결과 재정사업·조세특례가 독립적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중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미약하고, 지출 간 우열, 유사·중복 개선 등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통합평가의 실익 및 과도한 행정비용 등 고려 시 제도 정례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용역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예산 낭비 또는 법률 위배 등이 우려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임의로 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함.

또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지원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지출의 목표나 지원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러한 취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조세지출을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유사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67] 또한,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도 ‘조세지출예산과의

67)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복성 검토 여부'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통합평가 정례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효과 비교68)]

구분	조세지출	재정지출
시차	상대적으로 많음	상대적으로 적음
확실성	소비 투자 증대 불확실	상대적으로 확실
가역성	비가역적	복지지출은 비가역적
분배	악화 가능성	대상에 따라 차이
효율성	효율적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지속성	지속	일시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향후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⑤ 법 제14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책 목적과 대상,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감면 필요성에 대한 분석
2.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연도별 목표치 및 효율성·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3. 조세특례 존속으로 인한 예상 감면액, 유사 조세지출·세출예산 및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68) 박기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 한국재정학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 재인용

(14)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미래전략기획실)

< 현 황 >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은 국제기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아태재정협력체(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에서 추진하는 회의 참석 및 현장방문 지원 등을 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은 1억 2,100만원으로, 이 중 1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은 OECD·WB·IMF 등 국제기구 및 국내 연구기관 협력하여 선진 재정관리체계 발굴, 재정관리제도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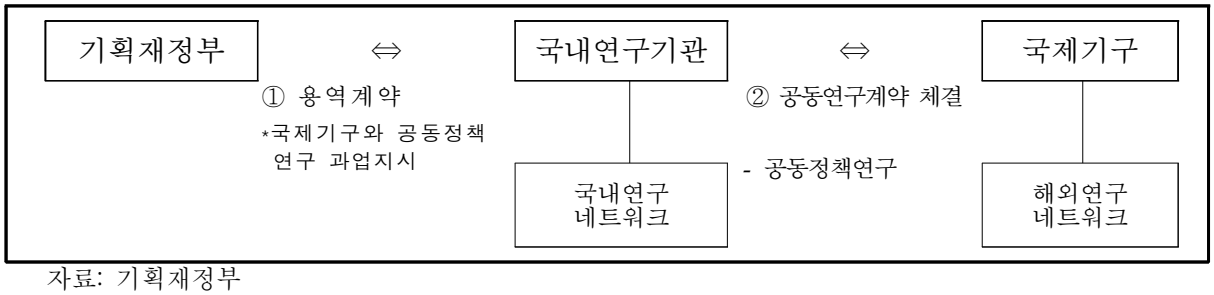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기구 공동연구 자문 (2714-300)	121	121	-	-	-	121	114	-	7	
-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	100	100	-	-	-	100	100	-	-	
- PEMNA 사업추진	21	21	-	-	-	21	14	-	7	

* 2026년 예산은 과목구조 개편으로 다른 사업등과 통합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사업 집행절차는 연구 대상과제 발굴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국내 연구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연구기관이 국제기구와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임.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 사업 집행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 검토의견 >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은 국내기관 간 연구를 수행한 후 개최하는 포럼에 국제기구 관계자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는데, 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직접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 예산 1억원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연구 주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재정관리 방안”이었고, 계약기간은 2025년 4월~12월이었음.

[2025년도 국제기구 공동연구 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비목	계약 내역					계약 유형	수의계약 사유
	계약명	발주 금액	낙찰액	수탁기관	계약 기간		
정책 연구비 (260-02)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재정관리 방안	100	100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5.4.~ 25.12.	수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 요구

자료: 기획예산처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정책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69)]

실제로 해당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 등 국내 연구기관들이 연구협의체를 이루어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제기구와 공동연구가

69) 과업지시서 상 연구내용

3. 연구 내용
① 디지털 재정원칙과 법제도 개선과제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 AI 도입 등 재정관리원칙 도출·분석
- 주요 선진국의 재정관리 부문 AI 도입 사례 분석
- 디지털화에 따른 재정지출 사업* 개선방향
* 정보화사업, 민관협력, 조달 등
② AI를 활용한 재정데이터 분석과 발전방안 등
- AI 활용 재정데이터 분석 성과와 효과성 제고 방안
- AI 활용 공공 조달데이터 활용 방안 등
③ AI를 활용한 재정관리사례와 재정혁신
- 디지털 세정(국세/관세), 국유재산관리, 조달시스템, dBrain+, 국고보조금
※ 민관연이 참여하는 ‘디지털 재정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산출물을 도출, 그 결과를 발표.홍보

이루어지지 않았음. 최종 연구결과보고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는 전부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 연구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2025년 11월 6일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기반 공공재정 관리(International Forum on AI-Powered Public Financial Management Reform)'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음. 그리고 해당 포럼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WB) 관계자 1인[70]과 OECD 관계자 1인[71]이 참석하여 공공재정 관리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발표하였음.

['인공지능기반 공공재정 관리' 포럼 세부 프로그램]

시간		구분	내 용
09:00 ~ 09:55	55′	개회사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환영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 한국재정정보원 부원장
		기조 발표	■ 재정분야 AI 활용 로드맵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허경선 센터장
		단체사진 촬영 & 휴식(Coffee Break)	
세션 1: 공공재정분야 AI 활용 방향과 글로벌 동향			
09:55 ~ 11:25	90′	발표	■ 스마트 공공재정을 위한 AI: 기회와 위험 (Harnessing AI for Smarter Public Finance: opportunities Risks, and Early Country Experiences) - **Oleksii Balabushko, Practice Manager, WB**
			■ AI를 활용한 공공재정 관리 (Us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 **Delphine Moretti, Senior Policy Analyst, OECD**
			■ 공공재정 분야 AI 전환 원칙 - 한국행정연구원 조세현 실장
		토론	■ 좌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 토론자: LG CNS 임은영 단장 국립경국대학교 송석현 교수
11:25 ~ 13:00	95′	오찬	
세션 2: 재정분야 AI 활용 연구			
13:00 ~ 14:10	70′	발표	■ 재정정책에 AI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주철 팀장
			■재정관리 관점의 AI 적용 아이디어 - 한국재정정보원 김명규 연구위원
			■ 재정사업 성과관리 AI 적용 PoC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충훈 센터장
		토론	■ 좌장: 박용주 전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 토론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욱준 교수 정보통신기술협회 곽준호 팀장
14:10 ~ 14:25	15′	휴식(Coffee Break)	

70) Oleksii Balabushko, Practice Manage
71) Delphine Moretti, Senior Policy Analyst

시간		구분	내 용
세션 3: 우리나라 재정분야 AI 활용 우수사례			
14:25 ~ 15:35	70′	발표	■ 차세대 나라장터 AI 적용 사례 - SK C&C 김병일 위원
			■ 국유재산 관리 분야 신기술 활용 사례 - 한국자산관리공사 김남혁 차장
			■ 디지털 전환(화폐, 신분증 등) 분야 신기술 적용 사례 - 한국조폐공사 오규호 과장
		토론	■ 좌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 ■ 토론자: 사회보장정보원 김성훈 본부장 전자통신연구원 이연희 센터장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공지능(AI) 활용 재정혁신, 국제사회 공유·확산), 2025. 11. 6.

동 사업은 국내 연구기관과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직접적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 목적예비비 증액시 실소요에 부합하는 사유 제출 필요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실)

< 현 황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따로 항목을 두어 마련된 경비를 말함.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72]에 따라 예산의 편성·확정 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당초 2.4조원이었으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4조원 증액되어 총 3.8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예비비는 1.2조원, 목적예비비는 2.6조원임. 2025년 예비비는 3조 8,000억원 중 3조 3,286억원이 지출결정되어 3조 1,55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376억원이 이월되었고 총 6,075억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결산현황]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예비비 (3069-300)	24,000	38,000	33,286	31,550	376	6,075	40,000	90,000
- 일반예비비	8,000	12,000	10,578	9,538	252	2,210	8,000	8,000
- 목적예비비	16,000	26,000	22,707	22,011	124	3,865	32,000	82,000

자료: 기획예산처

72)**「국가재정법」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기획예산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경 당시 목적예비비 증액 편성 사유를 실제 소요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개략적으로만 제시하는 등 증액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함으로써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어렵게 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예비비」는 2025년 당초 본예산에서 2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4,000억원 증액되어 총 3조 8,000억원이 편성되었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기획예산처(舊 기획재정부, 이하 동일)는 예비비를 1조 4,000억원(일반예비비 4,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원) 증액 편성하면서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보강하였다고 발표[73]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전체 예비비 중 재해대책비로 사용된 금액은 총 2,063억원으로, 2025년 당초 편성되어 있었던 목적예비비 규모인 1조 6,000억원의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단위: 억원)

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사항별 지출내역			
				일반예비비	재해대책비	구조조정 지역·업종 재정지원	기타
금액	38,000	33,286	31,550	9,538	2,063	0	19,949

자료: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이는 기획예산처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당시 예비비 증액 사유로 밝힌 재해대책비의 대부분의 지출이 실제로는 예비비가 아닌 개별 부처에 편성되어 있는 재난·재해대책비로 지출되었기 때문임.

개별 부처에 편성되어 있는 「재난·재해대책비」 사업의 2025년 결산 현황을 살펴보

73)「산불대응 및 통상·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 기획재정부, 2025.4.

면, 당초 본예산에는 총 9,27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로 당초 본예산 규모보다 큰 총 9,480억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2025년 총 2조 371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지출에는 이·전용등으로 증액된 2,368억원과 추가로 배정된 예비비는 393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개별 부처의 재난·재해대책비 집행 및 추경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2025년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B)	증액(B-A)	이·전용등	예비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20	1,020,020	660,000	47,948	39,306	1,107,273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274,000	174,000	134,386	-	279,014
환경부	재해대책비	50,000	162,000	112,000	32,934	-	163,852
	하천재해대책비	232,000	232,000	0	9,598	-	221,065
해수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25,000	27,000	2,000	1,286	-	41,266
농림부	재해대책비	160,000	160,000	0	10,606	-	224,594
합계		927,020	1,875,020	948,000	236,758	39,306	2,037,064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실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재해대책에 대해 개별 부처 예산이 존재하고 큰 규모로 증액 편성되어 있다는 점,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74]에 따른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도 1.5조원으로 설정되어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목적예비비 1조원 증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75].

물론 2025년 결산 결과 목적예비비 지출액은 총 2조 2,011억원으로 2025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에 비해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증액할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74) **「국가재정법」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75)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2025.4.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2025년 제1회 추경안 심사 당시 목적예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하여 재해대책만을 사유로 제시하였을 뿐, 다른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 목적예비비 증액 필요성을 부실하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목적예비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어렵게 한 문제가 있음.

실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괄사용명세서에 따르면 목적예비비는 대부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 및 부모급여·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2025회계연도 목적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억원)

구분	부처	사유	지출금액
목적예비비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5,965
	선관위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	4,537
	행안부	대통령 선거 관련 경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복구비 호우피해 복구 지원(재해대책비)	1,963
	법무부	국가배상금, 형사보상금 등	3,706
	복지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지원(재해대책비)	4,609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834
	과기정통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복구 및 이전 지원(재해대책비)	68
	국토부	주거급여지원	156
	기재부	정부조직개편 소요 경비	70
	기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비(재해대책비)	15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	위원회 운영 지원	87
	개보위	정보화시스템 복구(재해대책비)	2
	고용부	국가전산망 복구(재해대책비)	1
	합계		22,011

자료: 「2025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비비를 증액함에 있어 실제 소요에 부합하지 않게 증액 필요성을 부실하게 제출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예비비를 편성하거나 증액하는 경우 실제 소요에 맞게 그 편성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예비비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 한시조직 운영기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은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유지 및 해외투자자 대응을 위해 임명된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국제투자협력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76]에 따라 임명된 대외직명대사로, 2024년 12월 27일 국제금융협력대사가, 2025년 1월 6일 국제투자협력대사가 각각 임명되었음.

이에 한시 규정[77]인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양 대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외신인도 관리 및 투자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 설치되었음.

양 대사와 지원단은 2025년 연말에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2일 폐지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예비비로 4억 4,5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3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협력대사지원단 운영 (3131-314)	-	-	-	-	445	445	379	-	66	-

76)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제5조의2(대외직명의 지정)** 대통령은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명전권대사 또는 대사(大使)의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지정할 수 있다.

77)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10일 제정되어 2월 22일에 시행되었으며, 제정당시 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8월 21일까지였음.

< 검토의견 >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지원단은 규정상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 한시조직임에도 1년간의 운영을 전제로 예비비를 배정하였는데, 이후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당초 예비비 배정 규모 및 연장 운영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계엄사태 이후 국정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금융협력대사 및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지원단을 설치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는 점에서 예비비를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지원단은 훈령인 「자율기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동 훈령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78]에 근거하여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단의 연장 운영 자체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정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초 운영기간 종료 시점에서 당시의 정책 환경과 업무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지원단 운영기간을 처음부터 1년으로 상정하여 이에 필요한 예비비를 배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대외직명대사의 임기가 1년

7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었고 당시 국내 정치·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1년분의 예비비 확보가 필요하였다는 입장임.

다만, 지원단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한시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초 운영기간에 필요한 예비비를 편성·배정한 후 당시의 정책 환경과 업무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재원 소요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훈령을 개정하여 지원단의 운영기간을 당초 2025년 8월 21일에서 2026년 2월 2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음. 그러나 2025년 6월 대통령 취임 및 7월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등으로 지원단 설치 당시와 정책 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대외신인도 관리 및 투자협력 업무의 지속 필요성과 기존 조직을 통한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운영기간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운영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현안의 지속 여부, 정책 환경의 변화 및 기존 조직을 통한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장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원단의 관서업무추진비는 조직규모 및 운영기간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집행되었으므로, 실제 업무 참여 인원과 집행 범위 등을 고려하여 편성·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관서업무추진비(240-02)는 기관 간 업무협의,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임.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관서업무추진비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지원단 정원은 과장급 단장 이하 총 7명이며 실제 운영된 현원은 5명으로, 1인당 연평균 약 800만원의 관서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79)]

관서업무추진비는 조직별 업무 특성 및 대외협의 수요 등에 따라 집행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원 대비 집행액만으로 그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지원단이 현원 5명의 소규모 한시조직이라는 점과 국제금융국

79) 두 명의 대사를 제외한 지원단 실무인력만이 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나 산출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훈령에서 정한 지원단 소관 사무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다"는 입장임.

및 기획재정부 전체의 집행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원단이 소속된 국제금융국의 경우 2025년 현원 42명이 총 7,400만원의 관서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 1인당 연평균 집행액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5년 기획재정부 전체 역시 현원 1,085명이 총 27억 3,700만원을 집행하여 1인당 연평균 약 250만원 수준이었음. 이를 감안하면, 지원단의 현원 대비 관서업무추진비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임.

또한, 별도로 동 사업에 사업추진비(240-01) 7,000만원이 편성되어 이 중 5,700만원이 집행되었음. 사업추진비와 관서업무추진비는 각각의 편성 목적과 집행 범위가 상이하나[80], 지원단의 대외협의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두 비목에 걸쳐 집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비목의 편성 규모와 집행 범위가 적정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IR 후보지 검토, 대미 투자기업 관련 논의 등 서로 다른 명목으로 하루에 10여 차례 지급결의된 사례가 확인됨.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3일간 실제 집행한 내역을 하루에 일괄 지급결의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지급결의 시점과 실제 결제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결산 과정에서 개별 집행의 시기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일과 지급결의일이 다른 경우에도 개별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7건의 관서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됨. 재정경제부는 서로 다른 실무진이 각각 집행한 결과라는 입장이나, 관서업무추진비는 통상 조직 단위의 기관 운영경비로 집행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집행 형태는 일반적인 운영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에는 지원단의 인력 규모와 운영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참여 인원, 업무 범위 및 집행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서업무추진비의 편성

80) 사업추진비(240-01):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등
관서업무추진비(240-02):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규모와 범위를 보다 면밀히 산정하고, 개별 집행의 시기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 적정 규모 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규모 검토 필요 (국제금융센터보조,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제금융센터보조」 사업은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운용(EWS),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등 정부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금융센터의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21억 5,0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제금융센터보조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금융센터보조 (3132-302)	2,150	2,150	-	-	-	2,150	2,150	-	-	2,150

< 검토의견 >

국제금융센터는 300억원 이상의 운영기금을 적립·운용하면서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운영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제금융센터(이하 “센터”)는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내규인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센터 내에 운영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운영기금은 자산취득비, 인건비, 경상운영비 및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운영기금 규모는 약 314억원임.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 운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기금(연초)	30,963,114	30,727,969	31,377,665	31,113,341	31,061,018
(+) 출연(적립)주1)	-	900,000	-	-	-
(+) 이자수입주2)	504,855	353,696	439,676	651,677	1,167,249
(-) 목적사업 지출	740,000	604,000	704,000	704,000	790,000
소계	△235,145	649,696	△264,324	△52,323	377,249
운영기금(연말)	30,727,969	31,377,665	31,113,341	31,061,018	31,438,267

주1) 목적사업/수익사업에서 운영기금에 출연(적립)
주2) 당해연도 만기 해지 수령이자 총액

2025년 기준 센터의 예산은 총 129.2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이 21억 5천만원(16.6%) 지원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센터는 한국은행 지원금, 은행 등 정사원분담금 및 기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한편, 2026년 5월 현재 운영기금 규모는 약 323억 7천만원으로, 정기예금 163억 4천만원(50%), 연기금투자풀 100억원(31%), 발행어음 60억 3천만원(19%)으로 운용되고 있음. 재정경제부와 국제금융센터는 국회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81]를 반영하여 2026년 4월부터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81)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센터 운영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보유 자금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운영기금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센터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운영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센터는 정부 및 한국은행 지원금, 정사원분담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운영기금 규모는 2026년 5월 기준 약 324억원으로 연간 예산 약 129.2억원의 약 2.5배에 해당함. 그러나 센터는 운영기금의 적정 규모에 관한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재의 기금 규모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하여 센터는 연간 예산 부족분 약 7~8억원을 운영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재 수준의 기금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센터가 운영기금의 운용수익을 활용하여 부족한 운영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운용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 규모와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유하여야 할 적정 유보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금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센터는 300억원을 초과하는 운영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운용수익을 센터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 운영기금과 국고보조금은 각각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당한 규모의 자체 운영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의 자체재원 및 운영기금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국제금융센터는 센터의 연간 운영규모, 자체수입 및 운용수익, 중장기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정 기금 규모와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러한 검토 결과와 센터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8) 유사 한시조직의 연속 운영 및 업무추진비 편성·집행 개선 필요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국제금융국)

< 현 황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은 정부, 국부펀드, 연기금 등 타국 투자 관련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 효과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제투자협력단을 운영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8,600만원으로, 이 중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투자협력단 운영 (3135-309)	86	86	-	-	-	86	59	-	27	-

< 검토의견 >

국제투자협력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금융투자지원단에 이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투자협력단을 연속하여 한시조직으로 운영한 것은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한시조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국제투자협력단은 기획재정부훈령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직으로, 동 훈령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82]에 근거하여 운영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제투자협력단은 2024년 2월 22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운영되었음.

그런데 국제투자협력단의 전신인 '금융투자지원단' 역시 한시조직으로서 2023년 2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 1년간 운영되었음. 양 조직의 기능을 비교하면 외국 정부 및 투자기관과의 투자협력 체계 구축, 투자협력 네트워크 운영, 협력위원회 운영 등 핵심 기능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8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따로 두는 정원(이하 "임시정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시정원의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정원의 배정 및 운영 방식 등은 제4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10조,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6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임시정원은 운영기간 종료 시 소멸하며, 임시정원 소멸로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투자지원단과 국제투자협력단의 업무 비교]

금융투자지원단의 업무 (「자율기구 금융투자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제투자협력단의 업무 (「자율기구 국제투자협력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1.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정책수립 및 제도 등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관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 관계 구축 및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국부펀드 운용 현황 파악 및 관련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3. 투자제안의 발굴 및 전달 관련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홍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금융투자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UAE 투자협력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투자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UAE 투자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투자협력네트워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韓-UAE 고위급 투자협력 대화 등 협력채널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과의 금융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투자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국제투자협력단은 금융투자지원단의 기능을 계승·확대하여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뿐 아니라 주요국 국부펀드 및 투자기관과의 협력까지 담당하도록 기능을 확대하였으므로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임. 금융투자지원단은 UAE의 30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를 계기로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투자협력 지원을 위해 설치된 반면, 국제투자협력단은 기존 UAE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83] 다른 주요국과의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차이가 있다는 것임.

다만, 기존 UAE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는 금융투자지원단이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요국과의 투자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할 성격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금융투자지원단의 운영 종료 직후 국제투자협력단을 설치하여 유사한 기능을 계속 수행한 것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한시조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특정 업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

83) (기존) 산업은행(한국) - 무바달라(UAE)
('24.5월) 기획재정부·산업은행 + 국내공적투자기관(한국) - 기타 국부펀드 및 공기업(UAE)

사한 한시조직을 연속하여 설치·운영하기보다는 해당 업무의 성격과 지속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식 직제를 통해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기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투자협력단의 관서업무추진비는 조직 규모 및 실제 운영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집행되었으며, 실제 업무 참여 인원과 집행 범위 등을 고려하여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관서업무추진비(240-02)는 기관 간 업무협의,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임.

국제투자협력단의 2025년도 관서업무추진비는 82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국제투자협력단의 현원은 과장급 단장 이하 6명이고 실제 활동기간도 두 달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한 1인당 관서업무추진비는 약 960만원 수준임.[84] 이는 2025년 기획재정부 전체의 1인당 평균 관서업무추진비인 약 250만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수준임[85]. 또한 동 사업에는 관서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사업추진비 350만원도 편성되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국제투자협력단의 현원은 6명이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등 관련 부서 직원들도 함께 업무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관서업무추진비가 국제투자협력단 현원만을 대상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다만, 이러한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국제투자협력단 운영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관서업무추진비가 실제로는 국제금융국 내 관련 부서의 업무 수행에도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 당시 국제투자협력단의 조직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관서업무추진비의 편성 범위와 실제 집행 범위 간에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국제투자협력단의 인력 규모와 운영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참여 인원 및 집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서업무추진비의 편성 규모와 범위를 보다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음.

---

84) 국제투자협력단의 2025년 활동기간(2025.1.1.~2.21., 52일)을 기준으로,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액 820만원을 현원 6명으로 나눈 후 연간으로 환산함(820만원 ÷ 6명 ÷ 52일 × 365일 ≒ 959만원).

85) 2025년 기획재정부 전체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액 27억 3,700만원을 현원 1,085명으로 나누어 산정한 1인당 집행액은 약 252만원임(27억 3,700만원÷1,085명≒252만원).

(19) 예산 편성 시 기준환율 적용 오류에 따른 전용 발생 (경제협력기구활동/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대외경제국)

< 현 황 >

「경제협력기구활동」 사업은 GTI[86] 및 UNCTAD[87]에 대한 국제분담금을 납부하고 GTI 세미나 개최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임. 2025년 예산은 3억 7,900만원으로, 전용 감액 1,9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3억 6,0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사업은 광역두만개발계획(GTI)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해 한-UNDP[88] 신탁기금에 출연하려는 ODA 사업임. 2025년 예산은 8억 800만원으로, 전용 증액 1,9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억 2,7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경제협력기구활동/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협력기구활동 (3231-303)	379	379	-	△19	-	360	360	-	-	407
한-UNDP 신탁기금 (GTI) 출연 (3231-306)	808	808	-	19	-	827	827	-	-	828

86)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
87)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및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총회의 상설기관
88)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검토의견 >

2025년 정부 예산 편성 시 기준환율은 1,380원/$이었으나, 두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1,347원/$를 적용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국제부담금 예산이 과소 편성되었고, 그 결과 부족 재원을 정책연구비에서 충당함.

「경제협력기구활동」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정책연구비 1억 2,600만원 중 2,9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이 중 500만원은 GTI 국제분담금으로, 500만원은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국제부담금)로, 1,900만원은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세부사업의 국제부담금으로 각각 활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경제협력기구활동/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사업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및 비목	2025년					
		예산액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제협력기구활동	GTI 국제분담금 (국제부담금)	205	205	5	210	210	-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 (국제부담금)	48	48	5	53	53	-
	GTI 미래전략회의 (정책연구비)	126	126	△29	97	97	-
	소 계	379	379	△19	360	360	-
한-UNDP 신탁기금(GTI) 출연	한-UNDP 신탁기금 (국제부담금)	808	808	19	827	827	-

이는 UNCTAD 등 국제부담금 규모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증가한 영향도 있었으나(35,584달러 → 38,056달러), 정부 예산편성 기준환율인 1,380원/$이 아닌 1,347원/$를 적용하여 국제부담금 예산을 과소 편성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었음.

[국제부담금 산출근거 및 실제 집행 내역]

내 역	예산 편성	실제 집행
GTI 국제분담금	2억 500만원 - $152,500 * **1,347원/$**	2억 1,000만원 - $152,500 * **1,380원/$**
UNCTAD 등 행정지원경비	4,800만원 - $35,584 * **1,347원/$**	5,300만원 - $38,055.87 * **1,380원/$**
한-UNDP 신탁기금	8억 800만원 - $600,000 * **1,347원/$**	8억 2,700만원 - $599,275 * **1,380원/$**

두 사업의 국제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예산 환전제도 적용 대상으로, 2025년 예산 편성 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환율 $1,380원/$를 고정적으로 적용받게 되므로 실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89] 따라서 이번 사례는 환율 변동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준환율을 잘못 적용한 단순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국제부담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됨에 따라 부족 재원 약 2,900만원을 정책연구비에서 전용하여 충당하였으며, 그 결과 정책연구비가 당초 1억 2,6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축소되어 집행되었음.[90]

따라서 향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기준환율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단순한 편성 오류로 인해 사업 간 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89) 외국환평형기금에서 환율변동 위험을 대신 부담하여 $1,380원/$의 고정된 환율로 교환해주는 환헤징 구조를 취하고 있음.
90) 연구 내용은 국가안보 및 외교상 사유로 공개되지 않음.

(20) 추가경정예산 집행 지연 및 출자 규모 산정의 정확성 제고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대외경제국)

< 현 황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위한 대출, 보증 및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2025년 본예산 규모는 1,000억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000억원이 되었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수출입은행출자 (금융시장안정화) (3236-302)	100,000	300,000	-	-	-	300,000	300,000	-	-	-

2025년 본예산 1,000억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금이며, 추가경정예산 2,000억원은 미국의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등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총 1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을 추가 출자한 것임.

참고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10조원은 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6조원), ②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3조원), ③ 수출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1조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 증액 규모는 추가자금 공급 규모 10조원에 예상손실률 4.1%와 정부 분담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91]

91) 추가자금 공급목표 10조원 × 손실률 4.1% × 정부 분담 50% = 약 2,000억원

[수출입은행 위기 대응자금 10조원 공급 계획]

①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신설: 6조원

구분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규모	3조원	3조원
대상	첨단・혁신산업, 철강・석화 등 위기주력산업, 수출다변화 기업, 新통상・무역질서 피해 기업 등	
주요 내용	1) 금리인하 최대 2.0%p 2) 신용등급 하락에도 추가가산금리 미부과 3) 통상대응, 시장개척, ESG대응 컨설팅 등	수출실적 기반의 수출성장자금 지원

②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3조원

- (대상) 해외 진출 대기업에 납품 또는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요내용) 금리차감 확대 : 최대 0.3 → 1.0%p

③ 수출다변화 지원 프로그램 신규추진: 1조원

- (대상) 신규 수출시장 개척 등 다변화 추진 기업 등
- (주요내용) 대출금리 : 최대 △0.4%p, 대출한도 : 최대 +10%p

< 검토의견 >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기업 지원을 위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이 약 7개월 지연되었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목적은 미국의 통상환경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음.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예산 편성 이후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중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당초 2025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절차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는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추경 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긴급 지원이 약 7개월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정책효과도 상당 부분 지연되었음.

[여신 공급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도입	'25년			'26.4월말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중소·중견 (금리우대)	'25.4월	3.0	3.8	127%	7.0확대	2.5
	대기업	'25.11월	3.0	0.2	7%	3.0	2.0
상생금융 프로그램			3.0	3.0	100%	3.5확대	0.8
수출다변화 프로그램			1.0	0.8	80%	1.0	0.6
합 계(달성률)		-	10.0	7.8	78%	14.5	5.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는 2014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대기업 지원을 재개하기 위하여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92]

92) 감사원은 2014년 11월, 한국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의 시장보완 기능을 벗어나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일반여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고 판단하고, 포괄수출금융 및 외국법인 사업자금대출 등 시중은행 취급가능 여신을 단계적으로 축소·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정부 내부의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제출 전에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정리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확정 직후에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음. 정부 내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결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임에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저해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대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었음. 따라서 대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절차적 문제가 반복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에는 긴급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내부 절차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둘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는 예상 BIS 비율을 근거로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규모 출자를 실시하였으나, 실제 BIS 비율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는바, 향후 출자 규모 산정 시 보다 엄밀한 추계가 요구됨.

정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연말 15.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정책금융 확대와 환율 변동 등에 대비한 완충자본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예상 BIS 비율 15.0%가 수출입은행의 자체관리목표 13.0%를 크게 상회한다는 점, 유사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2024년 말 기준 BIS 비율이 13.90%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금공급 확대에 따른 BIS 비율 하락분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93)]

그런데 2025년 말 수출입은행의 실제 BIS 비율은 17.7%로 나타나 당초 전망을

93) 「202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2025.4.)」, 기획재정위원회, pp.28~32.

크게 상회하였음. 이는 한화오션 영구채 평가이익 증가('24년말 약 2.3조원 → '25년말 약 6.6조원)와 충당금 환입 등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 실현(1.69조원) 등에 따른 것으로, 당시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일부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임.

다만, 이러한 예측 곤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BIS 비율이 정부 전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 만큼, 출자 규모 산정 과정에서 주요 재무지표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특히 예상 당기순이익은 최근 5개년 평균(5,478억원)을 기초로 단순 추정하였는데, 조선업 경기 회복 등 주요 산업 여건의 변화와 보유자산 가치의 변동 가능성 등을 보다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

정부 출자금은 일단 투입되면 사후적으로 회수하기 사실상 어려운 재원이라는 점에서, 필요 이상의 출자가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재정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출자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는 수출입은행의 자본적정성 전망과 정책금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음.

(21) 범부처 공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업체계 미흡 등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경제공급망기획관)

< 현 황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은 공급망 핵심품목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중요 민감정보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주도로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18억 7,400만원으로, 이 중 1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월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구축 일정이 일부 지연되었기 때문임.[94)]

[2025회계연도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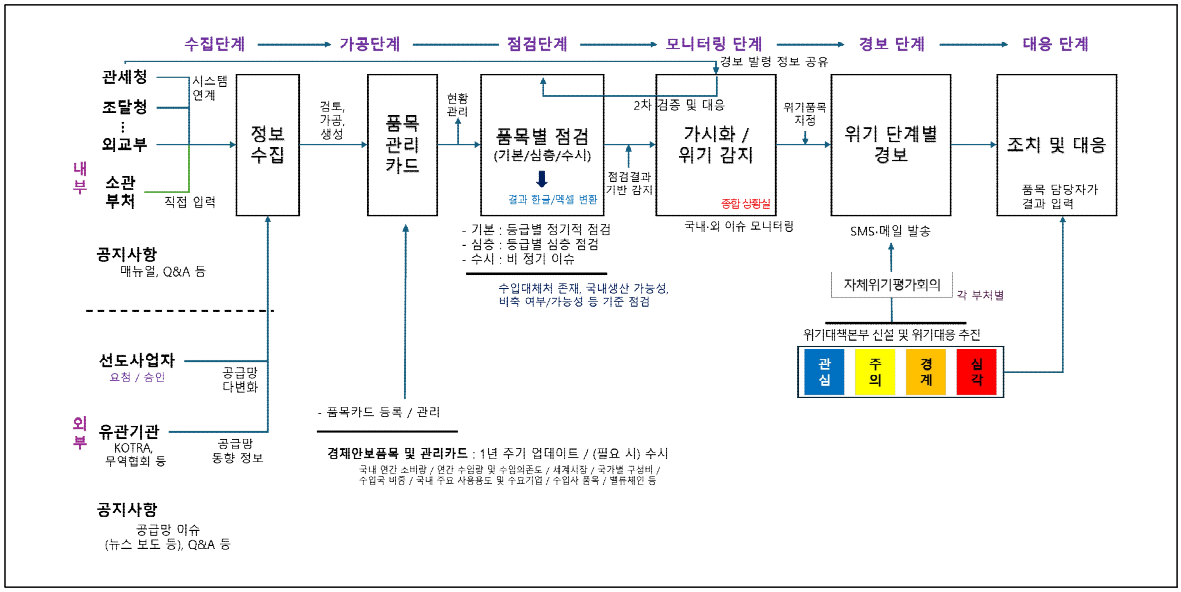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3240-302)	1,874	1,874	-	-	-	1,874	1,435	405	34	492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1,374	1,374	-	-	-	1,374	999	375	-	152
-공급망안정화 발전방안 연구 등	500	500	-	-	-	500	436	30	33	340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수기(이메일) 제출 중심의 공급망 점검·대응 체계를 공급망 관련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전파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2026년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인 1단계 전산화 과정을 거쳐, 제공 정보 및 이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고(2단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도입하여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탐지·경보하도록 하는 것(3단계)을 목표로 하고 있음.

94) (당초) 2025년 6월 ~ 2026년 1월 → (변경) 2025년 6월 ~ 2026년 6월

[시스템 구조도]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당 시스템은 범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인 만큼 관계부처의 참여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스템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은 재정경제부 주도로 산업통상부, 외교부, 조달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수기 또는 이메일 방식으로 제출받던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시스템은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정부 플랫폼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2025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루어졌으며,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4년) 및 시행계획(2025년)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고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산업통상부, 외교부, 조달청, 관세청 등과 개별 협의를 지속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업체계가 운영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범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공동으로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부는 2024년부터 자체 소재·부품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망 안정품목 약 200여 개를 대상으로 품목별 정량·정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산업통상부 시스템과의 연계를 제안하였으나, 산업통상부는 기업 구매정보 등 공유가 어려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스템 연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다만,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목적을 고려할 때, 구축 초기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 연계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였다면 범정부 시스템과 부처별 시스템 간 연계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 단계에서는 관계부처 담당자가 공급망 관련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에 따라 기존의 수기·이메일 제출 방식이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전환되는 효과는 있으나, 관계부처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특히 범부처 공동 활용 시스템은 관계부처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스템 활용의 전제가 되는 만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스템의 활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공유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 입력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참여를 확보하여 범부처 공동시스템으로서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화사업에 일반 정책연구과제를 함께 편성한 것은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연구성과도 모두 비공개로 관리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정보화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일반 사업과 구분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의무 등 별도의 절차와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비구입비, 장비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동 세부사업에는 공급망안정화 발전방안 연구 등 정책연구용역 예산 5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연구는 시스템 구축·운영 자체보다는 공급망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보화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지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동일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2026년부터 공급망 정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 사업이 별도로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정책연구 예산은 정보화사업과 분리하여 해당 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사업 목적과 예산 편성체계 측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또한, 2025년에 기획재정부는 동 예산으로 총 6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연구결과를 모두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연구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연구용역 수행내역]

(단위: 천원)

과제명	용역수행자	용역기간	소요예산	비고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위한 정량지표 분석	산업연구원	2025.2.14.~2025.5.11.	20	비공개
한·중 공급망 협력분야 발굴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2025.2.21.~2025.8.20.	75	비공개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8.7.~2025.12.26.	120	비공개
예비 경제안보품목 발굴 및 모니터링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5.9.18.~2025.12.31.	100	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5.9.10.~2025.11.30.	40	비공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지원 기본법 통계작성 및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산업연구원	2025.9.8.~2025.12.31.	100	비공개

자료: 재정경제부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경제안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제안보품목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다만, 연구내용의 성격과 비공개 필요성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연구용역 전체를 비공개로 관리하는 경우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수행한 연구성과의 활용 및 객관적인 검증이 제한될 수 있음.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등 경제안보품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구과제까지 전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음. 예를 들어, 연구보고서에 경제안보품목 관련 정보 등 공개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등 연구내용의 성격에 따라 공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정보화사업에 포함되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시스템 구축·운영 등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관리하고,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경제 안보상 비공개가 필요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개 가능한 연구내용은 공개하는 등 연구성과의 활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2)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 부적절 등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대변인실)

< 현 황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사업은 대변인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8억 8,500만원에 이·전용(증)된 4,3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2,800만원으로, 이 중 9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7111-255)	885	885	-	43	-	928	907	-	21	-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연말에 세목변경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를 추진하였고, 이를 지출하기 위하여 세목변경을 하기 전에 이미 그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을 하여 역시 「국고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동 사업에서 12월 세목변경을 통하여 일반용역비를 2,300만원 증액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용역비는 당초 편성되어 있었던 2,200만원에서 2배 가량 증액된 4,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 중 4,300만원을 집행, 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일반용역비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목변경 ('25.12.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 (7111-255)	일반수용비 (210-01)	6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 (대변인) (7111-255)	일반용역비 (220-14)	일반용역비 부족분 충당
세목변경 ('25.12.11.)			17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대변인)	885	885	-	43	-	928	907	-	21	-
- 일반용역비 (210-14)	22	22	-	23	-	45	43	-	2	-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舊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2026년 조직 분리를 앞두고 그간의 기획재정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대변인실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하여 세목변경을 통하여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다고 설명함.

[2025년 증액된 일반용역비를 통하여 집행한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건명	계약상대자	계약액	계약기간	집행액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행사	㈜엠앤씨커뮤니케이션	17	25.12.23	17
2025년 대변인실 워크숍	EID컨설팅	10	25.11.25~ 25.11.26	6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행사나 대변인실 워크숍의 경우 연말에 세목변경을 통하여 필수적으로 추진하여야 할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사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대변인실 워크숍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역시 세목변경일인 2025년 12월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세목변경 전에 각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한 「국고금관리법」 제20조[95]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

95)**「국고금관리법」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이·전용 등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전용 등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대변인실 워크숍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련 비용을 두 개의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지출함으로써 국회가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예산을 의결하는 취지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며,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전술한 '2025년 대변인실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관련 비용을 동 사업과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에서 나누어 지출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조직 소통 및 혁신 등을 통해 업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내 실국의 워크숍 비용은 해당 사업에서 지출되고 있음.

[2025년 대변인실 워크숍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건명	계약상대자	계약액	계약기간	집행액
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025년 대변인실 워크숍	EID컨설팅	10	25.11.25~25.11.26	3
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					6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1건의 워크숍에 대한 경비를 일반적인 사업비와 기본경비의 2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은 일반 사업에서 집행하여야 할 일반용역비가 부족하자 그 부족액을 기본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비와 기본경비는 편성 목적에서 엄격히 구분되며, 정부의 예

산안 제출 및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는 별도의 프로그램(항)으로 명확히 구분됨. 특히 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을 기본경비로 집행할 경우, 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 비용 이상의 과도한 기본경비가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사업을 위한 예산을 기본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또한, 기본경비는 조직의 특성 차이로 인해 적정한 필수비용의 수준을 알기 어려워 점증주의적인 예산 편성·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바, 심사 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본경비는 사업비와 엄격히 구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세부사업 구분 없이 비용을 집행하여 1건의 지출에 대하여 사업비와 기본경비를 혼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3) 면밀하지 못한 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용 부적절 및 온북 관련 예산 불용 필요 등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기획조정실)

< 현 황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용 정보시스템의 기획, 개발,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55억 8,900만원이며, 이 중 5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을 이월,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획재정정보화 (정보화) (7134-500)	5,589	5,589	-	-	-	5,589	5,567	5	17	-

주: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 분리에 따라 2026년 '재정경제(정보화)'와 '기획예산(정보화)' 사업으로 분리됨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획재정부는 온북 노트북[96]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면밀한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당초 예산안에 비목을 잘못 편성하여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하는 등 예산안을 면밀하게 편성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5년 1월 20일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사업에서 전용을 통하여 일반수용비, 일반연구비,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음.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당초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3억 9,300만원을 온북 구축에 따른 라이센스 구매, 개발비 및 전산실 재배치를 위하여 각각 일반수용비 1억 7,600만원, 일반연구비 9,300만원, 공사비 1,900만원으로 전용하였음. 또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을 위하여 당초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었던 1억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음.

[2025년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전용 (2025.1.20.)	기획재정정보화 (정보화) (7134-500)	자산취득비 (430-01)	176	기획재정정보화 (정보화) (7134-500)	일반수용비 (210-01)	온북 구축에 따른 라이센스 구매비용
			93		일반연구비 (260-01)	온북 구축에 따른 개발비
			19		공사비 (420-03)	온북 구축에 따른 전산실 재배치 비용
		일반연구비 (260-01)	105		자산취득비 (430-01)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비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6) '온북 노트북'이란 국정원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무실 및 원격지에서 동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의미

그러나 이처럼 온북 구축에 따른 라이센스 구매비용이나 개발비, 전산실 재배치 비용이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비용은 당초 예산안 편성 시부터 온북 도입 계획 및 전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계획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었었던 비용임.

특히, 온북 노트북의 경우 2023년에 기획재정부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25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그 구축에 따라 소요되는 라이센스 구매비용이나 개발비, 전산실 재배치 등은 예산안 편성시 당연히 검토되어 적절한 비용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항목들임. 또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비용 역시 그 집행계획이 보다 면밀하게 수립되었다면 연구비가 아닌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가능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안에 비목을 잘못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연초인 1월 20일에 비로소 전용을 통해 비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면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실하게 예산안은 편성함으로써 연초에 불필요한 전용을 실시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예산안 편성시 보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당초 '온북 노트북'을 도입함에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갖는 '5G 노트북'과의 비교 없이 도입하는 등 사업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온북 노트북을 도입하였는데, 2023년에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온북 노트북 10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전용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온북 노트북 210대를 신규로 도입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이에 더하여 2025년 예산에 온북 노트북 550대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2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온북 노트북 도입을 위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만원, 대)

연도	집행액	도입대수	비고
2023	6,100	100	시범사업
2024	97,600	210	당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예산을 전용을 통해 재원 마련(2024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97])
2025	290,600	550	
합계	394,300	86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온북 노트북’은 국정원 보안 규정을 지키면서도 사무실 및 원격지에서 동일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원격지에서의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을 위한 노트북으로 ‘온북 노트북’ 및 ‘5G 노트북’ 도입을 추진·장려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북 노트북과 5G 노트북은 원격지에서 업무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음. 그러나 온북 노트북의 경우 온북 전용 노트북만 가능하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반면, 5G 노트북의 경우 노트북 단말기의 제약이 없고 5G 정부망과 5G모뎀(EGG)을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들어가는 대신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음. 또한, 온북 노트북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하나 5G 노트북은 해외 사용이 불가능한 반면, 온북 노트북의 경우 외부 무선망(WIFI) 장애시 사용이 불가능하나 5G 노트북은 5G망 장애시 LTE망으로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

97)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기획재정위원회

[온북 노트북과 5G 노트북 비교]

구분	온북 노트북	5G 노트북
정부 최초 도입 시기	2021년(행안부 시범운영)	2021년(실증사업)
필요장비	온북노트북	노트북, 5G모뎀(에그)
인터넷 이용	인터넷VDI (온북기본형) 온북노트북VM (온북VM형)	인터넷VDI
소요비용	• 온북 인프라 구축 비용 • 온북 노트북 구입 비용	• 노트북 및 5G모뎀(에그) 구입 비용 • 통신비용
단말OS	• 구름OS	• 제약 없음 : MS 윈도우, 구름OS 등
단말종류	• 온북전용 노트북만 가능 * 고사양, 전용 노트북 필요	• 제약 없음 : 모든 노트북, PC, 프린터 등 가능 * 일반 노트북 가능
접속방법	• 사무실: 유선망(LAN), 외부: 무선망(WiFi) • 해외사용: 가능	• 사무실 : 5G/LTE, 유선망, 외부 : 5G/LTE • 해외사용: 불가
대체수단 (외부)	• X(무선망(WiFi) 장애시 사용불가)	• 5G망 장애시 LTE망으로 접속가능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5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기존 PC나 모니터, 노트북 등 자산은 인원에 비례하여 배분되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그간 구매한 총 860대의 온북 노트북의 경우에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온북 노트북 대신 5G 노트북을 신규로 도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당초 5G 노트북이 아닌 온북 노트북을 도입한 것에 대하여 2022년 행정안전부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온북 노트북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5G 노트북과의 비교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함.

[온북 노트북 도입 결정에 대한 재정경제부 답변]

Q. 온북 노트북과 5G 노트북 간의 차이점 A. 재정경제부는 관련 비교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양 단말 간 비교 평가는 행안부에 요청하여야 함 Q. 5G 노트북에 비해 온북 노트북을 전격 도입하기로 한 사유 A. 당시 기획재정부는 '22년 행안부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 온북 검토를 시작하여 '23년부터 도입하였으며, 온북 도입 검토 당시 양 단말간 비교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님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온북 노트북과 5G 노트북 간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기획재정부가 온북 노트북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39억 4,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860대의 온북 노트북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결정에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갖는 단말과의 비교조차 없었다는 것은 당초 사업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기획재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기기 도입 사업에 있어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단말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아 사업 검토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등 면밀하지 못한 사업 검토를 실시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면서 온북 노트북이 재정경제부 정원에 비해 남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재정경제부는 202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온북 노트북 추가도입 예산은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남는 온북 노트북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2025년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온북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존에 기획재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북 노트북 대신 5G 노트북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존에 보유하기로 하였던 총 860대의 온북 노트북은 모두 재정경제부에 배분되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 분리로 인해 배분된 정원에 따르면 2026년의 재정경제부 정원은 총 784명으로 확정된 바, 이러한 860대의 온북 노트북은 재정경제부 정원에 비해서도 큰 규모로 인원에 비해 온북 노트북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정부 조직개편을 예상하지 못한 채 온북 노트북 추가 도입 100대를 위한 예산안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2026년 재정경제부 예산에는 온북 관련 예산이 총 3억원 편성되었음.

[재정경제(정보화) 2026년 예산 온북 관련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온북 도입 및 보안솔루션 구매 비용 등	300

자료: 2026년도 재정경제부 예산 각목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미 재정경제부에 그간 도입했던 온북 노트북 전량이 배분되어 재정경제부가 보유한 온북 노트북이 정원에 비해 많은 상황이므로 추가적으로 온북 노트북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2026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온북 노트북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에 비해 남는 온북 노트북의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4) 과도한 교육목표인원 설정을 근거로 한 예산안 편성 부적절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기획조정실)

< 현 황 >

「미래융복합경제교육」 사업은 태안정책연수원을 활용한 체험형·집중형 경제교육 및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처음 실시된 신규사업임. 동 사업은 충청남도 태안정책연수원을 활용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태안정책연수원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의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2024년 9월 완공되어 2024년 11월부터 운영되었음.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19억 2,800만원으로, 이 중 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미래융복합경제교육 (7135-310)	1,928	1,928	-	-	-	1,928	811	-	1,117	-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기획재정부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래융복합경제교육」사업에 과도한 교육목표인원을 설정하여 예산안을 과다편성하여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미래융복합경제교육」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나 융복합경제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나, 동 사업은 2025년 예산액 19억 2,800만원 중 집행액이 8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이 42.1%에 불과하여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 특히 해당 집행액 8억 1,100만원에는 방학기간 중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경제 재정캠프 집행액 2억 4,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실시에 소요된 집행액은 5억 7,1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2024년 말 계엄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2025년 1분기에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실제 교육수강인원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실제 교육수강인원은 총 3,290명으로 당초 교육목표인원인 5,000명의 65.8%에 불과한 상황임. 특히 분기별로 교육수강인원을 살펴보면, 1분기의 경우 기획재정부 설명대로 전년도 계엄 및 탄핵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수강인원이 159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이를 차치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역시 교육수강인원이 각각 894명 및 750명으로, 당초 분기별 교육목표인원인 1,250명의 71.5%, 60.0%에 불과한 상황임.

[2025년 미래융복합경제교육 교육목표인원 및 실제 수강인원]

(단위: 명)

교육과정명	목표인원	실제 수강인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국민경제교육	1,260	32	349	644	208	1,233
직무전문교육	2,740	118	1,097	172	393	1,780
융복합교육	1,000	9	41	78	149	277
합계	5,000	159	1,487	894	750	3,290

자료: 재정경제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융복합교육의 경우 당초 교육목표인원은 1,000명이었으나 실제 교육수강인원은 277명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27.7%로 극히 저조한 상황임. 그러나 동 사업은 AI, 저출산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국가 주요 현안과 경제정책을 융합하여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경제교육과 차별화되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융복합교육의 교육실적이 특히 저조한 것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부진한 문제가 있음.

특히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부터 과도한 교육목표인원 설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98]된 바 있음. 실제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교육을 제외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당초 교육목표인원을 3,74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기획재정부 정원 1,129명이 평균 연간 3.3회의 교육을 수강하여야 하는 수치라는 점에서 교육목표인원이 과다계상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당초 교육원 설립을 전제로 교육목표인원을 설정하였으나 교육원 설립이 지연되면서 교육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교육원 설립은 재정경제부 하에 소속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동 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정원, 직제 협의 및 재정경제부 직제가 신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임.

이처럼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목표인원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예산안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조직이나 직제 신설을 근거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98)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3. 기획재정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개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동 법 제75조에 근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예산처 장관이고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99].

2025년도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당초 세입예산 13조 9,089억원의 110.4%인 15조 3,618억원으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의 주세 3조 2,120억원, 각 계정별 일반회계 전입금 6조 8,855억원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4조 7,988억원, 전년도이월금 등 4,656억원을 수납하였음.

99)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5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항목	예산	결산	소관	예산	결산
총 계			147,440	163,575	총 계	147,440	158,368
지역자율계정	소 계		35,401	41,123	소 계	35,401	36,133
	자체수입	주세수입(40%)	12,837	12,848	부처사업비	35,401	36,133
		법정부담금	2,683	2,574			
		기타수입	586	1,887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6,342	6,342	지원계정전출	-	-
		전년도이월금 등	1,588	2,415			
		농특회계(구조) 전입	6,492	10,193			
		농특회계(임업) 전입	1,139	1,130			
		환특회계 전입	3,733	3,733			
지역지원계정	소 계		108,264	118,517	소 계	108,264	118,517
	자체수입	주세수입(60%)	19,256	19,272	부처사업비	108,263	118,517
		법정부담금	2,478	1,936			
		기타수입	2,564	3,460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49,867	59,228			
		전년도이월금 등	2,978	1,986			
		계정간전입금	-	-			
		농특회계(구조) 전입	6,276	6,550			
		농특회계(임업) 전입	1,900	2,628			
		교특회계 전입	2,849	2,995			
		환특회계 전입	20,096	20,463			
제주계정	소 계		3,193	3,298	소 계	3,193	3,176
	자체수입	기타수입	31	59	부처사업비	3,193	3,176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2,829	2,808			
		전년도이월금 등	62	159			
		환특회계 전입	272	272			
세종계정	소 계		582	637	소 계	582	543
	자체수입	기타수입	10	22	부처사업비	582	543
	내부지출	일반회계 전입	495	495			
		전년도이월금 등	53	96			
		농특회계(구조) 전입	24	24			

자료: 재정경제부

4.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1) 공공자금관리기금

가. 개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통합발행으로 회계·기금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94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국채관리기금과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각각 흡수·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총괄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과 국채관리기금 통합), 융자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의 흡수), 차관계정(재정융자특별회계 차관계정의 흡수)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음.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규모는 수정계획액 기준 339조 7,263억원임.

2025회계연도 총괄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계획액 339조 4,608억원 대비 98.3%인 333조 5,814억원을 집행하였음.

국공채수입 227조 6,452억원, 예탁원리금회수 78조 5,534억원, 예수금 25조 4,077억원 등으로 총 333조 5,814억원을 조달하였으며, 국고채원리금상환 144조 7,651억원, 일반회계예탁금 113조 6,570억원, 기타회계·기금예탁금 47조 954억원 등으로 총 333조 5,814억원을 운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조 달				운 용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C)	실적(D)	D/C
국공채수입	2,311,027	2,276,452	98.5	일반회계예탁금	1,149,488	1,136,570	98.9
예수금	269,840	254,077	94.2	기타회계기금예탁금	480,742	470,954	98.0
예탁원리금회수	808,545	785,534	97.2	예수원리금상환	272,104	269,815	99.2
국공채원리금회수	-	-	-	국고채원리금상환	1,480,041	1,447,651	97.8
기타이자수입 등	5,196	19,750	380.1	국공채인수 등	12,233	10,823	88.5
합 계	3,394,608	3,335,814	98.3	합 계	3,394,608	3,335,814	98.3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융자계정의 조달 및 운용실적은 수정계획액 2,655억원 대비 86.9%인 2,308억원 규모임.

2025회계연도 융자계정은 융자원리금회수 749억원, 예탁원리금회수 25억원, 기타이자수입 등 1,535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등 공공목적의 국책사업에 대한 재정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운용 측면에서는 융자금 11억원, 예수원리금상환 1,736억원, 여유자금운용 561억원 등에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조달 및 운용 규모]

(단위: 억원, %)

조 달				운 용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계획(C)	실적(D)	D/C
융자원리금회수	726	749	103.2	융자금	11	11	100.0
예탁원리금회수	25	25	100.0	예수원리금상환	1,753	1,736	99.0
일반회계전입금	-	-	-	여유자금운용	891	561	63.0
기타이자수입 등	1,903	1,535	80.7				
합 계	2,655	2,308	86.9	합 계	2,655	2,308	86.9

자료: 재정경제부

차관계정은 공공차관 협약에 의해 도입한 재정차관 자금의 회수 및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잔여재원을 총괄계정으로 전출함에 따라 2025년 조달 및 운용실적이 없음.

나. 검토의견

(1) 재정수요에 대한 필요성 및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한 과다한 불용 발생 최소화 필요 (지방채인수(융자)사업, 국고국)

< 현 황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계획현액은 1조 2,100억원으로, 당초 계획액 100억원에서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2,000억원이 증액됨. 이 중 1조 711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1,388억 3,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지방채 인수	10,000	1,210,000	-	1,210,000,	1,071,164	-	1,38,836	100,000
- 지방자치단체 융자금(4540-05)	10,000	1,210,000	-	1,210,000,	1,071,164	-	1,38,836	100,000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 시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수요를 근거로 계획액을 대규모 증액하였으나 실제 지방채 인수 신청 규모가 이에 미달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바,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수요 검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금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2025년도에 재난 대응 및 지방재정 지원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추경 시 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2025년도 지방채 인수 사업의 계획현액은 1조 2,100억원으로, 당초예산 100억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2,000억원

이 증액 편성됨.

[2025년 지방채 인수(융자)사업 예산 편성 근거]

세사업 명	구분	편성 근거	금액
지방채 인수	본예산	-지자체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 요청액 조정	10,000백만원
	제1회 추경*	〃	200,000백만원
	제2회 추경**	〃	1,000,000백만원
합계			1조 2,100억원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04.21. 국회 제출. 2025.05.01. 본회의 의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06.23. 국회 제출. 2025.07.04. 본회의 의결
자료: 재정경제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의 2025년 집행액은 1조 711억 6,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5%이며, 불용액은 1,388억 3,600만원이 발생함. 2025년도 지방채 인수 사업의 불용액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지방채 인수 신청액이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미달함에 따라 발생함.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약 1,100억원의 불용이 발생함.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의 시설 복구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약 900억원 규모만 인수를 신청함에 따라 대규모 불용이 발생함.

또한,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약 288억원의 불용이 발생함. 행정안전부 수요조사 당시 약 2조 8천억원 규모의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지방채 인수 신청 규모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2025년도 지방채인수(융자) 사전 수요조사 대비 집행 현황]

구분	수요조사 결과 (사전)	실제 인수 신청 (집행)	불용액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경북도 등 2,000억원	900억원	1,100억원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약 2.8조원	일부 미신청 또는 축소 신청	약 288억원

자료 : 재정경제부

동 사업의 최근 5개년간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23년 100%, 2024년 99.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5년에는 대규모 재난복구 수요 등에 대응하여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실제 집행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하락함.

[지방채인수(융자) 사업 최근 5개년 예산·집행·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불용액
	당초	수정(A)					
'21	2,100,000	2,100,000	2,100,000	1,995,644	95.0	95.0	104,356
'22	10,000	10,000	10,000	7,900	79.0	79.0	2,100
'23	10,000	10,000	10,000	10,000	100.0	100.0	-
'24	2,600,000	2,600,000	2,600,000	2,596,204	99.9	99.9	3,796
'25	10,000	1,210,000	1,210,000	1,071,164	88.5	**88.5**	138,836

자료 : 재정경제부

지방채 인수 사업은 재난 대응 및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선제적 예산 편성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수요를 중심으로 예산을 대규모 반영하였으나, 실제 신청 규모가 이에 크게 미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함.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실제 신청액이 사전 수요 대비 약 4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요조사의 정확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재정경제부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조달 상황이나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실제 집행 수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 수요 제출 규모 외에도 실제 지방채 발행 가능성 및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다 정교한 수요 검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에는 재난 대응 등 긴급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함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규모 불용은 국채 발행계획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 등 국가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계획 편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2)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의 추계 정확성 제고 및 계획 변경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국고국)

< 현 황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계획현액은 30조 4,690억 3,8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29조 9,778억 9,800만원에서 제1회 추경 시 1조 4,268억 8700만원, 제2회 추경 시 2,884억 5,3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하였고, 기금운용계획 협의 변경을 통해 60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됨. 이 중 30조 2,736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1,953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목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국고채이자상환	29,977,898	30,469,038	-	30,469,038	30,273,698	-	195,340	34,315,479
-차입금이자(510-03)	29,977,898	30,469,038	-	30,469,038	30,273,698	-	195,340	34,315,479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은 향후 국고채 발행량 및 금리 전망 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연말 계획변경 시에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과도한 증액과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동 사업은 2022년 5,868억 200만원, 2023년 7,810억 3,000만원의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이후 2024년에는 불용 규모가 453억 500만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5년 다시 1,953억 4,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특히,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말 기금운용계획 협의변경[100]을 통해 총 4,911억 4,000만

100)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상당한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고채 이자상환 소요에 대한 추계와 계획변경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국고채 이자상환사업 결산내역 및 2026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불용액
	당초	수정(A)				
2022	20,707,047	20,707,047	20,707,047	20,120,245	97.2	586,802
2023	24,811,837	24,811,837	24,811,837	24,030,807	96.9	781,030
2024	28,259,942	27,769,942	27,769,942	27,724,637	99.8	45,305
2025	29,977,898	30,469,898	30,469,898	30,273,698	99.4	195,340
2026	34,315,479	-	-	-	-	-

자료 : 재정경제부

특히 2025년 11월 26일 실시된 기금운용계획 협의변경은 회계연도 종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6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으로, 당시 집행 실적과 잔여 집행기간을 고려할 때 증액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해당 협의변경 이후 결과적으로 증액 규모를 상회하는 1,953억원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연말 시점의 집행 전망과 소요 추계가 충분히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⑦(생 략)

[2025년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국회의결 ('25.5.1.)	510	510-03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포함)	142,687	제1회 추경으로 인한 증액
국회의결 ('25.74.)				288,453	제2회 추경으로 인한 증액
협의변경 ('25.11.26.)				60,000	기금운용계획 협의변경
합 계				491,140	

자료 : 재정경제부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당초 예산 편성시 1~12월 월별 균등발행을 가정하여 1년분 이자의 50%를 적용하였으나, 상반기 국고채 발행량이 60% 수준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당시 10월까지의 국고채 이자상환 집행금액과 하반기 금리 상승 추세[101] 등을 고려하여 이자상환 금액 600억원[102]을 증액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한 예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25년말 통화정책 기조가 기준금리 인하에서 인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국채시장에 확산됨에 따라, 국채금리가 대폭 상승하여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11.27일경 차환발행 3.6조원 축소를 결정함에 따라 이자상환 금액이 감소하였고, 이는 협의변경 진행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아울러, 국고채 이자상환은 국가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지출로서, 이자 부족이 발생할 경우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의 보수적 추계가 불가피하며, 실제 금리와 예산 편성 시 적용한 금리 간 차이로 인해 일정 규모의 불용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는 설명임.

다만,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시장금리, 발행 규모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이루어진 계획변경은 당시까지의 집행 실적과 향후 발행계획, 잔여 이자지급 일정 등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가 축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추계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협의변경 직후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라 차환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자지급 소요가 감소한 것이 사전에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증액 규모보다 큰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연말 계획변경은 보다 정밀한 집행 전망과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기초로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1)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25.8월) 2.55 (9월) 2.61 (10월) 2.68 (11월) 3.01 (12월) 3.15
102) 11월 이후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3.3% 수준 적용시 600억원 증액 필요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향후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의 예산 편성 및 계획변경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 규모, 금리 변동 전망, 실제 이자지급 일정 및 집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계의 정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협의변경을 통한 증액 시에는 집행 가능성과 잔여 집행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과도한 계획 변경 및 반복적인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유재산관리기금

가. 개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기존의 단순한 유지・보존 위주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103]

2025년도 수입은 3조 4,083억원으로 수입계획 대비 97.9%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유의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 매각대금 1조 7,872억원,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1,711억원,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403억원, 여유자금회수 4,344억원,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9,753억원으로 구성됨.

2025년도 지출은 3조 4,08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공용재산취득 9,976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672억원 등의 사업비와 기금운영비 27억원, 공자기금예탁 1조 6,560억원, 여유자금운용 6,848억원 등에 활용함.

지출내역 중 사업비의 집행실적은 현액 1조 2,573억원 대비 1조 648억원(84.7%)이며, 국유 청·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 집행실적이 현액 1조 1,873억원 대비 9,976억원으로 84.0%임.

여유자금은 현액 7,266억원 대비 실적 6,848억원으로 94.3% 수준으로 운영하였음.

103)**「국유재산법」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2025회계연도 국유재산기금 수입·지출 총괄표]

(단위: 억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획(A)	실적(B)	B/A	구 분	현액(C)	실적(D)	D/C
○ 자체수입	20,429	19,986	97.8	○ 사업비	12,573	10,648	84.7
- 국유재산 매각대	17,779	17,872	100.5	- 공용재산 취득사업	11,873	9,976	84.0
- 국유재산 대여료 등 재산수입	1,982	1,711	86.3	- 비축토지 매입	700	672	96.0
- 변상금 등 경상이전수입	668	403	60.4	○ 기금운영비	27	27	99.5
○ 정부내부수입	9,787	9,753	99.7	○ 정부내부지출	16,560	16,560	100.0
○ 여유자금회수	4,608	4,344	94.3	○ 여유자금운용	7,266	6,848	94.3
합 계	34,824	34,083	97.9	합 계	36,426	34,083	93.6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1)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 반복 부적절 (총괄, 국고국)

< 현 황 >

2025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편성 또는 집행된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관련 사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복합청사신축」 등 5개 사업임.

[2025회계연도 정책연수원 신축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복합청사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231-320)	-	4,614	-	4,614	4,614	-	-	-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331-617)	12,800	35,599	-	35,599	35,599	-	-	30,000
통계청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431-310)	-	2,874	-	2,874	2,874	-	-	-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2431-993)	12,000	31,000	-	31,000	31,000	-	-	38,574
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청사 신축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4531-560)	5,200	-	-	-	-	-	-	-

< 검토의견 >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위탁개발임차료의 조기상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종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준수되지 못하고 있음.

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반재산에 대한 청·관사 건물 개발을 위탁하고, 준공된 건물에 수요기관이 입주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에 투입한 사업비를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임차료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104].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자체적으로 청·관사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보상, 설계, 공사 등 전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통한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나,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을 통한 청사 취득의 경우 매년 임차료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국회 심의를 받게 됨.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을 통한 청사 취득 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위탁개발사업승인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승인
⇩		
② 위탁개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민관복합청사(위탁청사) 설계 및 공사 추진
⇩		
③ 위탁운영(입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청사 준공 후 수요기관 입주 후 임차료 지급
⇩		
④ 운영종료(소유권)	수요기관	- 위탁운영 종료 후 수요기관 사용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자료: 재정경제부

104)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임차료를 조기에 지급하는 경우 국회가 심의한 임차료 예산의 취지를 벗어나고, 조기상환 및 그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용재산취득의 투명성과 이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또한, 연도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계획액을 감액하고 위탁개발임차료를 증액하는 경우 집행부진 사업의 집행률이 높게 표시됨에 따라 개별 사업의 집행성과 파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는 기획재정부가 공공청사 위탁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그 집행결과와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기간 및 변경된 연간 임차료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105].

이에 따라 당시 기획재정부는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그 집행결과와 상환기간 및 변경된 임차료 산출근거를 「국가재정법」 제70조제6항[106]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조치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 내역을 2025년 1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105)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47번

106)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47) 투명성 확보 위해 명확한 상환액 산출 근거 제시 필요	○ [지적사항] 기획재정부는 연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임차료 지급액을 증액하였으나 그에 따른 임차기간, 연간 임차료 상환액 조정 결과 및 해당 기간과 상환액 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아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위탁개발 방식은 개발이 시작된 이상 향후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므로, 향후 임차료 지급액 변경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라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관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수원법원청사와 법무부 수원고등·지방검찰청의 경우 조기상환 결과 오히려 총 임차료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기획재정부는 공공청사 위탁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그 집행결과와 조기상환에 따른 상환기간 및 변경된 연간 임차료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주의	○ '25년 기금운용계획에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계획 기 반영 ○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그 집행결과와 상환기간 및 변경된 연간 임차료 산출근거를 국가재정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겠음 ○ 조치예정일 : 2025년 1월 31일

자료: 2023년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521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도말에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위탁개발임차료를 조기상환하였으며, 종전 후속조치계획과 달리 이에 대해 국회에 별도의 보고 절차도 거치지 않아 국회 예결산 심의의 취지를 훼손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취지와 종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도말 대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을 지양하고, 조기상환 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 내역]

사업명	조기상환일시	상환기간	조기상환액(원)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 (1331-617)	2025.03.27.	25년 ('19년~'43년)	12,800,000,000
	2025.12.19.		22,798,571,000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 (2431-993)	2025.02.20.	26년 ('19년~'44년)	12,000,000,000
	2025.12.22.		19,000,0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복합청사신축 (1231-320)	2025.12.18.	42년 ('22년~'63년)	4,614,000,000
통계청 남양주 복합청사 신축 (1431-310)	2025.12.24.		2,874,000,000

자료: 재정경제부

(2) 면밀한 계획 수립 없는 정책연수원 사업 추진 부적절 (정책연수원 신축·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국고국)

< 현 황 >

「정책연수원 신축」 사업은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연수시설을 통합 개발하려는 것임. 2025년 계획액은 20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억원 전액을 전출하여 집행액은 없음.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사업은 정책연수원 통합관사를 설치하여 주요 사용부처의 교육생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 상주 인력 거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025년 계획액은 당초 2억 3,400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억 6,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4,2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2억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정책연수원 신축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정책연수원 신축 (6933-100)	2,000	-	-	-	-	-	-	-

[2025회계연도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6933-130)	234	168	42	210	5	-	205	11

< 검토의견 >

정책연수원 신축은 당초 편성한 자산취득비를 전액 불용하고 위탁개발임차료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은 설계공모 후 직제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설계용역을 재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당초 사업이 면밀하게 계획되지 못한 채 추진된 측면이 있음.

정책연수원 신축 사업은 충남 태안군에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교육연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공사계약 및 착공되어 2024년 8월 공사가 완료됨.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는 자산취득비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 자산취득 계획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스마트 강의실, 숙소동 로비 LED 모니터, 체력단련 장비 등 구축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를 집행할 계획이었음.

[2025년 정책연수원 신축 자산취득계획안]

예산 비목	물품명	요구액 (백만원)	비고
자산취득비	스마트 강의실	1,150	디스플레이, 자동 카메라 스마트 보드, 빔포밍 마이크 등
	숙소동 로비 LED 모니터	250	숙소동 로비 홍보용 LED 디스플레이
	체력단련장비	100	런닝머신, 기타 체력단련 장비
	야외시설 물품(장비)	200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바비큐장 주차장, 휴게장소, 산책로 등
	숙소동 편의시설 가구	200	노래방, 로비라운지, 의무실, 물품보관소 데스크, 무인카페, 공동취사장, 유아휴게실 북카페, 액티비티존, 구내식당
	예비비	100	-
합 계		2,000	

자료: 재정경제부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억원 전액을 전출하여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계획된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는 물품 구입 관련 협의 지연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 보류에 따라 감액 재원을 위탁개발임차료 조기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입장임.

그런데 당초 자산취득계획안에 따른 물품 유형을 고려할 때 비교적 조달이 용이한 물품이 다수 있음에도 자산취득비 전액이 미집행된 점, 20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었던 자산취득비 19억 6,200만원이 거의 전액 집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자산취득 수요 예측 및 집행 등 사업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한편,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사업은 정책연수원 운영에 따른 교육생 추가 수요와 상주인력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기본조사설계비 500만원, 실시설계비 9,2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3,700만원 등 총 2억 3,400만원의 계획액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024년 9월 기획재정부의 위탁개발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2024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계공모를 공고하였으며, 2025년 2월 공모 결과 채택된 업체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조사설계비를 집행하였음.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숙소동 증축 설계용역 공모개요]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57-42 외 2필지
대지면적	47,928㎡
연면적	875㎡(법적허용 규모 내 ±3% 범위 이하로 변경 가능)
주 차	85대(현재 시공완료(41대) - 지침서 참조
기 타	지침서의 건축규모를 참조하되, 연면적 外 사항은 법적 허용범위 및 추정공사비 내 자율제안 가능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숙소동 증축 설계용역 설계공모 공고문

그러나 이후 재정경제부는 정책연수원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직제 변경을 이유로 설계용역 등 과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계획현액 중 2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음.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현재 직제 심의 중으로, 이후 설계용역 재공고 없이 기존 설계용역 업체와 과업내용을 변경하여 용역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연수원 전담조직 신설 등 통합관사 수요의 경우 건축규모, 추정 공사비 등과 관련됨을

고려할 때 위탁개발사업계획 수립·승인 시 충분히 파악되었어야 할 것임. 이러한 과업 중단에 따라 2027년 완공 예정이었던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설계용역 계약 업체의 경우 당초 예정되었던 설계 지연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2025회계연도 정책연수원 관련 사업이 면밀한 계획 없이 수립·추진된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경제부는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대외경제협력기금

가. 개요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 간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음.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음.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2,578억 7,100만원 증가한 2조 2,771억 4,600만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00.2%임.

먼저, 2025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1조 2,373억 7,900만원을 전입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4,800억원을 예수하였음. 그 밖에 차관 만기에 따른 융자 원금 회수 4,238억 9,890만원, 융자 이자 수입 등 552억 7,708만원, 여유자금 회수 704억 5,700만원 및 여유자금 운용 수입 101억 3,271만원을 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5년 결산(B)		2026년 계획
		당초	수정(A)		B/A	
합 계	2,019,275	2,352,735	2,272,735	2,277,146	100.2	2,378,966
일반회계 전입금	1,218,749	1,317,379	1,237,379	1,237,379	100.0	1,334,339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56,249	633,951	633,951	480,000	75.7	627,924
융자금 원금 회수	243,373	277,615	277,615	423,899	152.7	309,274
융자금 이자 수입 등	50,923	62,430	62,430	55,277	88.5	73,633
여유자금 회수	40,791	47,343	47,343	70,457	148.8	29,100
여유자금 운용 수입	9,190	13,748	13,748	10,133	73.7	4,436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대개도국 차관에 1조 8,709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89.8%의 집행률을 보였고, 대개도국 차관 지원 사업에 396억 2,100만원, 경협증진자금(EDPF) 지원 사업에 26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음. 그 밖에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에 683억 4,000만원, 기금 운영에 268억 600만원, 여유자금운용에 2,687억 7,17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5년 결산(B)		2026년 계획
		당초	수정(A)		B/A	
합 계	**2,019,275**	**2,352,735**	**2,272,735**	**2,277,146**	**100.2**	**2,378,966**
대개도국 차관	1,848,544	2,149,950	2,069,950	1,870,988	90.4	1,900,600
대개도국 차관 지원	36,509	55,952	55,952	39,621	70.8	39,373
경협증진자금 지원	1,431	3,853	3,853	2,619	68.0	6,971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	39,405	87,074	87,074	68,340	78.5	354,755
기금 운영비	22,929	26,806	26,806	26,806	100.0	28,069
여유자금 운용	70,457	29,100	29,100	268,772	923.6	49,198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1) 현실적인 수입 목표 설정 필요 (면허료 및 수수료, 개발금융국)

< 현 황 >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면허료 및 수수료」는 기금이 승인했거나 승인할 예정인 보증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수입을 수납하는 것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4조(기금의 재원) 제2항 제6호의 기금의 운용수익금 규정에 근거하여 보증수수료를 수납하는 항목임.

동 사업의 2025년 계획액은 2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약 100만원(실제 수납액 1.4백만원)으로 계획 대비 0.4%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5회계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면허료및수수료 (65-651)	269	269	-	269	1	1	-	-	260

<검토의견>

동 사업은 보증수수료 수입이 계획 대비 0.4% 수준에 그치는 등 수입 추계의 적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보증사업의 실제 승인 가능성과 사업 진행 일정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협력기금은 2025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추진하는 아태 기후혁신금융 퍼실리티(IF-CAP) 사업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수입으로 수납하고 있음.

동 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이 방글라데시 등 29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여신 포트폴리오에 대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이 1억 달러 한도로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보증수수료는 'EDCF 보증대상 금액 × 보증요율(0.234%)' 방식으로 산정됨.

2024년에는 동 사업 추진을 전제로 최초로 6,600만 원의 수입 계획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보증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납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음. 2025년에는 IF-CAP 채무보증 계약이 1월에 체결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2억 6,900만원의 수입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40만원 수준으로 계획 대비 수납률이 0.4%에 그쳤음.

[최근 2개년 수입계획 대비 징수실적 및 달성률]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2024	66	-	-	-	-
2025	269	1	1	0.4	100.0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2025년도 수입 실적이 계획 대비 크게 저조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실제 보증대상 금액 규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증한도액인 최대 1억 달러 전체가 보증대상 금액으로 발생할 것을 전제로 수입을 추계하였으나, 실제로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사업 승인 실적이 당초 목표 금액에 미달함에 따라 보증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보증대상 금액 규모가 예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이에 따라 실제 보증수수료 수입도 140만 원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6년도부터는 수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연도별 예상 보증대상 금액 자료를 활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산정할 계획으로, 2026년에는 2025년 실적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사업 승인 전망 등을 반영하여 2억 6,000만원 규모의 수입 계획이 편성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동 수입은 국제개발금융 협력사업과 연계된 신규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

나, 실제 수입 규모가 아시아개발은행의 사업 승인 실적 및 보증대상 금액 수준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큰 구조로 보임.

2025년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사업 집행 일정, 승인 가능 규모 및 국가별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입 추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업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필요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개발금융국)

< 현 황 >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은 개발도상국 대상 대외경제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환경사회영향평가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가능 사업 등을 중심으로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공식 요청을 기반으로 후보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초기 단계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대외경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함.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사업의 2025년도 계획액은 15억 4,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억 6,2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22억 700만원 중 6억 2,600만원(28.4%)이 집행되고, 15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경협증진자금사업진행컨설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3337-641)	1,545	1,545	662	2,207	626	-	1,581	945

<검토 의견 >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사업은 일부 용역과업 미수행 및 일정 지연으로 인해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연도 이전 단계에서 수원국 수요를 확인하고, 사업 준비 수준 및 연도 내 발주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연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이후 2024년까지 매년 3억 ~ 7억원 규모의 이월이 지속되었으며, 집행률 또한 계획현액 기준으로 43.8 ~ 67.0% 수준에 머물렀음.

[최근 5개년 예산·집행·불용·이월 현황 및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1	1,800		1,800	1,338	3,138	2,102	116.8	67.0	**327**	709
2022	1,555	-	1,555	327	1,882	825	53.1	43.8	**764**	293
2023	1,050	-	1,050	764	1,814	1,161	110.6	64.0	**652**	1
2024	945	-	945	652	1,597	909	96.2	56.9	**662**	27
2025	1,545	-	1,545	662	2,207	626	40.5	28.4	-	1,581

자료 : 재정경제부

동 사업은 대부분 용역계약 체결 이후 착수금 및 공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수원국과의 협의, 사업 승인, 과업 조정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 체결 및 착수 자체가 지연되면서 연도 내 집행률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특히, 2025년에는 베트남 투티엠-롱탄 LRT 건설사업,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2호선, 필리핀 팜팡가 홍수통제사업, 방글라데시 다카 메트로 4호선 등 주요 사업의 일정 조정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예산 확정 이전부터 후보사업 발굴 및 발주 준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확정 직후 입찰공고 및 계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고, 과업 수행 공정률에 따라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다만,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고 있고, 2025년에도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 및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수원국의 사업 추진 의사, 사업 준비 수준,

연도 내 발주 가능성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발주 준비 및 수원국 협의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반복적인 불용 및 이월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복권기금

가. 개요

복권기금은 복권판매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됨(2004. 4. 시행).

2025년 결산기준 기금운용규모는 수정계획 대비 1.4% 증가한 9조 1,027억원으로, 주요수입은 복권판매수입 7조 7,982억원, 여유자금 및 공자기금 예탁원금 회수 2,774억원,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6,377억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당첨금, 수수료 등 복권판매사업비 4조 6,394억원,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조 2,794억원, 여유자금 운용 및 공자기금 예탁 3,756억원, 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7,179억원 등임.

복권기금 지원사업비 중 약 33.7%는 법정배분사업으로서 국가유산보호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금·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복권법령에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였으며,

그밖에 약 66.3%는 공익사업으로서 취약계층 지원 1조 4,193억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4,500억원, 문화예술 진흥지원 2,722억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213억원 등에 사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복권기금 수입결산]

(단위: 억원)

항 목	'25계획		'25결산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 복권판매수입	76,891	77,992	77,982	△10	0.0
○ 소멸시효완성 당첨금	545	545	673	128	23.5
○ 기타 이자, 불용액 등	1,715	1,715	1,694	△21	△1.2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700	700	700	-	0.0
○ 여유자금 회수	999	999	2,074	1,075	107.6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예수	1,548	1,548	1,527	△21	△1.4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회수	6,288	6,288	6,377	89	1.4
합 계	88,685	89,786	91,027	1,241	1.4

자료: 재정경제부

[2025회계연도 복권기금 지출결산]

(단위: 억원)

항 목	'25계획		'25결산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 복권판매 사업비	45,558	46,401	46,394	△7	0.0
○ 부담금 등	118	118	118	-	0.0
○ 복권기금지원 사업비	32,251	32,810	32,794	△16	0.0
- 법정배분사업	11,051	11,051	11,051	-	0.0
- 공익사업	21,199	21,759	21,742	△17	△0.1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582	1,582	1,582	-	-
○ 여유자금 운용	1,554	1,236	2,174	938	75.9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운용	6,852	6,852	7,179	327	4.8
○ 연금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770	787	786	△1	△0.1
합 계	88,685	89,786	91,027	1,241	1.4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논의 필요(복권위원회)

< 현 황 >

복권기금은 복권사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음.

현행법[107]상 복권수익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등 법정배분대상 기관 및 기금에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65%의 재원은 사행심 억제 및 중독 예방·치유·교육,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국가유공자 지원,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법정배분금의 지원 방식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전출금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서는 직접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현행 복권 수익금 배분체계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음.

---

1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단위: %, 억원)

복권수익금		<법정대상기관>	배분비율	'25 계획	'26 계획
법정배분사업 35%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1,374	1,150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920	948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617	60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56	826	833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1,448	1,706
		지방자치단체	17.267	1,906	2,062
		제주개발특별회계	17.267	1,908	1,97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474	474
		산림환경증진자금	5.846	775	802
		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801	875
		< 소 계 >	**100.0**	**11,051**	**11,430**
공익사업 65%		<공익사업 분야>	<사업수행기관>	'25 계획	'26 계획
		저소득 주거안정	주택도시기금	4,500	4,000
		국가유공자 복지	보훈기금	216	231
		저소득·소외계층	양성평등기금	7,769	8,066
			청소년육성기금	1,513	1,290
			기후대응기금	1,076	1,069
			보건복지부	1,045	1,116
			금융위원회	1,964	3,500
			교육부	258	371
			법무부	22	28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진흥기금	2,677	2,809
			영화발전기금	45	13
		재해·재난 구호	응급의료기금	64	56
			행정안전부	50	50
		< 소 계 >		**21,199**	**22,598**
기타수입		**< 총 계 >**		**32,251**	**34,028**

※ 자료: 기획예산처

< 검토의견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으로 ①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논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복권법」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108]하에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기존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하였음.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109]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로 상향 조정하였음.

그러나 복권수익금이 정률 배분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복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복권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110]

2016년에는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111]

---

108) 현재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임.

109)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10)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11) 다만, '주택도시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주요연혁]

○ 2004년: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복권법 제정 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중 30%를 기존 10개 발행기관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함.

○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에 따라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로 상향 조정함.(10개 → 11개 / 30% → 35%)

○ 2011년: 복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16년: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함(현재 공익사업으로 지원 중).(11개 → 10개)

그러나 복권수익금 배분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경직성 때문에 ①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일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첫째,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은 상당한 여유자금을 보유하여 복권기금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지 않은 기금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여유자금 규모가 666억원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 평균 여유자금 규모가 7,527억원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여유자금 9,273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이와 같이 사업비 대비 상당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비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A)	103,562	110,264	92,534	99,566	89,643
여유자금운용(B)	61,692	55,861	91,104	93,519	30,865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운용 규모(B/A)	59.6	50.7	98.5	93.9	34.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5년은 수정계획 기준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업비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A)	1,809,107	1,634,789	1,590,644	1,638,813	1,678,162
여유자금운용(B)	367,495	839,373	1,037,697	591,590	927,310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운용 규모(B/A)	20.3	51.3	65.2	36.1	55.3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2025년은 수정계획 기준

[2025회계연도 복권기금 법정배분금(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최종배분액	25년 가감 조정			2023년 결산차액 (D)	2025년 최종배분액 (A+B+C+D)
		기초법정배분 (A)	1단계 가감(B)	2단계 추가감액(C)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251	1,375	-	△13	13	1,374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920	1,133	△204	△20	11	920

자료: 기획예산처

둘째, 법정배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서 적지 않은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나타나고 있음.

충북 보행약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허가 지연으로, 전북 복지 사각지대 돌봄 안전체계 스마트화 사업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지연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대부분 이월되었고, 경남 아동 급식 지원사업과 제주 금융약자 대상 금융포용정책사업의 경우 적지 않은 불용이 발생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서 집행부진 사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2025년 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중 집행률 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부진 사유
(충북)보행약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1,250	44	3.5%	1,206	-	○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시행 후 추가 용역 발주 및 준공으로 인한 지연
(전북)복지 사각지대 돌봄 안전체계 스마트화	325	99	30.5%	226	-	○ 연구개발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명시이월 발생
(경남) 아동급식 지원	3,819	3,038	79.5	-	781	○ 집행 잔액
(제주)금융약자 대상 금융포용정책 사업	1,153	875	75.9%	-	278	○ 집행 잔액

자료: 기획예산처

이와 같이 자금이 넉넉한 기금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실집행 저조 사업이 발생하는 등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112]의 개정 논의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회에는 ①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총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김영진 의원안)과 ② 이와는 반대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특정용도를 추가하면서 법정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다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정부는 법정배분비율을 현행 35% 고정에서 35% 이내로 조정하고 가감조정 폭을 확대하면서 법정배분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여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내용
2216122	김재원의원	법정배분비율 상향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법정화
2215018	김영진의원	총배분비율을 수요에 맞게 조정 기금 배분시 여유자금운용 현황 고려하도록 함
2213837	양부남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배분 법정화
2213807	이수진의원	돌봄기금 배분 법정화
2212877	김교흥·정점식의원	자살예방기금 배분 법정화
2209233	서명옥의원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2207124	전진숙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배분 법정화
2205499	박정의원	접경지역지원기금 배분 법정화
2202066	한병도의원	법정배분비율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법정화
2201266	오세희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배분 법정화

[정부 입법예고안]

구분	주요내용
법정배분비율 탄력적 운용	일몰제 도입 전('29.12.31.)까지 법정배분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복권기금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35%로 고정된 법정배분비율을 3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최대 가감조정 폭 확대	일몰제 도입 전 법정배분사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가감조정 폭(±20%)은 현행 유지하되 자체수입, 여유재원 등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20%)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가감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법정배분사업 일몰제 도입	현행법상의 법정배분사업은 일정기간(2029년 12월 31일) 동안 지원 보장 후 사업재편,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사업으로 전환함.

(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 방안 마련 필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복권위원회)

< 현 황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후된 아동시설의 보수 등을 통한 시설 안전 지원,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 개선 지원 및 아동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계획현액은 45억 9,900만원으로, 이 중 42억 9,900만원을 보건복지부로 교부하였음. 실집행 기준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2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5억 800만원 중 43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9억 7,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6365-347)	4,599	4,599	-	-	-	4,599	4,299 (3,217)	-	300	4,082
-지자체자본보조 (330-03)	4,599	4,599	-	-	-	4,599	4,299 (3,217)	-	300	4,082

* 실집행 () 표기

[2025회계연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재이월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보건복지부	4,599	4,599	4,299	4,299	1,209	5,508	4,321	4,299	3,217	978	209	69.9

자료: 기획예산처

< 검토의견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부진은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정부는 보조금 교부 이전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113]에 따른 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법」[114] 및 「사회복지사업법」[115]은 노후 아동시설의 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지원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비용의 50%를 보건복지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50%를 추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면, 시설에서는 해당 보조금 및 자부담금(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체계]

보조금 신청	시·도 → 보건복지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 시·도
보조금(기금+지방비) 교부	시·도 → 시·군·구 → 시설
사후 관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자료: 기획예산처

11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114)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11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 매입 협상 지연, 설계용역 착수 지연, 시공업체 선정 지체, 지방비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연 등의 사유로 2025년 교부금 42억 9,900만원 중 9억 7,8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2억 900만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이 6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이러한 실집행 부진은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실집행률이 43.7~70.1%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								
	계획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당초	수정 (A)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1	5,300	5,300	5,100	5,100	423	5,523	3,999	5,100	3,592	1,280	244	67.7
2022	5,300	5,300	5,211	5,211	1,280	6,491	3,431	5,211	2,316	2,812	248	43.7
2023	5,300	5,300	5,191	5,191	2,812	8,003	4,234	5,191	2,943	2,432	1,337	55.5
2024	4,770	4,770	4,745	4,745	2,432	7,177	4,820	4,745	3,342	1,333	1,024	70.1
2025	4,599	4,599	4,299	4,299	1,209	5,508	4,321	4,299	3,217	978	209	69.9

자료 : 기획예산처

[2025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별 실집행 저조 사유]

지역	집행저조 사유	실집행률
경기	-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토지매입 협상 및 재원 마련으로 지연 -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공정진행 어려움으로 이월 -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및 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보조금 이월 신청 - 회계과 계약 대행업체 의뢰를 통한 계약 업체 선정으로 계약금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불용액 발생	61.4
충남	- 도 추경 일정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으로 공사기한 부족으로 인한 이월	7.8

정부는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부지 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고,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은 토지 확보 지연, 지방비 미확보, 설계 및 계약 절차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및 사업 준비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 가능한 사유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는바, 보조금 교부 결정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여 보조사업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16]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16)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5p, 2026. 1.

5) 외국환평형기금

가. 개요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한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었음.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환율 상승(원화 절하)시에는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매입하고, 환율 하락(원가 절상)시에는 원화를 매도해 외화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고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함.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60조 9,580억원 감소한 112조 1,346억원으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 대비 집행률은 81.7%임.

먼저, 2025회계연도 수입 결산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7조 6,311억원을 예수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10억 미달러(1조 4,343억원) 및 14억 유로(2조2,456억원), 1,100억엔(1조 322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외환건전성부담금은 1,275억원을 징수하였음. 그 밖에 한국투자공사(KIC) 출자 배당금으로 1,138억원을 수납하였고,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여유자금 예치금 54조 9,337억원을 회수하였으며,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은 9,390억원이 발생하였음.

[2025회계연도 외국환평형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5년 결산(B)	B/A	2026년 계획
		당초	수정(A)			
합 계	173,092,532	140,289,389	137,289,389	112,134,565	81.7	135,134,65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52,647,550	38,066,251	38,066,251	37,631,134	98.9	34,080,583
국공채(외평채) 수입	1,802,647	21,656,000	18,656,000	18,389,422	98.6	20,565,000
외환건전성부담금	122,725	148,927	148,927	127,504	85.6	141,434
정부출자수입(KIC)	94,383	80,000	80,000	113,829	142.3	80,258
여유자금 회수	116,536,368	78,607,621	78,607,621	54,933,666	69.9	79,087,377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1,888,859	1,730,590	1,730,590	939,010	54.3	1,179,999

자료: 재정경제부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지출 결산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금 상환에 32조 9,263억원, 이자 상환에 4조 5,784억원을 집행하였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원금 상환에 1조 7,151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와 파생거래 이자 등을 더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7,477억원을 집행하였음. 그 밖에 기금 운영에 14억원을 지출하였으며, 한국은행 등에 여유자금 72조 1,657억원을 예치하였음.

[2025회계연도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5년 결산(B)	B/A	2026년 계획
		당초	수정(A)			
합 계	173,092,532	140,289,389	137,289,389	112,134,565	81.7	135,134,651
공자기금예수 원금 상환	94,647,550	32,926,251	32,926,251	32,926,251	100.0	33,822,440
공자기금예수 이자 상환	5,125,620	5,013,480	5,013,480	4,578,363	91.3	5,151,623
국공채(외평채) 원금 상환	1,795,383	19,595,000	19,595,000	1,715,138	8.8	15,106,180
차입금 이자 상환	564,587	1,026,196	975,196	747,679	76.7	1,132,748
기금 운영비	1,257	1,357	1,440	1,438	99.9	327,864
여유자금 운용	70,958,136	81,727,105	78,778,022	72,165,695	91.6	79,593,796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1) 원화재원 운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총괄, 국제금융국)

< 현 황 >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형성됨.

첫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임. 2025년에는 37.6조원을 예수하였고, 원금 32.9조원, 이자 4.6조원을 상환하였음.

둘째,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원화외평채”) 발행임. 2025년에는 13.7조원의 원화외평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2003년 국채시장 통합관리 원칙 도입에 따라 원화외평채 독립 발행이 중단된 이후 최초의 사례임.

셋째, 외환시장 안정조치 과정에서 원화재원의 규모가 조정됨. 환율 안정의 필요성이 커져서 외화재원 수요가 증가하면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한 원화재원을 통해 이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화재원이 감소하고, 반대로 외화재원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원화재원이 증가하게 됨.

< 검토의견 >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조기 상환, 원화외평채 도입 및 발행규모 조정 등 정책수단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변경되었는바, 향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원화재원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원화외평채 발행 및 외환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 유입 등을 통하여 조달·관리되고 있음. 재정경제부는 외환시장 상황과 자금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원화재원 운용 경과를 살펴보면 정책수단의 선택이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 2023년과 2024년에는 원화재원이 증가하여 고금리 예수금을 계속 보유할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각각 14.4조원 및 43.5조원 조기 상환하였으며, 당시에는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조기 상환이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후 정부는 원화재원 조달수단의 다각화와 조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원화외평채 도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는 당초 20조원의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다만 원화외평채 역시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에 축적된 원화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대규모로 조기상환하면서 동시에 원화외평채를 통해 새로운 원화재원 조달수단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117].

이후 2025년에는 원화외평채 발행계획을 유지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발행 한도를 20조원에서 16.7조원으로, 다시 13.7조원으로 두 차례 감액하였음. 원화외평채 발행 필요성에 대하여 당시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금리[118]와 원화재원 조달 수단의 다각화를 제시한 바 있으나, 2025년 추경 시 금리가 더 높은 공자기금 예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조달비용이 저렴한 원화외평채 발행 한도를 감액 편성하였음.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편성이 그간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공자기금 예수금 조기 상환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 및 의견을 감안한 결과라는 입장임. 다만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된 것은 원화재원 조달·운용수단의 선택 기준과 우선순위가 충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글로벌 거시경제 여건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외국환평형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원화재원 조달·운용수단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조정될 경우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자금조달 원칙의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3.11.8., pp. 37~40.
118) 실제로 2025년 분기별 가중평균 금리 기준 공자 예수금리(1분기 2.974%, 2분기 2.764%)보다 직접 발행한 원화외평채 조달금리(1분기 2.661%, 2분기 2.375%)가 전반적으로 낮았음.

따라서 향후에는 외환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원화외평채 등 각 원화재원 조달수단의 활용 기준과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조달·운용 방식의 조정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원화재원 운용기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가. 개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4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음.[119]

동 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며, 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는 2025년 말 누계 기준 43조 7,139억원(241개 사업)이고, 2025년에는 3조 1,599억원(대장 ~ 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10개 사업)이 신규로 공급되었음.

기금의 2025년 수입실적은 당초 계획액 8,019원보다 13.9% 감소한 6,903억원으로, 그 내역은 자체수입 324억원, 정부출연금 100억원, 여유자금회수 6,479억원임.

수입실적이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계획 대비 1,055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120]

---

1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 및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의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또는 정부발주사업을 초과시공하는 자가 금융회사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출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2.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3. 제5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기관등으로부터 대출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120) 금융시장의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장기보유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2025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수입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비율(B/A)	증감 (B - A)
○ 자체수입	385	324	84.2	61
- 이자수입	131	124	95.1	7
- 대위변제회수	30	0	0.4	30
- 보증료수입	224	200	89.1	24
○ 정부내부수입	100	100	100.0	-
- 출연금	100	100	100.0	-
- 기금예탁 원금회수	-	-	-	-
- 기금예탁 이자수입	-	-	-	-
○ 여유자금회수	7,534	6,479	86.0	1,055
합 계	8,019	6,903	97.1	1,116

자료: 재정경제부

기금의 2025년 지출실적 또한 당초 계획액 8,019억원보다 13.9% 감소한 6,903억원으로, 그 내역은 사업비 1,023억원, 기금운영비 191억원, 여유자금운용 5,689억원임. 지출실적이 계획보다 감소한 이유는 대위변제 계획 대비 소액 발생으로 사업비가 계획 대비 120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2025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지출 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집행률(B/A)	A - B 이월액	A - B 불용액
○ 사업비	1,143	1,023	89.5	-	120
- 대위변제	135	18	13.4	-	117
- 구상권관리비	1	0	26.5	-	1
- 보증료환급	4	2	57.2	-	2
- 맞춤형컨설팅	3	3	92.3		0
- 특별인프라펀드	1,000	1,000	100.0		-
○ 기금운영비	193	191	99.2	-	2
- 인건비	26	25	98.8	-	1
- 경 비	11	11	97.3	-	0
- 선급법인세	156	155	99.4	-	1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	-	-	-
○ 여유자금운용	6,683	5,689	85.1	-	994
계	8,019	6,903	97.1	-	1,116

주1) 대위변제: 산업기반신용보증에 의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업시행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금이 대신 보증채무를 채권은행에 이행하는 것

주2) 구상권관리비: 보증부실기업·대위변제기업으로부터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자료: 재정경제부

나. 검토의견

(1) 별도의 모펀드 조성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 발생 및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출자 실적 부진 (특별인프라펀드, 재정성과국)

< 현 황 >

「특별인프라펀드」는 출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것임.[121] 2025년에는 계획현액 1,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5회계연도 특별인프라펀드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특별인프라펀드 (2032-460)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며,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하여 2,00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2월에 출범하였음.

운용사는 산은인프라자산운용[122]이고, 운용방식은 블라인드 방식[123]임. 투자대상사업별 투자 약정금액은 펀드 매입약정금액의 50% 이하이고, 개별 투자대상 사업의 총 자기자본 출자지분의 1/3 이하 및 총 민간투자비의 5% 이하임.

121) 동 사업은 전액 일반출자금(460-01)으로 편성되었음.
122) 산업은행이 지분의 84%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자회사임.
123) 투자대상을 미리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대상이 확보되면 투자하는 방식임.

< 검토의견 >

첫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당초 설명과 달리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모펀드를 별도로 조성하여 모펀드에 계획액 1,000억원을 전부 출자하였는데, 이로 인해 모펀드 운용사에도 투자신탁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기금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비효율이 초래되었음.

당초 설명된 동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자금을 직접 출자하는 것임.

[특별인프라펀드 사업 2025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 요구금액 : 100,000백만원
-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천억원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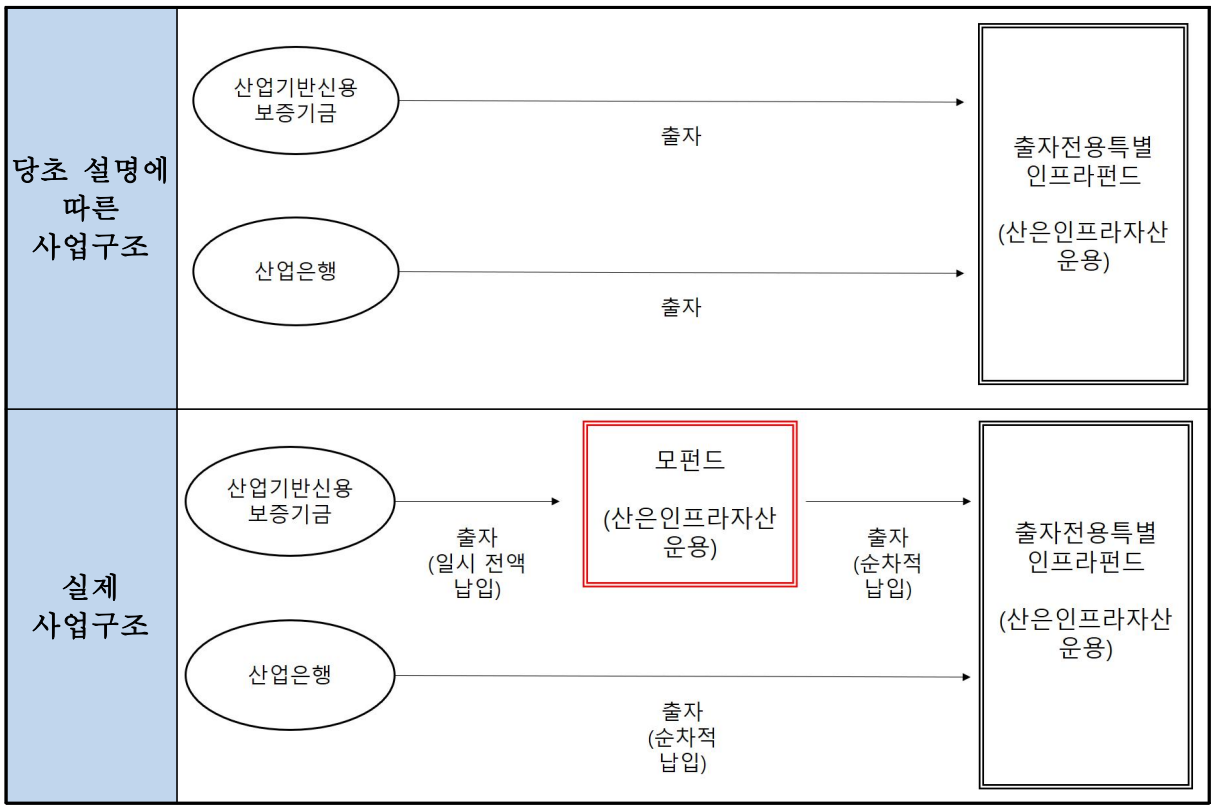
□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주요 내용
-(개요) 출자 전용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를 설립·운용하여 민자사업의 출자금 모집 지원
-(조성) 신용보증기금 출자 1천억원 + 산업은행 출자 1천억원 : 총 2천억원
-(투자대상)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SPC) 출자지분
-(운용기간/방식) 최대 10년 / 민간투자법상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방식) ❶사업별 출자지분의 1/3 이내, ❷준공 시 투자금 회수, ❸회수 시 적정 수준의 출자수익 지급 약정

자료: 기획재정부

그런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중간 단계에 모펀드를 조성하여, 모펀드에 출자한 후 모펀드에서 자펀드인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구조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기금에서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한다는 당초 사업설명과 차이가 있음.[124)]

124) 산업은행은 모펀드를 거치지 않고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함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 사업구조 차이]



이와 같이 별도로 모펀드를 조성한 이유는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가 캐피탈 콜 방식[125]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 2025년 내 1,000억원을 투자할 투자대상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계획액을 모두 집행할 수 없어 불용이 생기고,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동 사업을 다시 편성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연내에 계획액을 모두 지출하기 위해 모펀드에 1,000억원을 전부 출자한 후, 투자대상이 확보될 때 모펀드에서 자펀드인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자펀드에 출자하기 전에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모펀드에 자금을 전액 출자함으로써, 중간 단계에서 신탁보수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음.

125) 목표한 투자 자금을 다 모아 놓고 투자금액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투자 자금의 일부를 조성, 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자들(LP)에게 자본납입을 요청(call)하는 방식

모펀드의 운용사인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은 순자산총액의 0.0275%를 투자신탁보수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음.

만약,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모펀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금에서 출자하고, 펀드에 아직 출자되지 않은 대기자금을 직접 운용하였다면 위와 같은 투자신탁보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참고로, 산업은행은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자금을 출자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투자신탁보수가 발생하지 않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계획액의 불용 발생으로 차년도에 펀드 출자 예산을 재편성해야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임. 그러나 연내 민간투자사업에 전부 투자되기 어려운 규모의 계획액을 편성하고, 계획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모펀드에 자금을 전부 출자한 후 추가적인 투자신탁보수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보임.

둘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출자액을 전부 모펀드에 투자된 후, 모펀드의 미투자자산이 주로 안전자산으로 운용됨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음.

자펀드인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투자되지 않은 모펀드의 미투자자산은 안전자산인 확정금리부 금융상품 또는 국공채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운용됨. 이는 모펀드의 미투자자산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책정된 규모의 자금을 자펀드에 출자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임.

그런데 이처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모펀드에 계획액을 전액 출자한 후 안전자산 위주로 모펀드의 미투자자산을 운용함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실제로 모펀드 미투자자산의 2025년 운용수익률(연환산)은 약 2.27%이고, 2026년 운용수익률(연환산)은 약 2.74%로,[12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2023년 6.28%, 2024년 5.71%, 2025년 8.12%)과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임.

만약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모펀드를 통해서 출자하는 방식이 아닌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했다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일

126) 2025년 운용수익률(연환산) 2.27%는 '25.12.18. ~ '25.12.31. 사이의 운용수익률 0.08%에서 산출한 것이고, 2026년 운용수익률(연환산) 2.74%는 '26.1.1. ~ '26.6.30. 사이의 운용수익률 1.34%에서 산출한 것임.

환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에만 투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그런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직접 출자하지 않고, 중간 단계인 모펀드에 출자한 후 모펀드에서 자펀드인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사업구조로 인해 모펀드의 미투자자산이 낮은 수익률의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였음.

셋째,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가 출범한 이후 펀드가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한 실적이 부진한데, 기획예산처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출자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는 2025년 2월에 출범하여 총 2,000억원(산업은행 1,000억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음.[127] 그런데 2026년 4월 말까지 펀드에서 출자한 실적은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128]에 대한 지분투자 1건(591억원)으로 출자액이 전체 조성규모 2,000억원 대비 29.6%에 불과하며, 펀드의 미투자 잔액은 1,409억원이나 남아있는 상황임.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 조성 및 출자 실적(2026년 4월 말 기준)]

(단위: 억원)

펀드 조성규모 (산은·산기반신보→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			펀드의 출자 실적 (B)	펀드 조성규모 대비 출자 비율 (B/A)	펀드 미투자 잔액 (A-B)
산업은행 출자 약정액	산기반신보 출자 약정액	합계(A)			
1,000	1,000	2,000	591	29.6%	1,409

자료: 기획예산처

127) 2026년 4월 말 기준 펀드에 실제 출자된 금액은 856억원(산기반신보 428억원 + 산업은행 428억원)이며, 산업은행은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1,000억원 한도까지 직접 순차적으로 출자할 예정이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모펀드에서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1,000억원 한도까지 직접 순차적으로 출자할 예정임.

128)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개관

- ㅇ 사업목적: 부천대장 3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적기 공급 및 부천지역 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에 광역교통망 구축
- ㅇ 사업기간: 2025 ~ 2031(공사착수일로부터 72개월)
- ㅇ 총사업비: 2조 1,287억원(실시협약 기준)
- ㅇ 주요내용: 부천 대장 ~ 홍대입구 20.1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지하)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 출자 실적 세부 내역(2026년 4월 말 기준)]

연번	출자대상 (SPC)	출자대상 민자사업	인프라펀드의 출자액 (출자일)	민간의 출자액	출자대상 민자사업 추진경과
1	서부광역 메트로(주)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591억원 (2025.12.23.)	1,184억원	착공 준비 중

자료: 기획예산처

펀드출자사업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므로,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출자하는 것만으로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실제 자금이 출자전용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된 이후에 펀드에서 민간투자사업에 지분투자를 신속하게 해야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투자대상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 집행관리가 요구됨.

그런데 펀드가 민간투자사업에 출자한 시점은 2025년 12월로 민간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연된 문제가 있으며, 출자 규모도 조성규모에 비해 작은 수준임. 기획예산처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적시에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월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출 개선 필요 (기본경비, 재정성과국)

< 현 황 >

「기본경비」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것임. 2025년 계획현액은 11억 2,000만원으로, 이 중 10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기본경비」의 2025년 일반용역비 계획현액은 4,9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본경비 (2176-201)	1,120	1,120	-	1,120	1,090	-	30	1,071
- 일반용역비	29	49	-	49	49	-	-	29

< 검토의견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외부감사 용역계약 등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집행되는 경비에 대하여 이월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함.[12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년 4월 1일에 '2025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1,500만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였음.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위 계약에 대해 2025년 7월 2일에 착수금 146만원을 지급하고 10월 22일에 중도금 439만원을 지출하는 등 2025년에 총 585만원을 지급하였음.

따라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2025회계연도 외부감사' 계약을 위한 잔금 878만원(계약금액 1,500만원-기지급액 58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지출금액을 2026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했어야 함.

그런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이월절차를 거치지 않고 2026년도 「기본경비」 지출금액으로 잔금 878만원을 2026년 2월 24일에 지급하였음. 이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129)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회계연도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부감사 계약금액 지출 경과]

구분	지급일자	지급액	지금액을 지출한 사업	비고
착수금	2025. 7. 2.	146만원	2025년도 「기본경비」	계약기간: 2025.4.~ 2026.3.
중도금	2025. 10. 22.	439만원		
잔금	2026. 2. 24.	878만원	2026년도 「기본경비」	

자료: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이월절차를 거친 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32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 35억 7,900천만원 대비 9.5%인 3억 3,900만원 감소하였음.

세입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통계자료제공 수수료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감소임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입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차 이 (C-A)	비 율 (C-A)/A	미수납액 (B-C)
합 계	3,579	3,253	3,240	△339	△9.5	13
· 재산수입	2	3	3	1	50.0	-
· 경상이전수입	162	150	137	△25	△15.4	13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92	1,920	1,920	△272	△12.4	-
· 수입대체경비수입	1,151	1,141	1,141	△10	△0.9	-
· 관유물매각대	72	39	39	△33	△45.8	-

자료: 국가데이터처

(2) 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629억 600만원으로 예산액 5,627억 6,500만원 대비 1억 4,1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5,381억 9,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6% 예산현액 대비 95.6%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247억 1,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출결산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불용액 (B-C)
합 계	562,765	562,906	538,192	95.6	95.6	24,714
·인 건 비	155,020	154,988	153,801	99.2	99.2	1,187
·기본경비	17,653	17,684	17,374	98.4	98.2	310
·사 업 비	390,092	390,233	367,016	94.1	94.1	23,217

자료: 국가데이터처

인건비는 예산현액 1,549억 8,800만원 대비 99.2%인 1,538억 100만원이 집행되었고,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76억 8,400만원 대비 98.2%인 173억 7,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3,902억 3,300만원 대비 94.1%인 3,670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음.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457**	**3,366**	**3,579**	**3,579**	**3,241**	**90.6**	**3,693**
11 재산수입	**1**	**3**	**2**	**2**	**3**	**137.2**	**2**
51 관유물대여료	-	-	-	-	-	-	-
511 토지대여료	-	-	-	-	-	-	-
512 건물대여료	-	-	-	-	-	-	-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	2	2	2	3	124.5	2
545 기타재산수입	-	-	-	-	-	-	-
546 기타재산이자수입	1	2	2	2	3	124.5	2
12 경상이전수입	**103**	**61**	**162**	**162**	**137**	**84.8**	**162**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19	19	20	20	17	86.5	20
562 몰수금 및 추징금	-	-	-	-	-	-	-
563 과태료	19	19	20	20	17	86.5	20
57 변상금및위약금	6	2	15	15	50	330.8	15
572 위약금	6	2	15	15	50	330.8	15
58 가산금	-	-	-	-	-	-	-
581 가산금	-	-	-	-	-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78	40	127	127	70	55.5	127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78	40	127	127	70	55.5	127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947**	**1,884**	**2,192**	**2,192**	**1,920**	**87.6**	**2,284**
69 잡수입	1,947	1,884	2,192	2,192	1,920	87.6	2,284
691 기타잡수입	1,947	1,884	2,192	2,192	1,920	87.6	2,284
14 수입대체경비수입	**1,380**	**1,322**	**1,151**	**1,151**	**1,141**	**99.2**	**1,177**
69 잡수입	1,380	1,322	1,151	1,151	1,141	**99.2**	1,177
691 기타잡수입	1,380	1,322	1,151	1,151	1,141	**99.2**	1,177
15 관유물매각대	**26**	**96**	**72**	**72**	**39**	**54.3**	**68**
71 고정자산매각대	26	96	72	72	39	54.3	68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26	96	72	72	39	54.3	68

나)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83,990**	**410,091**	**562,765**	**562,765**	**538,192**	**95.6**	**456,670**
1000 통계제도정비 및 통계전문교육	**17,933**	**18,159**	**16,745**	**16,745**	**16,407**	**98.0**	**17,673**
1031 국가통계정책추진	9,956	8,719	8,132	8,132	7,849	96.5	8,247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8,341	7,278	6,673	6,673	6,458	96.8	6,751
지역통계인프라강화 (1031-302)	1,616	1,441	1,459	1,459	1,391	95.3	1,496
1032 통계전문교육	7,977	9,440	8,613	8,613	8,558	99.4	9,426
통계교육지원 (1032-304)	2,209	1,939	1,915	1,915	1,819	95.0	2,148
통계센터 및 교육시설 운영 (1032-305)	5,418	7,116	6,362	6,362	6,353	99.9	6,942
통계교육원 수입대체경비 (1032-651)	350	385	336	336	385	114.6	336
2000 통계정보확충 및 서비스체계 개선	**56,523**	**45,254**	**46,531**	**46,531**	**45,977**	**98.8**	**46,584**
2031 통계서비스	40,888	33,856	32,100	32,100	31,941	99.5	31,331
통계자료 DB수록 및 제공 (2031-301)	765	781	764	764	754	98.7	696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 (정보화) (2031-302)	5,456	5,620	4,362	4,362	4,325	99.1	4,670
S-GIS DB구축(정보화) (2031-304)	4,000	4,473	3,642	3,642	3,610	99.1	3,744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정보화) (2031-305)	12,655	6,454	8,768	8,768	8,679	99.0	11,302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031-306)	6,609	6,597	5,941	5,941	5,975	100.6	5,996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정보화) (2031-310)	11,403	9,932	8,623	8,623	8,599	99.7	4,923
2032 통계데이터허브	15,635	11,398	14,431	14,431	14,036	97.3	15,25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2032-307)	684	600	1,013	1,013	1,003	99.0	913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2032-308)	11,558	7,398	10,316	10,316	9,891	95.9	11,247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정보화) (2032-311)	3,393	3,400	3,102	3,102	3,142	101.3	3,093
3000 국가기본통계 생산 및 지원	**133,649**	**164,624**	**307,040**	**307,040**	**285,663**	**93.0**	**193,703**
3031 경제통계작성	28,153	26,266	26,112	26,112	25,411	97.3	7,530
경제구조통계작성 (3031-301)	27,376	25,498	25,377	25,377	24,704	97.3	6,919
경제동향작성 (3031-302)	777	767	735	735	707	96.2	611
3032 사회농어업통계작성	21,139	26,125	22,416	22,416	21,693	96.8	22,253
사회통계작성 (3032-304)	18,941	22,832	19,964	19,964	19,317	96.8	20,126
농어업통계작성 (3032-305)	2,197	3,293	2,452	2,452	2,376	96.9	2,127
3033 경제총조사	363	717	1,427	1,427	1,177	82.5	65,924
경제총조사 (3033-306)	363	717	1,427	1,427	1,177	82.5	65,924
3034 인구주택총조사	1,919	24,309	115,826	115,826	105,585	91.2	5,595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1,919	24,309	115,826	115,826	105,585	91.2	5,595
3035 농림어업총조사	1,163	1,914	56,447	56,447	46,932	83.1	3,354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1,163	1,914	56,447	56,447	46,932	83.1	3,354
3036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990	944	820	820	705	85.9	841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3036-652)	593	717	625	625	510	81.6	636
경인 수입대체경비 (3036-662)	20	20	20	20	20	97.8	20
동북 수입대체경비 (3036-663)	15	25	17	17	14	83.7	27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호남 수입대체경비 (3036-664)	155	84	85	85	83	97.8	85
동남 수입대체경비 (3036-665)	76	77	52	52	51	98.0	52
충청 수입대체경비 (3036-666)	131	21	21	21	27	126.5	21
3037 통계조사지원	79,922	84,349	83,992	83,992	84,160	100.2	88,206
통계조사지원 (3037-309)	25,437	29,951	27,903	27,903	27,423	98.3	27,729
국가통계 표본설계 및 지원 (3037-310)	1,669	776	782	782	759	97.1	770
통계행정지원 인력운영 (3037-311)	47,461	48,457	50,180	50,180	51,027	101.7	54,580
경인 통계조사지원 (3037-312)	1,268	1,254	1,226	1,226	1,199	97.8	1,226
동북 통계조사지원 (3037-313)	1,025	1,006	1,001	1,001	965	96.4	1,001
호남 통계조사지원 (3037-314)	1,223	1,192	1,191	1,191	1,147	96.3	1,191
동남 통계조사지원 (3037-315)	910	813	809	809	776	95.9	809
충청 통계조사지원 (3037-316)	930	901	900	900	863	95.9	900
4000 성과중심 책임운영 기관운영	**5,446**	**5,660**	**6,116**	**6,116**	**5,744**	**93.9**	**6,208**
4031 통계개발원	5,446	5,660	6,116	6,116	5,744	93.9	6,208
통계개발원 인건비 (4031-111)	3,867	4,009	4,467	4,467	4,150	92.9	4,368
통계개발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4031-211)	193	231	259	259	248	95.8	260
통계개발원 기본경비 (4031-261)	14	14	14	14	14	97.6	16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1,373	1,407	1,376	1,376	1,332	96.8	1,564
7000 통계행정지원	**170,438**	**176,394**	**186,333**	**186,333**	**184,400**	**99.0**	**192,502**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001 본부 인건비	142,511	144,510	150,553	150,553	149,651	99.4	155,801
인건비-총액인건비 (7001-100)	54,933	56,400	59,579	59,579	59,214	99.4	63,330
경인 인건비 (7001-112)	20,537	20,606	21,222	21,222	21,536	101.5	22,048
동북 인건비 (7001-113)	18,051	18,063	17,798	17,798	18,227	102.4	18,775
호남 인건비 (7001-114)	20,625	20,835	22,221	22,221	21,122	95.1	21,692
동남 인건비 (7001-115)	13,871	14,033	14,456	14,456	14,387	99.5	14,376
충청 인건비 (7001-116)	14,494	14,574	15,277	15,277	15,165	99.3	15,580
7011 본부 기본경비	16,286	16,587	17,380	17,380	17,113	98.5	18,135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1)	1,850	1,672	1,766	1,766	1,722	97.5	1,780
통계교육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08)	43	44	48	48	46	95.8	48
경인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2)	749	651	688	688	694	100.9	716
동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3)	664	561	593	593	582	98.2	605
호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4)	688	628	628	628	631	100.5	654
동남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5)	496	463	476	476	458	96.2	506
충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011-216)	557	479	514	514	497	96.6	52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1,972	2,022	2,008	2,008	1,874	93.3	2,060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7011-252)	704	748	701	701	718	102.4	895
통계정책국 기본경비 (7011-253)	314	328	341	341	338	99.1	351
조사관리국 기본경비 (7011-254)	85	114	103	103	102	99.5	10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경제통계국 기본경비 (7011-255)	45	66	63	63	63	99.7	63
사회통계국 기본경비 (7011-256)	57	67	76	76	76	99.9	76
통계데이터허브국 기본경비 (7011-257)	98	173	122	122	119	97.7	122
통계교육원 기본경비 (7011-258)	691	746	769	769	750	97.5	760
통계서비스정책관 기본경비 (7011-259)	89	105	95	95	95	99.7	95
경제동향통계심의관 기본경비(7011-260)	59	76	71	71	69	97.7	71
통계데이터기획협력관 기본경비[주] (7011-261)	-	-	-	-	-	-	77
경인 기본경비 (7011-262)	1,421	1,531	1,677	1,677	1,673	99.8	1,737
동북 기본경비 (7011-263)	1,581	1,702	1,852	1,852	1,851	99.9	1,932
호남 기본경비 (7011-264)	1,727	1,840	2,077	2,077	2,051	98.7	2,134
동남 기본경비 (7011-265)	1,253	1,351	1,388	1,388	1,381	99.5	1,469
충청 기본경비 (7011-266)	1,143	1,218	1,324	1,324	1,323	99.9	1,357
7031 대내외협력강화	7,241	9,845	12,126	12,126	11,596	95.6	11,843
국가통계인식제고 (7031-301)	514	533	526	526	500	95.1	700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031-302)	420	1,508	1,707	1,707	1,553	91.0	1,690
국제통계협력강화 (7031-303)	2,156	2,170	2,315	2,315	2,211	95.5	3,153
개도국 양자통계지원(ODA) (7031-304)	4,151	3,323	4,766	4,766	4,566	95.8	2,610
개도국 다자통계지원(ODA) (7031-305)	-	2,311	2,812	2,812	2,766	98.4	3,690
7032 청사시설 환경개선	4,400	5,451	6,274	6,274	6,040	96.3	6,723
청사시설관리 (7032-305)	4,400	5,451	6,274	6,274	6,040	96.3	6,723

주) 정부조직 개편('25.10.1.)에 따른 신설국 기본경비로 2026 회계연도부터 반영

나. 검토의견

(1) 핵심진단 개선안 이행 여부의 지속적 점검·관리 필요 (국가통계정책추진, 통계정책국)

< 현 황 >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은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한 표준분류 등 통계작성 기준을 설정하여 제공하고 통계의 전반적 과정에 대한 품질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통계작성 인프라가 부족한 기관의 통계작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66억 7,300만원으로, 이 중 64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가통계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25억 5,900만원 중 2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가통계정책추진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통계정책추진 (1031-301)	6,673	6,673	-	-	-	6,673	6,458	-	215	6,751
- 통계기준	2,986	2,986	-	-	-	2,986	2,828	-	158	2,764
- 품질관리	**2,559**	**2,559**	**-**	**-**	**-**	**2,559**	**2,520**	**-**	**39**	**2,779**
- 국가통계 발전	1,129	1,129	-	-	-	1,129	1,110	-	19	1,209

자료: 국가데이터처

<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처는 핵심진단 제도의 정책적 효과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품질관리」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에 시범 도입된 '핵심진단'은 기존의 정량적·절차적 진단체계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품질 저하 요인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는 정성적 진단체계로,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에 5종 통계에 대한 핵심진단에 1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핵심진단 관련 2025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구분	내용
정기통계품질진단 일반연구비(260-01)	
예산 편성	2,305백만원
집행 현황	2,272백만원 - 핵심진단 실시통계(5종): 158백만원 - 핵심진단 미대상통계(76종) 2,100백만원 - 조달수수료 : 14백만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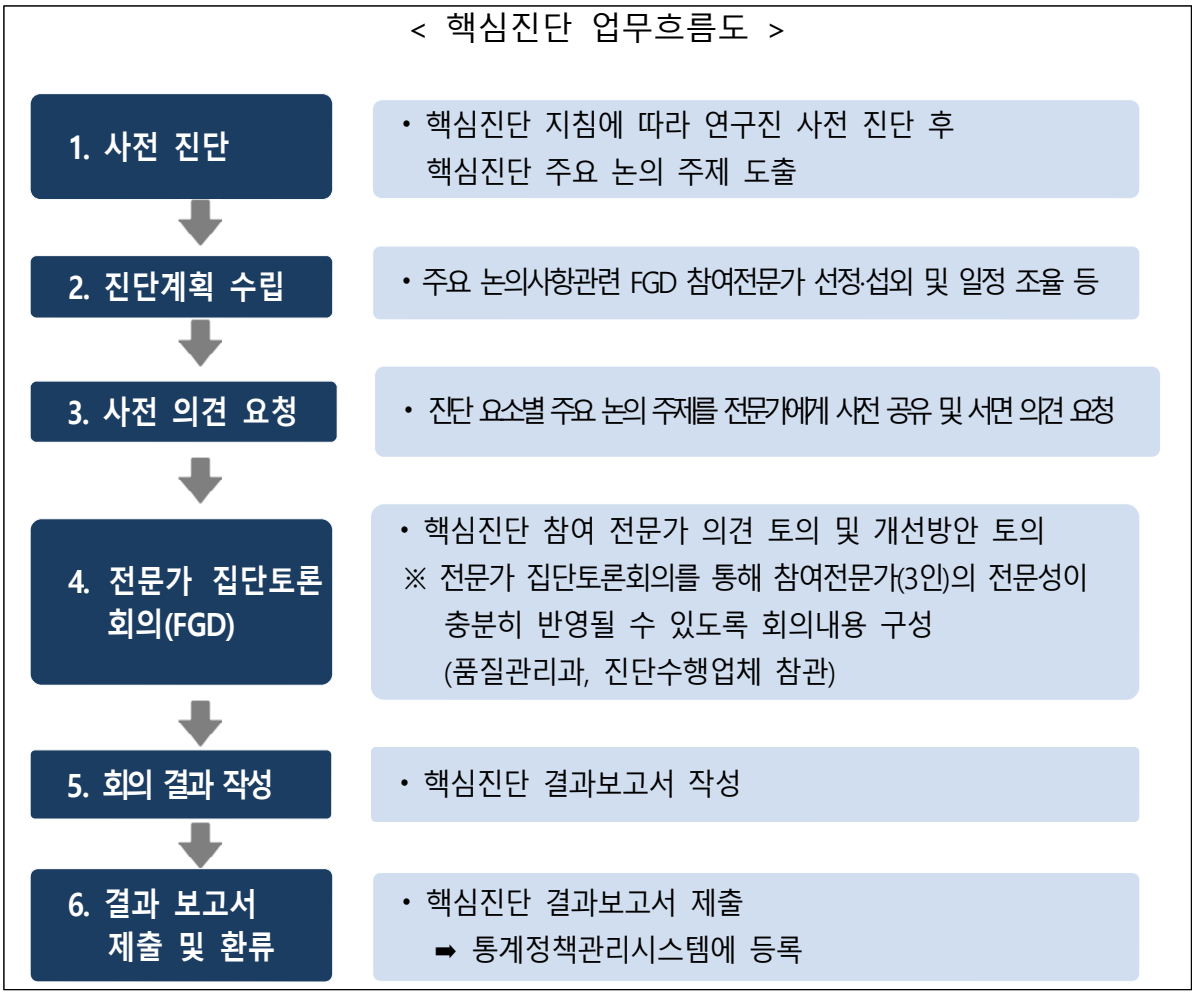
핵심진단은 정기통계품질진단과 병행하여 수행되고, 지정통계 또는 사회적 파급력과 활용도가 높은 주요 통계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최소 3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토론(FGD)을 통해 표본오차 관리, 비표본오차 축소, 통계 간 일관성 확보 등 전문적 사항을 다각도로 심층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핵심진단 절차]

< 정기통계품질진단 진단절차 요약 >

기본진단	=	심층진단	=	FGD 핵심진단신설
통계정보보고서를 기반으로 통계 작성 절차별 정량평가		자료수집체계, 이용자요구 사항 반영실태 점검 등 주요 6개 부문 정밀진단		기본·심층진단 + **정성적 부문 등 전문 진단**

< 핵심진단 업무흐름도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에는 국가통계위원회(품질분과)가 제4기(2020~2024) 진단기간 중 언론·국회 등에서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어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거나, 통계 인프라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통계 5종을 선정하여 핵심진단을 실시하였음.

2025년 핵심진단 실시 결과 수산물가공업통계의 분류체계 개선,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의 폐기물 조사항목 세분화, 설비투자계획조사의 무응답 대체 활용 근거 명확화,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문항 개발, 연구개발활동조사의 모집단 현황 보완 등 통계별로 개선안이 도출되었으며, 현재 단계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개선안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음.

[2025년 핵심진단 실시에 따른 개선안 및 개선안 활용 결과]

구분	개선안 내용	개선안 반영 현황	비고
수산물 가공업통계	수산물가공업 분류체계 중 소분류에 포함된 제품의 특징 구체화 등 6건	개선사항 이행중 (**'29.12까지 이행 예정**)	-최종완료일 기준으로 작성 -이행상황을 주기적 관리 예정
전국폐기물 발생 및처리현황	폐기물 조사항목 세분화 등 7건	개선사항 이행중 (**'29.12까지 이행 예정**)	〃
설비투자 계획조사	항목 무응답 대체 활용비율과 현황, 한계점 근거 제시 명확화 등 3건	개선사항 이행중 (**'28.12까지 이행 예정**)	〃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목표모집단 정의 명확화, 시대상을 반영한 조사문항 추가 개발(AI 등 디지털 전환) 등 5건	개선사항 이행중 (**'27.12까지 이행 예정**)	〃
연구개발 활동조사	조사모집단 현황 제시표 보완 등 5건	개선사항 이행중 (**'26.12까지 이행 예정**)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6년에는 제조업경기조사, 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 등 주요 통계를 대상으로 핵심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데이터처는 2025~2026년 시범실시 후 핵심진단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핵심진단은 단순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통해 기존 품질진단 체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와 통계 작성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진단 결과로 제시된 개선안이 실제 통계 작성 과정과 품질관리 체계에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핵심진단의 실효성은 개선과제의 도출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통계의 정확성·신뢰성·활용성이 실질적으로 제고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핵심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안의 이행 여부와 반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개선사항이 대상 통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는 등 핵심진단 제도의 정책적 효과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예산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세부사업 간 조정을 지양할 필요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2031-306), 통계서비스국)

< 현 황 >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사업은 국가데이터처의 본부 및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통계·행정업무 시스템과 관련 IT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60억 7,300만원이며 이중 5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9,9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지방청정보화」는 지방청 직원의 통계·행정업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HW, SW)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25년 예산현액 7억 8,400만원 중 7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보시스템관리 (정보화) (2031-306)	5,941	5,941	-	132	-	6,073	5,975	-	99	5,996
- 통계정보보안	807	807	-	△21	-	786	786	-	-	807
- 전산장비운영	3,566	3,566	-	△45	-	3,521	3,456	-	65	3,604
- 정보시스템운영	944	944	-	38	-	981	981	-	-	961
- 지방청정보화	**624**	**624**	**-**	**160**	**-**	**784**	**751**	**-**	**34**	**624**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필요한 예산소요를 사전에 면밀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세부사업 간 조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지방통계청 등의 업무용 PC에 대한 「윈도우11」 설치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사업, 「S-GIS DB구축」사업, 「나라통계시스템구축」사업의 관리용역비 1억 3,200만원을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사업으로 조정하였음.

[전용 및 세세항 조정, 이월 및 불용 등 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간 조정 ('25.10.24.)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 (2031-302) S-GIS DB구축 (2031-304) 나라통계시스템구축 (2031-305)	관리용역비 (210-15)	132	정보시스템관리(정보화) (2031-306)	관리용역비 (210-15)

자료: 국가데이터처

[세부사업간 조정한 예산의 상세 집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내역	비고
2031-306 (관리 용역비)	'25.12.19.	31,652,500	2025년 경인지방통계청 업무용 PC 윈도우11 설치 용역	경인청
	'25.12.03.	18,966,600	전산장비 운영체제(윈도우11) 전환 용역 대금 지급	동북청
	'25.12.24.	10,192,000	PC 윈도우 11설치 용역 사업 대금 지출	강원지청
	'25.12.19.	7,854,000	2025년 호남지방통계청 업무용PC 윈도우11 설치 계약(전주, 군산, 남원)	호남청
		13,882,000	2025년 호남지방통계청 업무용PC 윈도우11 설치 계약(지방청본부, 강진, 보성)	
		2,926,000	2025년 호남지방통계청 업무용PC 윈도우11 설치 계약(순천)	
		3,828,000	2025년 호남지방통계청 업무용PC 윈도우11 설치 계약(제주)	
		2,310,000	2025년 호남지방통계청 업무용PC 윈도우11 설치 계약(목포)	
	'25.12.26.	21,825,000	동남청 PC 운영체제 윈도우10 → 윈도우11 전환 설치용역 대금지출	동남청
	'25.12.16.	19,682,300	2025년 충청청 PC 운영체제 윈도우11 전환 용역	충청청
합계		133,118,4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동 집행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대응하여 지방통계청 업무용 PC의 보안 취약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윈도우11」 설치 용역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정보시스템 보안강화 지원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도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 관련 대책 재강조 및 추진현황 파악”(사호-590, 2025.9.12.)을 통해 예산 부족 시 낙찰차액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운영체제 전환은 정보보안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관련 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한 집행도 형식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윈도우10의 기술지원 종료 일정은 MS가 2015년 출시 당시부터 2025년 10월 종료를 예고해 온 사항으로, 윈도우11 전환 필요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국가데이터처는 이를 별도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대응하였는바, 이는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예측 가능한 소요를 사후적인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한 측면이 있음.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가 오래 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운영체제 전환에 필요한 소요를 미리 반영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변화,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종료 일정 및 정보보안 수요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소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반복적인 세부사업 간 조정이나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활용에 의존한 방식의 예산집행은 예산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3) 통계데이터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 현 황 >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연계·분석하기 위한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통계데이터의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융복합 관리체계 운영, 행정자료의 통합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은 103억 1,600만원이며, 이 중 98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2,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은 2025년 예산현액 57억 7,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54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개인정보영향평가」는 2025년 예산현액 4억 5,300만원이며, 이 가운데 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사업 (2032-308)	10,316	-	-	-	-	10,316	9,891	-	425	11,247
-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5,779	-	-	-	-	5,779	5,475	-	304	5,654
- 데이터융복합관리 체계 운영	2,905	-	-	-	-	2,905	2,868	-	37	3,133
- 행정자료 통합관리	599	-	-	-	-	599	574	-	25	513
- 빅데이터시스템운영	580	-	-	-	-	580	569	-	11	610
- 개인정보영향평가	**453**	**-**	**-**	**-**	**-**	**453**	**404**	**-**	**49**	**-**
- AI기반 정보보호 신기술 프로그램 구축	-	-	-	-	-	-	-	-	-	907
-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추진	-	-	-	-	-	-	-	-	-	430

< 검토의견 >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데이터센터의 지역별 이용 편차와 낮은 센터 활용률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계데이터센터 운영」은 국민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보안 공간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계법」 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운영), 제7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통계데이터센터는 외부망과 차단된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조사 자료, 민간데이터 및 이용자 보유자료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료 이용 상담, 데이터 연계·분석 자문, 실무교육 등 분석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활용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2025년도 「통계데이터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예산은 57억 7,900만원으로, 2024년 37억 5,000만원 대비 54.1%(20억 2,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54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음.

통계데이터센터는 2016년 10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11월 대전·서울·부산 등 3개 센터를 본격 운영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센터를 확대하여 왔음. 2024년 12월에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를 통계데이터센터(SDC) 체계로 일원화하였고, 2025년 9월 강원센터를 신설하여 전국 16개 센터 체계를 구축하였음.

통계데이터센터는 지역센터 신설,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이용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용자 수는 2021년 1,630명에서 2025년 10,42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용건수도 같은 기간 753건에서 6,378건으로 확대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이용자 수 45.7%, 이용건수 56.4% 수준에 달하고 있음.

[통계데이터센터 연도별 이용자 수]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이용자수(명)	1,630	2,333	3,680	7,080	10,427	45.7%
이용건수(건)	753	1,123	2,195	4,033	6,378	56.4%

자료: 국가데이터처

다만, 전체적인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이용 편차와 여전히 낮은 센터 활용률 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2025년 기준 서울 중구센터(1,719명), 서울대센터(1,279명), 대전센터(1,000명), KDI센터(674명) 등 수도권 및 주요 연구거점 센터에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국립암센터는 연간 이용건수가 118건에 불과하고, 제주센터 역시 278건 수준에 머무르는 등 일부 지역센터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또한, 센터당 일일 평균 이용자수도 2024년 2.2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유의미한 증가로 보기 어려움.

[통계데이터센터 지역별 이용 실적]

(단위: 명)

구분	'23년	'24년	'25년	비고
합계	4,865	7,080	10,427	
서울 중구센터	1,514	1,578	1,719	
서울 강남센터	516	575	891	
서울 상암센터	21	147	191	
서울 국회센터	154	222	321	
서울 서울대센터	-	825	1,279	'24.1월 개소
서울 서강대센터	-	-	529	'25.1월 개소
부산센터	376	399	646	
대구센터	138	279	379	
광주센터	245	413	506	
대전센터	672	786	1,000	
KDI센터	584	674	971	
NRC센터	-	-	602	'25.1월 개소
국립암센터센터	26	62	118	'23.6월 개소
전북센터	148	429	491	'23.5월 개소
제주센터	134	267	278	'23.3월 개소
강원센터	-	-	36	'25.9월 개소
온라인(주문형 등)	337	424	470	

자료: 국가데이터처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지역별 수요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 이용자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활용성과 연구성과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 중심의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2025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데이터처가 운영 중인 9종의 통계자료 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점검하고, 데이터 처리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동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130]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추진되었음.

「개인정보 영향평가」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4억 5,300만원이며, 이 중 4억 400만원이 집행되었음. 국가데이터처는 주식회사 케이씨에이와 3억 9,9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통계자료 처리시스템 9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완료하였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시스템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률은 2025년 7월 기준 80.0~88.6% 수준이었으며, 단기 이행점검 이후인 2025년 9월 기준 86.7~94.7%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장기 이행과제의 경우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까지 검토 및 개선을 완료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확인서를 제출 완료하였다는 설명임.

---

130)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⑪ (생략)

[대상시스템(9종)별 평가결과('25. 7.15. 기준)]

구분	데이터 융복합	나라 통계	SDC	인구 이동	MDIS	사망 원인	기업 생멸	차세대 Census	경총
이행률	87.9%	83.9%	88.6%	85.7%	84.5%	83.0%	83.3%	80.0%	81.7%

↓이행점검(단기) 후('25. 9. 15. 기준)

구분	데이터 융복합	나라 통계	SDC	인구 이동	MDIS	사망 원인	기업 생멸	차세대 Census	경총
이행률	94.7%	89.5%	93.0%	93.9%	91.4%	93.0%	92.7%	86.7%	8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동 사업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요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통계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만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개선조치가 적절히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동 사업은 2025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장기 개선과제의 이행은 2026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단년도 사업 종료 이후에도 후속 이행관리 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별 개선사항 반영 여부 및 후속 점검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범예행조사 운영 및 현장·비대면 관리 체계의 개선 필요(경제총조사, 경제통계국)

< 현 황 >

「경제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경영실태 등의 구조를 동일시점에 동일기준으로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년 주기로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6년이 총조사를 실시하는 해임. 2025년 시범예행조사 예산액은 14억 2,700만원으로, 이 중 1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경제총조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제총조사 (3033-306)	1,427	-	-	-	-	1,427	1,177	-	250	65,924
- 경제총조사	-	-	-	-	-	-	-	-	-	65,924
- 시범예행조사	1,427	-	-	-	-	1,427	1,177	-	250	-

<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실시와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비대면 조사 시스템 고도화, 신규 장비 사전 검증 의무화 및 현장인력 노무관리체계 확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본조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예행조사 대상 지역 조기 확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중앙-지방 간 협의를 내실화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는 2026년 본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1~2차 시험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조사 전 과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종합점검하는 것임. 2025년 시범예행조사 예산액 14억 2,700만원 중 17.5%에 달하는 2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년 시범예행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2024.12.31.) 현재 조사지역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중 19개 산업)
* (조사제외 산업 및 사업체) 가구내 고용활용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방 및 국가기밀보안 관련 시설,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가 없는 개인경영 부동산 임대업체

□ 조사지역: 부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안성시, 경상북도 경산시

□ 조사규모: 약 4만개 사업체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2024. 12. 31.
○ (조사대상 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조사일정) 2025. 6. ~ 12.

교 육	준비조사	본조사	내검 및 분석	결과 보고
'25.6.2.~6.10. (기간중 2일)	'25.6.16. (1일)	'25.6. 17.~7. 21. (기간중 25일) * (인터넷조사) 6.9.~7.4.	'25.8~11월	기획 : '25.11월 자료처리 : '25.12월

※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조사인력 : 총 220명(조사요원 176명, 조사관리자 41명, 조사지원담당자 3명)

* 내검: 응답자가 입력한 조사 내용에 오류나 누락,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당초 우리나라 전체 산업별 대표성을 갖춘 서울 구로구, 부산 등 대규모 시·군·구에서 약 5만 4천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대규모 지자체의 참여 저조로 인해 부득이하게 소규모 시·군·구 3개(부산 북구, 경기 안성시, 경북 경산시)로 대상지를 축소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 조사 사업체 수가 계획에 미달하면서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의 집행이 저조하였음.

이는 시범예행조사 지역 선정 시 모집단에 대한 정밀한 사전 분석 및 사전 업무협의가 선행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특히 예산 편성 당시에 계획했던 대표성을 갖춘 지자체의 참여 저조로 인해 시범조사 규모가 축소된 것은 본조사의 표본 대표성 및 통계 품질 확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처럼 시범예행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본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최종적으로 종합점검하고자 하는 시범예행조사의 본래 취지 및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본조사 역시 부실해질 우려가 클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차주기 경제총조사를 위한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추진 시 중앙-지방 간 협의를 내실화하여 전국적인 조사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실시 지역을 조기에 확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조사의 높은 중도 포기율을 해소하고 비대면 응답 완료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25년에 실시한 시범예행조사 결과, 인터넷조사를 시도한 5,672개 사업체 중 37.9%에 달하는 2,147개 사업체가 조사를 중도 포기하였으며, 이들 중 1,313개(61.2%)가 입력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는 내검 단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됨.

[2025년 시범예행조사 지역별 인터넷조사 시도·중도포기·완료 현황]

(단위: 개 사업체, %)

	전 체	경기 안성	부산 북구	경북 경산
총 조사대상 사업체 수(A)	35,190	12,023	8,665	14,502
조사 시도(B)	5,672	2,169	1,382	2,121
비율(B/A)	16.1	18.0	15.9	14.6
조사 완료(C)	3,512	1,379	834	1,299
완료율(C/A)	10.0	11.5	9.6	9.0
중도 포기(D)	**2,147**	780	548	819
중도포기율(D/B)	**37.9**	36.0	39.7	38.6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는 일반 가구 대상의 인구주택총조사와 달리, 경제총조사의 특성상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등 복잡한 수치 입력 항목이 많아 내검 과정에서 잦은 재검토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계식(비대면 기입) 조사의 한계로 인해 현장 조사원의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검 발생 건수(11,486건) 중 종사자 수 관련이 4,766건(41.5%), 매출액 관련이 3,722건(32.4%)을 차지하였음.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인터넷조사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는 이에 대해 금액 단위(백만원) 착오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한글 자동 병기 및 자동합계 기능을 도입하고, 문항별 맞춤형 기입 요령(TIP)을 제공하는 등 UI/UX[131]를 개선하였으며, 향후 모든 온라인 참여 사업체에 별도의 조사원 및 관리자를 배정하여 응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131) UI (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온라인조사 시스템 입력 도움 기능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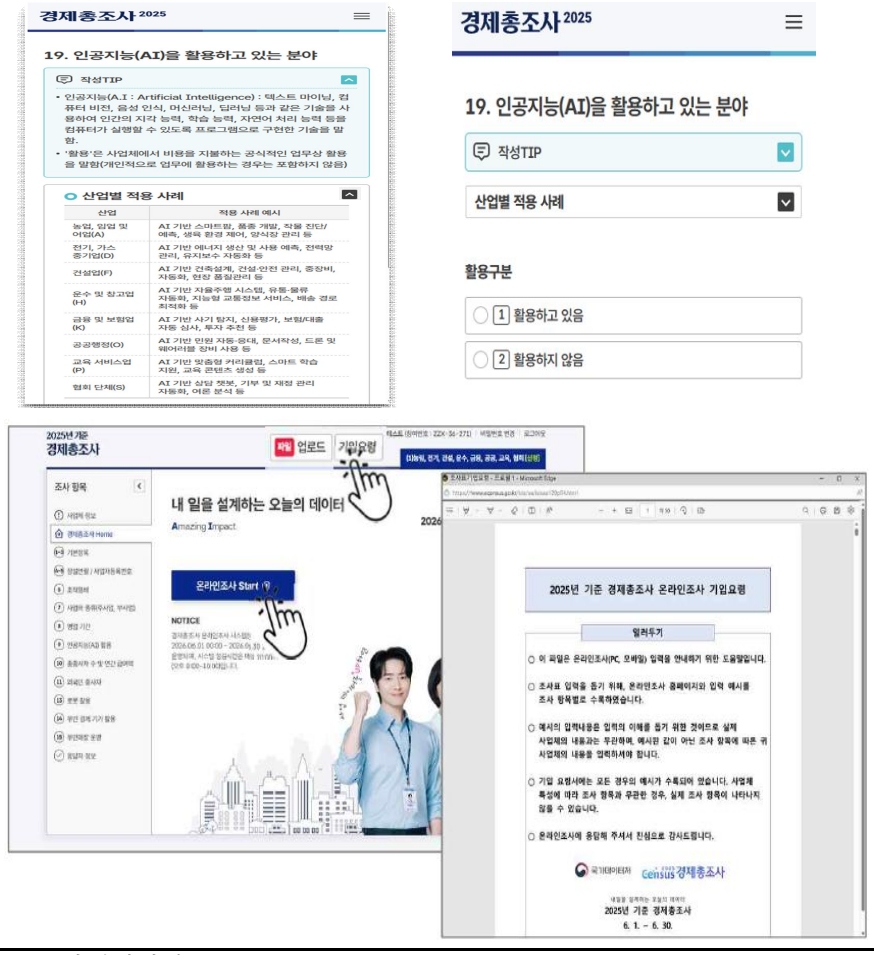
○ 수치 입력시 자동 한글 표시 화면

매출액(사업 수익) |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2024년 1년간 영업(사업) 활동으로 얻은 수입액(①+②)		
① 주사업 수익	주사업 영업(사업) 활동을 통한 수입액	이십사억 팔천 이백만 원 2482
② 주사업 이외 수익	주사업 이외 영업(사업) 활동을 통한 수입액	1,581
1 매출액(사업수익)		4,063

○ 문항별 작성 TIP 및 맞춤형 기입요령서 화면

좌: 펼쳤을 때, 우: 접었을 때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와 같은 시스템 편의성 보완 조치는 긍정적이나, 본조사 및 차주기 조사에서 대면 조사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비대면 응답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입력 보조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중도 포기가 빈발하는 내검 단계에서 오류 발생 시

응답자가 직관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알림 및 화면 설계를 개편해야 할 것임. 또한, 새롭게 배정되는 온라인 조사 전담 관리자가 개별 사업체의 입력 중단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유선 콜백(Call-back) 등 밀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비대면 조사 지원 체계 및 관리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국가데이터처는 신규 장비 도입 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당시, 국가데이터처는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가 8만 5천 원 상당의 '보이스 레코딩 기능 신분증 케이스' 275개를 도입하며 총 2,338만원(일반수용비)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보이스 레코딩 기능 신분증 케이스 상세구매내역]

구분	세부내용
전·후면	○ (전면) 신분증 삽입 ○ (후면) 녹음 스위치 및 상태 표시등
녹음 방법	○ (녹음) 후면 슬라이드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2초 이내 녹음 개시 ○ (저장) 스위치를 내리면 녹음 종료(→자동 저장)
주요 사양	○ 최대 8시간 녹음 가능 - 저장용량: 500시간(32GB)
소요 예산	○ 275개 × 단가 85,000원 = 23,375,000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해당 기기를 2025년 시범예행조사 시 현장 조사원에게 배부하여 시험하였는데, 케이스가 무겁고 조사원증이 쉽게 빠져 분실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불편함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해당 장비가 여성 조사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2025년 시범예행조사 시 현장 조사원에게 배부하여 시험하였으나, 보이스레코더를 활용할 만큼의 위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 사례가 없었으며, 해당 기기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가볍고 얇은 제품으로서 다른 대안이 부재하였고, 2026년 본조사에서는 2025년 시범조사 직후 회수한 274개에 더해, 2026년 본조사를 대비하여 500개(단가 7만 9천 원, 약 3,950만원 소요)를 추가로 구매하여 응답 거부 및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기기 774개를 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배포 대상을 취약지역으로 한정한다고 해서 장비 자체의 무거움과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조사원들의 실제 수요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장비 도입 시에는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 등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넷째, 국가데이터처는 대규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계약 해지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경제총조사 시범예행조사 진행 중 부산 북구에서 조사관리자의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도급조사원과 마찰이 발생하였고, 해당 조사원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등 노무 민원이 발생한 바 있음.

[2025년 시범예행조사 도급조사원 도급계약 해지 관련 경과]

- (6.20.) 조사표 보완을 위해 상황실 방문을 요청하는 조사관리자의 지시 불응
- (6.23.) 담당공무원,관리자,민원인 면담 및 업무 재배정을 위한 조사표 회수
- (7.7.) **민원인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 (7.17.) 부산시 1차 답변서 제출 및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 (7.18.) 민원인 변호사 선임하여 구제 신청이유서 2차 제출
- (7.23.) 부산시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 송부
- (7.29.) 부산시 공인노무사 선임비용 재배정(통계청) 및 공인노무사 선임
- (8.5.) 부산시 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 2차 추가 답변서 제출
- (8.13.) 민원인 대리 변호인 구제 신청이유서 3차 제출
- (8.22.) 부산시 공인노무사 노동위원회 3차 추가 답변서 제출
- (10.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기각 판정 처리**

자료: 국가데이터처

비록 해당 건은 도급조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판정되며 종결되었으나, 최근 판례 등[132]에서 통계조사원의 과거 도급계약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 등 도급조사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국가데이터처가 사전에 업무 태만 또는 불성실 조사원에 대한 명확하고 적법한 계약 해지 절차나 현장 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임.

기존 기관의 도급계약서상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국

1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179485 판결

가데이터처·지자체)이 주도하는 공식적인 해지 통보 서식은 없고 수급인(조사원)의 동의에 근거한 중도포기확인서 서식만 존재하여 중도포기로 유도(또는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점이 이번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국가데이터처는 사태 발생 이후 도급계약 해지 사전통지서 및 통보서 등 절차를 마련하여 법률 자문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대규모 인력이 전국적으로 동원되는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용 분쟁이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단순히 행정 서식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관리자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돌발적인 노무 민원 및 분쟁에 즉각적이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노무 관리 및 분쟁 대응 실무 매뉴얼'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관련 노동 법령 및 판례의 동향을 반영하여 도급 계약 관련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엄격한 위수탁 계약 기준을 확립하고, 문제 발생 시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5) 인구주택총조사의 내실화 필요(인구주택총조사, 조사관리국)

< 현 황 >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가구, 주택을 조사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158억 2,600만원으로, 이 중 1억 8,900만원을 전용하였고, 1,05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은 5년 주기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총조사를 실시하였음. 2025년 예산현액 1,143억 6,900만원 중 1,043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구주택총조사 (3034-307)	115,826	115,826	-	△189	-	115,637	105,585	-	10,051	5,595
- 인구주택총조사	**114,559**	**114,559**	**-**	**△189**	**-**	**114,369**	**104,320**	**-**	**10,049**	**-**
- 등록센서스	865	865	-	-	-	865	864	-	1	880
- 국제인구통계협력	402	402	-	-	-	402	402	-	-	402
- 자료처리	-	-	-	-	-	-	-	-	-	2,555
- 고령자조사	-	-	-	-	-	-	-	-	-	697
- 포상, 평가회, 연구용역	-	-	-	-	-	-	-	-	-	877
- 시험조사	-	-	-	-	-	-	-	-	-	184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부재·불응률 상승에 대응하여 맞춤형 홍보 및 비대면 조사 확대를 추진하며, 민감한 설문 문항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사의 대국민 수용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부재·불응률 상승에 대응하여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비대면 조사 확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주기(2020년) 대비 부재·불응 비율이 상승하였음. 특히 불응률은 1.2%로 전주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부재율이 6.7%로 전주기(2.6%) 대비 4.1%p나 높아졌음.

[2025년 및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방법별 현황] (단위: 천가구, %)

년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							부재	불응
			인터넷			전화	방문면접				
			계	모바일	PC		계	태블릿	종이		
2025	4,485	4,134	1,608	1,409	199	172	2,353	2,346	8	300	52
	100.0	92.2	35.9	31.4	4.4	3.8	52.5	52.3	0.2	6.7	1.2
2020	4,057	3,905	1,551	1,164	387	231	2,123	2,091	32	104	47
	100.0	96.3	38.2	28.7	9.5	5.7	52.3	51.6	0.8	2.6	1.2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는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비율 증가, 원룸·고시텔 등 주택 이외 거처 증가와 같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부재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해야 하지만, 2025년 비대면 조사율은 39.7%(인터넷 35.9%, 전화 3.8%)에 그쳐 전주기(43.9%) 대비 오히려 4.2%p 감소하였음.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가구·주택 분야의 총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핵심적 통계로서 그 결과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되거나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학술연구 또는 경영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대표성 및 정확성이 중요함. 그러나 통계조사에 있어 높은 부재·불응률은 조사 결과가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통계의 정확성을 감소시키고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데이터처는 응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부재·불응률이 높은 특정 연령대 및 주거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표본 집단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특화된 홍보 방안 및 인센티브 제공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모바일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비대면 조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민감한 조사 항목의 필요성 및 문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국민적 불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전주기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당시 조사항목 중 출산한 자녀 중 사망한 자녀, 혼인 상태, 혼인 연월, 1인 가구 사유 등의 항목에 대하여 민감한 사항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과 불만이 다수 제기된 바 있었으며[133], 당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및 설문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실제로 일부 조사 항목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과정에서는 가구주와 성별이 같은 동거인을 '배우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허용한 것을 두고,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조치가 '현행 헌법 및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의견과 '법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실질적인 거주 및 가족관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통계의 책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등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134]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응답자의 조사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 입력 제한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입력 방법을 변경한 것이며, 이는 동성 배우자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총조사 전반의 정확성을 높이고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상의 조치였다는 입장임.

133) 동아일보, 「"사망자녀 꼭 물어야 하나"... 인구주택총조사에 불쾌감 호소」, 2020.10.26.
연합뉴스, 「"월세 얼마? 사망 자녀는? 나라에 신상 털린 느낌"」, 2020.11.16. 등

134) 관련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국가데이터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성 배우자 등 민감한 사항의 통계 반영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는 국민적 수용성이 조사 신뢰도와 불응률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민감한 사안을 조사 항목에 포함할 때에는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차주기 조사를 기획함에 있어, 변화하는 사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항목을 반영하더라도 설문문항의 문구나 단어 등을 사려 깊게 선택하여 국민이 불편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의 공식적인 협의 및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통계적 목적 달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농림어업총조사 예산 집행의 내실화 및 등록센서스 전환 추진 필요(농림어업총조사, 사회통계국)

< 현 황 >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농림어가 수, 농림어가 인구 등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기본구조와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정책수립 및 평가·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5년 주기의 국가기본통계 사업(농림어업총조사)과 연단위로 조사하는 농림어업조사로 구분되어 있음.

내역사업인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은 5년 주기로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총조사를 실시하였음. 2025년 예산액은 564억 4,700만원으로, 이 중 9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469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5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56,447	56,447	-	△920	-	55,526	46,932	-	8,594	3,354
- 농림어업총조사	56,447	56,447	-	△920	-	55,526	46,932	-	8,594	2,327
- 농림어업조사	-	-	-	-	-	-	-	-	-	1,027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정밀한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데이터 연계·협력을 통해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데이터처는 정밀한 예측을 통해 예산 불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2025회계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세부사업의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15.5%에 달하는 85억 9,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는 행정자료 연계 확대를 통해 대상 가구를 정밀히 선별하여 당초 예산 편성 당시 계획(278만 가구) 대비 15.8% 감소한 234만 가구를 조사함에 따라 인건비 등이 절감되어 불용이 발생한 것이며, 이는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라는 입장임.[135]

행정자료 활용을 통해 현장 조사 비용을 절감한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예산 편성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한 수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예산 소요 예측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국가데이터처는 홍보 매체비 집행을 위해 2025년 7월에 일반용역비(210-14) 3억 3,3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여 증액하였음.

[2025회계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세부사업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세목		세부사업 명	세목	
조정 ('25.7.28.)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210-14	333	농림어업총조사 (3035-308)	210-01	2025 농림어업총조사 홍보 용역사업 매체비 집행을 위한 세목조정

* 인구주택총조사 세부사업 등 간의 전용 등은 제외하였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2025년도 예산 및

135) 국가데이터처는 동 사례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사례로 제출하였으나, 미선정되었음.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TV·신문·잡지 등에 대한 광고료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해야 함. 국가데이터처는 홍보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일괄 편성한 후 홍보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 홍보용역비와 광고 매체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광고 매체비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해야 하므로 당초 편성된 일반용역비에서 세목조정 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조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총조사임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홍보 매체 비중 및 광고료 소요 등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하지 못하고 집행 과정에서 세목조정을 실시한 것은 예산 편성의 계획성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세부사업 집행 결과 정작 일반수용비 비목에서 도급조사원 인건비 미집행액(56억 8,0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66억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세목조정을 통해 증액한 3억 3,300만원보다 훨씬 큰 규모인 만큼, 결과적으로 동 세목조정은 필요하지 않았던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

[2025회계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세부사업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농림어업총조사	56,447	56,447	△920	55,526	46,932	-	8,594
- 일반수용비 (210-01)	43,050	43,050	**333**	43,383	36,772	-	**6,611**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는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나 전체 비목의 여유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세목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총조사 예산 편성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제 투입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자의적인 세목조정 등을 최소화하여 엄격한 재정 규율을 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데이터처는 유관 부처와의 데이터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행정자료를 확보하는 등 농림어업총조사의 효율적인 등록센서스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총조사 등 타 총조사 사업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각각 2015년, 2020년에 도입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것과 달리, 농림어업총조사는 여전히 현장 방문 위주의 대면 조사 체계를 고수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는 4년째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기법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22종의 행정자료를 입수하며 명부의 정확성 제고를 시도하고 있음.

[농림어업총조사 센서스 도입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2022~2025)]

연 도	사업내용
2022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도입 연구
2023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기법(조사방법) 연구
2024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기법(자료분석) 연구
2025	농림어업총조사 등록센서스 시산 및 분석 방안 연구

자료: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 명부 정확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료 입수 활용사례]

자료	소관기관	입수시기
농지대장	한국농어촌공사	'25.2.
축산업등록명부	농림축산식품부	'25.2
어업인 행정자료(12종)*	해양수산부	'25.2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산림청	'25.4
주민등록자료	행정안전부	'25.2,'25.8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25.1.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이용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5.1.
사망자료**	-	'25.2.

* 어업경영체등록명부, 어업허가·면허·신고등록명부, 수협조합원가입·탈퇴명부, 양식업허가등록명부, 내수면어업등록명부, 전자어업허가증명부, 어업허가지위승계명부, 어장관리선등록명부, 낚시어선허가대장

**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과 통계자료 활용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러나 농림어업총조사의 등록센서스 전면 전환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등 핵심 행정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국가데이터처는 2023

년 10월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자료에 대한 품질 확보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등록자료 입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현장 조사의 어려움과 응답자의 초고령화[136] 등으로 인해 기존 대면 조사 방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한 등록센서스 전환은 필요한 과제임. 성공적인 등록센서스 도입은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정부 내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유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유관 부처의 협조 및 핵심 행정자료 입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2030년 차주기 총조사에서는 등록센서스 전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성영상 및 행정자료 연계 시험조사 등 세부 이행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136) 농림어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51.0%로 전체인구(20.3%) 보다 30.7%p 높음(2025년 12월 기준)

(7) 국외업무여비 집행 개선 필요(통계연구개발지원, 국가데이터연구원)

< 현 황 >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선진통계조사기법, 통계추정기법 연구강화로 국가통계 발전을 선도하고,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통계분석연구를 통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3억 7,600만원으로, 이 중 13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의 2025년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은 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통계연구개발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1,376	1,376	-	-	-	1,376	1,332	-	44	1,564
- 국외업무여비 (220-02)	50	50	-	-	-	50	50	-	-	50

< 검토의견 >

국가데이터처는 동일한 목적의 출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업의 예산을 혼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의 글로벌 표준 대응 및 선진 통계 기법 습득을 위해 SDG 지표 전문가그룹(IAEG-SD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회의와 북미통계학술대회(JSM: Joint Statistical Meetings)에 참석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SDG 지표 전문가그룹(IAEG-SDGs) 회의 및 북미통계학술대회(JSM) 참가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동일한 행사에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연구원 직원의 비용은 주요사업비인 '통계연구개발지원'에서, 본부 직원의 비용은 다른 주요사업비인 '국제통계협력강화'에서 분산하여 집행하였음.

[2025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기간	출장비	출장목적
SDGs 지표 전문가 그룹 회의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일본, 기타큐슈	2	'25.11.4. ~ 11.8.	3,572	○제16차 SDG 지표 전문가그룹(IAEG-SDGs) 회의 참가
	국제통계협력강화 (7031-303)		2	'25.11.5. ~11.7.	4,239	
북미통계학술대회 (JSM)	통계연구개발지원 (4031-311)	미국 (내슈빌)	2	'25.8.2. ~8.7.	9,599	○한인국제통계협회(KISS)와의 협력 강화 및 NORC, BLS 등[1] 주요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데이터 융합, 복합표본 설계 등 글로벌 연구 흐름 파악
	국제통계협력강화 (7031-303)		1	'25.8.2. ~8.7.	3,875	○통계생산, 표본설계·추정 부문 등에 대한 최신 이슈 및 연구 동향 파악

1) NORC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해당 회의의 의제가 넓어 본부와 연구원이 각자의 기관 특성에 맞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로 책정된 여비를 사용한 것이며, 내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집행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하나의 국제회의에 참가하면서 부서별 세부 참가 목적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출장 비용을 별개의 주요사업비로 각각 나누어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고, 국회의 예산심의도 세부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성과평가나 결산 또한 세부사업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회의 재정 통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향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국제회의 및 학술대회 참가 시, 단

일 세부사업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예산상의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용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단일 세부사업에서 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5회계연도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은 예산(2,964억 2,000만원) 대비 129억 3,200만원(4.4%) 초과 수납된 3,093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4억 4,600만원(△15.7%)이 감소하였음.

주요 감소 사유는 국세청 소관 세입 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57.0%)을 차지하는 가산금 수입이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49억원(△26.9%)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5년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관유물대여료 700만원,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866억 2,9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0만원, 가산금 1,764억 8,1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461억 7,600만원, 잡수입 5,7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결산(A)	2025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			
○ 일반회계	3,668	2,964	2,964	3,094	△574	△15.7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3,667	2,963	2,963	3,093	△574	△15.7
- 기타 (재산수입, 재화및용역판매수입, 관유물매각대 등)	1	1	1	1	-	-
합 계	3,668	2,964	2,964	3,094	△574	△15.7

자료: 국세청

(2) 세출 결산

2025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조 40억원이고, 예산현액은 2조 40억원이며, 지출액은 2조 1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의 집행률을 보임.

2025년도 이용액(移用額)은 78억원으로 납세고지서 등 발송에 48억원, 인건비 보수에 26억원, 확정채무 지급에 3억원, 법정 신고포상금에 1억원을 이용하였고, 전용액(轉用額)은 62억원으로 인건비 보수에 25억원, 정보화 사업에 11억원, 고용부담금에 8억원 기타 부족분에 18억원을 전용하였음.

2025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전년 대비 136억원 감소한 29억원으로 불용사유별 내역은 집행 잔액 23억원, 예산절감 6억원임.

2025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의 프로그램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과세기반확충 181억 8,100만원, 탈세대응강화 1,397억 8,600만원, 체납·징수관리 728억 8,600만원,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169억 2,900만원, 국세행정지원 1조 7,322억 9,400만원, 책임운영기관운영 210억 3,9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결산(A)	2025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			
○ 인건비	13,477	13,912	13,912	13,956	479	3.6
○ 기본경비	1,393	1,469	1,469	1,418	25	1.8
○ 사업비	4,477	4,659	4,659	4,637	160	3.6
합 계	19,347	20,040	20,040	20,011	664	3.4

자료: 국세청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387,206	366,798	296,420	296,420	309,351	104.4	311,025
11 재산수입	**24**	**48**	**74**	**74**	**7**	**9.5**	**83**
51 관유물대여료	24	48	74	74	7	9.5	83
511 토지대여료	7	10	12	12	9	75.0	13
512 건물대여료	17	38	62	62	△2	△3.2	70
12 경상이전수입	**386,757**	**366,665**	**296,271**	**296,271**	**309,287**	**104.4**	**310,834**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79,441	80,439	89,938	89,938	86,629	96.3	85,890
561 벌금및과료	46,463	47,664	59,230	59,230	58,065	98.0	53,353
563 과태료	33,351	33,034	30,669	30,669	28,620	93.3	32,474
564 징계부가금	6	6	39	39	111	284.6	63
565 과징금	△379	△265	-	-	△167	-	-
57 변상금및위약금	25	17	5	5	1	20	5
571 변상금	12	17	5	5	1	20	5
572 위약금	13	-	-	-	-	-	-
58 가산금	273,762	241,413	174,150	174,150	176,481	101.3	187,590
581 가산금	273,762	241,413	174,150	174,150	176,481	101.3	187,59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33,529	44,796	32,178	32,178	46,176	143.5	37,349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33,529	44,796	32,178	32,178	46,176	143.5	37,349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5**	**61**	**25**	**25**	**57**	**228.0**	**58**
69 잡수입	65	61	25	25	57	228.0	58
691기타잡수입	65	61	25	25	57	228.0	58
14 수입대체경비수입	-	-	-	-	-	-	-
69 잡수입	-	-	-	-	-	-	-
691 기타잡수입	-	-	-	-	-	-	-
15 관유물매각대	**360**	**24**	**50**	**50**	**-**	**-**	**50**
71 고정자산매각대	53	24	50	50	-	-	50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53	24	50	50	-	-	5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07	-	-	-	-	-	-
723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07	-	-	-	-	-	-

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1,893,570	1,934,676	2,004,000	2,004,000	2,001,115	99.9	2,311,158
1100 과세기반확충 프로그램 계	14,102	13,555	18,546	18,546	18,181	98.0	14,455
1131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5,185	4,579	4,319	4,319	4,090	94.7	3,208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1131-300)	5,185	4,579	4,319	4,319	4,090	94.7	3,208
1133 부동산납세 지원	7,557	7,377	12,478	12,478	12,444	99.7	9,784
대형집단상가등기준시가 고시 (1133-301)	2,843	2,854	2,886	2,886	2,853	98.9	3,070
종합부동산세 운영지원 (1133-302)	191	0	0	0	0	0.0	0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1133-303)	4,523	4,523	9,592	9,592	9,591	100.0	6,714
1134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351	1,403	1,431	1,431	1,345	94.0	1,19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운영 (1134-300)	1,351	1,403	1,431	1,431	1,345	94.0	1,193
1135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9	0	0	0	0	0.0	0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지원 (1135-300)	9	0	0	0	0	0.0	0
1136 디지털세 운영지원	0	196	318	318	302	95.0	270
디지털세 운영지원 (1136-300)	0	196	318	318	302	95.0	270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100 탈세대응강화 프로그램 계	**132,363**	**132,432**	**140,830**	**140,830**	**139,786**	**99.3**	**90,775**
2131 국세징수활동지원	108,959	108,930	117,471	117,471	116,749	99.4	68,292
부과·징수지원 (2131-300)	38,102	42,163	43,087	43,087	43,055	99.9	0
부과·징수자료수집비 (2131-301)	48,867	48,580	48,598	48,598	48,551	99.9	48,598
조사활동지원 (2131-302)	21,990	18,187	25,786	25,786	25,143	97.5	19,694
2132 역외탈세대응활동	6,372	6,544	6,926	6,926	6,855	99.0	5,682
역외탈세대응활동 (2132-300)	6,372	6,544	6,926	6,926	6,855	99.0	5,682
2133 법무심사지원	13,895	13,683	13,228	13,228	12,984	98.2	12,827
확정채무 지급 (2133-300)	5,811	4,797	4,335	4,335	4,677	107.9	4,335
소송수행비용 (2133-301)	8,084	8,886	8,893	8,893	8,307	93.4	8,492
2134 FIU정보통합 분석시스템(FOCAS)운영 (정보화)	794	809	774	774	767	99.1	774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FOCAS)운영(정보화) (2134-300)	794	809	774	774	767	99.1	774
2136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343	2,466	2,431	2,431	2,431	100.0	2,017
납세조합법정교부금 (2136-300)	2,343	2,466	2,431	2,431	2,431	100.0	2,017
2138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0	0	0	0	0	0.0	1,183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2138-300)	0	0	0	0	0	0.0	1,18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200 체납·징수관리 프로그램 계	**72,655**	**74,472**	**68,024**	**68,024**	**72,886**	**107.1**	**293,672**
2232 체납정리지원	6,360	5,634	5,877	5,877	5,746	97.8	229,611
압류재산공매 (2232-301)	4,838	4,011	4,254	4,254	4,244	99.8	228,232
징수위탁수수료 (2232-303)	1,522	1,623	1,623	1,623	1,502	92.5	1,379
2233 납세고지서 등 발송	66,295	68,838	62,147	62,147	67,140	108.0	64,061
납세고지서 등 발송 (2233-300)	66,295	68,838	62,147	62,147	67,140	108.0	64,061
3100 성실납세 및 민생지원 프로그램 계	**19,342**	**18,916**	**19,270**	**19,270**	**16,929**	**87.9**	**17,111**
3132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2,860	3,257	3,265	3,265	3,059	93.7	2,625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132-300)	2,860	3,257	3,265	3,265	3,059	93.7	2,625
3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1,131	1,291	1,312	1,312	1,014	77.3	1,115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1,131	1,291	1,312	1,312	1,014	77.3	1,115
313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2,739	3,396	3,828	3,828	3,809	99.5	4,039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134-300)	2,739	3,396	3,828	3,828	3,809	99.5	4,039
3135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8,733	5,758	5,546	5,546	5,318	95.9	4,977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3135-300)	8,733	5,758	5,546	5,546	5,318	95.9	4,977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3136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234	234	234	234	221	94.4	199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3136-300)	234	234	234	234	221	94.4	199
3137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645	1,659	2,560	2,560	1,046	40.9	1,911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3,645	1,659	2,560	2,560	1,046	40.9	1,911
3138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0	964	138	138	97	70.3	0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3138-300)	0	964	138	138	97	70.3	0
3140 소득자료관리 시스템 운영(정보화)	0	2,357	2,387	2,387	2,365	99.1	2,245
소득자료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3140-500)	0	2,357	2,387	2,387	2,365	99.1	2,245
7100 국세행정지원 프로그램 계	**1,635,616**	**1,675,037**	**1,736,224**	**1,736,224**	**1,732,294**	**99.8**	**1,873,552**
7101 인건비	1,300,464	1,338,112	1,381,203	1,381,203	1,385,621	100.3	1,475,721
인건비 (7101-100)	1,300,464	1,338,112	1,381,203	1,381,203	1,385,621	100.3	1,475,721
7111 본부 기본경비	47,380	46,888	50,058	50,058	48,796	97.5	50,47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0)	24,692	22,843	23,944	23,944	22,899	95.6	23,846
정보화관리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1)	301	306	312	312	320	102.6	350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총액) (7111-202)	86	87	93	93	95	102.2	99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총액) (7111-203)	165	182	188	188	188	100.0	201
징세법무국 기본경비(총액) (7111-204)	150	148	151	151	154	102.0	171
개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5)	2,562	2,227	2,246	2,246	2,245	100.0	2,272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6)	153	153	153	153	153	100.0	17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총액) (7111-207)	120	120	125	125	125	100.0	136
조사국 기본경비(총액) (7111-208)	205	177	226	226	209	92.5	226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총액) (7111-209)	133	139	143	143	143	100.0	149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10,348	12,108	13,150	13,150	13,157	100.1	12,938
정보화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1)	254	297	286	286	275	96.2	296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7111-252)	1,026	1,096	1,170	1,170	1,053	90.0	1,088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2,129	2,112	2,576	2,576	2,555	99.2	2,119
징세법무국 기본경비 (7111-254)	885	919	986	986	910	92.3	969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5)	1,891	1,549	1,914	1,914	1,810	94.6	2,485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1,111	1,140	1,100	1,100	1,224	111.3	1,38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7111-257)	543	732	732	732	735	100.4	976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조사국 기본경비 (7111-258)	546	473	483	483	466	96.5	528
복지세정관리단 기본경비 (7111-259)	80	80	80	80	80	100.0	79
71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241	6,247	6,586	6,586	6,110	92.8	6,740
교육원 기본경비(총액) (7118-201)	290	291	295	295	285	96.6	301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총액) (7118-202)	41	40	45	45	45	100.0	47
교육원 기본경비 (7118-251)	5,400	5,271	5,567	5,567	5,160	92.7	5,876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 (7118-252)	510	645	679	679	620	91.3	516
7124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82,876	84,635	88,582	88,582	85,301	96.3	88,317
서울청 기본경비(총액) (7124-200)	4,588	4,560	4,701	4,701	4,705	100.1	5,229
중부청 기본경비(총액) (7124-201)	2,315	2,272	2,456	2,456	2,415	98.3	2,659
대전청 기본경비(총액) (7124-202)	1,295	1,292	1,363	1,363	1,421	104.3	1,481
광주청 기본경비(총액) (7124-203)	1,152	1,142	1,275	1,275	1,167	91.5	1,346
대구청 기본경비(총액) (7124-204)	1,235	1,243	1,282	1,282	1,306	101.9	1,414
부산청 기본경비(총액) (7124-205)	1,905	1,796	2,107	2,107	2,039	96.8	2,222
인천청 기본경비(총액) (7124-206)	1,519	1,575	1,592	1,592	1,642	103.1	1,751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서울청 기본경비 (7124-250)	17,304	17,849	17,436	17,436	16,963	97.3	15,452
중부청 기본경비 (7124-251)	12,589	13,148	13,886	13,886	13,234	95.3	14,032
대전청 기본경비 (7124-252)	7,731	7,989	8,377	8,377	8,152	97.3	8,562
광주청 기본경비 (7124-253)	7,038	7,170	7,935	7,935	7,403	93.3	7,999
대구청 기본경비 (7124-254)	6,743	6,511	6,987	6,987	6,575	94.1	6,939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10,258	10,547	11,049	11,049	10,638	96.3	11,029
인천청 기본경비 (7124-256)	7,204	7,542	8,136	8,136	7,641	93.9	8,202
7132 직장어린이집 운영	3,297	3,297	3,297	3,297	3,297	100.0	3,297
직장어린이집 운영 (7132-300)	3,297	3,297	3,297	3,297	3,297	100.0	3,297
7133 국세행정 전산화(정보화)	104,859	100,059	104,629	104,629	103,792	99.2	103,454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0)	52,593	46,351	49,461	49,461	48,785	98.6	53,93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1)	41,665	42,546	45,412	45,412	45,317	99.8	37,914
국세정보분석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2)	10,601	11,162	9,756	9,756	9,690	99.3	11,610
7136 취업후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2,937	2,899	2,799	2,799	2,384	85.2	2,256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6-500)	2,937	2,899	2,799	2,799	2,384	85.2	2,256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137 국세업무활동지원	0	0	0	0	0	0.0	37,635
국세업무활동지원 (7137-300)	0	0	0	0	0	0.0	37,635
7138 청사확보 및 환경개선	82,243	90,753	97,173	97,173	95,098	97.9	103,741
세무환경개선 (7138-302)	8,641	9,538	9,789	9,789	9,765	99.8	8,320
임시청사 이전비용 (7138-303)	35,400	38,305	39,350	39,350	38,640	98.2	44,525
행정지원인력 운영 (7138-304)	38,202	42,910	48,034	48,034	46,693	97.2	47,506
청사 안전관리 지원 (7138-305)	0	0	0	0	0	0.0	3,390
7139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041	2,052	1,797	1,797	1,810	100.7	1,913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139-300)	2,041	2,052	1,797	1,797	1,810	100.7	1,913
7140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78	0	0	0	0	0.0	0
복지행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7140-500)	3,278	0	0	0	0	0.0	0
7143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0	95	100	100	85	85.0	0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ODA) (7143-300)	0	95	100	100	85	85.0	0
7200 책임운영기관운영 프로그램 계	**19,492**	**20,264**	**21,106**	**21,106**	**21,039**	**99.7**	**21,593**
7202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9,350	9,612	10,009	10,009	9,971	99.6	10,923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7202-100)	9,350	9,612	10,009	10,009	9,971	99.6	10,923
7218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1,321	1,548	1,634	1,634	1,611	98.6	1,207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총액) (7218-200)	891	994	1,008	1,008	985	97.7	1,027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7218-250)	430	554	626	626	626	100.0	180
7231 홈택스상담 센터운영	8,821	9,104	9,463	9,463	9,457	99.9	9,463
홈택스상담센터 운영 (7231-300)	8,821	9,104	9,463	9,463	9,457	99.9	9,463

나. 검토의견

(1)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필요 (국세외수입, 징세법무국)

< 현 황 >

국세청 일반회계 '국세외수입'은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 예산현액은 2,964억 2,000만원으로, 이 중 15조 9,366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093억 5,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4조 3,691억 2,1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토지대여료 (51-511)	12	12	-	12	9	9	-	-	13
건물대여료 (51-512)	62	62	-	62	△2	△2	-	-	70
벌금 및 과료 (56-561)	59,230	59,230	-	59,230	58,065	58,065	-	-	53,353
과태료 (56-563)	30,669	30,669	-	30,669	125,869	28,620	86,755	10,494	32,474
징계부가금 (56-564)	39	39	-	39	366	111	255	-	63
과징금 (56-565)	-	-	-	-	△167	△167	-	-	-
변상금 (57-571)	5	5	-	5	8	1	7	-	5
가산금 (58-581)	174,150	174,150	-	174,150	15,687,796	176,481	14,263,918	1,247,397	187,59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32,178	32,178	-	32,178	64,689	46,176	18,185	328	37,349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기타잡수입 (69-691)	25	25	-	25	57	57	-	-	58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71-713)	50	50	-	50	-	-	-	-	50
합계	296,420	296,420	-	296,420	15,936,680	309,351	14,369,120	1,258,219	311,025

< 검토의견 >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앞서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역량을 강화하고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4조 3,691억 2,100만원이고, 이중 체납액은 13조 9,778억 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137)]

[연도별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산금	14,096,032	14,467,997	14,466,586	14,636,817	13,874,350
과태료	90,986	114,771	101,531	95,491	85,925
징계부가금	-	-	-	273	255
변상금	1,469	1,469	1,469	8	8
기타경상이전수입	8,260	10,176	12,897	15,211	17,358
합계	14,196,746	14,954,412	14,582,483	14,747,800	13,977,852

자료: 국세청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2025년 기준 총 13조 8,743억 5,0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음. 가산금의 경우 전년 대비 체납 규모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99.26%를 차지하고 있음.

가산금 수납액은 2021년 5,541억 800만원에서 2025년 1,764억 8,1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1조 917억 2,900만원 등 총 1조 2,473억 9,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으며, 수납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137)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고지된 금액 중 국고 미납 금액을 의미하고, 체납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 상태의 금액을 의미함.

[연도별 가산금 징수결정·수납·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납기 연장	정리 유예	정리중 체납액	수납율 (B/A)
2021	15,504,800	554,108	477,279	14,473,413	11,222	366,159	14,096,032	3.6
2022	15,431,309	364,862	245,813	14,820,633	8,865	343,772	14,467,997	2.4
2023	15,361,135	273,762	254,367	14,833,006	3,505	362,915	14,466,586	1.8
2024	15,302,544	241,413	210,399	14,850,732	2,031	211,884	14,636,817	1.6
2025	15,687,796	176,481	1,247,397	14,263,918	1,368	388,200	13,874,350	1.1

주: 2025년도 불납결손액 1조 2,473억 9,700만원의 사유별 현황은 소멸시효 완성(1조 917억 2,900만원), 강제징수 중지(1,549억 5,600만원), 채무면제 등(7억 1,200만원)임.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10년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 가산금이 국세의 후순위가 되어 가산금 체납액의 증가속도가 빨라졌고[138],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불납결손 처분하는 결손처분 규정의 삭제[139]로 인해 2013년부터는 불납결손 처분되지 못한 전년도 미수납액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징수결정액으로 회계처리되었음.[140]

또한, 2020년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전환되어[141]

---

138) 2009년까지는 체납세액 징수 순위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였으나, 체납액을 소액 분할납부하는 경우 국세가 아닌 가산금부터 충당함에 따라 체납액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징수 순서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2020년부터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가산세 제외), 가산세 순으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순화하였음.

139) 1997년 이전에는 결손처분시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 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국세청 내부적으로 일정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게 되어 법률에 결손처분을 규정할 실익이 없음을 감안하여 2011년 세법개정(2013. 1. 1. 시행)을 통해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었음.

140)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 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141)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전환되어 국세수입으로 징수됨.
(舊)「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18. 12. 31. 삭제)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신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경정결정 시 발생하는 가산금과 체납 후 최장 60개월까지 가산되는 중가산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간 비교]

개정 전 (舊 국세징수법 §21)	개정 후 (국세기본법 §47의4)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고지 전) → 미납세액에 1일 0.025%(ⓐ) ○ 가산금(납부고지 후) → 미납세액에 3%(ⓑ) + 매 1개월마다 월 0.75%(ⓒ)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지연이자 성격(ⓐ+ⓒ)은 1일 0.022%로 전환 → 체납에 대한 제재(ⓑ)는 3% 기존대로 유지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 시 가산금이 국세보다 후순위로 징수되고 있고,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폐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징수 가능성이 높은 신규 발생 가산금이 감소한 것이 가산금 체납액 정리 실적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2025년 과태료 체납액은 총 859억 2,500만원이고 과태료 수납율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국세청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징수결정액으로 이월 누적되어 기간이 경과할수록 징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어 국세 체납 시 적용되는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처분 면탈자 처벌[142] 등의 제재수단 활용이 불가하여 동시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후순위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징수법(법률 제17758호)」 부칙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142)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결정·수납·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납기 미도래	납기 연장·정리 유예	정리중 체납액	
2021	258,794	84,677	70,189	103,928	9,840	3,102	90,986	32.7
2022	215,106	31,037	64,362	119,683	3,820	1,092	114,771	14.4
2023	169,974	33,351	22,852	113,771	12,172	68	101,531	19.6
2024	153,960	33,034	23,855	97,071	792	789	95,490	21.5
2025	125,869	28,620	10,494	86,755	745	85	85,925	22.7

주: 2025년도 불납결손액 104억 9,400만원의 사유별 현황은 강제징수 중지(103억 8,800만원), 소멸시효 완성(1억 500만원)임.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다만, 가산금이나 과태료 등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는 체납자와 성실납세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체납액의 관리 및 징수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하므로 조세정의 실현 및 조세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함.

또한, 가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발생 가산금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체납액 징수 노력 또는 역량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한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 국세외수입별 관리주체 분산에 따른 체납자 정보 통합관리 및 체계적 대응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2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였고,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 실시를 위하여 1,499억 6,2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2024년 기준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체납액 14조 7,478억원을 포함한 전 부처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4조 569억원에 달하는데, 현재 국세청이 자체 소관 체납액 징수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부처 소관 체납액까지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국세청 소관 체납액	전 부처 체납액	세부내역
경상이전수입	147,478	240,569	
가산금	146,368	156,881	
기타경상수입	152	53,862	* 고용부 43,214, 복지부 3,450
법정부담금	-	12,494	* 환경부 5,250
변상금	0.08	924	* 과기부 195, 국방부 179
위약금	-	4,836	* 방사청 4,409
벌금 및 과태료 등	958	11,572	* 경찰청, 공정위 등
사회보장기여금	-	11,935	* 고용부 11,935 - 고용자부담금 9,518 - 피고용자부담금 2,417
융자회수금	-	11,912	* 민간융자원금회수 11,794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6,414 -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3,971
관유물매각대	-	1,257	* 재고자산매각대 및 유동자산 (행안부 1,190) *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67
재산수입	-	3,202	* 관유물대여료 403 - 토지대여료 268(국토부 189) - 건물대여료 113(국방부 77) - 기타관유물대여료 22(국토부 22) *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789 (기타재산수입 2,413, 민간이자 374) * 이자수입 11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182	* 면허료및수수료 63 - 면허료(새만금청 29, 해수부 22) * 잡수입 66 * 항공항만및용수수입 45
기타수입	-	513	
예금 및 예탁금	-	67	*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67
합 계	147,478	269,637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따라서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에 앞서 체납액 징수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체납액 정리실적 및 징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국토교통부 이관 필요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자산과세국)

< 현 황 >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은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가액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 소재 오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거래시세를 조사하여 산정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28억 8,600만원으로, 이 중 3,2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28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사업 (1133-301)	2,886	2,886	-	△32	-	2,854	2,853	-	1	3,070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따라 대형집단상가 등 기준 시가 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 주체를 일원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장은 「소득세법」[143]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144]에 근거하여 전국 소재 오

14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스텔과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별도로 산정·고시해 왔음.

---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고시) 현황]

구 분		명 칭	공시(고시) 대상	공시(고시)기관	적 용
토 지 ('90.8.30. 최초 공시)		개별공시지가	토지	국토부장관 (지자체)	국세 · 지방세
주 택 ('05.4.30. 최초 공시)		공동주택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국토부장관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다가구 등 포함)	국토부장관 (지자체)	
비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05.1.1. 최초 고시)	대형상가와 오피스텔	국세청장	상증세 양도세
	위 고시되지 않은 건물	건물기준시가 ('01.1.1. 최초 고시)	고시되지 않은 건물의 계산방법 고시		
	전체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 시가표준액	주택 외 건축물 계산방법 공시	행안부장관	지방세

자료: 국세청

그런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9일 전부개정되어(2016. 9. 1.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다만, 같은 법 제22조[145]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평가·고시하는 경우 중복 고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고시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 시행 후 10년이 경과한 2026년에 이르기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평가·고시 업무가 국세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주체를 일원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146].

특히,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의하여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의 조속한 이관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147]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나, 비주거 부동산 기준시가 고시 업무

14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한다.

146) 국세청은 기준시가 업무의 조속한 이관을 위해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47)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49p

이관에 대한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는 상황임.

[고시업무 이관을 위한 국세청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내역]

연번	협의내용	일자
1	공시제도 도입시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2023.05.
2	공시제도 도입시기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2024.05.
3	국토부의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 시기 및 진행 현황 협의	2025.02.
4	공시가격 일원화 관련 진행 상황 확인 및 협의 요청	2025.07.
5	기준시가 고시사업 사업이관 업무협의	2026.04.
6	업무이관 방안(예산반영 등) 검토요청 및 실무협의	2026.08.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부대의견을 이행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과세국)

< 현 황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95억 9,200만원으로,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1133-303)	9,592	9,592	-	-	-	9,592	9,592	-	-	6,714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2025년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 신고건수 중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한 신고비율은 22.2%에 불과하므로,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중심 과세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 상향 등을 비롯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148]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1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별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동 사업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함에 따라 시가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하는 절차로 추진됨.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절차	내용
신고서 접수	○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세 신고서 전산입력 및 신고서 오류 검증 실시
감정평가대상 선정	○ 상속·증여세 신고서,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정평가 검토대상 물건 추출 ○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 물건으로 선정
조사착수 및 감정평가 실시	○ 신속히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 수립 ○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납세자에게 감정평가 협조안내문 발송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와 함께 감정평가 착수 ○ 감정평가대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 완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 심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고지

자료: 국세청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최근 5년간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신고 및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전체 신고건수는 2021년 57,351건에서 2025년 48,566건으로 8,785건(15.3%) 감소하였으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는 같은 기간 7,367건에서 10,801건으로 3,434건(46.6%) 증가하여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비율은 12.8%에서 22.2%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동 사업이 부동산 저평가를 악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감정평가 반영 비율이 23.0%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은 사업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에 미흡함.

[최근 5년간 비주거용 부동산 신고 및 감정평가 실시 현황]

(단위: 건, %)

연도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 신고건수 (A)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건수 (B)	국세청 감정평가 실시건수 (C)	자발적 감정평가 비율 (B/A)	전체 감정평가 비율 ((B+C)/A)
2021	57,351	7,367	248	12.8	13.3
2022	53,980	8,120	174	15.0	15.4
2023	48,182	8,074	192	16.8	17.2
2024	45,039	8,022	169	17.8	18.2
2025	48,566	10,801	361	22.2	23.0

자료: 국세청

특히, 2025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감정평가 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이 추가되면서 감정평가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2026년 예산(67억 1,400만원)은 2025년(95억 9,200만원) 대비 약 28억원이 감액된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 중심의 감정평가만으로는 시가 중심 과세체계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비율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149]

1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

향후 해당 부동산 양도 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양도차익 감소 효과는 실제 양도 여부 및 시점 등이 불확실하여 신고 당시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신고 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추가 납부세액 외에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제도적 유인은 크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중심 과세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한도 상향 등을 비롯한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적용으로 한정한다)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4) 면밀한 보호장비 구매계획 수립 필요 (압류재산공매,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공매」는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한 공매행정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42억 5,400만원으로 이 중 800만원을 전용하였고, 4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보호장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수색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납추적팀의 보호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현액 2억 500만원 중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압류재산공매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본예산	추경								
압류재산공매 (2232-301)	4,254	4,254	-	△8	-	4,246	4,245	-	1	228,232
- 보호장비	**215**	**215**	**-**	**△10**	**-**	**205**	**205**	**-**	**-**	**-**
- 공매행정비	2,438	2,438	-	117	-	2,555	2,555	-	-	2,469
- 대위등기비	545	545	-	△310	-	235	234	-	1	514
- 보전비	1,056	1,056	-	195	-	1,251	1,251	-	-	1,831
- 국세체납관리단	-	-	-	-	-	-	-	-	-	73,457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	-	-	-	-	-	-	149,961

< 검토의견 >

국세청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예산안 편성 시 바디캠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편성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을 구매하였고, 2024년도 결산심사 시 장비 구매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을 위해 약 2,000개의 바디캠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향후 보호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 편성 시 기존 보유량, 현장 수요, 장비 사양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구매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청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바디캠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편성된 수량 대비 과다한 수량을 구매한 문제가 있음.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바디캠 단가를 692,000원으로 산정하고 구매 수량을 310개로 계획하여 총 2억 1,500만원의 자산취득비(430-01)를 반영하였음.

이는 전년도인 2024년도에 구매한 A제품(371,000원[150]) 대비 활동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B제품(692,000원)을 구매하여 133개의 지방세무서와 22개의 지서에 각각 2개씩 보급할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국세청은 예산안 확정 이후 구체적인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및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확대 등으로 바디캠 소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보급하던 A제품(365,000원[151])으로 구매 대상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 수량 대비 250개를 초과하는 총 560개의 바디캠을 구매하였음.

150) 2024년도 구매분 단가
151) 2025년도 구매분 단가

[보호장비 관련 2025년도 확정예산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내역	산출근거	원화
[2200]체납·징수관리		68,024,000
[2232]체납정리지원		5,877,000
[301]압류재산공매		4,254,000
[210]운영비		2,983,000
[210-01]일반수용비		2,438,000
1.공매행정비	15,311건*160,000원=	2,449,760
2.단수조정	-11,760,000원=	△11,760
[210-02]공공요금및제세		545,000
1.대위등기비	194건*2,809,000원=	544,946
2.단수조정	54,000원=	54
[310]보전금		1,056,000
[310-03]포상금		1,056,000
1.은닉재산신고포상금	30건*35,200,000원=	1,056,000
2.단수조정		
[430]유형자산		**215,000**
[430-01]자산취득비		**215,000**
1.보호장비	**310건*692,000원=**	**214,520**
2.단수조정	480,000원=	480

자료: 국세청

[바디캠 제품 비교]

구분	A제품(실제 구매)	B제품(당초 계획)
외형		
해상도	2K QHD 1440p, 30fps	5.3K 2700p, 60fps
화각	140° 광각	150° 광각
저장장치	내장메모리(eMMC 메모리 64GB)	외장메모리(MicroSD카드) 필수 사용
배터리	8시간 이상 지속	40분 지속
특징	분리형 카메라로 헬멧, 어깨 등 자유로운 탈부착 가능	체스트마운트+충전기・배터리+외장메모리 필수 구매 필요
단가	365,000원	692,000원

자료: 국세청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경상적·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수요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특히 국세청은 직전연도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바디캠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편성된 수량 대비 과다한 수량을 구입하는 등 2년 연속 동일한 집행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최근 2년간 보호장비 예산안 편성근거와 집행내역 비교]

(단위: 천원, 개)

연도	구분	단가(①)	수량(②)	총액(①×②)
2025년	예산안 편성근거(❶)	692	310	215
	집행내역(❷)	365	560	204
	비율(❷÷❶)	**52.7%**	**180.6%**	
2024년	예산안 편성근거(❶)	973	115	112
	집행내역(❷)	371	280	104
	비율(❷÷❶)	**38.1%**	**243.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로 국회는 2024년도 결산심사 시 “국세청은 장비 구매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현장 수요와 장비 사양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과다 단가 산정 및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수량 구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의결하였음.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11) 장비구매 예산 편성 개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국세청은 사전에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바디캠의 사양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바디캠 단가가 과다 산정되었고, 이로 인해 편성된 수량보다 과다한 수량이 구매된 문제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국세청은 장비 구매 계획을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현장 수요와 장비 사양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과다 단가 산정 및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수량 구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조치결과	○ 향후 장비 구매 계획 수립 시 사전에 면밀하게 수립하고 현장 수요와 장비 사양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과다 단가 산정 및 당초 계획을 크게 상회하는 수량 구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

자료: 정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6. 1.)

둘째, 국세청은 한시적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막대한 규모의 보호장비 구매예산을 반영하였고 2026년에 약 2,000개의 바디캠을 구매하였으므로, 국세청은 향후 보호장비 구매계획 수립 시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사용하던 보호장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구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압류재산공매」의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 시민 3,000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 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 말 기준 국세청은 각 실태확인 팀에 개당 25만 1,000원 수준의 바디캠 625개를 구매하여 지급하였음.

[국세 체납관리단 보호장비 구매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개)

구매물품	편성내역			집행내역(26년 7월 말 기준)		
	단가	수량	총금액	단가	수량	총금액
바디캠	**370**	**625**	**231,250**	**251**	**625**	**156,875**
방검복	440	625	275,000	-	625	-
방검장갑	30	625	18,750	19.8	750	14,850
방검토시	60	625	37,500	-	750	-
합계			562,500			171,725

자료: 국세청

또한, 「압류재산공매」의 2026년도 신규 내역사업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 7,000명을 한시적으로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통해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사업으로,

국세청은 올해 6월에 1차로 3,000명(전화실태확인원 1,200명, 방문실태확인원 1,800명)을 채용하고, 이후 9월에 2차로 4,000명(전화실태확인원 1,600명, 방문실태확인원 2,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7월 말 기준 개당 25만 1,000원 수준의 바디캠 1,341개를 구매하여 각 세무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팀에 지급하였음.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보호장비 구매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총예산
1차	750팀×900천원(바디캠, 전자호루라기 등)	675,000
2차	800팀×900천원(바디캠, 전자호루라기 등)	720,000
합계		1,395,000

자료: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바디캠 구매 예산 집행내역]

(단위: 천원, 개)

구분	바디캠 예산 집행내역(26년 7월 말 기준)		
	단가	수량	총금액
1차 실태확인원	251	610	153,110
2차 실태확인원	251	731	183,481
합계		1,341	336,591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업무를 위하여 올해 1,966개의 바디캠을 구매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기존 보호장비 구매분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152]

152) 국세청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바디캠 구매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임.

(5)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정 필요 등 (납부고지서 등 발송, 정보화관리관실)

< 현 황 >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은 납부의무 이행의 필수적 절차인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각종 신고안내문의 송달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621억 4,700만원이며, 50억원을 이·전용(증)하여 예산현액은 671억 4,700만원이고, 이 중 67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62,147	62,147	-	5,000	-	67,147	67,140	-	7	64,061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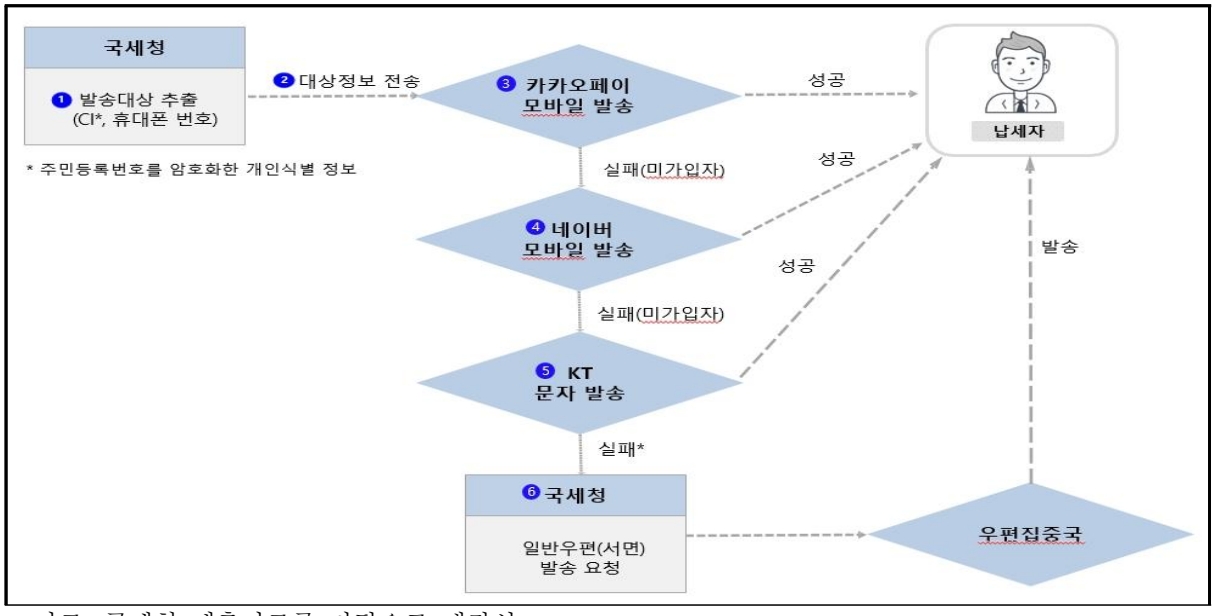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사업에서 체결하고 있는 '모바일 안내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선정'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납부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구분되며, 우편은 등기우편, 일반우편 및 모바일 안내문 발송으로 구분됨. 국세청에 따르면, 모바일 발송요금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는 발송, 열람, 알림톡의 종류에 따라 11원~77원까지 상이하며, KT 문자 발송은 발송 기준 147.4원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2024년 6월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를 3단계로 개편하였음. 개편된 3단계 체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1단계)한 후, 실패 건에 대하여 네이버를 통해 발송(2단계)하고, 2단계에서도 실패한 건에 대하여 KT 문자를 발송(3단계)함으로써 발송 단가를 절감하도록 하였음.

[모바일 안내문 발송 단계(3단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은 이러한 모바일 안내문 전송을 위하여 카카오페이(1차), 네이버(2차) 및 KT(3차)와 각각 '모바일 안내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동 계약들의 계약기간은 모두 2024년 4월부터 2025년 말까지 단년도가 아닌 2회계연도에 걸쳐 계약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5년 모바일 안내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선정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액
24~25년 모바일 안내문 1차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선정	카카오페이	'24.4.5.~ '25.12.31.	2,293
24~25년 모바일 안내문 2차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선정	네이버	'24.4.15.~ '25.12.31.	641
24~25년 모바일 안내문 3차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선정	KT	'24.4.15.~ '25.12.31.	1,305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장기계속계약이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으로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53] 상 원칙인 단년도 계약의 예외에 해당할 것임. 이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4] 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155]에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은 운송·보관·시험·조사

15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5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이거나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장비·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의 경우에만 체결할 수 있음.

[장기계속계약 체결 요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그러나 국세청이 동 사업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모바일 안내문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계약'의 경우 이러한 장기계속계약 체결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연속성 및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 계약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이러한 장기계속계약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동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것임.

특히,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장이지만, 동 계약을 단년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보다 낮은 단가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동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다년도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면밀하지 못한 예산안 추계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간의 발송량 등에 근거하여 보다 면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은 2025년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이용·자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하여 공공요금및제세 항목의 예산을 총 51억 2,400만원 증액하였음. 그 구체적인 이·전용등 현황에 따르면, 총 63건의 자체이용·자체전용 및 세목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연말에 불용이 예상되는 거의 대부분 사업의 사업비를 이·전용 또는 세목조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임.

[2025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자체이용 (2025.12.22)	디지털세운영지원 (1136-300)	210-01	8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디지털세운영지원 (1136-300)	220-02	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조사활동지원 (2131-302)	240-01	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조사활동지원 (2131-302)	310-03	59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소송수행비용 (2133-301)	210-01	58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근로·자녀장려세제 (3135-300)	210-02	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근로·자녀장려세제 (3135-300)	210-14	2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0)	210-12	88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개인납세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1-205)	110-04	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50)	210-15	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50)	430-01	28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정보화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1)	210-01	1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자체이용 (2025.12.22)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210-01	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7111-253)	220-02	9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징세법무국기본경비 (7111-254)	210-01	6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개인납세국기본경비 (7111-255)	210-01	11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개인납세국기본경비 (7111-255)	430-01	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법인납세국기본경비 (7111-256)	430-01	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조사국기본경비 (7111-258)	210-01	2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교육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18-201)	210-16	7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교육원기본경비 (7118-251)	210-01	31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교육원기본경비 (7118-251)	220-01	1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 (7118-252)	210-01	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 (7118-252)	430-01	1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24-205)	110-04	9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인천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24-206)	110-04	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서울청기본경비 (7124-250)	210-01	289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서울청기본경비 (7124-250)	430-01	62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중부청기본경비 (7124-251)	210-01	21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중부청기본경비 (7124-251)	210-07	5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중부청기본경비 (7124-251)	210-09	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중부청기본경비 (7124-251)	220-01	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자체이용 (2025.12.22)	중부청기본경비 (7124-251)	420-03	10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중부청기본경비 (7124-251)	430-01	10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전청기본경비 (7124-252)	210-01	14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전청기본경비 (7124-252)	210-03	12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전청기본경비 (7124-252)	210-07	3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전청기본경비 (7124-252)	210-09	3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전청기본경비 (7124-252)	310-03	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전청기본경비 (7124-252)	420-03	3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광주청기본경비 (7124-253)	210-01	13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광주청기본경비 (7124-253)	210-03	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광주청기본경비 (7124-253)	210-09	79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구청기본경비 (7124-254)	210-01	13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구청기본경비 (7124-254)	210-07	8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구청기본경비 (7124-254)	210-09	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구청기본경비 (7124-254)	420-03	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대구청기본경비 (7124-254)	430-01	1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 (7124-255)	210-01	87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 (7124-255)	210-07	57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 (7124-255)	220-01	2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 (7124-255)	310-03	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 (7124-255)	420-03	5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부산청기본경비 (7124-255)	430-01	2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인천청기본경비 (7124-256)	210-01	18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인천청기본경비 (7124-256)	210-09	13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인천청기본경비 (7124-256)	210-15	35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인천청기본경비 (7124-256)	220-01	4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이용 (2025.12.22)	인천청기본경비 (7124-256)	430-01	3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22)	압류재산공매 (2232-301)	210-02	8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22)	압류재산공매 (2232-301)	430-01	10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체전용 (2025.12.22)	징수위탁수수료 (2232-303)	210-01	121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세목조정 (2025.9.26.)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1	124	납부고지서 등 발송 (2233-300)	210-02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 등기우편 요금 인상[156]됨에 따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타 사업비로부터 이·전용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등기우편 요금 인상이 적용된 6월 이후 발송된 등기우편 건수는 총 9,741천건임. 이에 따르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요금 인상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약 28억원[157]으로 추산되는데, 동 사업의 총 이·전용 규모인 51억 4,700만원의 54.4%에 불과함.

즉, 동 사업의 이·전용 규모 중 45%에 해당하는 약 23.47억원은 국세청이 이·전용 사

156) 2,530원에서 2,830원으로 300원 인상됨
157) 9,741천건 × 300원 × 96.5%(우편물센터 등기 발송 시 할인율)

유로 제시한 사전에 예측불가능한 사유인 등기우편 요금 인상 외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동 사업의 2025년도 우편 종류별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우편요금이 인상된 등기우편에 비해 일반우편의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등기우편의 경우 당초 예산액 541억원 대비 결산액은 564억원으로 약 23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반우편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26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69억원으로, 일반우편 요금의 경우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3억원의 예산액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2025년 우편 종류별 예·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산(a)	결산(b)	차이(a-b)
등기우편	541	564	△23
일반우편	26	69	△43
모바일 안내문	46	31	15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우편 요금 인상과 같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라도 예산액이 면밀하게 추계되지 못하여 이·전용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최근 5년간 일반우편의 발송건수 및 발송금액을 살펴보면, 발송건수의 경우 매년 1,600만건에서 1,800만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발송금액 기준으로도 매년 60억원에서 70억원 수준을 유지하여 예측가능한 수준이었음. 반면, 예산액은 이와 달리 발송건수 기준으로는 600만건~2,630만건, 발송금액 기준으로는 26억원~104억원으로 그 편차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음.

[최근 5년간 일반우편 예·결산 현황]

(단위: 만건, 억원)

연도	발송건수 기준			금액 기준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2021	869	1,720	△851	31	64	△33
2022	788	1,726	△938	28	71	△43
2023	1,720	1,606	114	71	66	5
2024	2,630	1,804	826	104	75	29
2025	651	1,666	△1,015	26	69	△4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5년도 외에도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이·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3억 1,400만원의 이·전용(감)이 발생하였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이·전용(증)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에는 그 규모가 186억 6,500만원에 달하였음.

[최근 5년간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55,959	55,959	-	△1,314	-	54,645	47,178	-	7,467
2022	55,959	55,959	-	5,773	-	61,732	61,585	-	147
2023	47,704	47,704	-	18,665	-	66,369	66,295	-	74
2024	60,066	60,066	-	8,801	-	68,867	68,838	-	29
2025	62,147	62,147	-	5,000	-	67,147	67,140	-	7

자료: 국세청

이처럼 동 사업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간의 발송 건수나 금액을 기준으로 상당 부분 필요 예산이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면밀하지 않게 예산안을 추산·편성하여 매년 이·전용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동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그간의 우편 발송량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전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개인납세국)

< 현 황 >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은 국민에게 납세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청소년 등 미래 납세자에게 올바른 세금관을 정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하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32억 6,500만원으로, 이 중 2억 200만원을 전용 감액하였고, 30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구축 및 운영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132-300)	3,265	3,265		△202		3,063	3,060		3	2,625

< 검토의견 >

첫째, 국세청은 2026년에 도래하는 개청 60주년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을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차년도 사업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원칙임. 이는 예산이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심의·확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연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차년도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차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국세청은 2025년 12월 10일 ㈜탄젠트90과 '개청 60주년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계

약을 체결하고, 일반수용비에서 3,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주요 과업 내용은 국세청 60주년 기념 온라인 포스터 등 콘텐츠 제작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임.

그런데 ① 국세청 개청 60주년은 2026년에 도래하는 행사로서, 해당 홍보 콘텐츠의 제작목적 및 활용 효과가 2026년에 발생하는 점, ② 계약 체결일이 2025년 12월 10일로 회계연도 말에 가까우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전체 사업기간의 대부분이 2026년에 속하는 점, ③ 집행 내역이 '국세청 60주년 기념 온라인 포스터 등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어, 2025년도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사업의 통상적인 연중 홍보·교육 활동이라기보다 2026년도의 특정 기념사업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청 60주년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은 실질적으로 2026년도 사업에 해당함.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편성·심의·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6년에 활용될 개청 60주년 홍보 콘텐츠 제작비는 원칙적으로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국세청은 ① 2026년 국세청 개청 20주년 기념일이 2026.3.3.이므로 25년말부터 순차적으로 컨텐츠를 게시하여 축하 분위기를 고양할 필요가 있어 202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② 포스터 콘텐츠를 온라인 콘텐츠에 게재하는 등 활용한 것은 2026년 2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이지만 콘텐츠의 제작, 검수 및 대금집행은 2025년도 내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회계연도 귀속 여부는 단순히 계약·제작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효과가 어느 연도에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② 국세청은 2025년 말부터 콘텐츠를 게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이루어졌으므로, 2026년 예산으로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임. 또한 ③ 개청 60주년 기념일이 2026년 3월 3일이고, 결과물 역시 2026년에 활용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의 실질은 2026년도 기념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제작·검수 및 대금집행을 2025년 중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025년도 예산을 활용한 집행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국세청은 회계연도 말에 차년도 사업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의 실제 수행기간이 차년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 편성 또는 이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납세안내 자료 제작·배포, 온라인·대중매체 홍보, 청소년 세금교육 콘텐츠 제작 등 구체적인 홍보·교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성과지표 평가 기준은 세금에 대한 일반적 국민인식도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지표 간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성과지표 측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 측정 결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성과 측정은 외부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성과측정 방식은 해당 설문조사 중 주요 질의내용에 대한 점수를 평균하여 '종합만족도'를 측정한 후 해당 점수가 "직전 3개년 평균 점수+가중치" 이상인 경우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동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측정방식]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점)	목표	74.9	75.2	75.0	75.2	75.3	직전 3개년 평균 점수에 연도별 평균 증가율 합산	설문항목 점수 합계 / 전체응답자 수	외부기관 설문조사
	실적	75.0	74.9	75.1	75.2	-			
	달성도	100.1	99.6	100.1	100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세금신고·납부 안내, 세금안내 책자 제작, 청소년 세금교육 교재 제작, 대중매체·온라인 홍보, 뉴스레터 제작, 조세박물관 운영 등 구체적인 납세안내·홍보·교육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성과지표는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았는지, 안내자료가 신고·납부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청소년 세금교육을 통해 세금 이해도가 향상되었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그런데 동 사업의 성과 측정 기준인 외부 설문조사의 질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구체적인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동 설문조사는 세금에 대한 인식, 납세 안내, 세금에 대한 지식, 국세청의 홍보 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9개 질의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종합만족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현행 성과지표인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도'는 설문문항의 상당수가 일반적·추상적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세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질의내용 중 종합만족도 반영 항목]

분야	종합만족도 반영 항목	질의 내용	2025년 점수
세금에 대한 인식	세금 징수 필요성	귀하께서는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2점
	부정 납부 의향	귀하께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2.8점
납세 안내	시기 적절성	귀하께서는 세금 신고·납부 안내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74.9점
	내용 적절성	귀하께서는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한 안내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2.0점
세금에 대한 지식	세금 종류 인지도	귀하께서는 본인이 납부하시는 세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72.4점
	납부 방법 인지도	귀하께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71.0점
	전반적 세금 인지도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5.0점
국세청의 홍보 활동	세금 교육 평가	국세청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성실납세 의식 함양을 위해 세금교육(세금교과서 및 어린이 세금신문 제작, 학교방문 세금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금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2점
	뉴스레터 유용도	국세청 뉴스레터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2.0점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먼저 “세금에 대한 인식” 분야의 종합만족도 반영 대상 문항은 “세금 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적게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등 일반적인 조세관이나 납세윤리를 묻는 내용인데, 이는 동 사업의 성과보다는 조세제도, 세부담 체감, 경기 상황, 과세형평성에 대한 인식, 언론보도 등 외부요인의 영향에 좌우될 수 있어, 특정 회계연도의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사업 성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세금에 대한 지식 분야”의 경우,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의 종류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세금 지식수준을 묻는 내용으로, 동 사업의 직접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납세 안내 분야”의 “세금 신고·납부 안내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에 대한 각종 안내의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문항만으로는 개별 사업의 실적과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움. 즉 납세안내 분야의 내역사업은 전광판 신고 안내, 세금절약 가이드, 리플릿, 온라인 콘텐츠, 뉴스레터, 소셜미디어 홍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실제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도달하였고 납세 편의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 사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세금교육” 관련 문항 역시 교육 수혜자의 학습효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일반 국민의 인식을 묻는 데 그치고 있음. 동 사업에는 세금교과서 개정·발간, 교육교재 제작, 청소년 세금교육 콘텐츠 제작, 어린이신문 발간, 어린이 직업체험 운영,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내역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설문 항목은 수요자가 아닌 일반 응답자에게 국세청의 어린이·청소년 세금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금교육 사업이 청소년의 세금 이해도와 올바른 세금관 정립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뉴스레터 및 온라인 홍보” 관련 문항은 “국세청 뉴스레터의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해당 질의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유용성 평가에 그치고 있을 뿐, 뉴스레터 발송 건수, 개봉률, 클릭률, 구독 유지율, 콘텐츠별 이용률, 실제 신고·납부 도움 여부 등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종합하면, 해당 설문조사는 국세청의 홍보·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동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사업수행 내용과의 직접적 관련성, 구체성 및 객관성이 부족함. 따라서 국세청은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납세안내·홍보·세금교육 사업이 실제 수요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납세 편의 및 세금 이해도 제고에 기여했는지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의 직접적인 산출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158]

158) 예를 들어 **납세안내 분야**는 ① 신고·납부 안내자료 제공 건수 및 적기 제공률, ② 안내자료 열람률·다운로드 수·QR 접속 수, ③ 안내자료 이용자의 신고·납부 도움도, ④ 안내 후 신고오류·무신고·기한후 신고 감소율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홍보 분야의** 경우 ① 뉴스레터 개봉률·클릭률·구독 유지율, ② 온라인 콘텐츠 조회 수·시청 지속시간·공유 수, ③ 세목별 핵심 안내 콘텐츠 이용률 등을 지표화할 수 있으며, **세금교육 분야**는 ① 교육 참여 학생 수 및 학교·기관 수, ② 교재·콘텐츠 보급 및 활용 실적, ③ 교육 전후 세금 이해도 향상률, ④ 학생·교사 만족도, ⑤ 조세박물관 세금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7)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사업의 실효성 확보 필요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납세자보호관실)

< 현 황 >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은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권익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3억 1,200만원으로, 이 중 2억 9,8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10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내역사업인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에게 세금포인트 혜택을 홍보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현액 2억 7,800만원 중 2억 7,800만원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 (3133-300)	1,312	1,312	-	△298	-	1,014	1,014	-	-	1,115
-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425	425	-	△147	-	278	278	-	-	254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이용 실적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사용률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홍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2004년 4월에 도입하여, 개인 또는 중소기업 법인이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의 포인트(연간 최

대 1,000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된 포인트는 5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인	법인
대상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여기준		자진납부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한도		1년에 개인·법인 인당 1,000포인트 한도로 부여 ※ '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한도 적용	
소멸기한		5년 ※ 개인은 '25년에 부여하는 포인트부터 적용(법인은 '14년부터 적용)	
사용처	쇼핑	·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백화점	
	세정지원	·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	
		·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이용	
	수출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사용처	관광지	· 국립자연휴양림(46개), 한국자생식물원, 평화누리캠핑장, 베어트리파크, 국립세종수목원, 청남대, 서산버드랜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주시 사적지(10개),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버드파크, 부산 아홉산숲, 상효원, 라온 더마파크, 훈데르트바서파크,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온달동굴, 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과학관·전시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세종문화예술회관, 국립중앙과학관, 예천천문우주센터, 국립광주과학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기타	· CGV 영화관(193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 세종, 라고바움 관광호텔, 목동아이스링크, 서귀포 JS호텔	

자료: 국세청

그런데,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세금포인트 부여실적 대비 사용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까지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누계 115억 7,700만점으로 2021년(누계 74억 3,100만점) 대비 약 40억점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사용된 세금포인트는 3,300만점(2025년 누적 사용 세금포인트: 7,500만점, 2021년 누적 사용 세금포인트: 4,200만점)에 불과한 상황임.

법인납세자의 경우 2025년까지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누계 8억 9,400만점으로 2021년(누계 6억 9,400만점) 대비 2억점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사용된 세금포인트는 900만점(2025년 누적 사용 세금포인트: 2,300만점, 2021년 누적 사용 세금포인트: 1,400만점)에 불과하여, 사실상 개인과 법인 모두 부여된 포인트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누계)]

(단위: 백만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여 포인트(A)	7,431	8,768	9,851	10,844	11,577
사용 포인트(B)	42	49	58	66	75

주: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납부한 세액에 매년 부여되며, 사망자는 제외하여 집계(2025년 누계 11,577백만점의 경우 2024년 집계 후 사망자는 제외되므로 2025년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733백만점 이상)

자료: 국세청

[법인납세자 세금포인트 부여 및 사용 현황(누계)]

(단위: 백만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여 포인트(A)	694	772	920	979	894
사용 포인트(B)	14	17	19	22	23

주: 법인납세자는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소멸(예시: 2021년에 부여한 694백만점은 2016년~2020년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

자료: 국세청

특히,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사업의 예산은 2022년 1,100만원, 2023년 1억원, 2024년 2억원, 2025년 4억 2,500만원[159]으로 매년 100% 이상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세금포인트 사용실적은 유의미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159) 2025년에 편성된 4억 2,500만원 예산 중 인건비 보수가 부족하여 1억 4,700만원을 인건비(7101-100)으로 이용(감)(2025.12.16.)

[사용처별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누계)]

(단위: 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납세담보면제	56백만	66백만	76백만	88백만	98백만
쇼핑몰	11,109	18,258	29,439	34,750	49,769
소액체납자재산 매각유예	389	426	762	986	1,313
비즈니스센터	180	920	2,150	3,195	4,950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3,219	9,114	13,941	16,230	20,271
문화·여가(CGV 포함)	-	4,182	14,584	35,680	95,506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	-	411	2,111	6,111
출입국 우대카드	-	-	-	-	27,400
합계	56백만	66백만	77백만	88백만	98백만

주: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의 납부기한등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9조제1항」), 세금포인트를 부여받은 자는 일정 요건(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만족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사용률 저조 원인을 사용처·접근성·혜택 수준 등 구조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사용처 확대 및 사용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성과분석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8)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넘어서는 지출 부적절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복지세정관리단실)

< 현 황 >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원)생들에게 대출해 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대출원리금의 효율적인 상환관리와 상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상환 안내 및 상환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2억 3,400만원으로, 이 중 1,300만원을 전용(감)하였고, 2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3136-300)	234	234	-	△13	-	221	221	-	-	199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사업의 모바일 안내문자 발송 지출은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은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해주는 취업후 학자금에 대하여 상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동 사업에서는 해당 안내문자 발송을 위하여 LG유플러스에 총 3,31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안내문자를 발송하면서 해당 요금을 일반적 지출절차가 아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문제가 있음.

「국고금 관리법」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160],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는 이러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지출한 공공요금및제세(210-02) 세목이 해당하는 운영비(210목)의 경우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할 수 있음.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 없음).

160) **「국고금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예산과목	용 도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금 관리법」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이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채권자에게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되, 건당 500만원 이하 또는 공과금 등 오집행 가능성이 적은 경비의 경우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없이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지급하도록 하여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동 사업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당 지출액이 약 1,100만원으로, 500만원이 넘는 지출을 하면서도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처리한 문제가 있음.

[2025년 취업후학자금상환 관련 안내문자 발송 지출 현황]

(단위: 만원)

지급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액
2025.05.28.	취업후학자금상환 관련 안내문자 발송	㈜LG유플러스	1,100
2025.09.16.	취업후학자금상환 관련 안내문자 발송	㈜LG유플러스	1,100
2025.12.08.	취업후학자금상환 관련 안내문자 발송	㈜LG유플러스	1,117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안내문자 발송은 공과금의 성격이 있어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므로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관서운영경비의 대상이 되는 공과금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이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절차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임. 반면, 동 안내문자 발송의 경우 LG유플러스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단가 등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라 재무관 및 지출관의 검토 이후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이와 유사한 국세청의 '납부고지서 등 발송' 사업의 경우 KT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에 대하여 2023년까지는 관서운영경비로 처리하였으나,

엄밀하게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24년부터는 일반적 지출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동 사업 역시 안내문자 발송을 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여 「국고금 관리법」에 위배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9)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연례적 집행 부진 시정 필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복지세정관리단실)

< 현 황 >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사업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기존의 연·반기·분기별에서 매월 수집으로 단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복지행정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25억 6,000만원으로, 이 중 15억원을 전용(감)하였고, 10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560	2,560	-	△1,500	-	1,060	1,047	-	13	1,911
- 일용임금	571	571	-	-	-	571	571	-	-	420
- 일반수용비	1,897	1,897	-	△1,500	-	397	397	-	-	1,421
- 사업추진비	27	27	-	-	-	27	27	-	-	23
- 고용부담금	65	65	-	-	-	65	52	-	13	48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의 제도 홍보비용 등을 그간의 집행실적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161]의 후속조치로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임.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8개 인적용역 업종[162]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4년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163]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도록 할 예정임.

이러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의 2025년 예산 집행액은 총 10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이 당초 예산액의 40.9%에 불과한 상황임. 특히 제도 홍보나 안내문 제작 등을 사유로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경우 당초 예산액 18억 9,700만원 중 대부분인 15억원이 타 사업으로 이용되었으며 집행액은 3억 9,700만원으로 집행률이 20.9%로 저조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가 2027년으로 유예되면서 집행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함.

실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제도는 당초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2월 31일 개정

161) 2020년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양한 고용형태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취업자에게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162)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163)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는데, 이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재유예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2025년 7월 발표되었음.

[실시간 소득파악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대상별 추진일정]

대 상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정)
세법개정 (실시간소득파악)	인적용역, 일용근로 (2021.7월～)	용역제공자 (2021.11월～)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2024.1월～)	상용근로자 (2026.1월 → **2027.1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산재보험 적용 특고 등 (2021.7월～)	플랫폼 종사자 (2022.1월～)	기타 특고 (2022.7월～)	전국민 (2026.1월 → **2027.1월**～)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등 재구성

이처럼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방안이 2025년 7월에 발표됨에 따라 홍보비 등의 집행이 부득이하게 부진하였다는 국세청의 설명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매년 타 사업으로 이·전용하거나 불용시키는 규모가 매우 커 당초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매년 40~50%대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예산 집행 부진, 사업성과 및 환류 개선 노력 부족 등의 사유로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음.

또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유예되지 않았던 2022년 및 2024년에도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은 저조한 편이며, 2025년의 경우에도 7월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동 제도가 유예된 바, 사실상 상반기에는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홍보비 등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은 20.9%로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음.

[최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2	9,640	9,332	-	△3,103	6,229	5,623	-	606	58.3
2023	8,213	8,213	-	-	8,213	3,645	-	4,568	44.4
2024	3,390	3,390	-	△1,618	1,772	1,659	-	113	48.9
2025	2,560	2,560	-	△1,500	1,060	1,047	-	13	40.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이와 같이 집행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것은 당초 예산액이 실제 필요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2021년 7월 및 11월부터 시행되는 등 상용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도가 상당 부분 정착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동 제도의 홍보비 등으로 18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수용비의 집행액이 사업 시작 첫해인 2022년을 제외하고는 3억~7억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안이 그간의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최근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a)	추경							
2022	3,081	2,773	-	△1,586	1,187	1,165	-	22	37.8
2023	2,714	2,714	-	-	2,714	717	-	1,997	26.4
2024	2,303	2,303	-	△1,618	685	685	-	-	29.7
2025	1,897	1,897	-	△1,500	397	397	-	-	20.9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세청은 동 사업의 예산안 편성시 그간의 집행 실적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직제 및 근속승진자 현황 등을 고려한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인건비, 운영지원과)

< 현 황 >

「인건비」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국세행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임.

「인건비」의 2025년 보수 예산현액은 1조 3,666억 3,900만원으로, 1조 3,66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 (7101-100)	1,381,203	1,381,203	-	5,086	-	1,386,289	1,385,622	-	667	1,475,721
- 보수	1,359,287	1,359,287	-	7,352	-	1,366,639	1,366,623	-	16	1,450,968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최근 인건비 집행 추이, 결원율, 근속승진자 현황, 신규 채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직제상 정원에 직급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 소요를 산출하고 있는데, 실제 직급별 정원과 현원 간 괴리가 커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

국세청은 근속승진자가 많아 다른 부처 대비 6급과 7급 현원은 정원을 크게 초과하는 반면, 8급과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근속승진이란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하여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164]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무원을 승진 조치하는 것을 말함.

[연도별·직급별 근속승진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 평균
9급→8급	65	36	33	79	61	54
8급→7급	446	314	347	216	487	362
7급→6급	60	101	72	167	157	111

자료: 국세청

인건비 예산은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165], 근속승진자는 정원 외 관리가 적용되므로 예산 편성 시에는 승진 전 직급으로 간주하는 반면 실제 급여는 승진 후 현 직급에 따라 지급되어 편성 예산과 실제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명, 백만원)

직급	기준정원[1]	현원[2]	결원	예산 편성액	예산 집행액
차관 및 고위공무원	41	35.8	5.2	9,256	6,405
3급	25	24.1	0.9	3,462	3,010
4급	350	328.1	21.9	46,149	38,496
5급	1,306	1,335.2	-29.2	138,809	126,355
6급	4,798	5,602.9	-804.9	409,897	450,900
7급	4,915	7,182.7	-2267.7	343,397	453,364
8급	5,458	3,633.2	1824.8	254,071	178,522
9급	4,365	3,127.0	1238.0	163,423	118,740
기타[3]	12	11	1	755	725
합계	21,270	21,280	-10	1,369,219	1,376,517

1) 예산 편성 시 봉급 정원
2) 연평균 현원
3) 기타: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별정직 3명, 연구사 8명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164) 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165) 정원(직급별) * 기준단가(직급별) * 12월 * 처우개선율(1.034)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지난 3년간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 정책[166]으로 인해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2025년에는 73억 5,200만원의 보수(110-01)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동 세부사업 내 연가보상비(110-05) 22억 6,600만원을 보수(110-01)로 세목변경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활성화」, 「기준시가 고시」, 「부가세 대리납부 운영」 등 12개 세부사업에서 26억 1,296억원을 이용하였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교육원 기본경비」 등 13개 세부사업으로부터 24억 7,200만원을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2025년도 인건비 예산 세목변경 및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목-세목		세부사업	목-세목
세목변경	인건비 (7101-100)	110-05(연가보상비)	30	인건비 (7101-100)	110-01 (보수)
		110-05(연가보상비)	2,133		
		110-05(연가보상비)	1		
		110-03(상용임금)	103		
	소계		2,267		
이용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1131-300)	210-01(일반수용비)	77		
		310-03(포상금)	34		
	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1133-301)	260-01(일반연구비)	3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1134-300)	210-01(일반수용비)	5		
		320-01(민간경상보조)	75		
	조사활동지원 (2131-302)	210-01(일반수용비)	28		
		240-01(사업추진비)	12		
	역외탈세대응활동 (2132-300)	210-01(일반수용비)	27		
		340-02(국제부담금)	42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3132-300)	210-01(일반수용비)	69		
		430-01(자산취득비)	133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3133-300)	210-01(일반수용비)	298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134-300)	210-14(일반용역비)	19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3135-300)	210-01(일반수용비)	187		
		210-02(공공요금및제세)	20		
		210-14(일반용역비)	10		
	취업후학자금 상환제도 운영지원 (3136-300)	210-01(일반수용비)	13		

166)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하여 인력 감축을 의무화하였음. 국세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15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 변경에 따라 2025년부터 통합활용정원 제도 운영은 중단되었음.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3137-300)	210-01(일반수용비)	1,500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개최 사업 (3138-300)	210-01(일반수용비)	2		
		210-07(임차료)	2		
		220-02(국외업무여비)	28		
	소계		**2,613**		
전용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210-08(유류비)	13		
		220-01(국내여비)	208		
		220-02(국외업무여비)	5		
		260-02(정책연구비)	6		
		420-03(공사비)	52		
		430-01(자산취득비)	300		
	교육원 기본경비 (7118-251)	220-01(국내여비)	77		
	주류면허지원센터 기본경비 (7118-252)	210-14(일반용역비)	7		
		220-01(국내여비)	36		
	대전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7124-202)	110-04(일용임금)	5		
	서울청 기본경비 (7124-250)	210-08(유류비)	15		
		220-01(국내여비)	74		
	중부청 기본경비 (7124-251)	210-08(유류비)	4		
	대전청 기본경비 (7124-252)	220-01(국내여비)	34		
	광주청 기본경비 (7124-253)	210-08(유류비)	8		
		220-01(국내여비)	30		
	부산청 기본경비 (7124-255)	210-08(유류비)	9		
	인천청 기본경비 (7124-256)	420-03(공사비)	70		
	임시청사 이전비용 (7138-303)	210-07(임차료)	394		
		210-15(관리용역비)	154		
	행정지원인력 운영 (7138-304)	110-04(일용임금)	171		
		210-01(일반수용비)	5		
		210-14(일반용역비)	714		
		220-01(국내여비)	70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강화 (7143-300)	210-01(일반수용비)	11		
	소계		**2,472**		
총계			**7,352**		

[최근 5년간 연평균 직급별 정·현원 현황]

(단위: 명, %)

직급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직급	정원	21,568	21,750	21,567	21,360	21,178
	현원	20,791	20,999	21,126	21,142	21,280
	결원	777	751	441	218	△102
	결원율	**3.6%**	**3.5%**	**2.0%**	**1.0%**	**△0.5%**
차관	정원	1.0	1.0	1.0	1.0	1.0
	현원	1.0	1.0	1.0	1.0	1.0
고위	정원	36.0	36.0	36.0	36.0	36.0
	현원	35.7	36.1	36.1	36.3	34.8
3급	정원	22.0	21.1	23.2	25.0	25.0
	현원	20.2	20.4	21.2	22.3	24.1
4급	정원	349.1	345.3	345.0	348.3	349.1
	현원	333.5	329.5	334.1	323.6	328.1
5급	정원	1,273.7	1,301.4	1,326.2	1329.3	1,325.5
	현원	1,276.1	1,301.4	1,327.6	1345.1	1,335.2
6급	**정원**	**4,832.5**	**4,867.8**	**4,812.1**	**4865.0**	**5,053.9**
	현원	**5,121.0**	**5,174.0**	**5,219.4**	**5316.1**	**5,602.9**
7급	**정원**	**4,907.7**	**4,949.3**	**4,909.3**	**4919.0**	**4,903.1**
	현원	**6,899.8**	**6,852.7**	**7,016.9**	**7184.0**	**7,191.4**
8급	정원	5,584.9	5,640.5	5,582.3	5475.5	5,451.9
	현원	4,048.2	3,926.4	3,901.3	3589.3	3,633.2
9급	정원	4,544.1	4,587.3	4,531.4	4360.5	4,031.9
	현원	3,017.5	3,357.8	3,268.8	3324.0	3,129.0

주: 정원 및 현원은 연평균 인원으로 산출하였고, 별정직 및 연구사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국세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근속승진자 수가 많아 6급과 7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8급과 9급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는 지난 5년간 지속된 문제인 반면, 2025년을 제외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인건비 예산이 과다 산출되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거나 불용하였음.

[최근 5년간 인건비 예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1,294,002	1,294,002	△6,476	1,287,526	1,242,025	96.0	96.5	-	45,501
2022	1,320,945	1,318,932	△38,357	1,280,575	1,275,622	96.7	99.6	-	4,953
2023	1,343,111	1,343,111	△29,043	1,314,068	1,300,464	96.8	99.0	-	13,604
2024	1,351,587	1,351,587	△10,786	1,340,801	1,338,112	99.0	99.7	-	2,689
2025	1,381,203	1,381,203	5,086	1,386,289	1,385,622	100.3	99.9	-	667

국세청은 6급·7급 인원 과다 편중 및 8급·9급 인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하에서도 과거에는 전 직급 기준 결원율 자체가 높아 인건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고, 2025년에는 정원 감소 및 휴직자 감소로 인하여 결원율이 낮아져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함.

다만, 결원율이 높아야 인건비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조직의 직급별 현원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의 경우 50억 8,600만원의 예산을 25개의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이용 또는 전용하였는데,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사업」의 경우 매체비, 홍보비 등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35%인 1억 4,800만원을 이용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대중교통 홍보 등을 수행하지 않았음.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역사 등 스크린 홍보	256	215
지방 지하철 스크린 홍보	66	미실시
전국 시내버스 홍보	50	미실시
코엑스 스크린 홍보	33	미실시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	20	62
합계	425	277

자료: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의 또 다른 내역사업인 「민원봉사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당초 155개 관서[167]에 각각 2개씩 총 310개의 웨어러블캠을 보급하기 위해 총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23개 관서에 총 56개의 보호장비만 보급함에 따라 1,200만원만 집행하였고 남은 5,300만원을 인건비로 이용하였음.

인건비와 같은 필수적인 사업은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때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다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하게 예상 비용을 추계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예산안 편성 시 최근 인건비 집행 추이, 결원율, 근속승진자 현황, 신규 채용 계획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67) 본서 133개, 지서 22개

(11)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행태 지양 필요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법인납세국)

< 현 황 >

「법인납세국 기본경비」는 법인납세국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인세, 원천세, 소비제세와 관련된 신고 안내책자·안내문, 주세와 관련된 납세증지 및 검인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의 2025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은 11억 9,000만원으로,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1,100	1,100	-	126	-	1,226	1,225	-	1	1,380
- 일반수용비	1,070	1,070	-	120	-	1,190	1,190	-	-	1,051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향후 'K-SUUL AWARD' 등 우리 술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2025 K-SUUL AWARD'를 개최하고 최종 우수 주류로 선정된 12개의 제품을 발표하였음.

2025년 9월 국세청이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부문[168]별 주류에 대한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5개 중소기업이 366개의 주류를 출품하였고,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해외시장의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반영한 서류심사로 진행된 심사 등을 거쳐 출품 주류 중 각 부문별 3개, 총 12개 제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음.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 심사 및 행사 진행 등을 위하여 총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2025년도 확정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집행잔액 7,300만원과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1억 2,000만원을 전용한 금액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납세자보호관 기본경비 (7111-252)	210-01 (일반수용비)	120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210-01 (일반수용비)	연도말 국실간 기본경비 부족액 조정

자료: 국세청

168) 탁·약·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2025 K-SUUL AWARD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	집행액
K-SUUL 포스터 디자인	1
K-SUUL AWARD 제품설명 심사자료	18
K-SUUL AWARD 콘텐츠 제작	10
K-SUUL AWARD 국민심사 행사	45
K-SUUL AWARD 홍보영상 제작	26
TV, 냉장고 렌탈 등	7
심사수당	7
포토존 플라워 디렉팅	4
진행자 섭외	3
의자 렌탈	2
인플루언서 홍보비	2
위촉장	1
K-SUUL AWARD 시상식 행사	53
영상·조명기기 운영, 아나운서 섭외 등	9
K-SUUL AWARD 시상식 리플릿	3
케이터링(페어링 푸드)	2
합 계	193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2025 K-SUUL AWARD'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 술 수출 지원 관련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예산이 정부 제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한편, 국세청은 2024년도에도 우리 술 수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2024년 우리 술 수출 박람회'와 '2024년 주류행정설명회' 행사 개최를 위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3,9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올해 11월에도 '2026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2026년도 확정예산에 해당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2024회계연도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0)	210-01 (일반수용비)	39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7111-256)	210-01 (일반수용비)	본부간 기본경비 부족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매년 우리 술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반영하지 않고, 사전에 계획한 행사라는 이유로 다른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거나 내역변경하여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산안 편성 시부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단계에서 집행소요를 반영하지 않아 국회의 심의를 거치치 않은 채 연례적으로 전용 또는 내역변경을 통해 행사를 개최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169]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고,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내용과 달리 집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향후 'K-SUUL AWARD' 등 우리 술 수출 지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관련 예산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음.

169)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2) 낙찰차액을 활용한 신규 내역사업 추진 부적절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 현 황 >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국세상담, e-민원 등 대민서비스와 각종 세원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국세행정 전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494억 6,100만원이며 1억 2,300만원이 이·전용(증)되어 예산현액은 총 495억 8,400만원으로 이 중 487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고 7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0)	49,461	49,461	-	123	-	49,584	48,786	-	798	53,930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에서 낙찰차액을 전용하여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신규사업 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위반한 문제가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AI 전화상담 운영」은 납세자가 상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5년 당초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전용을 통하여 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AI 전화상담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49,461	49,461	-	123	-	49,584	48,786	-	798	53,930
- AI 전화상담 운영	-	-	-	391	-	391	391	-	-	1,015

자료: 국세청

동 내역사업과 관련된 세부 이·전용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3번에 걸쳐 「취업후 학자금 상환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의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총 3억 8,500만원 및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동 내역사업으로 전용하였음.

[2025년 AI 전화상담 운영 관련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전용 (2025.1.17.)	취업후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운영 (7136-500)	관리용역비 (210-15)	201	국세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7133-500)	공공요금 (210-02)
전용 (2025.11.06.)		일반수용비 (210-01)	6		
전용 (2025.11.06.)		관리용역비 (210-15)	184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러한 AI 전화상담 운영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국세청은 전용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170]을 위반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① 동 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기존에 「홈택스 고도화 구축」 내역 사업에서 운영 중이던 사업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②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공공요금으로 전용한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① 기존에 「홈택스 고도화 구축」 내역 사업에서 운영 중이던 AI 전화상담 사업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범운영하는 시범사업인 반면, 2025년에 「AI 전화상담 운영」 내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상담을 하는 사업이며, 시범운영이 아닌 본격적인 내역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역사업을 집행 단계에서 전용을 통해 설치할 경우, 국회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기존 상담서비스 또는 정보화 사업과의 중복성, AI 상담의 정확성 및 책임성, 개인정보·과세정보 보호대책,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방안 등 해당 사업의 신설 필요성에 관한 주요 내용에

170)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대해 심사할 수 없게 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특히 AI 전화상담 사업은 납세자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내용의 정확성, 안내에 따른 책임소재,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호, 장애 발생 시 대응 등 다양한 쟁점을 수반함. 국세청은 통화성공률 제고 및 상담 대기시간 단축 등 납세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으나, 해당 편익만으로 동 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동 사업은 단순한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사업 목적, 추진체계, 적용 세목, 상담 정확성 관리 방안,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호방안, 성과지표 및 향후 예산 소요 등을 명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국세청은 각종 신고 기간마다 전화 문의가 집중됨에 따라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납세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홈택스 고도화 ISP의 '첨단기술 국세행정 도입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AI 전화상담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동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그칠 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전용을 통해 집행한 것이 적정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국세청의 설명과 같이 납세자 불편 해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사업 필요성을 국회에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유이지, 국회의 의결 없이 전용을 통해 신규 항목을 설치·집행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AI 전화상담 운영 사업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지출 소요라기보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검토·시범운영·확대되어 온 사업으로 보이므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해당 소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3년 홈택스 고도화 ISP 과제 중 '첨단기술 국세행정 도입방안'으로 검토되었고, 2024년에는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운영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동 사업은 회계연도 중 긴급하게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지출 소요가 아니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 사업임을 의미함.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24년 홈택스 고도화 구축 사업의 일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통화 성공률이 98%로 나타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2025년에 대상 세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AI 전화상담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여 신규 사업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이 확인되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차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동 사업의 확대 필요성 및 소요 예산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었음을 방증함. 또한 시범운영 결과 통화 향후 확대 운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차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상 세목, 운영방식, 예산 산출근거, 성과목표 등을 국회에 제시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은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뿐만 아니라 ②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과 같이 특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요금을 의미할 것임.

반면, 동 AI 전화상담 운영 사업의 회선 이용료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통해 지출되는 항목으로, 공공요금보다는 사업비적 성격에 가까우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처럼 국세청은 2025년에 「AI 전화상담 운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낙찰차액 전용을 통해 신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고 「국가재정법」 제46조를 위반한 문제가 있으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AI 전화상담 운영과 같이 신규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한 집행항목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관련 소요를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전용을 통해 설치·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금 전액 선금 지급 부적절 등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정보화관리관실)

< 현 황 >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8개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 전자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454억 1,200만원이며, 2억원을 이·전용(증)된 예산현액은 총 456억 1,200만원으로, 이 중 453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7133-501)	45,412	45,412	-	200	-	45,612	45,316	-	296	37,914
-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4,452	4,452	-	-	-	4,452	4,406	-	46	-
- 엔티스 고도화	-	-	-	520	-	520	439	-	81	-

자료: 국세청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디지털세[171] 적용 대상기업으로부터 신고서 접수, 세원 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을 총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은 44억 5,200만원이며, 이 중 44억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4,600만원이 불용되었음.

「엔티스 고도화」 사업은 국세행정의 AI 전환 및 세무플랫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ISP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이·전용을 통하여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4억 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171) 디지털세는 필라1(Amount A, Amount B)과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STTR)으로 구성됨. 필라1이란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나누는 제도이며, 필라2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자회사를 두든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함

< 검토의견 >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의 계약기간이 차년도까지 설정되어 이월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15%와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2021년 10월 OECD 주도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설에 관한 장[172]이 새로이 신설되었고 최초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까지임.

국세청은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25년에 「디지털세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 41억 3,800만원 및 동 계약에 대한 감리용역계약 2억 4,800만원을 각각 5월 및 7월에 체결하였으며, 이를 각각 6월 및 7월에 전액 집행하였음.

[글로벌 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건명	계약일	계약금액	집행액	집행일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25. 5. 28.	4,138	4,138	25. 6. 25.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감리용역	25. 7. 11.	248	248	25. 7. 3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은 이러한 계약금의 전액 집행에 대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250630)」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173]의 선금지급한도가 기존

17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 최저한세

173)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계약금액의 70%에서 2025년 말까지 100%로 확대[174]됨에 따라 전액 선금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서에 따르면, 동 구축사업의 납품기한은 2026년 2월 22일까지이며, 감리용역 계약서에 따르면 동 감리용역의 납품기한 역시 2026년 3월 8일까지임. 이에 따라 실제 동 시스템의 구축은 2026년 2월 22일에 완료되었음.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는 제1항에서 선금지급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13항[175]에서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연도 내 동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동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미지급된 금액은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감리용역사업은 당초부터 구축완료까지의 계약기간이 차년도인 2026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연도 내 동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연내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을 선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동 사업의 계약기간이 2026년까지임에도 연내 집행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액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한 문제가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이와 같이 계약기간이 차년도까지로 설정되어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계약금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정부

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17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250630)」**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12.31.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175)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입찰·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는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 사업인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전용을 통해 신설하여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전용의 한계 및 국회 예산심의권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①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용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세부 소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일 뿐,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 또는 신규 내역을 집행 단계에서 설치하기 위한 수단은 아님.

국세청은 2025년 동 사업에서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기 위하여 2건의 전용을 통하여 신규 내역사업인 「엔티스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5억 2,000만원을 전용(증)하여 이 중 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정보화관리관실 기본경비 이·전용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등 사유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목-세목코드	
전용 (2025.5.22)	국세행정지원시스템 운영 (7133-500)	공공요금 [210-02]	△200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7133-501)	일반 연구비 [260-01]	세무플랫폼 대응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을 위한 예산 전용
전용 (2025.5.22)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7133-501)	관리용역비 [210-15]	△32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첫째, 엔티스 고도화 내역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전용을 통해 이를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전용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용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전용은 이미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의 목적범위 안에서 세부 집행수요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집행 단계에서 설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에 엔티스 고도화 내역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업 예산 5억 2,000만원을 전용하여 동 사업을 집행하였음. 이는 기존 엔티스 전산시스템 운영 사업의 단순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보전한 것이라기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전용을 통해 사실상 설치·집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국세청은 동 사업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 안건으로 논의되었으나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전용 집행의 부적정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국세청은 2024년 5월 세무플랫폼 사용자 급증에 따른 홈택스 과부하 우려로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회 등에서 세무플랫폼 대응 ISP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ISP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증액 안건으로 제시되었으나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용 집행의 부적정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이는 엔티스 고도화 내역사업이 단순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회계연도 중 새롭게 발생한 지출소요가 아니라,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사업임을 의미함.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안건으로 검토되었으나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확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2025년도 예산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국세청이 회계연도 중 전용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집행하였다면, 이는 국회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을 행정부 내부의 전용 절차를 통해 사실상 우회 집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또한 국세청은 2024년 5월 세무플랫폼 사용자 급증에 따른 홈택스 과부하 우려가 있었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무플랫폼 대응 ISP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세무플랫폼을 통한 대량 접속 및 스크래핑 등으로 홈택스에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세무플랫폼 사용자 급증 및 스크래핑에 따른 홈택스 과부하 우려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사유일 수 있으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신규 내역사업을 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 세무플랫폼 대응 ISP 및 엔티스 고도화가 필요하였다면, 국세청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 과부하 발생 현황, 예상 접속량, 스크래핑 대응방안, 보안대책, 산출근거 및 향후 구축 소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부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설명하여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였어야 함.

그런데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제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ISP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고, 국회 예결위·기재위 증액 안건으로도 상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이는 국세청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사업 소요도 사전에 예측 가능하였음을 보여주는 사정임.

따라서 본 건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오히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회계연도 개시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전용으로 집행한 사안이므로,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 추진 또는 국회 의결 취지와 다른 집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둘째, 정보화 사업의 경우 ISP와 시스템 고도화, 후속 구축·운영비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더욱 필요함. 엔티스 고도화 내역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운영경비가 아니라, 세무플랫폼 대응 ISP 또는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으로 보임. 이러한 정보화 사업은 ISP 결과에 따라 후속 시스템 구축, 운영·유지관리, 보안강화, 민간 세무플랫폼 연계방식 개선 등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당해연도 ISP 예산 5억 2,000만원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세무플랫폼 스크래핑 대응의 정책 방향, 민간 서비스와 공공 시스템 간 역할 분담, 납세자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호, 홈택스 과부하 대응을 위한 기술적 대안, 향후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소요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ISP는 향후 대규모 정보화 사업의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예산 미편성 상태에서 전용으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후속사업 추진의 기정사실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음.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76]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은 전용을 통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지침에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점, 동 ISP의 경우 전용을 통하여 별도의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국가재정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처럼 국세청은 국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전용 등을 통해 신규로 ISP를 수립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여 집행한 문제가 있는바, 국세청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17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7
나.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수립시 모니터링 강화
○ ISP·ISMP 수립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만 수행하여야 한다.

(14)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비목의 전용 집행 지양 필요(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기획조정관실)

< 현 황 >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국세통계센터 운영, 국세통계포털 서비스 제공, 국세통계자료의 생산·관리·활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7억 9,700만원으로, 이 중 2,200만원을 전용하였고, 18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2025년 일반연구비 예산현액은 2,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7138-302)	1,797	1,797		22		1,819	1,809		10	1,913
- 일반연구비	-	-	-	22	-	22	22	-	-	317

< 검토의견 >

국세청이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연구비를 이·전용 등을 통해 신규 편성하여 국세통계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및 전용제한 취지에 비추어 부적정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2025년도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연구비 2,200만원을 전용을 통해 신규 편성하여 '국세통계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로 집행하였음.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연구비를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집행한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비목 또는 신규 집행항목을 이·전용 등을 통해 설치한 것임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용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집행 과정상 불가피한 세부 소요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므로, 전용 또는 세목 조정은 기존 사업의 집행을 보완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국회가 심의·확정하지 않은 비목을 새로 설치하거나 신규 용역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런데 국세청은 2025년도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일반연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200만원을 전용을 통해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존 정보화 시스템 운영비의 집행 수요를 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일반연구비 비목을 새로 설치하여 신규 용역을 추진한 것임.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외대상에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가 제외되어,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통계시스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세통계시스템이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련 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영향평가 대상 확대의 근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23. 3. 14.에 이루어졌으므로, 국세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영향평가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관련 용역비를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음.

즉, 법률 개정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성은 2025회계연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지출 소요로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국세청이 2025년도 예산에 일반연구비를 편성하지 않은 채 회계연도 중 이·전용을 통해 신규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사전 검토 및 국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시스템 개선, 접근 권한 조정, 비식별조치 보완, 보안 기능 개선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일회성의 연구용역비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 정보화 예산 소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범위, 평가 필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추가 재정 소요 확대 가능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그럼에도 국세청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연도 중 신규 비목 편성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국회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심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음.

따라서 국세청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규 연구용역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관련 비목과 소요를 명확히 반영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을 이·전용 등을 통해 신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5) 관서운영경비 집행한도 초과 및 분할집행 부적정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총괄)

< 현 황 >

「지방국세청 기본경비」사업은 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조직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7개 지방국세청 합계 2025년 예산액은 738억 600만원으로, 이 중 706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지방국세청 기본경비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서울청 기본경비	17,436	16,962	12	15,452
중부청 기본경비	13,886	13,233	30	14,032
대전청 기본경비	8,377	8,153	1	8,562
광주청 기본경비	7,935	7,403	9	7,999
대구청 기본경비	6,987	6,575	30	6,939
부산청 기본경비	11,049	10,638	6	11,029
인천청 기본경비	8,136	7,640	13	8,202
합계	73,806	70,604	101	72,215

자료 : 국세청 제출자료

< 검토의견 >

국세청 본부 및 일부 세무관서에서 관서운영경비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동일·유사 지출을 분할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소액·일상경비에 한정된 간이절차인 관서운영경비 집행절차를 통해 일반 지출절차에 적용되는 사전통제를 우회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예산은 원칙적으로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채권자·지급금액·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지출하는 절차에 따름. 반면 관서운영경비는 일반 지출절차에 따

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한 예외적 절차임. 즉, 관서운영경비는 일반 지출절차를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액·일상적 경비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간이한 지급절차로 보아야 함.[177]

이러한 이유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은 관서운영경비의 최고금액을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은 재무관·지출관의 검토를 거쳐 계약·검수·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통제기준임.[178]

그런데 2025회계연도 국세청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세무관서에서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사례 및 동일 업체에 대한 동일·유사 목적의 지출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확인됨.

가) 건당 500만원 초과 운영비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일부 세무관서가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것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상 집행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177) 「국고금 관리법」 제21조·제22조·제24조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국고금관리법령 해설 참조.
178)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참조.

[500만원 초과 운영비의 관서운영경비 집행 내역]

사업명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비목	집행금액(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2025.3.28.	연합뉴스(1월2월3월 단말기뉴스 서비스) 외 5건	일반수용비	12,000,000
	2025.12.29.	종로칼라 외$	일반수용비	8,844,000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2025.9.26.	(지방청)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홍보	일반수용비	16,800,000
	2025.10.2.	홍보물품제작(부가)	일반수용비	7,280,000
임시청사 이전비용	2025.12.22	소모품 구입(7단중량랙 외)	일반수용비	13,536,760
	2025.12.22	오티에스(OTS) 이사	일반수용비	25,740,000
서울청 기본경비	2025.4.28.	냉온수기 세관 및 정비	일반수용비	5,170,000
인천청 기본경비	2025.2.19.	복사용지	일반수용비	5,547,000
	2025.6.17.	소득세 신고창구 렌탈료	일반수용비	5,338,300
대전청 기본경비	2025.5.12.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시설장비유지비	7,150,000
	2025.7.11.	온수기설치 외	시설장비유지비	7,117,000
	2025.5.13.	무정전원장치(UPS)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6,336,000
	2025.3.26	전동사이드스텝 외	시설장비유지비	5,775,000
	2025.12.30.	4층 추적, 송무과 전기소방설비 설치보수 외	시설장비유지비	5,500,000
	2025-03-20	2025년 북대전세무서 소방시설 보수 공사비	시설장비유지비	5,280,000
	2025-12-12	배터리교체	시설장비유지비	5,280,000
	2025.9.9.	외벽 세무서 간판제작설치	일반수용비	8,000,000
	2025.9.16.	일반수용비지출(광고랜드, 국세신문,가나안)$	일반수용비	5,016,000
	2025.4.25.	상반기 방호직근무복	피복비	6,560,000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인쇄제작·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은 통상 계약방법, 납품·검수 및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출임. 이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경우 일반 지출절차에서 확보되는 사전통제가 약화되고, 관서운영경비가 고액 지출의 편의적 처리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해당 사례의 집행경위와 일반 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를 점검하고, 향후 500만원을 초과하는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일반 지출절차로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회계시스템상 한도 초과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500만원 초과 항목의 분할집행 부적정

관서운영경비 집행자료에는 개별 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이나, 동일 업체에 대한 동일·유사 목적의 지출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사례도 확인되는데, 동일일자애 동일한 수령인을 상대로 5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분할하여 결제한 사안은 관서운영경비 한도(500만원) 초과 항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기 위해 분할 결제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

[500만원 초과 항목에 대한 관서운영경비 분할결제 의심 사례]

사업명	집행일자	집행내용	수령인	집행비목	집행금액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2025.8.25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식사 제공	풀무원푸드앤컬처 정	특근매식비	5,000,000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근무자 식사 제공	풀무원푸드앤컬처 정	특근매식비	895,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11.21	양도소득세 리플릿 안내문 발송 및 포장비용	세한피엔씨(주)	일반수용비	1,350,000
		양도소득세 리플릿 안내문 제작	세한피엔씨(주)	일반수용비	3,649,8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1.31.	양도소득세 안내문(토지외 2종)	신진	일반수용비	4,213,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주택, 농지)	신진	일반수용비	3,179,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3,938,000

		안내문-입주권외 3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편입농지외 4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4,829,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3.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주택 농지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2,607,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토지외 3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4,983,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4.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편입농지외 5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4,961,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농지외 3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4,906,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6.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조정대상지역주택외 2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2,808,3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편입농지외 2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3,179,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6.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주택, 농지	신진	일반수용비	3,591,5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토지외 2종	신진	일반수용비	4,748,7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8.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주식)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3,179,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안내문_토지외 2종	(주)동원피엔지	일반수용비	4,158,000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2025.1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단일물건외	신진	일반수용비	3,201,000

		2종$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_주택외 1종$	신진	일반수용비	3,553,000
기관운영 기본경비	2025.3.20	직원 업무량 감축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1차)	티사이언티픽	일반수용비	1455000
	2025.3.27.	직원 업무량 감축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2차)	티사이언티픽	일반수용비	481000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상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500만원’은 동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동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지급일자나 결의서가 구분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납품 또는 용역에 해당하면 이를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없음.[179]

이와 같은 분할집행은 형식상 개별 지급액을 5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관서운영경비 한도를 회피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데, 관서운영경비 한도 이상의 지출을 분할 집행하는 것은 한도 설정 취지와 계약절차의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국세청은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계약·납품 단위, 견적서·거래명세서·검수조서 및 지급시기 분리 사유를 확인하여 분할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관서에 대한 회계점검과 재발방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79)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참조.

(16)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 및 소멸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총괄)

< 현 황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의미함.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는 경우 사적 활용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180].

국세청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 규모의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고 있음. 연도별 소멸 마일리지는 2023년 7,578,866 마일리지, 2024년 5,890,501 마일리지, 2025년 6,134,000 마일리지에 달함.

---

180)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국세청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

(단위: 건, 마일리지)

연도	월	적립		사용		소멸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	비고
		건수	마일리지 합계	건수	마일리지 합계			
2023	1월	41	60,878	1	17,500	23,084	20,792,050	공적 기부 등
	2월	119	273,865	3	43,300	76,871	20,945,744	
	3월	86	86,420	2	12,452	663	21,019,049	
	4월	124	204,802	7	72,949	46,769	21,104,133	
	5월	122	268,792	3	55,000	122,131	21,195,794	
	6월	190	296,484	3	16,936	361,172	21,114,170	
	7월	81	141,253	0	0	165,240	21,090,183	
	8월	112	140,764	4	78,242	65,909	21,086,796	
	9월	141	492,996	6	152,688	7,353	21,419,751	
	10월	162	362,029	4	5,696	142,787	21,633,297	
	11월	139	349,087	11	244,641	17,695	21,720,048	
	12월	130	289,463	2	5,300	6,549,192	15,455,019	
	합계	1447	2,966,833	46	704,704	7,578,866		
2024	1월	39	65,463	6	63,310	876,890	14,580,282	공적 기부 등
	2월	70	146,204	0	0	133,703	14,592,783	
	3월	97	288,824	3	43,804	42,888	14,794,915	
	4월	157	123,607	3	36,013	121,761	14,760,748	
	5월	120	243,160	3	36,466	22,318	14,945,124	
	6월	232	554,901	7	146,252	123,703	15,230,070	
	7월	150	257,565	5	91,271	89,337	15,307,027	
	8월	104	106,783	4	22,332	115,572	15,275,906	
	9월	126	136,142	9	55,511	25,704	15,330,833	
	10월	272	544,625	12	61,092	120,484	15,693,882	
	11월	223	481,318	65	414,858	26,654	15,733,688	
	12월	203	726,075	65	569,675	4,191,487	11,698,601	
	합계	1793	3,674,667	182	1,540,584	5,890,501		
2025	1월	55	81,372	9	108,345	327,927	11,343,701	공적 기부 등
	2월	53	92,467	2	8,866	121,612	11,305,690	
	3월	134	228,950	6	60,334	23,267	11,451,039	
	4월	141	169,176	8	54,187	14,467	11,551,561	
	5월	150	518,232	4	26,240	1,516	12,042,037	
	6월	220	452,417	11	20,532	123,290	12,350,632	
	7월	147	286,310	11	140,600	98,331	12,398,011	
	8월	115	126,858	2	19,446	177,848	12,327,575	
	9월	155	201,054	113	578,730	108,030	11,841,869	
	10월	128	392,205	127	998,285	374,894	10,860,895	
	11월	339	1,110,347	17	224,374	35,081	11,711,787	
	12월	161	472,640	17	211,293	4,727,737	7,245,397	
	합계	1798	4,132,028	327	2,451,232	6,134,000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청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실적이 저조하여 매년 상당한 규모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소멸 예정 및 퇴직자 보유 마일리지가 사회공헌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체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181]. 특히, 소속 공무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 이상 보유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 공무원의 퇴직 전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182]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의 경우 상당수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2023년에 7,578,866 마일리지[183], 2024년에 5,890,501 마일리지, 2025년에 6,134,000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등 최근 3년간 19,121,041 마일리지가 소멸됨. 해당 마일리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된 바, 대한항공 마일리지 몰 기준 항균 핸드워시 12,740개, 치약 7,640 묶음(1묶음 당 6개입), 수건 2,730 묶음(1묶음 당 5개입)를 구매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함.

[대한항공 마일리지 몰 판매상품 구매 예시]

구 분	판매 마일리지(개당)	구매가능 수량
프로텍트 항균 핸드워시(1개)	1,500	12,740
히말라야 핑크솔트 튜브 치약(6개)	2,500	7,640
수건(5개)	7,000	2,730

자료: 대한항공 마일리지 몰 판매 마일리지 기준 재구성

18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598p
18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594p
183)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2024.7.8.)에 따르면, 2023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적 항공마일리지 소멸 합계는 35,304,947 마일리지로, 국세청의 소멸 마일리지는 상당한 규모를 차지함.

이와 함께,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마일리지 소멸에 그치지 않음. 예산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및 퇴직자 보유 마일리지의 사적 귀속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와 퇴직 예정자 보유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2024.7.8.)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 의결 이후에도 국세청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소멸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추세로, 개선방안의 취지가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국세청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우선 사용되도록 연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소멸 예정 및 퇴직자 보유 마일리지가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체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84].

184) 행정안전부는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행사를 2020년부터 매년 추진 중

관세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 업무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임[185].

관세청이 징수하는 금액 중 관세와 수입 관련 내국세는 재정경제부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고, 벌금·몰수금·가산금 등 그 밖의 세외수입이 관세청의 세입이 됨.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 예산 규모는 1,002억 9,100만원이며, 585억 7,600만원을 수납하였음. 2024년도 대비 수납액이 21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유는 과태료 수납액이 142억 8,600만원, 가산금 수납액이 30억 4,6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5회계연도 관세청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결산(A)	2025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예산			
○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등)	5	4	4	4	△1	△20
○ 경상이전수입 (가산금, 벌금·과태료 등)	192	233	233	390	198	103.1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면허료및수수료 등)	176	765	765	191	15	8.5
○ 관유물매각대 (고정자산매각대)	0.2	0.1	0.1	0.1	△0.1	△50
합 계	373	1,002	1,002	585	212	56.8

자료: 관세청

185) **「정부조직법」 제30조(재정경제부)** ⑤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2) 세출 결산

2025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6,582억 5,0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000만원이 포함된 6,586억 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512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9%의 집행률을 보임.

2025년도 이용액은 18억 3,300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인건비 부족분 충당 16억 7,000만원, 밀수단속 사업의 민간인 포상금 부족분 충당 1억 6,300만원이며, 전용액은 34억 7,700만원으로 주된 전용사유는 인건비 부족분 충당 23억 300만원, 전국세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9억 200만원 등에 기인한 것임.

특히, 인건비는 전년대비 172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5년 현업근무인원의 증가 및 복직자 등 현원 증가와 저연차 공무원 기본급 인상(6.6%), 근속 1년 이하 정근수당 10% 지급 등 수당 규정 변경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불용액은 전년도 불용액 98억 6,100만원 대비 △43.2% 감소한 56억 3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52억 7,600만원,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 3억 2,700만원에 기인함.

[2025회계연도 관세청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결산(A)	2025년			증감 (B-A)	증감율 (B-A)/A
		예산액		결산(B)		
		본예산	추경예산			
○ 인건비	3,437	3,577	3,577	3,609	172	5
○ 기본경비	347	353	353	356	9	2.6
○ 사업비	2,808	2,652	2,652	2,547	△261	△9.3
합 계	6,592	6,582	6,582	6,512	△80	△1.2

자료: 관세청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년				2026 예산
			예산		결산(B)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75,015	37,345	100,291	100,291	58,576	58.4	52,737
51항 관유물 대여료	342	507	393	393	422	107.4	485
토지대여료(51-511)	81	58	43	43	36	83.5	44
건물대여료(51-512)	261	449	350	350	386	110.3	441
54항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	5	8	8	3	31.3	9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	5	8	8	3	31.3	9
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	-	-	-	-	-	-	-
56항 벌금 및 몰수금	20,293	21,449	21,534	21,534	37,142	172.5	27,589
벌금및과료(56-561)	3,980	4,330	4,339	4,339	5,205	120.0	4,571
몰수금 및 추징금(56-562)	1,539	1,409	2,312	2,312	2,403	103.9	2,543
과태료(56-563)	10,780	12,156	10,917	10,917	26,442	242.2	16,315
징계부과금(56-564)	1	2	10	10	4	37.8	10
과징금(56-565)	3,993	3,553	3,956	3,956	3,089	78.1	4,150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20	37	39	39	123	316.6	39
위약금(57-572)	20	37	39	39	123	316.6	39
58항 가산금	1,675	△2,763	1,042	1,042	283	27.1	990
가산금(58-581)	1,675	△2,763	1,042	1,042	283	27.1	990
59항 기타 경상이전수입	600	523	700	700	1,464	209.1	750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600	523	700	700	1,464	209.1	750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51,539	16,537	75,398	75,398	18,246	24.2	21,383
면허및수수료(65-651)	51,539	16,537	75,398	75,398	18,246	24.2	21,383
69항 잡수입	534	1,026	1,171	1,171	883	75.4	1,206
기타잡수입(69-691)	534	1,026	1,171	1,171	883	75.4	1,206
71항 고정자산 매각대	11	24	6	6	10	164.7	286
기계기구매각대(71-712)	11	24	6	6	10	164.7	286
기타고정자산매각대(71-713)	-	-	-	-	-	-	-

자료: 관세청

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총 계	622,173	659,249	658,250	658,250	651,234	98.9	689,932
1100 수출입통관	**52,765**	**30,527**	**30,686**	**30,686**	**29,471**	**96.0**	**30,050**
1131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52,765	30,527	30,686	30,686	29,471	96.0	30,050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1131-301)	9,563	2,559	2,462	2,462	2,309	93.8	2,308
특송화물 통관지원 (1131-302)	6,756	5,385	6,582	6,582	6,443	97.9	12,62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 도입 (1131-303)	24,252	-	-	-	-	-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1131-304)	6,678	6,554	6,705	6,705	6,692	99.8	5,495
공항만 운영지원 (1131-305)	5,515	16,029	14,937	14,937	14,028	93.9	19,087
1200 관세심사	**6,284**	**6,061**	**6,387**	**6,387**	**6,258**	**98.0**	**4,792**
1231 관세탈루심사지원	5,756	6,061	6,387	6,387	6,258	98.0	4,792
관세탈루심사 (1231-300)	2,050	2,261	2,259	2,259	2,220	98.3	2,126
불법위해물품안전관리 (1231-301)	3,675	3,388	3,623	3,623	3,543	97.8	2,211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1231-302)	559	457	505	505	496	98.2	455
1300 밀수조사단속	**7,994**	**6,150**	**5,926**	**5,926**	**5,814**	**98.1**	**5,749**
1331 밀수단속지원	7,243	5,441	5,185	5,185	5,090	98.2	5,078
밀수단속 (1331-300)	7,243	5,441	5,185	5,185	5,090	98.2	5,078
1333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	701	709	741	741	724	97.7	671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1333-304)	701	709	741	741	724	97.7	671
1400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85,601**	**119,734**	**107,429**	**107,429**	**105,051**	**97.8**	**110,772**
1441 정보관리 및 정보시스템 수출	60,086	78,229	77,105	77,105	76,626	99.4	76,133
관세행정 정보관리(정보화) (1441-500)	58,914	77,943	63,638	63,638	63,160	99.2	63,129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지원 (1441-501)	1,172	287	287	287	285	99.3	287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한국관세정보원 지원(출연) (1441-503)	-	-	13,180	13,180	13,180	100.0	12,717
1442 관세행정연구개발(R&D)	4,584	4,368	3,811	3,811	3,804	99.8	4,943
관세행정현장맞춤형 기술개발(R&D)(1442-530)	4,584	3,600	-	-	-	-	-
관세행정현장맞춤형 기술개발2.0(R&D)(1442-530)	-	-	2,135	2,135	2,135	100.0	3,267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R&D)(1442-532)	-	500	1,500	1,500	1,500	100.0	1,500
스마트 세관 기술지원 (R&D)(1442-533)	-	268	176	176	169	96.0	176
1443 최첨단장비 도입운영	20,931	37,137	26,513	26,513	24,622	92.9	29,696
통관감시장비현대화 (1143-300)	11,325	26,758	15,666	15,666	14,780	94.3	19,287
통관감시장비운영관리 (1443-301)	9,606	10,379	10,847	10,847	9,842	90.7	10,409
1500 국제관세협력	**19,246**	**21,528**	**19,867**	**19,867**	**17,886**	**90.0**	**17,906**
1531 FTA 및 국제협력 지원	19,246	21,528	19,867	19,867	17,886	90.0	17,906
FTA 및 국제협력 (1531-300)	7,643	2,815	2,149	2,149	1,985	92.4	1,950
FTA 원산지 위험관리 (1531-300)	846	843	847	847	842	99.4	527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1531-300)	7,757	10,633	8,526	8,526	6,714	78.7	7,334
세관협력기금 출연(ODA) (1531-300)	3,000	3,000	2,500	2,500	2,500	100.0	2,250
한국원산지정보원 지원(출연) (1531-304)	-	4,237	5,845	5,845	5,845	100.0	5,845
7100 관세행정지원	**440,269**	**464,057**	**474,770**	**474,770**	**474,184**	**99.9**	**498,123**
7101 인건비	329,089	339,646	353,906	353,906	356,874	100.8	369,10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0)	329,089	339,646	353,906	353,906	356,874	100.8	369,101
7111 본청기본경비	11,893	11,778	12,490	12,490	12,133	97.1	12,801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0)	5,022	5,054	5,187	5,187	5,026	96.9	5,182
본부기본경비 (7111-250)	4,912	4,904	5,377	5,377	5,246	97.6	5,600
통관국기본경비 (7111-251)	356	338	342	342	341	99.7	371
심사국기본경비 (7111-252)	526	507	509	509	507	99.6	554
조사국기본경비 (7111-253)	338	340	344	344	333	96.8	403
정보데이터정책관기본경비 (7111-254)	333	308	321	321	320	99.7	309
국제관세협력국기본경비 (7111-255)	406	326	410	410	360	87.8	382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21,505	21,927	21,780	21,780	22,426	103.0	21,983
소속기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0)	4,210	3,166	3,404	3,404	3,193	93.8	3,575
서울본부기본경비 (7118-251)	3,998	4,114	3,983	3,983	4,017	100.9	3,933
인천공항기본경비 (7118-252)	-	3,504	3,026	3,026	3,522	116.4	2,975
부산본부기본경비 (7118-253)	4,150	4,002	4,102	4,102	4,107	100.1	4,053
인천본부 기본경비 (7118-254)	4,776	2,354	2,310	2,310	2,568	111.2	2,284
대구본부기본경비 (7118-255)	1,157	1,226	1,312	1,312	1,316	100.3	1,293
광주본부기본경비 (7118-256)	1,914	2,049	2,059	2,059	2,099	101.9	2,334
중앙관세분석소기본경비 (7118-257)	300	323	309	309	328	106.1	305
관세평가분류원기본경비 (7118-258)	278	324	352	352	338	96.0	316
평택직할 기본경비 (7118-260)	721	864	923	923	939	101.7	915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년				2026 예산
			예산		결산(B)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7131 관세정책지원	37,184	40,592	41,904	41,904	40,604	96.9	43,045
관세행정활동지원 (7131-301)	18,770	18,045	19,089	19,089	18,728	98.1	18,989
관세행정운영지원 (7131-351)	5,289	5,419	5,512	5,512	5,321	96.5	5,372
관세행정인력지원 (7131-352)	13,126	17,127	17,303	17,303	16,556	95.7	18,684
7132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38,926	49,013	42,517	42,517	40,042	94.2	49,120
국제공항만운영지원 (7132-300)	22,445	24,647	27,652	27,652	26,432	95.6	28,398
청사시설관리 (7132-440)	10,886	10,402	11,194	11,194	10,093	90.2	19,109
부산세관 청사개선 (7132-441)	4,154	12,380	2,058	2,058	1,929	93.7	-
관세행정 안전관리지원 (7132-442)	1,441	1,584	1,613	1,613	1,587	98.4	1,613
7140 납세자권익보호	372	331	1,237	1,237	1,227	99.2	1,273
납세자권익보호 (7140-300)	372	331	1,237	1,237	1,227	99.2	1,273
7150 송무수행	1,299	770	900	900	878	97.6	800
송무수행 비용지원 (7150-400)	1,299	770	900	900	878	97.6	800
7200 관세인재개발원	**9,392**	**10,373**	**12,261**	**12,261**	**11,764**	**95.9**	**10,454**
7201 관세인재개발원인건비	4,000	4,026	3,855	3,855	4,046	105.0	4,309
인재개발원인건비 (7201-100)	4,000	4,026	3,855	3,855	4,046	105.0	4,309
7211 관세인재개발원기본경비	1,058	1,052	1,063	1,063	1,059	99.6	1,047
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 (7211-200)	95	110	118	118	116	97.9	118
인재개발원기본경비 (7211-250)	963	942	945	945	944	99.9	929
7241 관세인재개발원운영	4,335	5,295	7,343	7,343	6,659	90.7	5,098
인재개발원 운영지원 (7241-351)	4,335	5,295	7,343	7,343	6,659	90.7	5,098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1) 거액 체납의 구조적 발생에 따른 과태료 제도 개선 필요 (과태료, 심사국)

< 현 황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행정질서벌)임. 2025년 예산현액은 109억 1,700만원으로, 이 중 887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64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16억 2,000만원을 미수납하였고, 7억 1,5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음.

[2025회계연도 과태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태료(56-563)	10,917	10,917	-	10,917	88,777	26,442	61,620	715	16,315

< 검토의견 >

과태료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건별 과태료가 누적되어 납부능력을 초과하는 거액의 체납채권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대규모 미수납 및 불납결손이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체납관리 강화와 함께 과태료 부과체계 및 제재수단 전반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과태료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9.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해운업계 일제 외환검사라는 특이치(94억 8,600만원, 수납률 100%)를 제외하면 수납률이 21.3%로 크게 낮아짐.

[연도별 과태료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1	9,247	9,247	-	9,247	41,469	5,279	57.1	12.7	34,992	1,198
’22	4,813	4,813	-	4,813	54,887	10,421	216.5	19.0	44,273	194
’23	7,426	7,426	-	7,426	64,433	10,780	145.2	16.7	53,515	138
’24	8,892	8,892	-	8,892	87,678	12,156	136.7	13.9	74,980	542
’25	10,917	10,917	-	10,917	88,777	26,442	242.2	29.8	61,620	715
’26	16,315	-	-	-	-	-	-	-	-	-

2025년 미수납액 616억 2,000만원의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납기미도래(20억 5,400만원), 정리유예(1억 6,300만원)는 소액인 반면, 체납정리중(551억 400만원)과 체납자 무재산 등(43억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25년 체납 중인 상위 10대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과태료 부과 사유임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가상자산 구매대금 허위증빙 송금, 해외 ATM 인출을 통한 불법지급 등 모두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위반 사례들임.

[2025년 상위 10대 체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주체	위반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체납액	부과연도	위반법령
㈜ㅇㅇ코리아	838	20,546	-	20,546	2021	외국환거래법
권ㅇㅇ	1,049	11,477	-	11,477	2024	외국환거래법
문ㅇ	72	1,700	-	1,700	2022	외국환거래법
정ㅇㅇ	84	1,314	-	1,314	2022	외국환거래법
ㅇㅇ 주식회사	130	1,270	-	1,270	2023	외국환거래법
박ㅇㅇ	111	1,118	-	1,118	2024	외국환거래법
김ㅇㅇ	93	1,046	-	1,046	2022	외국환거래법
전ㅇㅇ	111	844	-	844	2022	외국환거래법
천ㅇㅇ	187	765	-	765	2024	외국환거래법
류ㅇㅇ 주식회사	82	735	-	735	2022	외국환거래법
합 계	2,675	40,815	-	40,815		

자료: 관세청

또한, 1위와 2위의 체납액 규모 합계가 320억원에 달하는 등 소수 개인·업체에 거액의 과태료가 집중되고 있음. 해당 위반은 각각 2021년과 2024년에 발생하였는데, 체납자의 납부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전액 미수납되고 있음.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건별 과태료가 누적되어 일부 사건에서는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거액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채권이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을 금지시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186] 이러한 제도개선이 실현될 경우 일정 부분 과태

186) 이와 관련한 법안 발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법안명	의원명	발의시기	심의현황	과태료 관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차규근	25.10월	법사위 심의	고액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박성훈	25.12월		
외국환거래법	박균택	25.9월	재경위 심의	고액 외환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출입국관리법	차규근	25.10월	법사위 심의	고액 과태료 체납자 출국금지
	박성훈	25.12월		
	박균택	25.9월		고액 외환과태료 체납자 출국금지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	26.2월	재경위 심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감치 등

료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고액 체납자의 경우 이미 재산이 부족하거나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체납관리 강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징수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체납관리 강화는 일정 부분 효과가 기대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적발[187]은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5월까지 허위증빙 송금 적발 규모가 4,964억원에 달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음.

[가상자산 구매 목적 허위송금 적발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5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건수	5	1	2	3
	금액	472	50	159	4,964

자료: 관세청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액의 체납을 구조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현행 과태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관세청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체납관리 강화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체계 및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187)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해외로 외화를 송금하면서 이를 무역대금인 것으로 허위 증빙하는 경우

(2) 통관 물량 증가에 대응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 역량 확충 필요 (특송화물 통관지원, 통관국)

< 현 황 >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은 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 처리와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임차료, 운영비,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65억 8,200만원으로, 이 중 1억 2,000만원 이용 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64억 6,200만원이며, 이 중 64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특송화물 통관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특송화물 통관지원 (1131-302)	6,582	6,582	-	△120	-	6,462	6,443	-	19	12,622

< 검토의견 >

특송화물 통관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특송화물의 급증에 따라 1인당 일평균 X-ray 판독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1건당 판독시간은 수 초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독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송화물은 세관장에게 등록된 특송업체(DHL, FedEx, UPS 등)가 서류, 견본품, 전자상거래 물품 등 소량의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화물로서, 2021년 약 9,790만 건이었던 통관 건수는 2025년 1억 9,616만 건으로 4년 만에 약 두 배 규모로 증가하였음.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전량 X-ray 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물량 증가에 따라 직원 1인당 판독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규모가 가장 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 연간 총 판독건수는 2021년 약 6,300만 건에서 2025년 약 1억 2,000만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일평균 판독요원은 34명에서 40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따라 1인당 일평균 판독건수는 약 5,000건에서 8,0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1건당 평균 판독시간은 9초에서 5초로 크게 감소하였음.

[주요 세관별 X-ray 판독 현황]

세관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인천공항	연간 총 판독건수	62,858,442	60,234,192	80,162,360	114,628,459	120,166,646
	일평균 총 판독건수[1]	172,215	165,025	219,623	314,051	329,224
	일평균 판독 요원수(현원)[2]	34	35	38	37	40
	일평균 1인 판독건수[3]	5,036	4,742	5,719	8,581	8,190
	1건당 판독시간(초)[4]	9	9	8	5	5
인천	연간 총 판독건수	11,715,179	12,518,013	18,725,523	28,800,905	24,664,432
	일평균 총 판독건수[1]	40,397	43,166	64,571	99,313	85,050
	일평균 판독 요원수(현원)[2]	7	11	12	13	13
	일평균 1인 판독건수[3]	5,771	3,924	5,381	7,639	6,542
	1건당 판독시간(초)[4]	7	11	8	6	7
평택	연간 총 판독건수	23,115,112	31,716,851	39,873,192	37,883,074	37,620,397
	일평균 총 판독건수[1]	79,707	109,368	137,494	130,631	129,726
	일평균 판독 요원수(현원)[2]	2	4	3	9	12
	일평균 1인 판독건수[3]	39,854	27,342	45,831	14,515	10,810
	1건당 판독시간(초)[4]	1	2	1	3	4
군산세관	연간 총 판독건수	-	-	-	7,016,714	9,427,150
	일평균 총 판독건수[1]	-	-	-	27,302	36,682
	일평균 판독 요원수(현원)[2]	-	-	-	3	3
	일평균 1인 판독건수[3]	-	-	-	9,101	12,227
	1건당 판독시간(초)[4]	-	-	-	2	1
용당세관	연간 총 판독건수	213,115	538,496	1,342,633	2,366,373	2,426,917
	일평균 총 판독건수[1]	7,104	2,095**	5,224	9,208	9,443
	일평균 판독 요원수(현원)[2]	1	1	2	2	2
	일평균 1인 판독건수[3]	7,104	2,095	2,612	4,604	4,722
	1건당 판독시간(초)[4]	4	0.1	0.1	0.2	0.2
김포공항	연간 총 판독건수	-	80,046	1,024,482	1,414,868	1,855,343
	일평균 총 판독건수[1]	-	**311**	3,986	5,505	7,219
	일평균 판독 요원수(현원)[2]	-	1	1	1	2
	일평균 1인 판독건수[3]	-	311	3,986	5,505	3,610
	1건당 판독시간(초)[4]	-	75	6	4	6

주. 1) 일평균 총 판독건수 : 연간 총 판독건수 / 근무일수
2) 일평균 판독요원수 : 현원으로 작성
3) 일평균 1인 판독건수 : 일평균 총 판독건수1) / 일평균 판독 요원수2)
4) 1건당 판독시간(초) : 일일 1인 판독건수3) / 1일 근무시간(초)
자료: 관세청

또한 일부 세관의 경우 1건당 평균 판독시간이 2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업무절차는 1차 판독을 원칙으로 하고, 이상 음영이 발견되거나 우범화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독을 실시하고 있는바, 판독시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위해물품 등을 식별하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어려워지고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충분한 판독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 시 복수 판독이 가능한 인력·장비 여건을 마련하는 등 X-ray 판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송화물 증가 속도를 개장검사 역량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개장검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위해물품 등의 국내 반입을 예방하기 위한 검사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개장검사"란 X-ray 판독, 정보분석 등을 통해 선별된 화물의 포장을 개봉하여 물품의 종류, 수량, 위해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 절차임.

관세청의 최근 10년간 개장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738만 건이었던 전자상거래 통관건수는 2025년 1억 8,594만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개장검사 건수는 144만 건에서 301만 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따라 개장검사 비율도 4.1%에서 1.6%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최근 10년간 개장검사 현황]

(단위: 천건, %)

연도	전자상거래 건수(A)	개장검사 건수(B)	비율(B/A)
2016	17,377	1,439	4.1
2017	23,592	1,309	3.1
2018	32,255	1,713	3.3
2019	42,988	2,668	4.4
2020	63,575	2,336	2.8
2021	88,384	2,072	2.3
2022	96,125	1,923	2.0
2023	131,447	2,132	1.6
2024	181,187	2,551	1.4
2025	185,937	3,010	1.6

자료: 관세청

이는 실제 위해물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화물의 비율이 감소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속도에 비해 개장검사 역량의 확충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개장검사는 X-ray 판독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위해물품 등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바,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장검사 인력과 조직

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관세청은 특송화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 전문경력관 95명과 관세직 45명 등 총 140명을 증원한 바 있음. 이 중 전문경력관은 X-ray 집중판독 업무를 수행하고, 관세직은 정보분석·신고내역심사·개장검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인바, 향후 증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장검사 역량과 위해물품 적발 성과가 실질적으로 제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력·조직·장비 보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지원기준의 반복적인 변경에 따른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하 등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통관국)

< 현 황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관세행정 목적상 세관검사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정밀검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가 화주의 부담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67억 500만원으로, 이 중 66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1131-304)	6,705	6,705	-	-	-	6,705	6,692	-	13	5,495

사업비의 대부분은 검사지원 비용으로서 기타보전금(310-04) 비목으로 집행되며 2025년 집행액은 62억원임. 검사비용 지원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되며 2025년 위탁비용 집행액은 4억 6,400만원임.

< 검토의견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예산 규모에 맞추어 검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집행 방식은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은 2020년 7월 최초 도입된 이후 약 5년 반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왔음. 관세청은 지원사업의 목적, 예산 규모 및 조기 소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검사비용 지원기준 변경 연혁]

구분	기업규모별		성실도별	비 고 (조기소진 포함)
	중소	중견		
'20년 7월	100%	-	-	- 제도 도입
'21년 1월	100%	100%		- 지원대상 확대(중견기업 포함)
'23년 9월	60%	60%		- 지급비율 축소(잔여예산 감안), 10월 예산 조기소진
'24년 3월	60%	-		- 중견기업 제외(예산 감안), 전년도 조기소진에 따른 지원대상 축소
'24년 5월	100%	-		- 지급비율 확대
'24년 11월	100%	60%		- 중견기업 지원재개
'25년 10월	80%	50%		- 지급비율 축소(잔여예산 감안), 12월 예산 조기소진
'26년 2월	80%	50%	0%~100%	- 기업 성실도별 차등지급기준* 신설

* (차등지급기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의뢰·통고처분 기준(미지급)뿐만 아니라, 원산지 오표기, 고세율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주요신고 정정이력(핵심적발률) 상위업체에 대해 차등지원

자료: 관세청

그러나 이처럼 연평균 1회 이상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이 자주 변경될 경우 수혜대상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중견기업은 사업 도입 초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되었으며, 이후 다시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 역시 예산 상황에 따라 60~100%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음.

검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사업의 정책목적과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라 운영될 필요가 있음에도,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정교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차년도 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바, 현행 지원기준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2월부터 관세청은 기업 성실도에 따른 차등지급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은 전년도 검사결과 ① 단순 신고정정의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검사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②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고세율 세번변경, 감면신고 오류, 원산지 표시 오류 등 핵심적발건이 반복되어 핵심적발률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검사비용의 50%를 감액 지원하고 있음.

[위반유형별 지원기준]

구분	차년도 지급시
단순 신고정정 이력 업체	100%
고발·통고 처분 업체	0%
핵심적발률 상위 업체	50%

* 당해연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단순신고 정정은 지원, 고발·통고처분 및 핵심적발건은 비지원
자료: 관세청

동 사업의 근거가 되는 「관세법」 제173조는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물품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에서는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고발되는 경우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핵심적발건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차년도 정상 검사건의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고세율 세번변경, 감면신고 오류, 원산지 표시 오류 등 핵심적발건 역시 관세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인바, 비록 고발 또는 통고처분 대상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령 위반 이력이 반복되어 핵심적발률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국가재정으로 검사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성실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향후에는 핵심적발률 차등지급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행 지원기준이 성실신고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셋째, 관세청은 2021회계연도 국회 결산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지정기관이 과거와 동일한 업체인바, 실제 지정기준과 지정결과가 국회가 의도한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관세법 시행령」은 검사비용 지급 업무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세청은 이를 일반적인 고객지원센터 운영업체에 위탁하여 신청서 심사, 지원금액 확정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민간업체가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지적하였음. 이에 "화주에 대한 검사비용 지급 업무를 「관세법 시행령」 규정대로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음.

관세청은 동 지적을 반영하여 '23.4월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에 마련하고, 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23.10월 향후 5년간 유효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는 입장임.

[전문기관 지정요건]

① 검사비용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환경과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관세행정 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을 것
③ 항목별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또는 적출·입료)이 법인 또는 단체의 수익이나 매출이 아닐 것
④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이 아닐 것

자료: 관세청

그러나 실제 지정된 전문기관은 과거와 동일한 고객지원센터 운영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문기관 지정요건 역시 전산환경, 전담인력 및 공공재정 지급 관련 업무 경험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세·통관 분야의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음.

국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히 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비용 지급 심사 업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전문기관 재지정 시에는 관세·통관 분야의 전문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의 실효성 제고 필요 (공항만감시지원, 통관국)

< 현 황 >

「공항만감시지원」 사업은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해상에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은 149억 3,700만원으로, 이용 감액 4,4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48억 9,300만원이며, 이 중 140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은 국경단계인 통관·감시 현장에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발 직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5년부터 도입됨. 2025년 예산은 2억 4,000만원이며, 이를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항만감시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항만감시지원 (1131-305)	14,937	14,937	-	△44	-	14,893	14,028	-	865	19,087
- 여행자통관감시지원	9,191	9,191	-	△44	-	9,147	8,475	-	716	13,591
- 항만감시지원	5,506	5,506	-	-	-	5,506	5,313	-	193	5,206
-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	**240**	**240**	**-**	**-**	**-**	**240**	**240**	**-**	**-**	**290**

< 검토의견 >

마약류의 국내 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적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50만원, 1인당 평균 145,000원 수준으로 충분한 유인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적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유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마약류의 국내 반입 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2014년 9,984건으로 1만 건에 미치지 못했던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2024년 23,0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내 밀반입된 마약류를 중량 단위로 보면, 2014년에는 압수된 물량이 57.9kg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에는 746.7kg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음.[188)]

이처럼 마약류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면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를 검사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는 제한된 측면이 있는바, 관세청은 2025년 검사직원들의 근무의욕 제고를 위하여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2025년 포상금 집행기준에 따라 동 포상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1,659명으로 1인당 평균 145,000원 수준임. 관세청은 마약류 적발 건별 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0억원 이상의 대형사건을 적발하더라도 포상금액은 최대 150만원에 불과하고, 이를 4명의 기여자에게 배분하면 1인당 40만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음.

[마약류 포상금 집행기준]

적발물품 가격	포상금액
50만원 미만	5만원
50만원 ~ 5백만원 미만	10만원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30만원
3천만원 ~ 1억원 미만	50만원
1억원 ~ 5억원 미만	8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 30억원 미만	120만원
30억원 이상	150만원

자료: 관세청

정상화물에 교묘하게 은닉하여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세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나, 열악한 검사 현장[189)] 및 마약

188) 「2024 마약류 범죄백서」, 검찰, 2025.6.
189) 검사가 수행되는 공항만은 검색범위가 넓고 크레인, 지게차 등이 상시 출입하는 곳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류 자체의 위험성[190]은 세관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소극적 검사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하고 있음.

포상금과 관련한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국세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건별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191]

포상금 제도는 단순한 사후 보상을 넘어 위험 업무 수행을 유인하고 적극적인 적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밀반입되고 있어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차단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192],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막대하다는 점[193] 등을 고려할 때,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이 통관현장 직원들의 적발의욕을 실질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0)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수십~수백배 강한 마약으로 코·입으로 흡입시 중독 위험이 매우 높은 등 마약의심물질을 촉수로 검사함에 따라 중독위험 상존

191) 건별 징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192) 최근 5년 기준 국내 전체 압수 마약의 78.4%를 통관단계에서 적발함.

193)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비용 분석(2018년 제32-3호)」)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는 범죄통제비용, 사회적 파괴비용 등 약 2조 2,300억원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분석됨.

(5)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의 활용도 제고 필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관세평가분류원)

< 현 황 >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은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동향 정보 제공,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실시와 WCO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분쟁 지원을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5억 500만원으로 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의 내역사업인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는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 복잡한 법률 적용기준 등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과 학생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9,900만원 중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1231-302)	505	505	-	-	-	505	496	-	9	455
- 세계 HS 및 국제 동향정보 제공	340	340	-	-	-	340	338	-	2	290
-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99**	**99**	-	-	-	**99**	**96**	-	3	**99**
- WCO 국제회의 참석 등 관세외교 확대	66	66	-	-	-	66	62	-	4	66

< 검토의견 >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상작 축소를 통한 포상금 상한의 상향 조정 및 실질적으로 과세이론 고도화에 이바지하고 우수 논문에 대해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논문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에는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에 대한 연구논문 공모전' 및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를 위한 ChatGPT 등 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였음.

관세평가분류원은 연구논문 공모전을 2015년부터 운영 중이며,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등에 대한 공고(5월)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가신청 시 참가자가 공고문에 기재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최종으로 접수(10월)된 논문을 심사 후 우수자에 대해 시상하고 있음.

관세평가분류원은 2023년까지 대학생·일반인 모두 참여 가능한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기존 공모 분야 외에 대학생 부문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2025년에는 관세평가 판례평석 부문은 진행하지 않았음.[194]

동 공모전은 「관세법」 제324조[195], 동 법 시행령 제277조[196] 및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등 공모에 관한 내규」 제2조·제7조[197]에 따라 대상 포상을 지급하고 있음.

---

194) 2026년에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대학생 부문을 제외함.

195) **「관세법」 제324조(포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196) **「관세법 시행령」 제277조(포상방법)** ①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197)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등 공모에 관한 내규」 제2조(공모 분야 및 시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제1항의 연구논문 등을 공모하고 우수작에 대하여 시상한다.
제7조(시상) ① 우수 연구논문 등에 대한 시상 훈격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상금 지급 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15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 내부직원 수상 시 상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음.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공모전의 제출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67건이 제출되어 36건이 수상하였음. 부문별로는 관세평가 연구논문의 경우 21건이 제출되어 11건이 수상하였으며, 품목분류 연구논문의 경우 19건이 제출되어 11건이 수상하였으며, 대학생 부문의 경우 27건이 제출되어 14건이 수상하였음.

2024년에는 64건이 제출되어 45건이 수상하였는데, 관세평가 판례평석의 경우 11건이 제출되어 11건이 수상하고, 관세평가 연구논문은 12건이 제출되어 10건이 수상하는 등 대부분의 제출작이 수상되었음.

[2024년 및 2025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제출 건수 및 수상 건수]

□ 2025년

(단위: 건수, 만원)

구분	제출 건수	수상 건수	수상 금액(훈격별)				
			훈격	금액	인원	총액	소계
관세평가 연구논문	21	11	대상	500	1	500	1,800
			최우수상	300	2	600	
			우수상	150	3	450	
			장려상	50	5	250	
품목분류 연구논문	19	11	대상	500	1	500	1,800
			최우수상	300	2	600	
			우수상	150	3	450	
			장려상	50	5	250	
대학생 부문 (AI학습논문)	27	14	대상	300	1	300	1,400
			최우수상	200	2	400	
			우수상	100	3	300	
			장려상	50	8	400	
합계	67	36	5,000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결과 적정한 수상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격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모 분야별 수상자에게 관세청장 상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상금으로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상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대상 : 500만원 이내
2. 최우수상 : 300만원 이내
3. 우수상 : 150만원 이내
4. 장려상 : 50만원 이내
③ 내부직원 수상 시 상금의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2024년

(단위: 건수, 만원)

구분	제출 건수	수상 건수	수상 금액(훈격별)				
			훈격	금액	인원	총액	소계
관세평가 연구논문	12	10	대상	400	1	400	1,450
			최우수상	200	2	400	
			우수상	150	3	450	
			장려상	50	4	200	
관세평가 판례평석	11	11	대상	300	1	300	1,075
			최우수상	150	2	250	
			우수상	100	3	275	
			장려상	50	5	250	
품목분류 연구논문	21	12	대상	400	1	400	1,500
			최우수상	200	2	350	
			우수상	150	3	450	
			장려상	50	6	300	
대학생 부문 (리서치)	20	12	대상	150	1	150	890
			최우수상	100	2	200	
			우수상	80	3	240	
			장려상	50	6	300	
합계	64	45	4,915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새로운 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쟁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 공모전의 제출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판례평석 부문에 대한 공모전을 개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제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제출작의 53% 이상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지는 등 입상작 비율이 과다하여 다수 참가자에게 포상이 분산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 입상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해 활용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해 관세청은 각 업무 분야가 WTO 관세평가협정, 품목분류 국제협약, 관세법령 및 국제적 해석사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단기간에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연구 성과가 곧바로 법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과 기업 등에 제도를 알리고 연구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관세 부과의 객관성·수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함.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수상작의 활용 사례]

구분	연구주제	제출연도	관련 논문	활용사례	활용연도
관세평가	관세법상 보세창고 거래(BWT) 수입물품의 합리적 평가방안 연구	2018년	보세창고인도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방안 외 1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신설	2020년
	관세법 제30조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 규정 연구	2021년	물품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동안 행해진 판매의 관세평가 외 8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2024년
	자유주제	2020년	관세법 상 수입항 체선료 등 과세 여부에 관한 연구	관세평가운영에 관한고시 제24조제2항 개정	2023년
품목분류	LED 발광램프 (제8539호, 제8541호, 제9405호) 품목분류	2020년	LED 조명제품에 관한 품목분류 기준 연구 외 4건	LED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안 마련	2022년

자료: 관세청

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관세연구 공모전에서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과 관세평가 판례평석만을 공모 분야로 지정하고, 대학생 대상 공모전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동 공모전이 실질적으로 과세이론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논문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는 공모전 참여율 저조에 대한 국회 지적 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모전 참가 인원의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사업의 2026년 사업 계획]

등급	연구논문(관세평가)	연구논문(품목분류)	판례평석(관세평가)
대상	500만원 × 1편	500만원 × 1편	300만원 × 1편
최우수상	300만원 × 2편	300만원 × 2편	200만원 × 2편
우수상	150만원 × 3편	150만원 × 3편	100만원 × 3편
장려상	50만원 × 5편	50만원 × 5편	50만원 × 8편 이내
합 계	1,800만원	1,800만원	1,400만원

자료: 관세청

또한, 관세청의 2026년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대상 500만원 이하 및 부문별 총 11~14편 수준의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형 로펌, 관세법인, 학계 권위자 등 실질적인 과세이론 고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수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보상 체계가 여전히 매우 미흡함. 아울러 관세청이 사후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논문집 발간 및 단순 누리집 게시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정책 반영 실적을 제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관세청은 대학생 부문에 대한 공모전은 관세평가·품목분류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학습 효과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참가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과세이론 고도화, 새로운 쟁점 발굴, 제도개선 방안 제시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6년에는 대학생 부문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밝힘.

이와 같이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 복잡한 법률 적용기준 등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관세평가 이론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등의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사업 취지와 달리 관세청이 수행하는 연례 행사가 되고 있으며, 공모전을 통한 관세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세청은 본 사업이 형식적인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과세이론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일부 공모 부문을 폐지·조정하는 단편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다수 참여자에게 소액을 분배하는 현행 포상 구조를 축소 및 정예화하여 우수작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실성 있게 상향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양질의 논문 제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198)]

아울러 단순히 연구성과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책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우수 논문을 선별하여 실제 관세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연구용역 연계 및 구체적인 정책 반영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199)]

198) 관세청은 향후 공모전 운영 시 수상작 수를 조정(정예화)하고 우수작 중심으로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심층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199) 관세청은 우수논문의 정책 반영 가능성에 대하여 관세평가 실무 부서·법령 담당 부서 및 외부 전문가 등

(6)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이동 및 자금세탁 범죄 등 차단 필요 (밀수단속, 조사국)

< 현 황 >

「밀수단속」은 불법·부정무역사범, 국외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반사회적 외환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불법 총기·마약류·불량 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국가경제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51억 8,500만원으로, 이용 증액 4,3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 52억 2,800만원 중 50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음.

「밀수단속」의 내역사업인 「밀수단속 업무지원」은 범칙사건 수사 관련 통·번역료, 범칙물품 감정·분석료 및 운반·폐기비용 등과 국내외 기업정보 조회 수수료, 압수창고 위탁관리 및 압수물품·차량 임차료,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밀수단속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9억 6,900만원으로, 이·전용 등으로 인한 1억 1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8억 6,800만원 중 17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으로 구성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법령 개정 필요 사항, 고시·훈령 정비 사항, 내부 업무처리 기준 보완 사항, 후속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분류 분야의 우수 논문 중 정책 활용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차기 HS 해설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작업 시 검토자료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임.

[2025회계연도 밀수단속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밀수단속(1331-300)	5,185	5,185	-	△121 164	-	5,228	5,090	-	138	5,078
- 밀수신고 포상금	506	506	-	164	-	670	666	-	4	824
- 사건 수사비	1,673	1,673	-	-	-	1,673	1,668	-	5	1,531
- 국외업무 여비	165	165	-	-	-	165	149	-	16	131
- 밀수단속업무지원	**1,969**	**1,969**	**-**	**△101**	**-**	**1,868**	**1,761**	**-**	**107**	**1,602**
- 지재권 보호활동	99	99	-	-	-	99	99	-	-	99
- 수사장비 도입	214	214	-	-	-	214	214	-	-	214
- 디지털무역범죄 수사지원	320	320	-	-	-	320	317	-	3	421
- 마약단속 국제공조 지원	119	119	-	-	-	119	119	-	-	136
- RILO AP운영	120	120	-	△20	-	100	98	-	2	120

< 검토의견 >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자금 이동 및 자금세탁 범죄를 차단하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구성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거래의 양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 단순한 외환 규제 우회를 넘어 신종 관세탈루와 국내 재산의 국외 이동·은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범죄의 성격이 심화되고 있음.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규모는 총 186건, 13조 7,368억원에 달하고 있음. 범죄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적발액이 10조 4,40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3자지급·해외예금 미신고 적발액이 1조 6,673억원이며, 가상자산 매매대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하여 송금하는 행위인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에 대한 적발액도 1조 5,494억원에 이르고 있음.

[가상자산 이용 범죄 단속실적(검찰송치+과태료부과)]

(단위: 건,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건수	20	17	5	1	2	45
	금액	8,880	5,933	472	50	159	15,494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건수	2	1	1	9	10	23
	금액	30	1	33	56	674	794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건수	10	12	19	10	16	67
	금액	8,238	47,566	14,454	10,575	23,574	104,407
은행 통하지 아니한 지급/3자지급/해외예금 미신고	건수	13	21	7	6	4	51
	금액	1,273	11,509	2,768	898	225	16,673
총합계	건수	45	51	32	26	32	186
	금액	18,421	65,009	17,727	11,579	24,632	137,368

자료: 관세청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이나 불법상계 및 제3자

지급 등 변칙적 거래 기법과 결합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사범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밀수출입, 수출입 가격조작 등 무역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외환 당국이 알 수 없도록 테더(USDT)를 이용하여 불법 지급한 사례[200] 등 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외환 규제를 회피하는 등 외환 시장의 교란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음.

[관세청 환치기 범죄 단속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환치기범죄 규모(A)	12,073	52,399	15,294	16,109	29,314	125,189
가상자산 관련(B)	8,238	47,566	14,454	10,575	23,574	104,407
비중(B/A)	68%	91%	95%	65%	80%	83%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자금의 이동 및 불법 환치기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국가범죄 척결 TF 구성 및 범죄자금 반출입 특별단속(2025년 11월)을 통해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해외 밀반출 및 환치기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 추적 라이선스 취득을 지원[201]하고 있음. 또한, 수사기관 등에 인력파견[202], 유관기관과 가상자산 범죄 수법 및 범죄자금 이동에 대한 정보교류 등 공동 대응[203]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 추적·분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범죄 진화 속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팀(4명)을 운영 중에 있음.

2026년 5월 가상자산이전업자에게 사전 등록 및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집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관세청에 공식적으로 공유될 예정임.

이처럼 관계당국이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조성된 만큼,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관세행정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단속 성과로 이끌어내야 하는 관세청의 실무적 역할과 책임이 부여됨. 그러나 현재 관세청의

200) 컴퓨터 부품업체 대표 B씨는 '22.12월부터 '24.3월까지 80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채굴기 1,304대를 수입하면서 관세포탈 목적으로 저가신고한 후 수입신고 금액 상당은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정상가격과 저가신고 차액 15억원 상당은 스테이블코인(USDT, 테더코인)을 판매자에게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법지급

201) 자격증 취득자: (2024년) 9명 → (2025년) 16명 → (2026년 5월 기준) 15명(총40명)

202) 동부지검 가상자산 합수단(1명),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 정부합동 TF(1명), FIU(9명)

203) 가상자산사업자(DAXA)와 범죄수법 정보교류,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2026년 2월), 금감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와 정보공유를 위한 MOU 체결(2026년 3월)

단속 체계는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넘겨받은 뒤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후적으로 추적하는 수동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으로 대규모로 유입될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를 적시에 분석하고 선제적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더욱이 현장 수사 역량과 관련하여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추적 전문 자격증 취득자가 총 40명에 달한다고 명시했으나, 자격 취득 인력마저도 순환보직으로 인해 타 부서로 분산되어 전문 수사 역량의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음. 현재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분석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이마저도 4명의 소수 인원이 일반 외환범죄분석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가상자산 수사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임. 현재 관세청의 조사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 자료를 넘겨받더라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입·수출 신고 내역과 대조해야 하는 사후 추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선제적 범죄 탐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임.

관세청 역시 수사팀의 개별 역량에 따라 추적 결과의 신뢰성 및 가상자산 범죄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고, 수사팀에서 진행 중인 사건 외에는 사전에 적극적인 범죄 탐지가 어려워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전담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가상자산 거래 추적·분석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범죄 진화 속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7년 서울세관에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추진 중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임.

[가상자산 자격증 취득자 근무 부서 현황(2026년 5월 기준)]

	외환조사	일반조사	마약조사	무역안보	체납관리	기 타
취득 시	28	9	2	-	1	-
현 재	25	7	2	1	1	4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실질적인 무역·외환 불법행위 단속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포렌식 심화 과정에 예산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외환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2026년 12월)에 맞춰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축적될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주기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한편,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역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변칙 외환거래까지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무역·외환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AI 위험관리 모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 고도화 필요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현 황 >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은 관세국경단계에서 사회안전, 국민건강 등을 위협하는 고위험 물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보수집, 정보분석, 위험선별 등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7억 4,100만원으로 7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의 내역사업인 「위험관리 모델개발」은 무역량의 증가로 수작업 중심의 선별만으로는 위험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우범화물·여행자 선별을 위하여 위험관리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5억원으로 4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1333-304)	741	741	-	-	-	741	724	-	17	671
- 위험정보 교류·협력	15	15	-	-	-	15	15	-	-	15
- 관세국경위험정보수집	214	214	-	-	-	214	205	-	9	144
-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12	12	-	-	-	12	12	-	-	12
- 위험관리 모델 개발	**500**	**500**	**-**	**-**	**-**	**500**	**493**	**-**	**7**	**500**

< 검토의견 >

관세청은 관세국경단계에서 고위험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AI 기반 위험관리 모델의 성능 하락 요인을 개선하고, XAI 등 신기술 반영 및 현장 환류 체계 구축을 통해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기존의 분산된 선별 기능으로는 고도화되는 국경 위험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 2월 위험정보를 총괄 수집·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조정·대응할 전담 부서로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신설하고 8개 업무 분야 30개 선별기능을 하나로 통합 운영함.[204)]

또한,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활성화로 인해 수입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우범 물품의 반입 시도가 급증하였으나, 이를 단속할 현장의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화물 검사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위험 및 범죄유형에 신속히 대응하고 검사대상 선별의 정확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머신러닝 등 AI 기술을 도입하여 수입·화물·여행자 등 주요 분야별 우범화물 선별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2018년 행정안전부 ICT 시범사업으로 일반수입 고위험 AI선별모델을 최초 개발한 이래, 2021년부터 관세청 소관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대상화물(2022년), 여행자(2023년), 개인수입(2024년), 목록통관·국제우편(2025년) 등 분야별 위험선별 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운영해 오고 있음.

[분야별 AI 기반 위험관리 모델 개요]

연도	분야	모델 개요
2021	일반수입	▪ (고위험선별모델) 수입신고정보, 적발 정보 등을 토대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우범화물 선별 ▪ (공급망분석모델) 수입자, 신고인, 화물운송 주선업자 등을 고려하여 우범화물 선별
2022	관리대상 화물	▪ (고위험선별모델) 적재화물목록 정보, 통관·조사 등 다양한 우범 정보를 활용한 우범성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검사대상 화물 선별 ▪ (공급망분석모델) 입항세관, 적출국가 등 관리대상 화물 공급망 패턴을 분석하여 선별

204) ① 선별기준 개발 및 운영, ② 위험정보 수집/분석 및 교환, ③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④ 통합위험관리시스템(IRM) 운영

연도	분야	모델 개요
2023	여행자	▪ (통합우범여행자모델) 여객명부, 승객예약자료, 과거 검사 결과 등 우범정보를 활용하여 우범여행자 선별 ▪ (마약우범여행자모델) 마약관련 우범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자 선별
2024	개인수입	▪ (고위험선별모델) 특송물품의 신고정보, 과거 검사·적발 정보 등 전자상거래 물품 위험요소를 학습하여 우범화물 선별 ▪ (마약선별모델) 마약류 적발 내역 등 마약에 특화된 선별 모델 ▪ (C2C선별모델) 개인판매자-수입자간 물품에 대한 위험선별 모델
2025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	▪ (고위험선별모델) 목록통관 신고정보 및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 등 학습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 (주소정제모델) 담당자의 정보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형적인 주소정보를 번역, 한국 주소체계로 변환하여 통일되고 정제된 주소 정보 제공

특히 관세청은 2025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급격한 증가(2021년 대비 110% 증가)와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수 적발 비중이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 분야에 특화된 AI 선별 모델 3종을 구축하였음. 해당 모델은 우범물품을 마약류, 총기류 등 고위험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 결과의 직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중 분류(Multi-Class)'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비정형 주소정보를 표준화하여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주소 정제 모델'을 도입하여 검사 효율성을 강화하였음.

[2025년 AI 선별모델 개발 내용]



자료: 관세청

해당 위험관리 모델 도입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패턴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수작업 기준 기반 전산선별(Rule-Base) 방식 대비 업무 분야별로 1.3배에서 2.8배 수준의 적발률 향상을 나타냄.

또한, 일반수입 화물 중 AI 모델을 통해 저위험으로 분류된 화물에 대해 자동수리제도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통관 심사 담당자가 고위험 화물 분석과 심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정하고 관세행정 전반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위험관리 모델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제고]

AS-IS (전산선별*)	TO-BE (AI선별)
▪ 적발 위험요소를 인지, 분석, 선별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 방대한 적발 데이터를 AI가 자동학습하고, 위험 패턴을 식별하여 위험 변화에 신속히 대응
▪ 전산선별의 적발률 저조로 심사자 신뢰도 저하	▪ AI선별은 전산선별에 비해 적발률이 높아 현장 검사자의 신뢰도 향상
▪ 사람이 정의한 위험 기준에 따라 고정되어 동작하므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새로운 패턴에 대응 한계	▪ 데이터 기반의 AI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적발 패턴을 학습하여 사전에 정의되지 않는 유사사례를 선별

* 전산선별(RuleBase) : 사람이 수작업으로 위험요소 등 기준을 정의하여 위험물품 선별에 적용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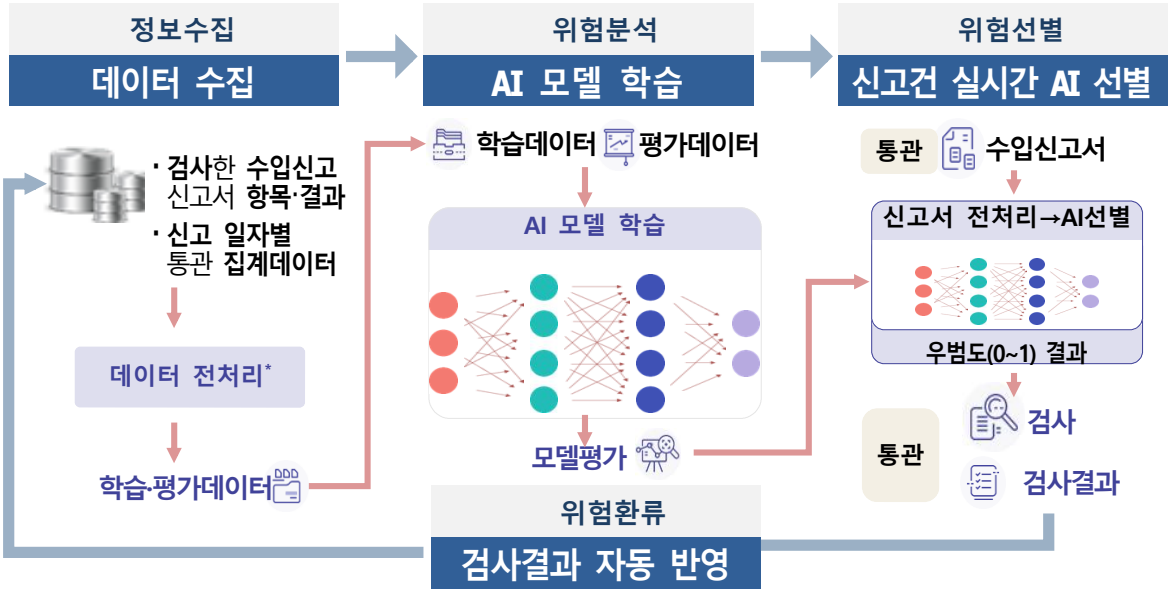
그런데, 기존에 구축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은 정보수집, 위험분석, 위험선별, 위험환류의 4단계 실시간 학습·선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운영됨. 먼저 검사가 완료된 수입신고서의 기본 정보와 공급망별 집계 데이터를 AI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처리[205]하여 수집하고, 이를 학습 및 평가 데이터로 분류하는데, 학습 데이터로 훈련된 AI 모델은 평가 데이터를 통해 핵심 적발 여부를 검증받아 최적의 결과물을 선별 모델로 채택하게 됨. 이후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수입신고서 건에 대해 AI 선별 모델이 우범성 여부를 판단하여 0에서 1 사이의 우범도 결과값에 따라 검사 대상을 지정하며, 현장 물품 검사를 통해 등록된 최종 결과는 다시 AI 선별 모델에 자동 반영되어 재학습되는 지속적인 환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환류 체계를 통해 AI 선별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학습의 정확도를 높여왔으나,

205) 데이터를 AI 모델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가공

변화하는 무역 환경과 고도화된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인공지능 학습·선별 프로세스]



자료: 관세청

실제로 관세청이 2025년에 실시한 'AI 모델의 성과 분석 및 고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는 기존(2021~2024년) AI 모델들에 대해 전면적인 고도화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해당 자료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취약점과 성능 하락의 원인은 다음과 같음. 첫째, 2021~2024년 구축된 모델의 다수가 적발과 미적발만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는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 학습 구조를 취하고 있어, 위해성이 높은 마약 밀수 적발과 단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사건이 동일한 수준의 위험 값(0~1 사이의 단순 우범도 확률)으로 처리됨에 따라 위험도별 우선순위 평가에 한계가 존재함.

둘째, 전국 세관의 적발 데이터 중 우범성과 물동량이 집중된 특정 세관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가 편향되어, 물품 성격과 통관 환경이 다른 여타 세관에도 동일한 선별 패턴이 적용됨에 따라 세관별 통관 특성에 맞춘 최적화가 원활하지 못함.

셋째, 알고리즘 내부 동작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장 담당자가 단순히 위험 여부 중심의 최종 결과만 제공받을 뿐, 해당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구체적인 원인과 위험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관세국경 단계에서의 선제적 위험 차단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위험관리 모델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XAI(설명가능 인공지능)[206] 등 신기술을 반영하여 AI 기반 선별모델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같은 연구용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우선, 과거의 적발 사례나 특정 세관에만 데이터가 편중되어 선별 정확도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수집되는 데이터가 전국 세관의 특성을 골고루 대변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점검하고, 데이터 항목별 중요도와 세관별 예측 성능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함. 아울러 기존의 범죄 수법과 다른 신종 적발 사례나 AI 모델이 걸러내지 못한 미적발 사례들을 별도로 수집하여 학습 과정에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 적발과 미적발로만 구분되어 실제 위험 수준을 구분하지 못했던 예측 구조를 개선해야 함.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서 평가한 검사 점수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단계별로 반영하여 선별 기준을 점수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마약·총기류 등 위험 유형별로 세분화된 예측이 가능하도록 2025년 목록통관 모델에 도입된 '다중 분류(Multi-Class)' 체계를 2021~2024년에 구축된 타 분야 모델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선별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내부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XAI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내부 선별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알고리즘 모델들에 대해 '기준 단가 대비 저가 신고', '과거 유사 위반 이력' 등 구체적인 선별 사유를 현장 검사관에게 시각화하여 제공할 경우 현장 담당자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하고, AI 선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관세청은 개발 이후의 발전된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성능과 효능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위험관리 모델에 대해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XAI 등 신기술을 반영하여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6) XAI(e**X**plainable **AI**)는 AI 모델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8) 사전 성능검증의 한계로 인한 열화상카메라 도입예산 전액 불용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정보데이터정책관)

< 현 황 >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컨테이너 화물을 X-Ray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교체하고, 공항만에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약폭발물탐지기, X-Ray검색기 등 첨단과학검색 장비 도입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5년 예산액은 156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5,200만원과 이용 감액 9,900만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157억 1,900만원이며, 이 중 14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관감시장비 현대화 (1443-300)	15,666	15,666	152	△99	-	15,719	14,780	429	510	19,287

< 검토의견 >

열화상카메라 도입(15대) 예산 3억 3,000만원은 예산 편성 전 성능검증을 거쳤음에도 실제 도입 전 추가 성능검증 결과 기대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불용되었는바, 향후에는 사전 성능검증의 정확성을 높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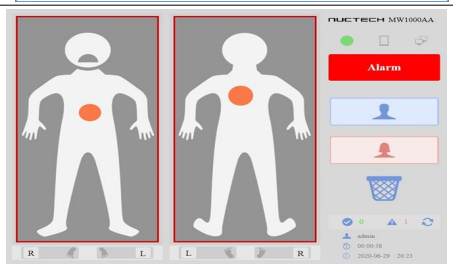
해외 입국 여행자가 마약류를 신체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관세청은 마약 적발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열화상카메라 신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2023년 11월 기본 성능테스트와 현장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총 15대[207]의 장비 도입 예산을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음.

그러나 실제 도입에 앞서 2025년 4월 두 차례의 추가 성능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판 중인 대부분의 열화상카메라는 신체 은닉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외투를 착용하거나 소량의 물품을 은닉한 경우에는 단시간 내 식별이 어렵고, 일정 시간 경과 시 체온이 은닉 물품으로 전달되어 음영의 차이가 감소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인체의 전면만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제약도 확인되었음.

또한 성능검증 이후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의 추가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관세청은 열화상카메라 대신 보다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음.

207) (공항 11대) 인천4, 김해1, 김포1, 청주1, 무안1, 대구1, 제주1, 양양1,
(항만 4대) 부산1, 인천1, 평택1, 군산1

<밀리미터파의 기술적 특징>

사진		① 의복 등 신변에 숨겨진 물체(금속,비금속,액체 등) 정확히 탐지 ② 손을 내린 자세로 통과 시 2초 이내 전신 스캔 완료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포괄적인 이미지로 표시 ④ 능동형인 밀리미터파 이미징 기술, 방출되는 이온화
검색 이미지		

자료: 관세청

현장에서 활용성이 낮은 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성능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도입을 중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 보다 충분하고 면밀한 성능검증이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액 불용하는 사례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관세청은 향후 신규 감시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성, 활용성 및 성능에 대한 사전 검증을 보다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9)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이 미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청사시설관리, 기획조정관)

< 현 황 >

「청사시설관리」는 세관 청사관리, 시설개선 및 청·관사 임차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11억 9,400만원으로 이·전용액 8억 6,0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03억 3,400만원 중 100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청사시설관리」의 내역사업인 「관세박물관 건축」은 기존 관세박물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진 부산세관 옛청사를 복원하여 관세청과 무역의 역사를 전시·홍보하고 국민 개방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 9억원에서 전용을 통해 3,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 9억 3,300만원 중 8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8,9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5회계연도 청사시설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사시설관리(7132-440)	11,194	11,194	-	33 △893	-	10,334	10,093	89	152	19,109
- 세관 청사관리	1,023	1,023	-	△100	-	923	910	-	13	1,023
- 세관 시설개선	7,504	7,504	-	△600	-	6,905	6,770	-	135	7,504
- 청·관사 임차	664	664	-	-	-	664	664	-	-	664
- 보육시설 운영	1,103	1,103	-	△193	-	910	906	-	4	918
- 관세박물관 건축	**900**	**900**	**-**	**33**	**-**	**933**	**844**	**89**	**-**	**9,000**

< 검토의견 >

관세청은 관세박물관 건축을 위한 예산 편성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대한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후 자체전용을 통해 충당하였는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청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 및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주고 관세청과 무역입국으로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 시설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부산세관 옛 청사를 복원하는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159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음.

[관세박물관 예상 조감도]



[관세박물관 건축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관세박물관 건축	공사비	-	8,100	6,000	14,100
	기본조사설계비	336	-	-	336
	실시설계비	564			564
	감리비	-	900	-	900
	합 계	**900**	**9,000**	**6,000**	**15,900**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관세박물관 건축을 위해 2025년도 사업비로 기본조사설계비(3억 3,600만원) 및 실시설계비(5억 6,400만원)로 총 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대한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모든 공공건축물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을 수립하는 건축기획을 실시하여야 함.[208]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209]이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

20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건축 사업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가 완료된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인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210]에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211]의 심의를 받아야 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조성 절차]

구분(절차)	건축기획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조건	모든공공건축물	설계비 1억원 이상	설계비 0.5억원 이상	설계비 1억원 이상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제22조의2제4항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21조
수행주체	발주기관 (공공기관)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발주기관)	발주기관 (공공기관)

자료: 관세청

그런데, 관세청은 2024년 9월 공공건축지원센터(건축공간연구원)에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신청한 후 해당 과정에서 건축기획 절차의 이행 필요성을 인지하여 같은 해 12월 4일에 건축기획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2월 13일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로부터 공공건축 심의 결과를 최종 통보받아 조치사항 등을 사업에 반영한 후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음.

---

2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③ 법 제22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이 건축기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1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다만, 지역건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두는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 어린이집의 운영 종료(2025.2.28.)에 따라 불용이 예정되어 있던 「청사시설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시설 운영」의 일반용역비 중 3,3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자체전용(2025년 2월 25일)하여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였음.

[청사시설관리 사업 자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2.25.)	청사시설관리 (7132-440)	일반용역비 (210-14)	33	청사시설관리 (7132-440)	일반연구비 (260-01)	일반연구비 부족분 충당

자료: 관세청

이와 같이 관세청은 관세박물관 건축 사업 예산 편성 시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대한 절차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건축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후 자체전용을 통해 충당하였으므로, 향후 사업 예산 편성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 소관

가.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입예산 수납액은 7,730억 1,600만원으로 예산액 7,376억 9,800만원 대비 4.8%인 353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손익계정은 내자구매사업수입이 74억 4,100만원, 외자구매사업수입이 6억 2,700만원, 비축물자사업수입이 90억 8,100만원, 관유물대여료 2억 1,300만원 과소 수납된 반면, 시설공사사업 26억 9,600만원, 잡수익 등이 365억 9,1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148억 6,1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자본계정은 경상이전수입 1,300만원, 관유물 매각대 2,900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나, 전년도세계잉여금이 48억 9,900만원 과소 수납되었음.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입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차 이 (C-A)	비 율 (C-A)/A	미수납액 (B-C)
사업수입	301,217	350,007	286,764	△14,453	△4.8	63,243
▪ 내자구매사업	232,211	273,379	224,770	△7,441	△3.2	48,609
▪ 외자구매사업	5,058	4,844	4,431	△627	△12.4	413
▪ 시설공사사업	52,869	61,650	55,565	2,696	5.1	6,085
▪ 비축물자사업	11,079	10,134	1,998	△9,081	△82.0	8,136
관유물대여료	3,023	2,908	2,810	△213	△7.1	98
잡수입 등	62,145	100,335	98,736	36,591	58.9	1,599
전년도이월금	-	434	434	434	-	-
전년도세계잉여금	93,087	107,948	107,948	14,861	16.0	-
손익계정 계	**459,472**	**561,633**	**496,693**	**37,220**	**8.1**	**64,940**
경상이전수입	-	13	13	13	-	-
관유물매각대	-	29	29	29	-	-
전년도이월금	-	2,955	2,955	2,955	-	-
전년도세계잉여금	5,208	308	308	△4,899	△37.3	-
기금전입금	322	322	322	-	-	-
계정간전입금	263,996	263,996	263,996	-	-	-
기타전입금	8,700	8,700	8,700	-	-	-
자본계정 계	**278,226**	**276,323**	**276,323**	**△1,902**	**△0.7**	-
총 계	**737,698**	**837,956**	**773,016**	**35,318**	**4.8**	**64,940**
순 계	**473,702**	**573,960**	**509,020**	**35,318**	**7.5**	**64,940**

주: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2) 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조달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410억 8,800만원으로 예산액 7,376억 9,800만원 대비 0.4%인 3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25회계연도 지출액은 7,273억 7,900만원으로 예산대비 98.6%, 예산현액대비 98.2%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4억 5,0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조달청 소관 세출 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 현액 (B)	지출액 (C)	예산액 대비 (C/A)	예산현액 대비 (C/B)	다음연도 이월액 (D)	불용액 (B-C-D)
인 건 비	87,431	87,387	85,462	97.7	97.8	-	1,924
기본경비	13,423	13,467	12,979	96.7	96.4	32	455
주요사업비	80,440	80,874	76,766	95.4	94.9	796	3,312
건강보험부담금	3,364	3,364	3,177	94.5	94.5	-	187
연금부담금	10,818	10,818	10,418	96.3	96.3	-	400
타계정전출금	263,996	263,996	263,996	100.0	100.0	-	-
손익계정 계	**459,472**	**459,906**	**452,799**	**98.5**	**98.5**	**828**	**6,279**
자산취득 및 시설비	59,581	62,537	60,952	102.3	97.5	431	1,153
기본경비(자본)	929	929	927	99.8	99.8	-	2
일반회계전출금	137,716	137,716	132,700	97.7	96.4	-	5,016
전 출 금 등	80,000	80,000	80,000	100.0	100.0	-	-
자본계정 계	**278,226**	**281,182**	**274,579**	**98.7**	**97.7**	**431**	**6,171**
총 계	**737,698**	**741,088**	**727,379**	**98.6**	**98.2**	**1,259**	**12,450**
순 계	**473,702**	**477,092**	**463,383**	**97.8**	**97.1**	**1,259**	**12,450**

주 : 순계는 총계금액에서 손익계정(세출) 타계정전출금에서 자본계정(세입) 타계정전입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조달청

한편, 조달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456억 3,700만원이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이입되었음.

(3)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			2026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636,609**	**912,531**	**737,698**	**773,016**	**104.8**	**788,225**
손익계정	**472,845**	**553,917**	**459,472**	**496,692**	**108.1**	**500,692**
45 조달사업수입	**291,124**	**304,047**	**301,217**	**286,764**	**95.2**	**311,199**
내자구매사업수입 (45-451)	226,757	231,417	232,211	224,770	96.8	236,277
외자구매사업수입 (45-452)	4,439	5,408	5,058	4,431	87.6	5,782
시설계약사업수입 (45-454)	45,355	55,189	52,869	55,565	105.1	58,680
비축물자사업수입 (45-456)	14,573	12,032	11,079	1,998	18.0	10,460
51 관유물대여료	**2,970**	**2,751**	**3,023**	**2,810**	**93.0**	**2,907**
토지대여료 (51-511)	581	610	689	590	85.6	672
건물대여료 (51-512)	2,374	2,129	2,318	2,206	95.2	2,219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15	12	16	14	87.5	16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1**	**24**	**-**	**51**	**-**	**12**
기타재산수입 (54-546)	21	24	-	51	-	12
56 과징금	**2,696**	**2,003**	**1,248**	**1,216**	**97.4**	**1,921**
과징금 (56-565)	2,696	2,003	1,248	1,216	97.4	1,921
57 변상금및위약금	**1,588**	**2,837**	**1,800**	**5,110**	**283.9**	**2,300**
위약금 (57-572)	1,588	2,837	1,800	5,110	283.9	2,30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90**	**26**	**-**	**850**	**-**	**4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90	26	-	850	-	40
69 잡수입	**96,116**	**110,358**	**59,097**	**91,508**	**154.8**	**79,26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	717	562	730	534	73.2	730
기타잡수입 (69-691)	6,810	6,489	6,533	5,970	91.4	6,533

구 분	2023결산	2024결산	2025			2026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기타영업외잡수익 (69-697)	88,590	103,307	51,834	85,004	164.0	71,998
88 전년도이월금	-	-	-	435	-	-
전년도이월금 (88-881)	-	-	-	435	-	-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78,238	131,871	93,087	107,948	116.0	103,052
전년도세계잉여금 (88-893)	78,238	131,871	93,087	107,948	116.0	103,052
자본계정	163,764	358,614	278,226	276,324	99.3	287,533
59 기타경상이전수입	-	150	-	13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150	-	13	-	-
71 고정자산매각대	23	4	-	29	-	-
건물매각대 (71-711)	-	-	-	29	-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713)	23	4	-	-	-	-
88 전년도이월금	-	-	-	2,955	-	-
전년도이월금 (88-881)	-	-	-	2,955	-	-
89 전년도세계잉여금	17,558	10,644	5,208	309	5.9	183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17,558	10,644	5,208	309	5.9	183
91 전입금	146,183	347,817	273,018	273,018	100.0	287,350
기금전입금(91-913)	169	92	322	322	100.0	-
계정간전입금(91-915)	146,014	260,425	263,996	263,996	100.0	287,350
기타전입금(91-916)	-	87,300	8,700	8,700	100.0	-

자료: 조달청

나)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총 계	494,094	800,884	737,698	727,378	98.6	788,225
손익계정	340,975	445,534	459,472	452,799	98.5	500,692
1100 전자조달 및 국유재산 관리	65,244	47,601	39,991	38,874	97.2	46,310
1131 전자조달 운영 및 개발	63,565	45,937	38,224	37,199	97.3	44,426
조달정보화(정보화) (1131-501)	26,492	26,299	18,592	18,608	100.1	19,859
전자조달 운영지원 (1131-504)	4,035	4,521	5,196	5,149	99.1	5,713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 (정보화) (1131-505)	33,038	15,117	14,436	13,442	93.1	18,854
1132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679	1,664	1,767	1,675	94.8	1,884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1132-331)	1,679	1,664	1,767	1,675	94.8	1,884
1200 조달사업 운영	18,008	20,319	29,528	27,660	93.7	38,341
1233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2,678	3,984	7,149	6,650	93.0	9,729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1233-331)	2,494	3,440	4,505	4,252	94.4	5,195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33-332)	184	544	2644	2,398	90.7	4,534
1235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11,785	12,699	19,372	18,087	93.4	25,253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235-334)	8,885	9,388	15,007	13,793	91.9	15,625
조달물자 품질검사 및 관리 (1235-335)	1,368	1,311	1,397	1,326	94.9	1,628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235-338)	1,532	2,000	2,968	2,968	100.0	8,000
1236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3,545	3,636	3,007	2,923	97.2	3,359
공사 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	3,545	3,636	3,007	2,923	97.2	3,359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7100 조달행정지원	101,428	107,262	115,139	111,851	97.1	118,225
7101 인건비	78,582	82,572	87,431	85,462	97.7	89,672
기관운영 인건비 (7101-101)	78,582	82,572	87,431	85,462	97.7	89,672
7111 기본경비	11,746	12,492	13,423	12,980	96.7	13,73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1)	4,070	3,938	4,184	4,124	98.6	4,252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7,676	8,554	9,239	8,856	95.9	9,487
7131 공공조달 정책개발 및 효율화	1,022	1,060	1,235	1,172	94.9	1,362
정책개발 및 조달업무 홍보 (7131-352)	1,022	1,060	1,235	1,172	94.9	1,362
7132 조달행정 역량강화	5,669	6,544	7,349	6,892	93.8	7,940
조달행정 역량강화 (7132-366)	5,669	6,544	7,349	6,892	93.8	7,940
7134 조달전문교육 운영	1,461	1,502	2,337	2,168	92.8	1,946
조달전문교육 운영 (7134-371)	1,210	1,245	1,984	1,821	91.8	1,587
조달전문교육 수입대체경비 (7134-650)	251	257	353	347	98.3	359
7135 법정부담금	2,948	3,092	3,364	3,177	94.4	3,566
건강보험부담금 (7135-381)	2,948	3,092	3,364	3,177	94.4	3,566
8200 계정간거래	146,014	260,425	263,996	263,996	100.0	287,530
8201 타계정 전출금	146,014	260,425	263,996	263,996	100.0	287,530
손익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8201-821)	146,014	260,425	263,996	263,996	100.0	287,530
8400 회계기금간 거래	10,279	9,927	10,818	10,418	96.3	10,466
8411 공무원 연금부담금	10,279	9,927	10,818	10,418	96.3	10,466
공무원 연금부담금 (8411-881)	10,279	9,927	10,818	10,418	96.3	10,466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A)	결산(B)	집행률 (B/A)	
자본계정 소계	153,120	355,350	278,226	274,579	98.7	287,533
1200 조달사업 운영	48,886	54,760	49,706	49,391	99.4	82,706
1237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48,886	54,760	49,706	49,391	99.4	82,706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48,886	54,760	49,706	49,391	99.4	82,706
7100 조달행정지원	6,877	16,790	10,804	12,488	115.6	10,553
7116 기본경비(자본)	1,071	990	929	927	99.8	964
자본계정 기본경비 (7116-291)	1,071	990	929	927	99.8	964
7161 전산장비 운영	1,150	1,150	1,150	1,150	100.0	1,150
전산운영경비 (7161-431)	1,150	1,150	1,150	1,150	100.0	1,150
7162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4,656	14,650	8,725	10,411	119.3	8,439
청관사개보수 및 임차 (7162-441)	2,102	2,216	4,790	4,469	93.3	4,961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창고 신축 (7162-509)	2,554	12,434	3,458	5,666	163.9	-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7162-510)	-	-	477	276	57.9	3,072
조달인프라 구축(7162-520)	-	-	-	-	-	406
8000 회계간거래	47,357	213,800	137,716	132,700	96.4	114,274
8001 일반회계 전출금	47,357	213,800	137,716	132,700	96.4	114,271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8001-801)	47,357	213,800	137,716	132,700	96.4	114,274
9700 여유자금운용	50,000	70,000	80,000	80,000	100.0	80,000
9701 기타여유자금운용	50,000	70,000	80,000	80,000	100.0	80,000
회전자금전출금 (9701-971)	50,000	70,000	80,000	80,000	100.0	80,000

자료: 조달청

나. 검토의견

(1) 예산액 편성의 정확성 제고 및 장기 미수납액 해소 필요 (시설계약사업수입, 시설사업국)

< 현 황 >

「시설계약사업수입」은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서비스,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검토, 공사원가사전검토에 따른 수수료 수입임. 2025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28억 6,900만원으로, 616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55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60억 8,4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5회계연도 시설계약사업수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5								2026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시설계약사업수입 (45-454)	52,869	52,869	-	52,869	61,650	55,565	6,084	-	58,680

< 검토의견 >

첫째, 매년 징수결정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커지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예산액 산정이 필요함.

「시설계약사업수입」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최대 50%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결산내역(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등)]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과 동일) (A)	징수결정액 (B)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 (B/A*100, %)	수납액
2022	38,917	46,321	119.0	43,023
2023	39,306	49,752	126.6	45,355
2024	40,686	61,033	150.0	55,189
2025	52,869	61,650	116.6	55,565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예산액 편성근거를 보면 사업규모[212]와 평균수익률을 통해 계산된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고, 2025년 예산액인 528억 6,900만원 편성에 대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세입예산안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본예산 52,869	▪ 사업규모 × 평균수익률(%) ① 공사계약 : ㉠ + ㉡ + ㉢ = 21,737 ㉠ 기존 물량 15,465,800 × 0.121% = 18,714 ㉡ LH 이관 물량 : 1,734,100 × 0.121% × 80% = 1,679 ㉢ 기술형입찰 유찰 수의계약 대행 : 1,111,400 × 0.121% = 1,344 ② 맞춤형서비스 : 2,200,000 × 0.497% = 10,934 ③ 총사업비검토 : 9,000,000 × 0.042% = 3,780 ④ 공사원가 사전검토 : 2,000,000 × 0.033% = 660 ⑤ 설계적정성검토 : 12,700,000 × 0.036% = 4,572 ⑥ 기술용역계약 : ㉠ + ㉡ = 11,186 ㉠ 기존 물량 985,200 × 0.743% = 7,320 ㉡ LH 이관 물량 : 650,400 × 0.743% × 80% = 3,866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공통요구자료 Ⅱ-1)

조달청에서는 수 년간 추진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연도별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연도별 금액의 불규칙한 증감이나 특정 대규모사업의 발생 등으로 인해 당초 예측한 사업규모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2025년부터 사업규모 시 사업분야를 세분화[213]하고 특이소요 및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적극 반영하

212) 기본적으로 최근 3년 사업실적 평균값 적용

213) ① 공사계약과 ⑥ 기술용역계약에 대한 금액산출 시 사업분야를 ㉠ 기존 공사계약, ㉡ LH 이관 계약,

는 등의 산정방식 변경을 통해 2025년 예산액을 전년 대비 30% 증액하고 징수결정액과의 괴리를 개선했다고 밝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이에 대해 과거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손익계정으로부터 자본계정으로의 전출금, 조달청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또한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음.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징수액 오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각 사업별 특성, 특이소요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는 등 보다 정교한 예산액 편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요기관 장기 미수납액에 대한 해소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설계약사업수입의 2025년 미수납액은 60억 8,400만원으로 2024년 미수납액 58억 4,400만원보다 약 4.1% 증가하는 등 미수납액이 2022년부터 연평균 22.6% 증가해왔음.

[최근 4년간 결산내역(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등)]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과 동일)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2	38,917	46,321	43,023	110.6	92.9	3,298
2023	39,306	49,752	45,355	115.4	91.2	4,397
2024	40,686	61,033	55,189	135.6	90.4	5,844
2025	52,869	61,650	55,565	105.1	90.1	6,084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공통요구자료 Ⅱ-1)

미수납액 발생사유는 납기미도래 외에 수요기관의 예산부족 때문이며 발생사유별 미수납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기술형입찰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춘 사업규모 및 평균수익률 적용

[연도별 시설계약사업수입의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따른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미수납액 (A+B)	납기미도래 (A)	수요기관의 예산부족(B)		
				당해연도 고지	미납기간 1년 초과
2022	3,298	2,031	1,267	1,198	69
2023	4,397	2,176	2,194	1,574	647
2024	5,844	2,988	2,855	1,359	1,496
2025	6,084	2,782	3,302	1,190	2,112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중 미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억 1,200만원이 수요기관 예산부족을 이유로 1년 넘게 미납되고 있음.

예산부족으로 수수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해 다음과 같음.

[수요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수수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기관(기관별 미수납액)
2022년	1,2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6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262), 대법원(82), 부산항건설사무소(76), 조선대학병원(59), 목포지방해양수산청(49), 포항지방해양수산청(20), 대구 수성구(16), 국립과학수사연구원(16), 경찰수사연수원(10), 부산건설본부(8), 원주지방국토관리청(7), 마산지방해양수산청(7), 정읍시(5), 포천시(5) 등 총 23개 기관
2023년	2,220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267),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458), 문화체육관광부(94), 법무부(80),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71),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6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8),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36), 국방시설본부(17),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14), 국토교통부(12), 전라남도(10) 등 총 29개 기관
2024년	2,855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620),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471),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159), 문화체육관광부(112),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86),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73),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52), 한국농업기술진흥원(41),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39), 해양수산부(29),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22), 광주광역시교육청(21),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1) 등 총 27개 기관

구분	미수납액	미수납 발생기관(기관별 미수납액)
2025년	3,302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1,846),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703), 국방시설본부(142),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10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73), 경찰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64),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55),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44), 한국농업기술진흥원(41),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27),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수산청(24),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19) 등 총 40개 기관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조달청에서는 장기 미납 수요기관에 대한 분기별 납부 촉구 및 별도 공문을 통한 납부 촉구, 납부계획서 추가 제출 요구 등과 함께, 미납액이 많은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214] 납부방안을 협의하는 등 장기 미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수요기관 장기 미납액을 해결하기 위한 조달청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장기 미납액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및 국토교통부의 납부계획서 회신 등을 통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는 조달청의 조달수수료 산정 방식과 시설부대비 예산의 편성 방식의 차이로 인한 예산 부족이 납부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시설부대비 예산 산정은 공사비에 일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조달수수료 요율표는 계약금액의 일정 금액 구간별로 요율을 적용하는 초과분 체감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정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이고,[215]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시설부대비 산정은 전체 공사규모에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조달수수료는 차수계약 각각의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장기계속공사가 많은 국토교통부의 경우 조달수수료 요율보다 시설부대비 예산이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시설부대비 예산 편성 및 조달수수료 산정 체계 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조달수수료 요율체계 검토를 고려하고 장기미납 수요기관의 예산 배정 및 조정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는 등 장기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14) 2024년과 2026년

215) 조달수수료(누진율): (~10억)×0.4% + (10~50억)×0.3% + (50~100억)×0.15% + (100~500억)×0.07% + (500억~) × 0.06%…
기재부(단일): (200~1,000억) 0.23% / (1,000~2,000억) 0.21% / (2,000~3,000억) 0.19%

[시설부대경비 요율표(건설부문)]

(단위: %)

구분 / 공사비	시설부대비
5천만원까지	1.08
1억원까지	0.90
2억원까지	0.72
3억원까지	0.72
5억원까지	0.72
10억원까지	0.63
20억원까지	0.36
30억원까지	0.36
50억원까지	0.27
100억원까지	0.25
200억원까지	0.23
300억원까지	0.23
500억원까지	0.23
1,000억원까지	0.23
2,000억원까지	0.21
3,000억원까지	0.19
5,000억원까지	0.17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초과분 체감적용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작성)
공사 계약	계약 금액	10억원까지	0.4	0.35	0.3	0.2	0.3	0.25	0.2	0.1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3	0.25	0.2	0.1	0.15	0.12	0.1	0.05	4. C Type: 비PQ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5	0.12	0.1	0.05	0.07	0.06	0.05	0.02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검토가격 미작성)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07	0.06	0.05	0.02	0.04	0.03	0.02	0.01	
		500억원 초과	0.06	0.05	0.045	0.015	0.035	0.025	0.015	0.01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2) 면밀한 예산수요 파악에 따른 예산편성 및 예산조정 필요 (조달정보화(정보화), 디지털공정조달국)

< 현 황 >

「조달정보화(정보화)」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핵심 업무의 직접운영, 조달정보시스템의 전문업체 위탁운영, 나라장터와 조달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 조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8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 2억 800만원과 전용(증)한 1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9억 3,000만원에서 186억 800만원을 집행하여 3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내역사업인 「전산장비 운영유지」는 나라장터와 조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회선비 등 공공요금, 정보화교육, 전산소모품 구매,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국내 여비 등 전산장비를 운영 유지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46억 5,400만원으로, 1억 3,000만원을 전용(증)한 예산현액 47억 8,400만원 중 4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조달정보화(정보화)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달정보화(정보화) 사업 (1131-501)	18,592	18,592	208	130	-	18,930	18,608	-	322	19,859
- 전산장비 운영유지	**4,654**	**4,654**	**-**	**130**	**-**	**4,784**	**4,655**	**-**	**129**	**4,518**
- 나라장터 직접 운영	1,102	1,102	-	-	-	1,102	1,102	-	-	1,228
- 시스템운영위탁 사업	11,193	11,193	-	-	-	11,193	11,051	-	142	10,923
- 시스템 구축 사업	1,643	1,643	208	-	-	1,851	1,800	-	51	3,190

< 검토의견 >

예산수요에 부합하는 예산편성과 예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근거에 따라 필요 예산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전산장비 운영유지」 내역사업에서는 2025년 8월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같은 내역사업의 임차료 예산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을 세목조정하였음. 이후 2025년 9월에는 세목조정으로 예산을 감액한 임차료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사업코드 1131-505)으로부터 임차료 예산 1억 3,000만원을 내역변경받아 증액하였음.

예산을 조정변경한 공공요금과 임차료의 2025년 불용액을 보면 세목조정으로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공공요금 예산의 불용액이 6,400만원이고, 내역변경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임차료 예산의 불용액이 5,900만원으로, 세목조정 등을 통해 증액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용되는 등 정확한 수요 파악 및 금액 산정을 통한 예산조정과 집행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2025회계연도 조달정보화(정보화)사업 세목조정 및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 8. 13.)	조달정보화 (1131-501)	210-07	125	조달정보화 (1131-501)	210-02	나라장터 알림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내역변경 ('25. 9. 30.)	차세대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구축 (1131-505)	210-07	130	조달정보화 (1131-501)	210-07	나라장터 서비스 복구를 위한 전산장비 긴급 구매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공통요구자료 Ⅱ-1)

[2025회계연도 전산장비 운영유지 공공요금 및 임차료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전산장비 운영유지	4,654	4,654	-	130	-	4,784	4,655	-	129	4,51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120	1,120	-	125	-	1,245	1,181	-	64	1,120
- 임차료 (210-07)	3,431	3,431	-	△125 130	-	3,436	3,377	-	59	3,295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 공통요구자료 Ⅱ-1)

우선 공공요금, 임차료 등의 예산조정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당초 임차료를 공공요금으로 세목조정한 이유로 2025년 3월 차세대 나라장터의 개통 이후 알림서비스 범위의 확대, 알림매체 다양화를 위한 유료 알림톡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후 임차료 예산을 내역변경을 통해 다시 증액한 것은 2025년 9월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하면서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구매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함.

하지만, 당초 공공요금 예산이 차세대 나라장터의 신규 구축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보다 과소 편성되면서 예산조정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조정 후에도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함.

2025년 3월에 최종 개통된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알림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체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면서 알림서비스를 위한 공공요금 예산 소요가 증가하였는데 2025년 예산편성 시 해당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음[216]. 실제 수요보다 부족한 예산편성에 따라 2025년 1월 차세대 나라장터의 가개통 이후 월별 알림서비스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같은 해 7월 기준 누적 집행액이 1억 4,200만원으로 이미 예산액을 초과함.

216) 공공요금(220-02) 예산 중 'CRM 단문 메시지(SMS)' 예산 132백만원 (2024, 2025, 2026년 동일)

[나라장터 신구 시스템 간 알림서비스 비교]

구 분	(구) 나라장터	차세대 나라장터
알림범위 확대	알림서비스 수 120여종	알림서비스 수 500여종[217]
알림매체 변경	나라장터 앱(무료)	알림톡(유료), 모바일앱(무료), e메일(무료) 중 선택 (복수 선택 가능)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알림서비스 비용 연도별·월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예산	집행액
2024년	3	2	2	3	7	7	132	7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	7	7	18	8	7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32	299
	11	10	21	18	17	1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6	43	32	36	17	29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	132	94
	23	18	17	15	21	-		

* 차세대 나라장터 가개통(1.6)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3.31.)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조달청은 2024년에 편성작업이 진행된 2025년 예산에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2025년 3월에 정식 개통이 이루어진 차세대 나라장터의 최초 개통 목표 시기가 2024년 7월이었음을 감안했을 때[218] 알림서비스의 유료매체 변경 및 알림범위 확대라는 개발 방향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의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수요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함. 이후 2025년에 편성된 2026년 공공요금 예산에도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이 배정되는 등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확한 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공요금 예산의 집행잔액은 6,400만원으로, 공공요금 부족분 발생으로 증액한 1억 2,500만원의 약 51%에 이르고 있어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하게 조정액을 산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217) (예) [입찰심사]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알림, 적격심사 신청서 접수 알림 등
[쇼핑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알림, 2단계경쟁 제안요청 알림 등
[조달품질 검사검수] 납품검사 민원시험 의뢰, 납품검사 검사요청 반려 등

218)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의 계약기간(총차 계약기간): (최초) 2021.6.23.-2024.6.22. → (최종) 2021.6.23.-2025.2.20.

다음으로 임차료 예산의 조정과 관련하여,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 임차료 예산을 조정(감)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증액한 후 임차료 예산에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임차료 예산을 내역변경(증)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조달청의 설명에 따르면 임차료 예산의 내역 변경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에 따른 긴급 복구장비 구매를 위한 것으로 예측불가능한 국가적 사고 발생으로 인한 비상대응 차원에서 임차료 예산을 조정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하지만 긴급 복구를 위한 임차료 예산의 1억 3,000만원 증액 후 최종 임차료 예산 불용액이 6,000만원 발생한 만큼 공공요금 예산조정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한 면밀한 예산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조달청에 따르면 기계약된 리스사업의 집행잔액 및 2025년말 계약된 신규 리스사업의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임차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임.

[2025년도 임차료 예산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이유
조달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운영환경 개선 사업	'20년	449		449	449	-	
	'21년	428		428	424	4	예산편성 당시보다 저금리로 수정계약
	'22년	404		404	402	2	예산편성 당시보다 저금리로 수정계약
	'23년	336		336	336	-	
	'24년	624	△125	499	488	11	본사업 리스계약 체결전에 전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액 차이 발생
	'25년	146		146	138	8	낙찰차액
2025년 국정자원 화재 긴급 교체		-	130	130	125	5	
소계		2,387	5	2,392	2,362	30	
정보보안 강화 사업	'20년	103		103	103	-	
	'21년	267		267	256	11	예산편성 당시보다 저금리로 계약체결
	'22년	278		278	275	3	
	'23년	173		173	173	-	
	'24년	176	△4	172	156	16	예산편성 당시보다 저금리로 계약체결
	'25년	47	4	51	51	-	집행잔액 사용
소계		1,044	0	1,044	1,014	30	
합계		3,431	5	3,436	3,376	60	

자료: 조달청 제출 자료

임차료 예산의 내내역사업별 불용이유를 보면 낙찰차액 발생, 전년도 기준 예산편성 또는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2025년도말 계약 체결 시점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액 외에는 불용액의 발생 여부 및 규모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2025년 9월 임차료 증액 시 예상되는 임차료 예산불용액을 감안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조정했을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처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개통 연기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임차료 등의 예산편성, 예산조정과 관련하여, 당초 필요한 예산의 편성 부족, 이에 따른 예산조정 후 불용액의 발생 등으로 정확한 예산수요 산정 및 조정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조달청은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과 조정, 집행이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업의 유사·중복성 및 효과성 저조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등(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기획조정관)

< 현 황 >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은 해외조달기관·국제기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을 해외에 확산·보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45억 500만원, 집행액은 42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5,300만원임.

이 중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공조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G-PASS 제도 운영, 수출전략기업 육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은 2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3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고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5회계연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1233-331)	4,505	4,505	-	-	-	4,505	4,252	-	253	5,195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해외확산	199	199	-	-	-	199	173	-	26	199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2,409**	**2,409**	**-**	**-**	**-**	**2,409**	**2,323**	**-**	**86**	**4,299**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697	697	-	-	-	697	685	-	11	697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1,200	1,200	-	-	-	1,200	1,070	-	130	-

<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경우 내내역사업간의 유사·중복성이 남아있고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 특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보다 다양한 기업들에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 보조사업 성격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감독체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 단기 실무교육 과정의 채용상담회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내 다양한 내내역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이 중 2025년에 실시한 개별기업 지원사업으로는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사업 등이 있음.

[2025회계연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점국가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 참가	210	-	-	210	200	-	10	-
해외조달시장 조사, 설명회 및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253	-	-	253	227	-	26	253
해외조달시장 바이어 매칭 지원	95	-	-	95	87	-	8	95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개최	209	-	-	209	193	-	16	309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인턴채용 상담회 개최	217	-	-	217	210	-	7	217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 기업 육성	359	-	-	359	346	-	13	359
G-PASS기업 지정·관리 제도 운영용역	66	-	-	66	64	-	2	66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1,000	-	-	1,000	996	-	4	2,000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집중지원	-	-	-	-	-	-	-	1,000
합 계	2,409	2,409	-	2,409	2,323	-	86	4,299

첫째, 내내역사업인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 및 타 부처 지원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은 국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략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수출전략 수립, 역량강화 교육,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해외정부기관·국제기구 입찰참가 지원, 해외진출 협약 지원 등 2년간에 걸쳐 집중적·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임.

다른 내내역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조달기업이 국제기구·외국 정부·해외 공공기관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입찰·벤더 등록, 입찰·계약서류 작성 지원,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물류·통관, 마케팅 등)를 이용한 뒤 사후적으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임.

이 외에도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내역사업에 중점국가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 비용 지원, 시장개척단 선정 및 컨설팅 지원, 바이어 매칭 지원,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음.

[2025년「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내 개별 조달기업 대상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내역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중점국가 해외 공공조달 전시회 참가	-G-PASS기업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비용(부스 임차료, 운송비) 지원(700만원 한도)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조달시장 조사, 설명회 및 민관협력 시장개척단 파견	-G-PASS기업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컨설팅(현지 바이어 대상 홍보용 자료제작 지원) -현지 수출상담회
바이어 매칭 지원	해외조달시장 바이어 매칭 지원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컨설팅, 마케팅자료 작성 -입찰 사전기획 및 참가 지원, 입찰정보 제공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개최	-국내 기업	-바이어-기업 간 수출상담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수출전략기업 육성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G-PASS기업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해외 수주활동 지원(목표시장 조사 및 전략보고서 작성 등) -역량교육(기술인증, 무역, 전략컨설팅 등) -바이어 발굴·매칭·사후관리, 사업발굴 -입찰제안서·업무협약서 작성 지원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나라장터등록 중소기업 -e-나라도움 미결격 기업**	**-조달기업의 맞춤형 수요 지원(3,000만원 한도) · 해외조달 밴더등록, 해외조달 바이어 매칭·발굴 ·입찰제안서·계약서 작성 · 해외인증 취득, 시제품 제작, 홍보자료 제작 등**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및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개별 지원사업의 제공서비스가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타 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도 큰 차별점이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개별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하였음.

이에 조달청은 2026년부터 내역사업인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및 내역사업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전시회 개별참여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등으로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화를 조치 중이라고 밝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시정요구사항	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6.4.30.)
(10)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내역사업인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은 개별 지원사업의 제공서비스가 일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타 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의 유사사업과도 큰 차별점이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동 사업의 성과를 해외 조달시장 진출실적이 아닌 기업 전체 수출실적으로 관리하여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성과평가와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곤란한 실정임 - 조달청은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실적을 통해 수출성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현지 조달기업을 통한 간접 진출 실적도 포함하고 있어 최종납품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부터 해외조달시장 수출 실적을 제출받아 정확성을 검증하여 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조달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개별 지원사업 간 유사·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타 부처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 '26년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 간 세부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에서의 유사·중복 요소를 검토해 같은 기업이 유사 서비스를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지원 요건·자격 등을 정비 - 아울러, 동일 사업 내 반복 참여를 제한하고, 유사 사업은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화 * '수출연계 혁신제품 해외실증 애로해소 사업' 및 '해외전시회 개별참여 지원 사업' 폐지 →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 ○ 사업성과지표를 '수출실적'에서 관리가능한 시장실적*, MOU, 기술이전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 - 이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전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공인프라 산업별 집중 지원 추진 * 국제기구, 주한미군 납품 및 지원사업을 통한 해외조달 실적 등 추적 가능한 실적 ○ 조치예정일 : 26년 12월	조치중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여전히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수출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보임. 일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수행하는 해외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장정보 제공, 입찰 수주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어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조달청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과 타 기관 유사사업 비교]

사업명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국제입찰 진출 지원사업
기관	조달청	산업통상부(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목적	수출 역량을 갖춘 조달기업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	국내 유망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국내 보건산업체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대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의료·제약·헬스케어 등 보건 관련 산업군 한정
지원규모	7개사	13개사	지원사업 기업 풀(Pool) 등록기관 및 기관
주요 지원내용	역량강화, 전문 바이어 매칭 등 지원, 입찰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지원, 법률자문·사후관리	시장정보 제공, 로드쇼, 입찰 수주 지원, 지사화 사업 등	국제입찰 정보제공, 제안서 작성, 구매자 발굴 및 파트너링 지원, 수출상담회
정부부담	사업비의 85% 부담	국고 700만원 (1개사 당 1천만원 한도)	사업용역비 내 지원
자부담	사업비의 15% 부담 ('26～'27 사업기준 400만원)	기업당 300만원	별도 부담 없음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및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수행하는 수출바우처사업(수출지원기반활용) 역시 수출에 필요한 통·번역, 컨설팅, 홍보, 해외인증 등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하고 기관이 비용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KOTRA의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조달청의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과 일부 유사한 측면[219]이 있음.

219) 조달청은 타 부처와 달리 혁신제품 해외실증 관련 시제품 제작, 시제품 현지 운송·설치 등을 제공하고 있어 내용상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임.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과 타 기관 유사사업 비교]

사업명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산업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기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통상부 (KOTRA)
정책목표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확대 및 수출지원	내수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유망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 대상	중소 조달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이용 방식	참여기업이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후 이용 → 참여기업에 이용비용 직접 지급	바우처 발급 → 참여기업의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수행기관에 비용 지급 (메뉴판 내 지정된 서비스 및 수행기관 사용이 원칙)	
지원 내용 (예시)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 자체 설계 (입찰(벤더) 등록, 현지 실증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정부 규격·인증 취득, 현지조달시장 조사 등)	메뉴판 내 17개 분야 8,845개 서비스만 선택가능 (디자인개발, 통·번역, 컨설팅, 홍보, 해외인증, 특허·지재권 등)	
지원 금액	4,000만원 한도 (보조율 85%)	3,000만원 ~ 1억원 한도 (보조율 50%~70%)	1억원 ~ 2억원 한도 (보조율 30%~7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및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2026년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 내내역사업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집중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10억원)되었는데, 동 사업은 신규 지정 G-PASS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 전담인력 대응, 전문가 풀 구성·지원, 맞춤형 컨설팅, 대상기업의 수출 자립 유도를 위한 주기적 바이어 매칭 지원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쇼케이스 개최, K-조달플랫폼을 통한 바이어 매칭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중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내용은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내용과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2026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사업 현황]

구 분	지원대상	지원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신규 G-PASS기업	-**맞춤형 컨설팅** -맞춤형 수출 전문교육 -해외시장 진출 관련 뉴스레터 발송 및 해외 입찰공고 제공
수출 과정 애로해소		-상시 수출 전담인력(4~6인)을 통한 수출 관련 애로사항 대응 -수출 과정·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 및 수출 관련 문제 지원
쇼케이스 개최		-조달청 개최 국제행사 및 바이어 초청행사 시 특별 쇼케이스 마련 -해외전시회 내 한국관 구성 및 기업 단체 참가
K-조달플랫폼을 통한 해외 마케팅·홍보 제공		-플랫폼 등록 및 정보 상시 현행화 -플랫폼을 통한 상시 맞춤형 바이어 매칭, 온라인 상담회 개최 -바이어 대응 교육 및 만족도 조사, 피드백 제공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 및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공고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제품 해외실증 관련 지원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지 않는 사항 위주로 차별화하고 내내역사업 간 중복되지 않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내역사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특정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수립 및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국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전략기업을 선정하여 수출전략 수립, 역량강화 교육,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지원, 해외정부기관·국제기구 입찰참가 지원, 해외진출 협약 지원 등 2년간에 걸쳐 집중적·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임. 동 사업의 참가기업은 2023~2024년까지는 10개 기업을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였으나, 2024~2025년부터는 7개 기업을 수출전략기업으로 선정하여 해외공공조달 진출을 다각도로 집중 지원해오고 있음.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면, 조달청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계획 수립, 기업 모집 및 선정, 승인 등을 실시하나, 사업수행사가 신청기업에 대한 사전검토, 수출전략시장 목표시

장 분석, 사업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체계임.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조 직	역 할
조달청 (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립, 수출전략기업 모집 및 선정 ▪ 사업수행사 선정, 과업수행 관리 ▪ 신청기업 사전검토보고서 및 추천보고서 승인 ▪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중간성과물 검사 및 대금지급 ▪ 최종 성과물 검사 및 수행결과 평가 등
사업 수행사	▪ 신청기업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제기구 등 수출전략기업의 목표시장 분석보고서 작성 ▪ 국제기구 조달시장 관련 주기적 사업 정보(월 2회) 및 교육, 세미나 제공 ▪ 글로벌코리아마켓 내 전략기업 제품, 기업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홍보 콘텐츠(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 바이어 발굴·초청·매칭, 해외전시회 참여 지원 등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수출전략기업 세부 교육과정 수립 및 시행 ▪ 제안서 일정별 과업수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 계약내용 준수 및 중간성과물 제출 ▪ 정기보고회 운영 및 보고서, 최종 성과물 제출 등 ▪ 수출전략기업 사후관리 및 상설자문체계 운영

자료: 조달청

동 내내역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에 일반용역비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3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고 1,300만원이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2년 주기로 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을 하고 있어 용역사업 역시 2년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2025-2026회계연도 사업에는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가 사업수행사로 선정되어 수행 중임.

[2025회계연도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명 - 세목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359	-	-	359	346	-	13	359
- 일반용역비	359	-	-	359	346	-	13	359

[해외조달시장 수출전략기업 육성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비목	계약금액	수탁기관	비고
2024-2025	일반용역비	216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나이스디앤비	장기계속
2025-2026	일반용역비	125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장기계속

주: 집행액은 계약금액 기준

그러나 실제 동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보면, 선정대상 기업 수가 소수임에도 불과하고 2년마다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오는 기업이 있음. 예를 들어, ㈜ ○○은 2021~2024년까지, ㈜ △△와 □□㈜는 2022~2025년까지, ㈜◇◇·㈜ ◎◎는 2023~2026년 4년 연속 수출전략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음. 특히 ㈜ ☆☆의 경우 2020~2026년 7년 중 6년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아왔음.

[2020~2026년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지원대상 기업 중 중복 선정기업 현황]

연도	총 선정기업 수	2회 이상 중복된 기업
2020~2021	10	㈜ ☆☆
2021~2022	10	㈜ ○○
2022~2023	10 (철회 1)	㈜ △△, □□㈜
2023~2024	10	㈜ ○○, ㈜ ☆☆, ㈜ ◇◇, ㈜ ◎◎
2024~2025	7	㈜ △△, □□㈜
2025~2026	7	㈜ ◎◎, ㈜ ☆☆, ㈜ ◇◇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조달청 및 수행·관리기관(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등)의 기업 선정 방식 및 절차의 공정성과 사업 운영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조달청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 수립과 함께 중복지원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업체들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셋째, 내역사업인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의 경우 사실상 보조사업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 대상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조달청의 수출지원사업의 수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은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참여기업이 사업기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지출한 서비스에 대해 관리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으면 e-나라도움을 통해 조달청이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10억원으로, 참여기업의 조달서비스비용 사후보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8억 8,000만원, 관리기관 선정 및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용역비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일반용역비 400만원을 제외한 9억 9,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일반용역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2024년 관리기관 용역에 대해 한국조달연구원과 2개년 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5년에도 한국조달연구원과 계약하였음.

[2025회계연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 명 - 세목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1,000	-	-	1,000	996	-	4	2,000
- 일반용역비	120	-	-	120	116	-	4	200
- 민간경상보조	880	-	-	880	880	-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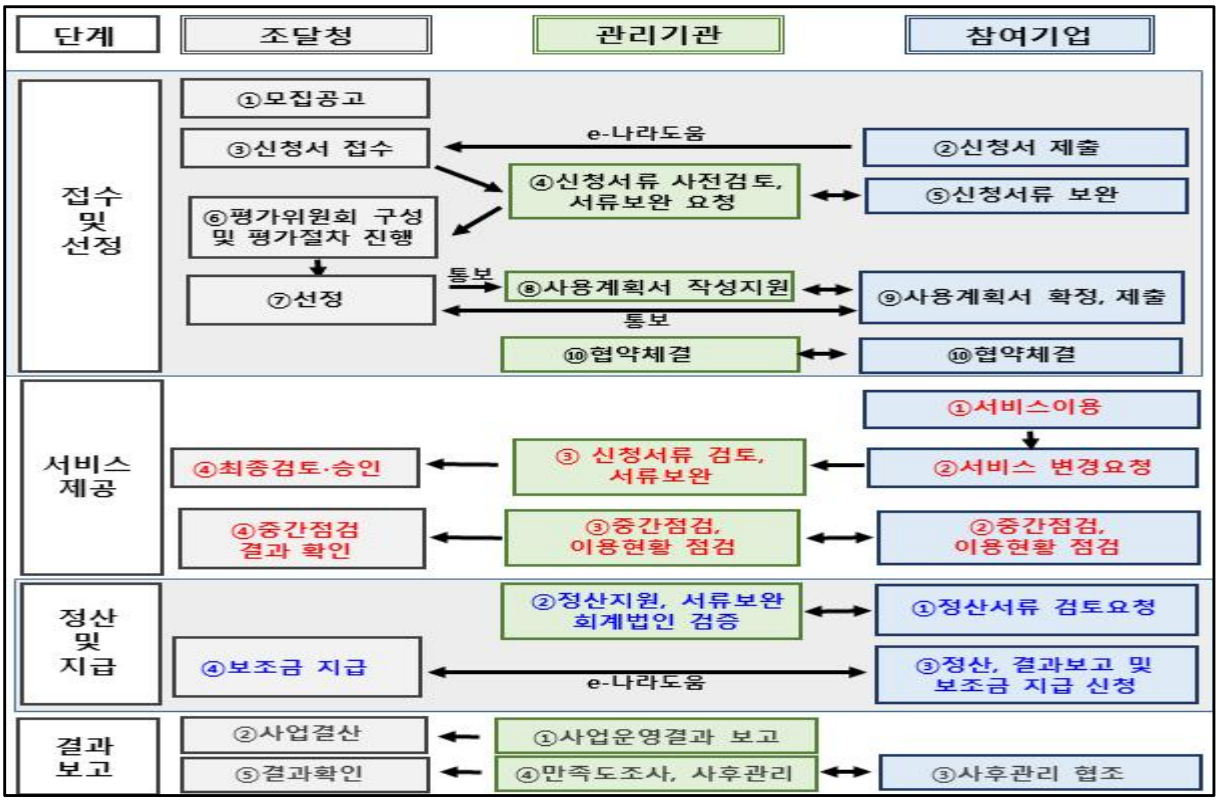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비목	예산액	집행액	수탁기관	비고
2024	일반용역비	120	115	한국조달연구원	장기계속
2025	일반용역비	120	116	한국조달연구원	
2026	일반용역비	200	191 (계약금액)	한국조달연구원	-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조달청이 관리기관을 경쟁입찰 및 용역계약을 통해 선정하고, 참여기업의 참가 신청 - 관리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조달청의 평가위원회 선정을 거쳐 참여기업이 선정된 후, 사업기간 내 사용·지출한 서비스에 대해 관리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으면 e-나라도움을 통해 조달청이 참여기업에게 지원금(보조금)을 85%(자부담 15%) 지원하는 방식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조달청

참여기업은 지원금(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사업자이며, 관리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이 참여기업 선정업무 실무와 이용현황 점검, 보조금 정산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한국조달연구원과 참여기업들은 용역사업자-보조사업자보다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한국조달연구원은 보조사업자가 아닌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교부,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 등 심의,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실적보고 및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용역과 민간경상보조 이중적 사업구조가 아닌 간접보조사업으로서 한국조달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참여기업이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도록 사업방식을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조달청이 용역사업으로 실시 중인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실제로 단기교육 및 채용상담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채용상담회 참여기업으로의 취업 연계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조달청은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청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용역계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용역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비목	예산액	집행액	수탁기관
2024	일반용역비	213	189	사단법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2025	일반용역비	213	205	사단법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2026	일반용역비	213	205 (계약금액)	사단법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사업수행자인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는 4주간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생을 모집·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교육생 채용 희망기업을 모집하여 기업-교육생 대면 상담회를 개최한 후 미취업자 사후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을 수행해왔음.

2025년에는 신청자 180명 중 6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7일 ~ 7월 31일 4주간 해외조달시장 실무(UN조달시장 및 미국조달시장 이해, 입찰제안서 작성 실습 등),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실무, 국내조달시장 이해 및 실무, 직무분석 및 면접 에티튜드 등 취업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음. 또한 교육과정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2025년 7월 30일 16개사 채용희망기업과 59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채용상담회를 개최·운영하였음.

2025년 용역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생 60명(100%) 전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기준 채용희망기업 5개사가 6명 채용, 16개사에 16명이 자체적으로 취업하여 총 22명(36.7%)이 취업하였음. 이후 2026년 4월 기준 총 40명(66.7%)이 취업에 성공하였음.

그러나 실제 채용상담회 참여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전체 취업인원 대비 많지 않고 오히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취업한 인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채용상담회의 효과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4·2025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참가자 현황 및 실적]

(단위: 명)

연도	신청 인원	선발 인원	수료 인원	'25말 취업 인원	기업		공공기관	기타[1)]	비고
					상담회 참여업체	자체취업	자체취업		
2024	132	60	60	40	4	31	2	3	취업인원은 '25.11.30. 기준
2025	180	60	60	40	1	32	2	5	취업인원은 '26.4.30. 기준

주: 1. 2024년 교육생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취업인원 파악 중
1) 재단법인, 사단법인, 연구원, 사립대학, 협회 등
자료: 조달청

한편, 2025년도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기업은 회사에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어 만족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수료생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의견,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의견들이 있음.

[2025년도 용역 결과보고서 중 참여자 의견]

2.5.2.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의견

교육생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

구분	교육생 기타의견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	- 조달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음 - 질의사항 및 피드백 시간이 있어 좋았음 - 취업 방향성 설정에 수업구성이 도움됨 - 실습(해외/국내조달, 엑셀, 취업준비 등) 중심의 수업 시간 확대 필요함 - 해외/국내조달 약어의 경우 개념 및 설명이 필요함 -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실제 실무 위주의 강의 확대가 되면 좋겠음 - 다른 주제로 하는 팀 프로젝트보다 하나의 공통된 내용으로 다 같이하는 것도 좋을듯함 - 월요일 기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교 시간 조정이 필요함 - 현장견학 날짜를 초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듯함

□ 참여기업 의견

참여기업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

구분	참여기업 기타의견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	- 전반적으로 만족함 - 회사에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있어 만족하였으며 향후 더 많은 수료생을 채용할 예정임 - 이력서 작성 시 희망 연봉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할 것을 권장함 - 교육 커리큘럼 관련 민간 무역과 공공조달 기반 무역은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조달 관련 실무 교육 강화가 도움이 될 것임 - 채용상담회에서 확인한 교육생들은 한 달간의 교육 이수 과정에서 기본 태도와 의지가 우수했으며, 회사 여건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지향점이 뚜렷한 인재들이라는 긍정적 평가분을. 무역 분야 기업들이 많음에도 이 교육 과정의 존재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업 대상 홍보 강화가 필요함 - 기존 채용플랫폼만으로 원하는 인재 확보가 어려워 본 교육과정을 통한 채용에 참여함. 해외조달 외에 관세나 구매 교육을 제공할 경우, 연관 직무의 이해도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무역·수출조달 분야에서 목표와 태도를 갖춘 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과 교육생 모두 공감함. 또한 국내외 조달, 제안서 작성, 취업 교육, 기업 프로젝트 등 실무 중심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2025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용역 결과보고서

따라서 조달청은 현행 채용상담회와 실제 연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교육생의 취업 선호도를 분석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우수 기업을 섭외하고 사전 맞춤형 매칭을 강화하여 채용상담회 및 동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4) 일괄 용역계약을 통한 비전문 분야 ODA 추진 지양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획조정관·혁신조달기획관)

< 현 황 >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전자조달 역량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해외 구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ODA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26억 4,400만원 편성되었으며, 23억 9,900만원 집행되었고 2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100만원 불용되었음.

내역사업인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은 필리핀 수요가 확인된 결핵진단 관련 혁신제품을 ODA 사업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필리핀 결핵진단기술 스마트화와 혁신기업의 해외 레퍼런스 축적을 통해 국제 조달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은 7억 2,000만원이며 이 중 5억 600만원 집행되고 2억 1,400만원 이월되었음.

[2025회계연도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아태 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33-332)	2,644	2,644	-	-	-	2,644	2,399	214	31	4,534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운영	544	544	-	-	-	544	544	-	-	544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1,380	1,380	-	-	-	1,380	1,349	-	31	3,990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	**720**	**720**	**-**	**-**	**-**	**720**	**506**	**214**	**-**	**-**
· 일반용역비	**720**	**720**	**-**	**-**	**-**	**720**	**506**	**214**	**-**	**-**

< 검토의견 >

조달청은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ODA 사업” 추진 시 일반용역비로 전액 편성하여 한국조달연구원 등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 사업은 조달청의 고유 직무 및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일반용역비 비목 편성 및 용역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ODA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바, 향후 조달청은 ODA 추진 시 비전문분야에 대한 ODA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일반용역비 편성 및 용역계약 방식에 따른 ODA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당초 조달청은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사업”을 2025~2027년 3개년간 총 24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동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서 확정되었음.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사업 추진계획]

국가명	필리핀
중점분야	물관리 및 보건위생
소관	조달청
내역사업명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 강화 사업
원조구분	양자무상
사업구분	신규
사업유형	프로젝트
시작연도	2025
종료년도	2027
총액(억원)	24.0
요구액(억원)	7.2

자료: 관계부처 합동,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조달청은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사업」 예산 7억 2,000만원을 전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였음. 조달청은 동 사업에 대해 나라장터를 통하여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재)한국조달연구원·(사)대한결핵협회와 체결하였음. 구체적으로는 두 기관과 2025~2027년 3개년간 총 23억 7,900만원, 2025년 7억 1,200만원의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2025년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ODA 사업 용역 계약 체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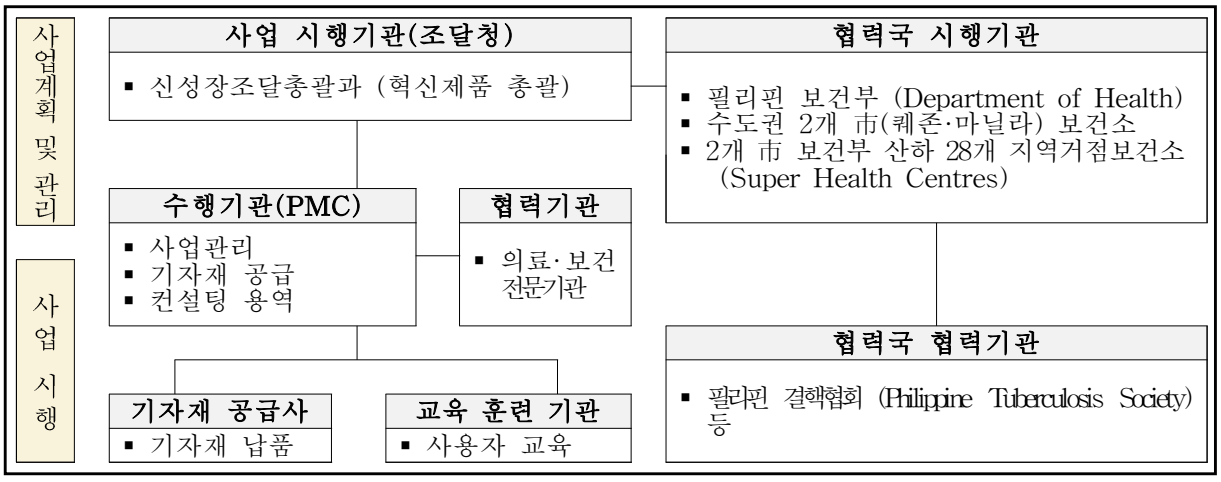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계약명	계약업체명	총계약금액	총 계약기간	2025년 계약금액	2025년 계약기간 (변경)	계약유형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ODA 사업	한국조달연구원, 대한결핵협회	2,331	2025.4. ~2027.12.	712	2025.4. ~2025.12. (→2026.4.)	일반경쟁 →수의계약

자료: 조달청

동 사업의 수행체계를 보면, 크게는 조달청이 용역 수행관리, 모니터링 등을 총괄하고, 용역업체가 사업계획 수립·관리와 수원기관과의 협의 등 현지 운영을 총괄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용역업체인 한국조달연구원과 대한결핵협회의 주요 업무는 협력국 수원기관과의 사업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지 결핵진단 운영 개선 프로세스 개발 및 시범운영, 운영 매뉴얼 수립 및 기자재 공급, 관련교육 시행, 사업 총괄 전문가 파견, 현지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등 개최, 한국 초청 등 ODA 실무를 모두 수행하는 구조임.

[과업수행 체계]



자료: 조달청

즉, 조달청은 결핵진단 관리강화 ODA 예산 전액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한국조달연구원·대한결핵협회에 ODA 관련 전 업무를 위탁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조달청은 ODA 수행에 대해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ODA를 추진하고자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기관들과의 계약을 통해 결핵진단 관련 혁신제품을 제공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조달청의 ODA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사업은 조달청의 고유 직무 및 동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 공사계약 및 시설물 관리·운영 외에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수행[220]하는 한편,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진입이 어려운 혁신기업 등의 초기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 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

이러한 조달청의 직무 범위를 고려할 때, 조달청의 ODA 사업은 특정 부문의 사업보다는 개발도상국 등의 공공조달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사업이 편성된 세부사업인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형 전자조달시스템 해외 구축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음.

오히려,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미 결핵진단 지원 또는 진단역량 강화 ODA 사업을 양자·다자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일례로 KOICA의 “결핵 고위험 국가 혁신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결핵퇴치사업”은 Stop TB Partnership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보건 사업으로, 결핵 진단 및 치료를 위한 IT,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등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진단장비 및 IT 솔루션을 개발하며, 고위험 국가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원격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및 현장진단기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임.

---

2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2025년 결핵진단 관련 ODA 사업 내역]

(단위: 억원)

부처명	내역사업명	사업 유형	총사업 예산	2025년 예산	신규/ 계속	총사업 기간	구분
보건복지부	에티오피아 짐마존 결핵환자 발견체계 구축 및 진단역량 강화사업	프로젝트	18.00	-	계속	2021 ~2025	양자 무상
외교부 (KOICA)	우크라이나 폐결핵 및 비결핵항산균폐질환의 진단치료 역량강화	연수	3.8	1.56	계속	2023 ~2025	양자 무상
	인도네시아 결핵관리 역량강화	연수	3.92	1.56	계속	2024 ~2025	양자 무상
	TB Alliance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7개국 신규 치료요법 도입을 통한 다제내성결핵 퇴치 사업	프로젝트	77.35	7.59	계속	2020 ~2025	양자 무상
	Stop TB Partnership 결핵 고위험 국가 혁신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결핵 퇴치 사업	프로젝트	57.07	7.73	계속	2022 ~2026	양자 무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둘째, 동 사업 예산을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여 계약을 통해 ODA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비목의 성격 및 추진체계 상 적정하지 않으며 사후 책임성 담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일반용역비는 기관의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일상적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에 관한 비목으로서, 본 사업의 내용상 외국정부·또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거나 기자재를 용역업체가 구매하여 수원국에 공급하도록 하는 업무를 용역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일반용역비 비목의 본래 취지와 용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ODA사업, 특히 보건·의료(결핵진단) ODA 분야는 현지 의료기반 및 진단역량, 수원국 보건부와의 협상,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필리핀 현지 정보와 의료 전문성이 갖춰져야 함. 조달청은 ODA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한국조달연구원은 공공조달분야 연구 수행을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더욱이 용역계약 방식으로 ODA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또는 기기 납품 완료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종합하면, 필리핀 혁신기술기반 결핵진단 관리강화 사업은 조달청의 고유 직무 및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일반용역비 비목 편성 및 용역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ODA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바, 향후 조달청은 ODA 추진 시 비전문분야에 대한 ODA사업 추진을 지양하고[221] 일반용역비 편성 및 용역계약 방식에 따른 ODA사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KOICA 등 타 부처 ODA 사업에 조달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여 해외공공조달시장 진출의 플랫폼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221) 2026년 동 사업은 조달청에서 외교부로 이관되었으며, 외교부의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사업의 내역사업인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에 15억원 증액 반영되었음.

(5) 조달 자율화 시 부작용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구매사업국)

< 현 황 >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사업은 다수공급자물품 계약 및 관리, 가격조사 및 공공조달 관리 지원,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관리 등 조달물자의 계약, 가격 관리 등 제반 조달사업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51억 7,800만원으로, 이 중 137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	15,007	15,007	171	-	-	15,178	13,785	433	960	15,625

<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 제도 개요 및 현황 >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222]에 따라 조달청이 미리 단가계약한 물품을 수요기관이 조달전용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구매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22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이하 "MAS")은 공공기관의 다양한 물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를 대상으로 복수의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업체와 협상을 거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된 물품을 비교·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수요기관은 구매하려는 물품이 조달청에 의해 MAS가 체결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민간 시장에서 별도 구매할 수 없고 조달청의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의무화[223]되어 있는 한편, MAS 계약상대자인 업체에는 MAS 물품을 시중 거래가격보다 같거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부여[224]됨. MAS 계약체결 업체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물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계약단가 인하 및 계약금액과의 차액 환수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공공조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조달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조달청은 ①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분석시스템을 통해 계약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매주 제공받아 가격 변동 여부를 분석하고, ② 가격조사 전담인력이 민간 쇼핑몰과 나라장터 가격을 비교하는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③ 나라장터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과 수요기관이 고가조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22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2.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구매하려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
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나. 법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방식으로 수요기관을 위해 체결한 계약

2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차액의 감액 및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조달청의 2025년 기준 우대가격 유지의무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15,048개로, 전체 다수공급자계약(MAS) 품목의 약 1.6%에 불과한 수준이고, 신고센터의 신고접수도 연평균 27.2건 수준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바, 나라장터 고가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국회, 대통령실, 언론 등에서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최근 5년간 MAS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 고가의심 건수,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MAS 계약품목 수	649,416	722,817	751,873	874,553	964,559
계약 품명 수	904	957	956	968	1,012
모니터링 대상 품목 수	14,673	13,218	13,338	12,939	15,048
모니터링 대상 품명 수	57	60	65	66	72
고가 의심 건수	56	71	85	124	109
단가인하 건수	7	20	12	35	26
거래정지 건수	-	1	-	-	4

자료: 조달청

[최근 5년간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신고센터 신고 및 조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신고 건*	32	22	11	58	13
조사대상 건**	14	11	4	17	9
환수 및 단가인하	4	5	2	5	0
환수결정 금액	354	2,394	103	529	0

* 당해연도 신고·접수건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환수·결정할 경우 당해연도로 세는 방식
** 총 신고건수 중 조사불개시, 이첩, 신고취소 등 제외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고가문제 지적사항]

◦ (국회) 조달청 가격통제 관행 개선 요구, 조달 단가와 민간 유통가격 비교·검증시스템 필요('25 재경위 국정감사)
◦ (대통령실)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부조리를 혁파하기 위해 공공조달 개혁에 대한 대통령 지시('25.7.1. 국무회의)
◦ (감사원) '25년 조달청 정기감사(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의무구매에 따른 고가 구매 등 수요기관 선택권 제약)
◦ (언론) 나라장터 시중보다 비싸('11), 시중보다 고가 구매로 20억원 낭비('17), 나라장터의 함정('25) 등

[사례: 규격 사양이 동일한 저출력 심장충격기의 고가 판매]



자료: 감사원, 2025년 조달청 정기감사 자료

2025년 11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직접 계약과 구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225]을 발표하였음. 동 방안에 따르면 2026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1.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 **(자율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확대 추진

○ **(1단계:시범실시)** 대표성 있는 **지역**과 **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시범실시('26)

* 전체 지방정부 수요조사 및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등 고려 → 경기도, 전북도 선정
지방정부 구매 비중, 가격 변동성, 중기간 경쟁 대상 등 고려 → 전자제품 120개 품목

○ **(2단계:확대)** 시범실시를 통해 **자율화에 따른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여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27)

▪ **(대상기관)**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기초지방정부 포함)
▪ **(운영기간)** 1년 ('26.1.1. ~ '26.12.31.)
▪ **(대상물품)** 전기·전자제품군 118개 세부품명
(세부품명 내 모든 규격 포함)
▪ **(운영조건)** 기존 약자기업 구매실적 이상 유지



225) 관계부처 합동, 공공조달 개혁방안, 2025.11.19.

< 검토의견 >

조달청의 수요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 정책은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증가, 조달행정 역량 부족에 따른 조달 품질 저하, 약자기업 지원 정책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조달 자율성 확대 정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공공조달 구조를 완화하고 수요기관의 자율성과 시장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고가조달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불공정 계약 가능성, 수요기관의 조달 전문성 부족에 따른 행정 비효율, 약자기업 지원 정책기능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음.

첫째, 조달 자율화 과정에서 부패와 불공정 계약 증가 가능성이 우려됨. 기존 중앙조달 방식은 나라장터 기반의 전자입찰과 체계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지방정부의 자체 조달 과정에서는 지역업체와의 유착,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설정, 평가 과정의 편향성, 수의계약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특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하에서 지역 민원 등에 따라 특정 지역업체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등의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조달역량 부족에 따른 조달 품질 저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달청은 조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행정, 도시개발, 안전관리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조달 분야의 전문인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자체조달이 확대될 경우 계약방식 선정, 가격조사, 제안서 평가, 품질검사 등의 업무 수행 수준이 저하될 수 있고, 동일한 조달업무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행정비용 증가와 업무 중복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셋째, 공공조달의 정책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현행 중앙조달체계는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와 가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정책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조달이 확대될 경우 일부 수요기관이 가격 중심의 구매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약자기업 제품의 구매가 감소하여 공공조달의 정책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있음.

따라서 조달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자체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불공정 계약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조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의 정책적 지원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편성사업 성격에 맞는 포상금 집행 필요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획조정관·운영지원과)

< 현 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은 조달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정원 및 인력 운영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2025년 예산액은 41억 8,400만원, 예산현액은 42억 2,800만원으로 41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만원은 불용하였음.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중 기타운영비는 과·비서실 운영비, 시험관리비, 축·조의금 및 우수 부서·직원에 대한 격려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2025년 예산현액은 5억 5,800만원, 집행액은 5억 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00만원임.

[2025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111-201)	4,184	4,184	-	47 △3	-	4,228	4,123	-	105	4,252
- 기타운영비	537	537	-	21	-	558	542	-	16	568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조달청 기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를 편성한 기본경비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92억 3,900만원으로, 이 중 88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포상금은 3,800만원으로,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9,239	9,239	-	233 △233	-	9,239	8,856	32	351	9,487
- 포상금	38	38	-	-	-	38	32	-	6	138

한편, 주요사업비인「조달행정 역량강화」는 공공조달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성과관리 및 제안 경진대회, 송무지원·포상 등 조달행정서비스 제고, 조달사업 전문인력 활용 및 가격조사활동비 보전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액은 73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68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 중 포상금은 내역사업인「조달행정서비스 제고」사업에 편성되었으며 2025년 예산액 5,2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조달행정 역량강화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달행정 역량강화 (7132-366)	7,349	7,349	-	-	-	7,349	6,892	-	457	7,940
- 조달행정서비스 제고	329	329	-	23	-	352	329	-	23	367
· 포상금	52	52	-	-	-	52	45	-	7	52

< 검토의견 >

첫째, 유공부서·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에 있어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 세부사업·비목 간 명확한 구분 없이 집행이

이루어져 예산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포상·격려금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조달청 포상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에 근거하여 조달서비스 분야, 조달사업 분야, 기타 조달행정발전 분야에 걸쳐 조달행정 발전에 공헌한 기관(부서), 수요기관, 전문검사기관 등 유관기관, 조달업체와 그 소속직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음[226]. 조달청은 내부 직원들의 격려 차원에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에 편성된 기타운영비를 통해 포상하고, 외부 기관 및 그 직원,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포상금 비목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한편,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로 구분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현행 예산 체계는 사업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부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또한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의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국가재정법」은 이·전용 제도를 규정[227]하고 있으며 이외에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내역변경 및 세목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달청은 포상 결정 및 포상금 집행에 있어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인 「조달행정 역량강화」의 예산 편성내역과 달리 혼용하여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직원 대상 포상을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에서 동시에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25년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포상금 예산에

---

226) 단,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포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근거한 신고 포상금으로 이하에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조달행정 역량강화에 편성된 포상금을 대상으로 서술함.

227)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블로그기자단 포상금 300만원, 공무원비리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 예산성과금 1,500만원, 정부물품관리 유공자포상(우수기관 및 개인)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다음, 「조달행정 역량강화」의 내역사업인 「조달행정서비스 제고」는 조달사업 수익 확대를 위한 수요기관 마케팅, 수요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바, 포상금에 조달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 3,750만원, 창의적 발상으로 행정 능률화 추진을 위한 포상 1,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음.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 포상금 예산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편성내역		예산액
기관운영 기본경비	블로그기자단 포상금		3,000
	공무원비리신고자 포상금		10,000
	예산성과금		15,000
	정부물품관리유공자 포상		10,000
	계		38,000
조달행정 역량강화 -조달행정 서비스 제고	**1.조달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		**37,500**
	- 혁신지향 등 정부조달정책 공헌 우수기관 및 소속직원	30개 기관*500,000원=	15,000
	- 우수제품 구매 우수기관	10개 기관*500,000원=	5,000
	- 시설공사 관리 우수기관	15개 기관*500,000원=	7,500
	- 국정과제 추진 달성에 기여한 유공기관 또는 국민	20개 기관*500,000원=	10,000
	2.창의적 발상으로 행정 능률화 추진을 위한 포상	29명*500,000원=	**14,500**
	계		**52,000**

자료: 조달청

그러나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기본경비」 포상금으로 외부 수요기관인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기관” 35개에 포상을 실시하여 87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조달청의 주요사업인 “설계적정성 검토” 성과 제고를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유공” 포상에 6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또한 조달청 직원 및 국민 대상 제안제도인 “공공조달 AI활용 경진대회”을 실시하여 포상금 440만원을 집행하기도 하였음.

[2025년 기관운영 기본경비 포상금 주요 집행내역]

(단위: 천원)

집행내역	포상대상	지급일자	집행액
조달서비스 이용 우수 기관	'24년도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우수, 전년 대비 조달서비스 이용실적 성장률 향상, 향후 조달사업에 높은 기여도가 예상되어 고객관리 측면에서 지속적 관계 유지가 필요한 수요기관 35개	25.12.18	8,750
설계적정성 검토 업무유공	설계적정성 검토 외부 자문위원 2명	25.12.29	600
공공조달 AI활용 경진대회	조달청 직원 및 국민 대상 경진대회 수상자 10명	25.09.02	4,40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 내 포상금 중 내부부서 및 직원 대상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내 기타운영비로 이관하였음. 그러나 주요사업비인 「조달행정 역량강화」 사업으로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유공" 포상 명목으로 유관기관, 사용자 테스트 우수기관 담당자,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을 포함하여 총 45명에게 조달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800만원을 집행하는 한편,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의 기타운영비로 "차세대 나라장터 안정화 유공" 포상으로 100명에게 3,955만원을 집행하였음.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관련 유공 포상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내역	포상대상	지급일자	비목	집행액
조달행정 역량강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유공	유관기관, 사용자 테스트 우수기관 담당자, 조달기업, 내부직원 등(45명)	25.05.08	포상금	8,000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차세대 나라장터 안정화 유공	조달청 직원(100명)	25.02.20 25.04.15	기타운영비	39,550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조달청은 포상금을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사업성격 및 편성내역과 달리 용도를 혼재하여 집행하였으며,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기타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음에도 주요사업비의 포상금 비목으로도 포상을 실시하였음.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 세부사업·비목 간 명확한 구분 없이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현행 예산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조달청은 포상·격려금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달청은 2025년부터 “신속집행 유공 포상” 대상에 신속집행에 기여한 우수기관 담당자를 추가하였으나, 신속집행 유공 포상의 취지 및 신속집행 계약특례 종료 등을 고려하여 신속집행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포상을 계속 추진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조달청은 「조달청 포상에 관한 지침」이 제정된 2010년 당시에도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뿐만 아니라 신속집행에 기여한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포상 항목을 신설하였음.

[2025년 조달사업 신속집행 유공 포상대상]

구 분	내 용
우수부서	▪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에 기여한 우수 부서 * 조달사업 집행실적 + 제도 개선 등 기여도
우수직원	▪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에 기여한 우수 직원(실무관 포함) * (사업부서) 조달사업 집행실적, (지원부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등
우수기관 (직원)	▪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에 기여한 우수 수요기관 직원 * 조달요청 실적 + 제도개선 및 조달청 협업 등 기여도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2025년 신속대상 우수부서 5개 및 직원 15명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의 기타운영비 47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포상금 비목에서 신속집행 우수기관 6개(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포시, 대전광역시, 육군 제7보병사단)에 대해 포상금 18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 조달사업 신속집행 포상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집행내역	포상대상	지급일자	비목	집행액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부서: 5개 직원: 15명	25.08.05	기타운영비	4,700
기관운영 기본경비	신속집행 우수기관 포상	기관 : 6개	25.08.05	포상금	1,800

자료: 조달청

신속집행 유공 포상 확대에 대해 조달청은 조속한 민생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기업·시장의 접점에 있는 공공조달 분야의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상반기 조달사업 신속집행 실적 확대에 기여한 수요직원 직원에 대한 포상도 신설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본래 신속집행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실적 관리 등은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 소관이며, 조달청은 정부·공공기관의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계약처리 속도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내부 부서·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속집행에 대한 포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짐.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이후 재정의 경기대응성을 강화하고자 신속집행을 독려했으며, 그 일환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한시적으로 특례를 두고 2025년 12월까지 연장해왔음. 당시 공공부문에서 계약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특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조달청의 신속한 계약절차 추진 및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했었음.

그러나 2025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특례에 기반한 수의계약이 과도한 문제가 있으므로 특례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국가계약법상 특례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자 2026년 1월 동 특례를 만료하였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

■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 2회 유찰시 → 1회 유찰시
■ **(보증금 인하)**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2.5%
* (계약보증금)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 → 5%
공사 : 계약금액의 15 → 7.5%
■ **(지급기한 단축)** 검사(14 → 7일), 대가지급(5 → 3일) 기한 단축
■ **(선금)** 선금 지급한도 확대, 계약대금의 70 → 100%

자료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즉, 중앙행정기관 내 신속집행 관리업무 소관, 조달청의 신속집행 유공포상의 도입 취지와, 최근 국가계약법령의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협조를 기반에 둔 포상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보임. 따라서 조달청이 기관·조직 운영을 위해 계상된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포상금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혁신제품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출 관리 필요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구매사업국 · 혁신조달기획관)

< 현 황 >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28]에 따라 혁신기업이 제안한 제품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혁신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된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공기관이 시범사용하게 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497억 600만원으로, 이 중 493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1237-433)	49,706	49,706	-	-	-	49,706	49,391	314	1	82,706

2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검토의견 >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시 제출이 필수적이나, 기한 내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시범사용 기관의 보고서 제출에 대한 관리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의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 구매비용을 부담하여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실적 부족으로 시장 진입이 어려운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에 초기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혁신제품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기술인정 제품 및 상용화 전 시제품 중 공공성·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함.

[혁신조달 제품 예시: 바닥형 보행신호등]



조달청은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의 직접 사용 기회를 부여하고, 혁신기업을 위해서는 초기 판로 지원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동 사업을 통해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의 사용·테스트를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025년도 302개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551개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등 그 규모가 증대하는 추세에 있음.

[연도별(2021~2025년)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현황]

연도	예산액 (억원)	지정제품 (개)	계약제품 (개)	시범사용기관 (개)	계약금액 (억원)
2021년	445	623	166	392	440.6
2022년	465	606	166	436	460.5
2023년	483	284	245	478	478.6
2024년	530	422	236	455	526.2
2025년	529	494	302	551	527.7

자료: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조달청이 해당 수요와 혁신기업을 매칭하여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혁신기업이 수요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이후 수요기관은 일정 기간 제품을 시범사용한 후 시범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조달청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범사용 평가심의회를 통해 혁신제품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하고 있음.

[혁신제품 시범구매 업무절차]



[연도별 시범사업 평가심의 결과 현황]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심의 대상 건수	67	144	150	272	204
심의건수	67	144	150	272	204
성공	67	135	136(4)	264(14)	199(9)
보완	-	-	-	4	2
미흡	-	9(9)	14(11)	4(3)	3(2)

자료: 조달청

조달청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고시) 제36조[229]에 따르면,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23년 이후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14건은 현재 미제출 상태임.

조달청은 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시범사용 기관 선정 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2024년 7월 개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규정 개정 이후인 2025년에도 기한 내 미제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재만으로는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이 시범사용 기관에 대한 제출기한 관리와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완료보고서 제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건수	96	391	466	464	473
결과보고서 제출 건수	96	391	466	464	459
기한 내	96	391	455	367	322
기한 후	-	-	11	97	137
미제출	-	-	-	-	14

자료: 조달청

229)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조달청 고시)
제36조(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른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임차의 경우 시범사용 기관의 장은 시범사용일 시작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연차별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미제출 현황(14건)]

(2026년 7월 31일 기준)

미제출 기관명	제품명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수도방위사령부	무기고 총기관리 자동화 시스템	87	'24.08.22~'25.06.18
2작전사령부	무기고 총기관리 자동화 시스템	269	'24.08.22~'25.06.18
대한노인회광주시지회	배리어프리 항균 푸시풀 손잡이	33	'25.06.24~'25.08.29
(사)대한노인회 용인시 기흥구지회	배리어프리 항균 푸시풀 손잡이	26	'25.06.24~'25.08.3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여주군지회	배리어프리 항균 푸시풀 손잡이	21	'25.06.24~'25.09.06
전라북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온실용 정밀 배지관리시스템	117	'24.11.22~'25.09.02
경북대학교병원	위해약물 조제 및 투약용 폐쇄시스템 약물전달장치(CSTD) 제조기술	55	'24.09.04~'25.09.2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위해약물 조제 및 투약용 폐쇄시스템 약물전달장치(CSTD) 제조기술	165	'24.09.04~'25.09.29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태양광발전과 방음기능이 가능한 일체식 방음 패널 신기술	263	'24.09.19~'25.10.14
경기도 화성시	도시침수 예방용 무동력 우수받이 쓰레기 차단 및 효과적인 배수 기능을 가진 그레이팅 필터	45	'25.05.23~'25.10.27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시침수 예방용 무동력 우수받이 쓰레기 차단 및 효과적인 배수 기능을 가진 그레이팅 필터	45	'25.05.23~'25.10.31
경기도 시흥시	도시침수 예방용 무동력 우수받이 쓰레기 차단 및 효과적인 배수 기능을 가진 그레이팅 필터	45	'25.05.23~'25.11.08
충청남도 천안시	방수기능 향상, 소비전력 절감 및 고장예측 기능을 탑재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164	'25.06.12~'25.11.0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방수기능 향상, 소비전력 절감 및 고장예측 기능을 탑재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49	'25.06.12~'25.11.08

자료: 조달청

(8)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공사 추진시 법령상 절차 및 집행지침 미준수 등(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공공물자국)

< 현 황 >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은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비축재고 확대 및 비축기지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후화된 경남 비축창고를 재건축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액은 4억 7,7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 세목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7162-510)	477	477	-	-	-	477	276	117	83	3,072
- 실시설계비	473	473	-	-	-	473	273	117	82	-
- 시설공사비	-	-	-	-	-	-	-	-	-	2,795
- 감리비	-	-	-	-	-	-	-	-	-	270
- 시설부대비	4	4	-	-	-	4	3	-	1	7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은 노후화 및 구조상 문제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형 비축창고를 재건축함으로써 원자재 목표재고량을 확대하고 향후 비축창고 신규 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음.

경남 비축창고는 1981년 신축된 창고 1개동(2,726㎡)으로, 4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창고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실사용 가능면적도 50.7%인 1,381㎡에 불과함. 경남 비축창고는 당초 행정용품 저장창고 용도로 건축되었기에 바닥하중이 불명확하기도 하여 비축물자 보관용도로는 부적합한 상황이었음.

이에 조달청은 2025~2027년 간 총사업비 121억 2,700만원, 연면적 6,000㎡ 규모로 노후하고 협소한 경남 비축창고를 확장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2월~4월 설계용역 공고 및 업체 선정 후 2025년 5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음. 설계는 2026년 8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 노후·협소한 비축창고 확장 신축
사업기간	▪ 2025년 ~ 2027년 (‘25~‘26년 설계, ’26~’27년 공사)
총사업비	▪ 12,127백만원
사업규모	▪ 연면적 6,000㎡(지상 1층)
사업시행주체	▪ 조달청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조달청은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 건축공사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기본설계에 세목조정 없이 기본조사설계비가 아닌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준비 미흡으로 인해 설계절차가 지연되어 준공 시기도 지연되었는바,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추후 비축창고 신축·재건축 추진 시 사업절차 및 예산 편성·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서 요구하는 건축공사 사전 절차인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

공공기관이 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230]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항[231]에 따라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절차를 이행하여

230)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야 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232]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233].

한편,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은 타당성조사 완료 또는 기본계획 수립 후 건설기술관리법령 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234].

---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관리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2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23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②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과정"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공사수행방식의 결정을 말한다.

233)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위 건설관련법령 및 작성지침상 절차를 고려할 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235] 수립을 통해 공사의 목표·기본방향, 내용·기간 및 시행자·공사수행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등 건축공사의 방향 및 내용이 정해짐.

그러나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의 총사업비가 121억 2,700만원으로, 조달청은 1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없이 내부 결정을 거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음. 즉,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의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둘째, 조달청은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설계용역에 실시설계비 총 3억 9,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설계단계 중 계획설계 - 중간설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하나 조달청은 세목조정 없이 실시설계비로 일괄 집행하였는바, 동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음.

조달청은 2025년 동 사업 예산에 실시설계비 4억 7,300만원 및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후 조달청은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설계용역을 총 3억 9,100만원으로 계약하여 2억 7,600만원을 70%로 선금지급하고 30%인 1억 1,7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전액 실시설계비 비목임.

한편, 기본조사설계비는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36]에 따르면 건축분

---

23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31, p. 275

23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6)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72

□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

야의 기본조사설계는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하므로,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집행하여야 함.

실시설계비는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비목임.

한편,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세목조정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대상이나, 총사업비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간 상호 융통은 동일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 자체조정할 수 있음.

조달청이 2025년 4월 체결한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 설계용역”은 기본설계인 계획설계-중간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한 용역으로, 조달청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자체 세목조정하여 집행했어야 하나, 실시설계비로 전액 집행하였음. 이는 경비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비목을 구분하고 그 성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예산의 신축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목조정 등을 허용한 예산 원칙과 그에 따른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셋째, 조달청은 당초 2025년 내 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착공하려 하였으나, 설계변경 사유 발생으로 설계용역이 2026년 8월 이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착공 및 준공절차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2026년 예산의 공사비·감리비 등의 이월이 예상됨.

조달청은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 2025년 12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 2~3월 중 착공하여 2027년 10월 준공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경남 비축창고 부지가 창원시 도심(중심상업지역 및 경관지구)에 위치함에 따라 재건축을 위해 창원특례시 경관심의위원회 절차[237]를 거쳐야 하면서 공사기간이 지

○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분야의 기본조사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조)의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

237)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연되었음. 더욱이 2025년 5월 개정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주차장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238]되면서 설계 보완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조달청은 총사업비 증액 확보 여부에 맞춰 설계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25년 12월 설계용역 진행을 일시 정지하였으며, 용역기간을 2026년 8월까지 연장하였음.

그러나 경남 비축창고에 대한 창원특례시 경관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이는 기본계획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내부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축공사 초기 단계에서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한편, 상기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한 설계절차 지연으로 조달청은 설계용역 완료 시점을 2026년 8월, 공사계약 공고 및 계약 체결에 2개월이 소요되어 2026년 10월 이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동 계획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공사비·감리비·시설부대비 역시 2027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계획상 2027년 12월 준공 계획인 점을 고려할 때 사정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2027년 예산도 2028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조달청은 공공조달과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임에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 및 법령 개정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바, 향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6년도 예산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창원시 경관 조례」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2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공영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추후 비축창고 신축·재건축 추진 시 사업절차 및 예산 편성·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9)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 유의 및 적정 비축량 조정 필요 (회전자금, 공공물자국)

< 현 황 >

조달청은 코로나-19 비상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축용 마스크(1억 5,000만장, 회전자금 1,050억원)를 구매하였음. 조달청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비축물량을 구매하여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공공기관[239]에 유상 방출하고, 비축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하여 보충하고 있음.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비축량은 2025년 말 기준 약 4,000만장으로, 지역별 마스크 수요 분포, 생산업체 근접도 및 물류체계 등에 맞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전량 민간 창고를 임차하여 비축함에 따라 2025년 임차료 7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5년 말 기준 마스크 보관 현황]

구 분	임차비용 (백만원)	보관물량 (만장)
임 차	785	약 4,000

자료: 조달청

마스크 비축 목표량은 초기 비축 당시의 1억 5,000만장이었으나, 2022년 1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 및 감염병 위기 등 정책여건과 무관하게 마스크 비축 목표량을 5,300만장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2025년 3,700만장으로 재차 하향조정하였음.

조달청은 2025년 마스크 총 1,200만장을 구입하여 8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1,810만장을 방출하여 7억 8,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음. 방출량이 구입량보다 많은 것은 코로나-19 유행시기였던 2021~2022년 이후 최초임.

239) 조달청은 민간업체, 개인은 방출 이후 전매행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에 방출한다는 입장임.

[마스크 비축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5월말
재고목표(만장)		15,000	15,000	15,000	5,300	5,300	3,700	3,700
구입	평균단가(원)*	703	137	107	100	61	70	76
	수량(만장)	14,019	1,200	6,576	5,900	1,000	1,200	400
	총금액(백만원)	98,634	1,653	7,036	5,936	613	836	304
방출	평균단가(원)	-	374	233	240	161	44	12
	수량(만장)	-	9,813	11,776	1,801	628	1,810	561
	총금액(백만원)	-	36,575	27,418	4,322	1,012	789	67
폐기	평균단가(원)	-	-	-	-	-	-	-
	수량(만장)	-	-	-	-	-	-	-
	총금액(백만원)	-	-	-	-	-	-	-

주: 평균단가는 (총금액÷수량)으로 산정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마스크 재고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나, 비축 마스크의 유통기한 만료 및 무상공급 전환에 따른 재고순환 역행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마스크 총 비축 목표량의 현실적이고 적정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을 계기로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서 2020년 4월부터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되어 비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선언 이후 공공기관 대상의 마스크 판매실적이 급감하면서 조달청은 마스크 재고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그 유통기한이 3년인바,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중 2023년 구매분에 대해서는 2026년 하반기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다만, 2026년 6월 개정되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40]에 근거

24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26. 9. 3. 시행)
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사용 기간, 보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

하여 조달청이 인도적 지원, 재난 및 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조달청이 비축한 마스크의 재고순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2026년 6월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무상 공급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익적 목적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무상공급의 목적, 필요성, 비축물자의 품명·수량 및 사용계획을 적은 무상공급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만, 2026년 하반기부터 마스크 유통기한이 도과되는 폐기물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무상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량이 아닌 가장 최근 비축된 마스크를 공급받기를 희망할 수 있음. 이 경우 마스크 재고순환이 반대로 일어날 우려가 있는 바, 무상공급 대상 선정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은 재정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비축목표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